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업무요령**

- 부 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http://www.reb.or.kr/

국 토 교 통 부 한 국 부 동 산 원

목 차_Contents

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
(법률 제17459호)	
Ⅱ.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29
(국토교통부 훈령 제1593호)	
Ⅲ.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147
(국토교통부 훈령 제1594호)	
Ⅳ.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기를 위한 감정평기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1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5호)	
V.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	19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호)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	205
Ⅶ.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225
Ⅷ.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257
IX. 2024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	265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023, 2024, 2025) ····································	273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제1장 총칙	4
제2장 지가의 공시	4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12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7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2
제6장 보칙	25

법령 제17453호(2020.06.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제정 1989. 4. 1. 법률 제4120호

개정 1995.12.29. 법률 제5108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 3.31. 법률 제5954호

2000. 1.28. 법률 제6237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1.14. 법률 제733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12. 7. 법률 제 77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4.27. 법률 제 8409호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2008. 3.28. 법률 제 9055호

2010. 3.17. 법률 제10136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2013. 8. 6. 법률 제12018호

2016. 1.19. 법률 제13796호

2016. 1.19.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2020. 4. 7. 법률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233호

2020. 6. 9. 법률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4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이용상황이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지의 지번
 -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 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

정 2020. 4. 7.>

- 1. 지가 산정의 주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2. 지가 산정의 목적
 -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나. 국유지 ·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 4, 7.>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하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 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1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계 공무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의뢰 받은 자에 한정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 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 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제3조제2항·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별주택의 지번
- 2. 개별주택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 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 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 는 "제17조"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 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3.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 4. 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산정대상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4조·제 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0조"로 본다.
-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

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번
- 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 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21조"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 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 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 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 6. 9.>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⑨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6조·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22조"로 본다.
-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 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4. 7., 2020. 6. 9.>
 -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3. 제3조에 따라 조사 · 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6. 제16조에 따라 조사 · 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9. 제18조에 따라 조사 · 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12. 제20조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15. 제22조에 따라 조사 · 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 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 제27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6. 9.>
 -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 2. 제6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제7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 18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제7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공급
- 3. 제3조제8항,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 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의 작성·제공
-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5.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칙 〈제17459호, 2020, 6, 9.〉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본문・단서, 제18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31
제2장 지역분석	32
제3장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34
제4장 표준지의 선정심사	38
[별표1] 표준지의 분포기준	· 41
[변표기 표주지 의치 표시브중	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3호(2023.01.30.)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정 1996.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164호 개정 2003. 2.24. 건설교통부훈령 제402호 2005. 9.27. 건설교통부훈령 제564호 2006.12.28. 건설교통부훈령 제650호 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 49호 2009. 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37호 2010. 8.23.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 9.21. 국토해양부훈령 제886호 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187호 2016. 8.18. 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6. 9. 1. 국토교통부훈령 제745호 2017.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6호 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6호 2023. 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분석"이란 지역의 지가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 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토지의 표준 적인 이용과 지가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가격형성요인"이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 3. "지역요인"이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 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 4. "개별요인"이란 해당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 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 5.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주택지대·공업 지대·농경지대·임야지대·후보지지대·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 6. "해당지역"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조사·평가의 의뢰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시·군·구 또는 이를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 7.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가격수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제2장 지역분석

제3조(지역분석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준지의 선정·교체·조사 등을 의뢰받은 자(이하 "표준지 선정자"라 한다)가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의 선정·교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분석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역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 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
 - 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별로 구분하여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세분
 - 3. 제2호에 따라 세분된 지역(이하 "세분된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 요인의 변동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과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4. 세분된 지역 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을 다음 각목에 따라 판정
 - 가. 표준적인 이용의 판정은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개발현황, 토지수급의 변동현황, 인접지역간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
 - 나. 가격수준의 판정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판정
 - 5.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지역요인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근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
- 제5조(지역분석조서의 작성) ①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 분석조서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개황, 세분된 지역의

- 지역요인 분석내용,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의 판정과 가격수준 검토결과, 표준지의 교체 및 분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내용과 전반적인 지가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
- 2. 토지용도별 수급의 변화 및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지가변동원인
- 3. 지역의 세분에 관한 사항
- 제6조(가격수준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제5조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가격수준을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분류하고,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 선정자가 제1항에 따른 가격수준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사전 및 수시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되, 협의 시에는 평가선례·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지역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토지용도별·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한다.

제3장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제7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34 Ⅱ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 ③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 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 한다.
- 제8조(표준지의 분포기준) ① 지역별·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전체적인 표준지 수를 배분하기 위한 표준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 상황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표준지 분포의 조정)** ① 지역요인의 변동이 현저한 지역 또는 조세부과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과소 또는 과다하게 활용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간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 2. 토지특성의 중용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 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 3. 토지용도의 안정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 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지의 교체 등) ①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한다.

- ② 표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1. 도시·군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형질변경이나 지번, 지목, 면적 등 지적사항 등의 변경
-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준성을 상실한 경우
-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표준지 수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지가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1.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시에 비교표준지로의 활용실적 분석결과
- 2. 지역분석에 의한 표준지 분포조정 검토결과
- 3.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형질의 변경 등
- 제12조(표준지 선정의 제외대상) ① 국·공유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인 경우와 국·공유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단의 넓은 지역을 이루고 있어 그 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표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수 있다.
 - ②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의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표준지로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3조(표준지의 선정 등에 관한 협의)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②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지 분포조정의 필요성, 표준지의 활용도 및 신규 표준지의 표준지선정 단위구역 등을 검토한다.

제4장 표준지의 선정 심사

- 제14조(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지역분석내용
 - 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지의 조사사항
 - 3. 표준지 과소·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의 내용
 - 4. 표준지 선정협의 여부
 - 5. 표준지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
 - 6. 표준지의 선정, 교체(삭제·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
 - 7. 그 밖의 가격층화 반영의 적정성

38 Ⅲ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제15조(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처리)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한국감정원은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전산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6조(표준지의 확정)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 심사가 완료된 때에 표준지는 확정된다. 다만, 표준지 선정심사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사유로 인하여 표준지의 교체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선정을 재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표준지의 위치 표시) 표준지의 위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기호로 표시하고 기호 밑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전자도면일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기호 외의 방법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34호, 2023. 1.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준지 분포기준

(단위:필지)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121	합계	560,000	1,608	270	34,135	70,156	13,530	12,121	2,023	31,333	1,523
	주거용	148,986	1,357	239	21,410	41,349	7,183	3,765	254	5,064	193
	상업업무용	53,502	37	2	2,450	10,457	3,511	5,307	1,630	21,286	1,161
	주상복합용	35,937	109	4	6,248	15,854	2,627	2,519	121	4,536	148
	공업용	12,626	2	2	415	281	35	203	8	30	5
전국	전	140,558	58	14	2,335	1,415	104	213	2	138	10
	답	96,027	16	4	744	479	38	72	_	65	5
	임야	70,174	27	4	497	304	28	23	_	17	_
	특수토지	1,570	_	_	1	4	1	14	7	183	1
	공공용지	620	2	1	35	13	3	5	1	14	_
	합계	30,934	372	7	2,343	15,620	5,353	1,837	84	3,141	174
	주거용	14,782	321	5	1,827	9,548	1,994	505	_	146	28
	상업업무용	9,065	14	1	136	2,236	2,321	975	84	2,801	120
	주상복합용	5,812	18	-	206	3,805	1,028	352	-	184	26
IIOE III	공업용	230	2	1	2	9	4	3	-	3	-
서울특별시	전	389	2	-	4	6	3	1	-	-	-
	답	19	-	-	-	-	-	-	-	-	-
	임야	510	14	-	141	9	1	-	-	-	-
	특수토지	13	-	-	-	-	-	1	-	4	-
	공공용지	114	1	-	27	7	2	-	-	3	-
	합계	2,026	97	-	383	570	117	30	-	759	-
	주거용	862	89	-	288	383	39	4	-	38	-
	상업업무용	897	1	-	42	104	55	14	-	681	-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201	2	-	42	82	23	12	_	39	_
종로구	공업용	1	-	-	1	-	-	_	_	-	_
	전	10	1	-	-	-	-	-	-	-	-
	임야	48	4	_	7	-	-	1	-	-	-
	공공용지	7	-	_	3	1	_	ı	-	1	-
	합계	1,646		-	117	404	166	67	84	807	-
	주거용	316		_	59	194	43	9	-	11	-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1,174	-	-	35	140	101	51	84	763	-
중구	주상복합용	149	_	-	17	70	22	7	_	33	-
	임야	4	_	-	4	-	-	-	_	-	-
	공공용 지	3	_	-	2	-	-	-	-	-	-
	합계	1,220	14	-	238	614	138	96	-	115	-
	주거용	693	14	-	192	378	65	38	-	4	-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369	_	-	17	137	58	49	-	108	-
용산구	주상복합용	152	_	-	27	98	15	9	-	3	-
	임야	2	_	-	2	-	-	-	-	-	-
	공공용지	4	-	-	-	1	-	-	-	-	_
	합계	950	-	-	19	496	184	43	-	36	4
	주거용	414	-	-	12	271	84	7	-	3	-
	상업업무용	232	_	_	-	70	57	23	-	27	4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251	_	_	2	154	43	13	-	6	-
성동구	공업용	45	_	_	-	1	-	-	-	-	-
	전	1	_	-	1	-	-	-	-	-	-
	임야	1	_	_	1	-	-	_	-	-	-
	공공용지	6	-	-	3	-	-	-	_	_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00	152	4,743	3,691	5,094	8,981	49,326	17,934	143	58	38,549	44,355	130,932	80,531	8,612
5	8	253	686	462	724	10,145	983	19	3	3,215	3,988	43,576	3,230	875
150	4	227	946	80	252	2,243	226	13	-	148	132	3,026	93	121
3	1	55	355	15	69	723	136	2	-	80	57	2,185	30	60
12	111	3,251	1,382	14	194	1,301	89	8	2	254	553	4,040	397	37
7	6	398	180	1,717	1,738	18,823	8,128	40	29	17,000	22,146	48,670	14,210	3,177
16	8	311	82	504	5,874	7,871	4,118	44	18	4,759	11,809	15,801	41,958	1,431
5	7	217	50	2,253	116	7,677	4,115	17	6	13,019	5,583	12,848	20,579	2,782
1	6	23	1	19	8	285	72	-	-	47	73	763	24	37
1	1	8	9	30	6	258	67	-	-	27	14	23	10	92
10	-	-	887	1	4	311	790	-	-	-	-	-	-	-
_	_	-	231	1	1	44	131	_	_	-	-	-	-	_
10	_	-	288	-	_	39	40	-	_	_	-	-	_	-
_	_	-	167	-	-	6	20	_	_	_	-	-	-	_
_	-	-	195	-	1	7	3	_	_	-	-	-	-	-
_	-	-	2	-	-	51	320	_	-	-	-	-	-	-
_	_	_	_	_	_	2	17	_	_	_	_	_	_	_
_	_	_	2	_	-	101	242	_	_	_	-	_	_	_
_	_	_	_	_	_	3	5	_	_	_	_	_	_	_
_	_	_	2	_	2	58	12	_	_	_	_	_	_	_
_	_	_	_	_	_	15	55	_	_	_	_	_	_	_
_	_	_	_	_	_	4	17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9	_	_	_	_	_	_	_
_	_	_	_	_	_	9	28	_	_	_	_	_	_	_
_	_	_	_	_	_	2	-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1	_	4	_	_	_	_	_	_	_	_
_	_	_	_	1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160	_	_	3	_	_	_	_	_	_	_	_
1 -		-	163	-	-	4	-			-		-		-
	-	-	37	-	-		-	-	-	-	-	-	-	-
1	-	-	49	-	-	1	-	-	-	-	-	-	-	-
_	-	-	33	-	-	-	-	-	-	-	-	-	-	-
_	-	-	44	-	-	-	-	_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_	_	_	_	_	3	_	-	_	_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1001	합계	1,074	1	-	127	617	180	89	-	41	-
	주거용	566	_	_	113	341	76	30	_	1	_
	상업업무용	252	_	_	1	107	73	36	_	34	_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235	_	_	10	166	31	22	_	6	_
광진구	임야	14	_	_	2	1	_	_	_	_	_
	특수토지	1	_	_	_	_	_	1	_	_	_
	공공용지	6	1	_	1	2	_	_	_	_	_
	합계	1,375	_	_	55	765	321	97	_	120	15
	주거용	609	_	_	46	402	127	26	_	5	3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420	_	-	3	123	118	58	-	108	9
동대문구	주상복합용	341	-	-	3	239	76	13	_	7	3
0 112 1	임야	3	_	-	3	_	-	-	-	-	_
	공공용지	2	_	_	_	1	_	_	_	_	_
	합계	1,136	_	_	31	707	202	104	_	24	19
	주거용	629	_	_	26	460	85	42	_	6	5
	상업업무용	213	_	_	1	71	74	43	_	14	10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255	_	_	4	176	43	19	_	3	4
중랑구	전	19	_	_	_	-	-	-	_	_	_
001	임야	16	_	_	_	-	_	_	_	_	_
	특수토지	1	_	_	_	-	_	_	_	1	_
	공공용지	3	_	_	_		_	_	_	_	-
	합계	1.963	63	_	235	1,142	245	156	_	88	12
	주거용	1,181	51	_	198	737	118	50	_	17	5
	상업업무용	288	-	_	6	96	52	69	_	60	4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455	4	_	18	307	74	37	_	11	3
성북구	전	1	_	_	-	-	_	-	_	_	_
	임야	29	8	_	7	2	_	_	_	_	_
	공공용지	9	_	_	6	_	1	_	_	_	-
	합계	1,293	_	_	102	781	223	98	_	50	_
	주거용	779	_	_	74	558	100	33	_	6	_
	상업업무용	232	_	-	3	62	69	48	_	41	_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248	_	-	11	161	54	17	-	3	_
강북구	전	5	_	-	-	_	-	-	-	-	_
	임야	27	_	-	13	_	-	-	_	-	-
	<u></u> 특수토지	1	_	-	-	_	-	-	_	-	-
	공공용지	1	-	-	1	-	-	-	_	-	-
	합계	780	-	-	74	388	101	47	-	28	2
	주거용	363	_	_	53	218	33	12	_	3	_
	상업업무용	131	-	-	2	32	45	18	-	18	2
	주상복합용	231	_	_	13	138	23	17	_	7	_
서울특별시	공업용	2	-	-	_	_	-	-	-	-	-
도봉구	 전	19	-	-	1	_	-	-	-	-	-
	답	1	-	-	-	_	-	-	-	-	-
	임야	31	-	-	5	_	-	-	-	-	-
	공공용지	2	-	-	-	_	-	-	-	-	-
	합계	783	2	1	48	446	151	35	-	20	-
	주거용	376	2	1	38	252	59	5	-	1	-
HOEST!	상업업무용	172	-	-	1	62	53	28	-	16	-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184	-	-	8	130	39	2	-	3	-
노원구	전	7	-	-	-	_	-	-	-	-	-
	임야	37	-	-	-	2	-	-	-	-	-
	공공용지	7	_	-	1	_	-	-	_	-	-
				L	<u> </u>		I	L	L	L	L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	-	-	11	8	-	-		-	-	-	-
-	-	-	-	-	-	2	3	-	-	_	-	-	-	-
-	-	-	-	-	-	1	-	-	_	_	-	-	-	-
-	_	-	_	_	-	_	_	_	_	_	_	_	_	-
-	-	-	_	-	-	6	5	-	_	_	_	_	-	-
-	-	-	_	-	-	_	-	-	_	_	_	_	-	-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1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18	31	_	_		_	_	_	_
_	_	_	_	_	_	2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2	4	_	_	_	_	_	_	_
_	_	_	_	_	_	5	14	_	_	_	_	_	_	
_	_	_	_	_	_	7	9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2	1	_	_	_	_	_	_	_
_	_	_	_	_	_	13	9	_	_	_	_	_	_	
_	_	_	_	_	_	2	3		_		_	_	_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_	-	_	-	-	-	-
_	_	_	_	-	_	8	4		_		_	-	-	_
_				-		2						-	-	_
	_	-	-	-	-	6	33	-	-	_	-	-	-	_
_	-	-	-	-	-	1	7	_	-	_	-	-	-	-
_	-	-	-	-	-	1	8	-	-	-	-	-	-	-
_	_	-	-	-	-	-	2	_	_	_	-	-	-	_
_	-	-	-	-	-	1	4	-	-	_	-	-	-	
	-	-	-	-	-	2	12	-	-	-	-	-	-	-
_	_	-	-	-	-	1	-	-	-	-	-	-	-	-
	_	-	-	-	-	-	-	-	-	-	-	-	_	-
-	-	-	83	-	-	12	45	_	_	_	-	-	-	-
_	_	-	38	-	-	1	5	-	-	_	-	-	-	_
_	-	-	12	-	-	-	2	-	-	-	-	-	-	-
	_	_	31	-	-	1	1	-	-	_	-	_	-	-
_	-	-	2	_	_	_	-	1	_		_	_	-	-
_	-	-	_	_	-	4	14	-	-	_	_	_	-	_
_	-	-	-	-	-	_	1	-	_	-	-	-	-	_
-	-	-	-	-	-	5	21	-	-	-	-	-	-	-
-	-	-	-	-	-	1	1	-	-	_	-	-	-	
_	-	-	-	-	-	41	39	-	_	_	_	_	-	-
_	-	-	-	-	-	7	11	-	_	_	_	-	-	-
-	-	-	-	-	-	10	2	-	_	_	-	_	-	_
-	-	-	-	-	-	1	1	-	-	-	-	-	-	-
-	-	-	-	-	-	3	4	-	-	-	-	-	-	-
-	_	-	-	-	-	14	21	-	-	-	-	-	-	_
-	_	-	-	-	-	6	-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435	7	3	124	728	253	129	-	73	15
	주거용	845	6	3	102	523	120	51	-	12	5
서울 특 별시	상업업무용	281	-	-	1	58	100	53	-	52	8
	주상복합용	228	1	-	5	147	33	25	-	9	2
은평구	전	31	-	-	-	_	_	_	_	-	-
	임야	48	_	-	16	-	-	-	-	-	-
	공공용지	2	_	-	-	_	-	-	-	-	-
	합계	1,361	40	-	166	648	297	100	-	92	3
	주거용	824	37	-	133	459	163	22	-	5	-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329	1	-	4	79	92	69	-	81	3
서대문구	주상복합용	172	1	-	7	108	41	9	-	6	-
1 1121	임야	32	1	_	20	1	1	_	_	_	_
	공공용지	4		_	2	1	_	_	_	_	_
	합계	1,343	_	_	17	879	245	95	_	71	21
	주거용	629	_	_	12	505	83	19	_	8	_
	상업업무용	358	_	_	_	124	96	58	_	57	20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343	_	_	1	250	66	18	_	6	1
마포구	<u> </u>	1	_	_	-	-	-	-	_	_	_
-11	임야	6	_	_	4	_	_	_	_	_	_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5	_	_	_	_	_	_	_	_	_
	합계	777	_	-	39	420	201	64	-	17	14
	주거용	387	_	_	35	259	73	17	_	-	2
	상업업무용	196	_	_	-	37	99	33	_	16	7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176	-	-	3	124	29	14	-	-	5
양천구	공업용	2	-	_	_	_	_	_	_	_	-
021	전	2	_	-	-	_	-	-	-	-	-
	임야	12	-	-	1	-	_	_	_	_	-
	공공용지	2	-	-	_	_	_	_	-	1	-
	합계	1,304	17	-	51	661	218	42	-	99	25
	주거용	610	15	-	39	426	77	9	-	12	3
	상업업무용	373	-	-	1	98	100	25	-	71	20
	주상복합용	216	2	-	5	137	41	8	-	16	2
서울특별시	공업용	10	-	-	-	-	-	-	-	-	-
강서구	전	45	-	-	-	-	-	-	-	-	-
	답	18	-	-	-	-	-	-	-	-	-
	임야	22	-	-	6	-	-	-	-	-	-
	특수토지	5	-	-	-	-	-	-	-	-	-
	공공용지	5	-	-	-	-	-	-	-	-	-
	합계	1,116	-	-	41	630	214	21	-	40	-
	주거용	601	-	-	30	424	102	5	-	3	-
	상업업무용	246	-	-	-	89	61	13	-	33	-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181	-	-	5	113	47	1	-	4	-
구로구	공업용	52	-	-	1	3	4	2	-	-	-
	전	11	-	_	_	_	_	_	-	-	-
	임야	20	-	-	5	1	-	-	-	-	-
	공공 용 지	5	-	-	-	-	-	-	-	-	-
	합계	751	-	-	59	446	42	48	-	26	8
	주거용	403	-	-	53	278	17	22	-	1	1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146	-	-	-	53	18	18	-	25	5
금천구	주상복합용	144	_	-	2	114	7	7	-	-	2
	공업용	44	_	-	-	_	-	1	-	-	-
	임야	10	_	-	4	1	-	-	-	-	-
	공공용지	2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보전 –	_	4	99	-			_	_	-	
	_	_	_	2	21	_	_	_	_	_	_	_
	_	_	_	1	8	_	_	_	_	_	_	_
	_		_	_	6	_	_	_	_	_	_	_
	-	_	_	_	31	-	_	_	_	_	_	_
	-	_	_	_	32	-	_	_	_	_	_	_
	_	_	_		1	_	_				_	_
				1	13							
	-	_	-	2			_	-	_	_	_	_
					5							
	-	_	_	_	_		_	-	_	_	_	_
	-	-	-	1	8	-	-	_	_	-	-	-
	-	-	-	1	-	-	-	-	-	-	-	-
3	-	-	-	11	1	-	-	-	-	-	-	-
	-	-	-	2	-	-	-	-	-	_	-	-
3	-	-	-	-	-	-	-	_	-	-	-	-
	-	-	-	1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_	_	_	-	-
	-	-	-	1	_	-	-	_	_	-	-	-
	-	-	-	4	1	-	-	-	-	-	-	-
	2	-	-	14	6	-	_	-	_	_	-	-
	-	-	-	1	-	-	-	-	-	-	-	-
	1	-	-	2	1	-	-	-	-	-	-	-
	1	-	-	-	-	-	-	_	-	-	-	-
	-	-	-	2	-	-	-	-	-	-	-	-
	-	-	-	-	2	-	-		-	-	-	-
	-	-	-	8	3	-	-	-	-	-	-	-
	-	-	-	1	-	-	-	_	-	-	-	-
1	77	-	1	34	78	-	-	_	-	-	-	-
	20	-	1	5	3	-	_	-	-	-	-	_
1	43	-	-	9	5	_	_	_	_	_	_	_
	5	_	_	_	_	_	_	_	_	_	_	_
	8	_	_	1	1	_	_	_	_	_	_	_
	_	_	_	9	36	_	_	_	_	_	_	_
	_	_	_	2	16	_	_		_	_	_	_
	1	_	_	7	8	_	_		_	_	_	_
	-	_	_	1	4	_	_	_	_	_	_	_
	-	_	_	_	5	-	_	_	_	_	_	_
	129	_	1	8	32	_	_	_	_	_	_	_
	30	_	_	1	6	_	_	_	_	_	_	_
	49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11	_	1	2	2		_				_	_
	37											
	1	-	-	-	10	-	_	_	-	-	_	_
	1		-	1	12				-	-	-	_
	-	-	-	4	1	-	_	_	-	_	_	_
	113	-	-	3	6	_	-	_	-	-	-	-
	30	-	-	1	-	-	-	_	_	_	-	-
	27	-	-	-	-	-	-	-	-	-	-	-
	12	-	-	-	-	-	-	_	-	-	-	-
	43	-	-	-	-	1	-	-	_	_	-	-
	-	-	-	1	4	-	-	-	-	_	-	-
- - -	1	-	-	1	-	_	_	_	_	-	_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248			2	555	94	146	-	115	13
	주거용	487	-	_	1	341	33	30	_	3	3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429	-	_	-	68	44	94	_	107	9
영등포구	주상복합용	257	-	-	-	141	17	22	_	2	1
	공업용	68	-	_	-	4	-	-	_	3	_
	공공용지	7	-	-	1	1	-	_	_	-	-
	합계	1,204	-	-	92	668	330	45	_	54	10
	주거용	706	-	-	79	463	145	18	_	1	-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229	_	_	_	50	104	19	_	45	9
동작구	주상복합용	253	-	_	1	155	81	8	_	7	1
	임야	12	_	-	10	-	-	-	-	-	-
	공공용지	4	-	-	2	-	-	-	-	1	-
	합계	1,337	-	_	146	693	254	137	_	80	_
	주거용	741	-	_	125	481	96	32	_	1	_
서울특별시	상업업무용	295	_	_	-	53	104	65	_	72	_
관악구	주상복합용	261	_	-	1	159	54	40	-	7	-
	전	7	-	-	1	-	-	-	-	-	-
	임야	33	-	-	19	-	-	-	-	-	-
	합계	1,376	80	3	74	569	306	13	-	114	-
	주거용	507	67	1	54	296	56	1	-	2	-
	상업업무용	526	4	1	5	172	216	12	-	108	-
서울 특 별시	주상복합용	142	6	-	4	99	31	-	-	1	-
	공업용	3	2	1	-	-	-	-	-	-	-
서초구	전	126	-	-	-	2	3	-	-	-	-
	임야	59	1	-	9	-	-	-	-	-	-
	특수토지	4	-	-	-	-	-	-	-	3	-
	공공용지	9	-	-	2	-	-	-	-	-	-
	합계	1,348	46	-	80	494	444	32	-	168	-
	주거용	381	35	-	50	208	78	2	-	-	-
	상업업무용	744	8	-	14	196	327	25	-	168	-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145	2	-	13	85	39	4	-	-	-
강남구	공업용	2	_	-	-	-	-	-	-	-	-
	전	44	1	-	-	4	-	1	-	-	-
	임야	26	-	-	2	1	-	-	-	-	-
	공공용지	6	-	-	1	-	-	-	-	-	-
	합계	1,065	2	-	19	684	228	55	-	44	1
	주거용	402	2	-	12	327	52	8	-	-	-
IIOE III	상업업무용	330	_	-	-	108	138	34	-	44	1
서울특별시	주상복합용	303	-	-	4	248	37	13	-	-	-
송파구	공업용	1	-	-	-	1	-	-	-	-	-
	전	15	-	_	-	_	-	-	_	-	-
	임야	4	-	_	1	-	-	-	_	_	-
	공공용지	10	-	_	2	-	1	-	_	-	-
	합계	1,023	3	-	4	615	199	48	-	60	12
	주거용	471	3	_	3	364	70	13	_	3	1
	상업업무용	203	-	-	-	47	67	20	-	52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상복합용	289	_	-	-	204	62	15	-	5	2
(65 T	전	43	-	-	1	-	-	-	-	-	-
	임야	14	-				-	-	-	-	-
	공공용지	3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	319	-	-	4	-	-	-	_	-	-	-	-
-	-	-	76	-	-	-	-	-	-	_	-	-	-	-
-	-	-	107	-	-	-	-	-	-	_	-	-	-	-
-	-	-	74	-	-	-	-	-	-	_	-	-	-	-
-	-	-	61	-	-	-	-	-	-	_	-	-	-	-
-	-	-	1	-	-	4	-	-	-	_	-	-	-	-
1	-	-	-	-	-	4	-	-	-	_	-	-	-	-
-	-	-	-	-	-	_	-	-	-	_	-	-	-	-
1	-	-	-	-	-	1	-	-	-	_	_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	-	-	ı	-	-	-	-
-	-	-	-	-	-	23	4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1	-	-	-	-	_	_	-	-
-	-	-	-	-	-	-	-	-	-	-	-	-	-	_
_	-	-	-	-	-	5	1	-	-	1	_	-	-	-
_	-	-	-	-	-	11	3	-	-	-	-	-	-	-
-	-	-	-	-	-	33	184	-	-	-	-	-	-	-
_	-	-	-	-	-	6	24	-	-	-	-	_	-	-
_	-	-	-	-	-	5	3	-	-	-	_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13	-	-	-	-	-	-	-
_	-	-	-	-	-	8	41	-	-	_	-	_	-	-
_	-	-	-	-	-	-	1	-	-	_	-	-	-	-
_	-	-	-	-	-	6	1	-	-	-	-	-	-	-
_	-	-	-	-	1	30	53	-	-	_	-	-	-	-
_	_	-	_	_	_	-	8	_	-		_	-	-	-
_	-	-	_	_	_	4	2	-	-	_	_	_	-	-
_	-	-	_	-	-	-	2	-	-		_	_	-	-
_	_	-	-	-	-	2	-	-	-	_	_	-	_	-
	-	-	_	_	-	13	25	-	-	_	_	-	-	-
	-	-	-	-	-	7	16	-	-	-	-	-	-	-
-	-	-	-	-	1	4	-	-	-	_	-	-	-	-
3	-	-	-	-	1	10	18	-	-		-	-	-	-
3	_	_	_	_	_	2	1 -	_	_		_	_	_	_
-	_	_	_	_	_	_	1	_	_		_	_	_	_
-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2	1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1	6	-	_	_	_	_	_	_	_
_	_	_	1	_	_	5	76	_	_	_	_	_	_	_
_	-	-	-	-	-	-	14	-	-	-	-	-	-	-
_	-	-	-	-	-	1	7	-	-	ı	-	-	-	-
-	-	-	-	-	-	-	1	-	-	-	-	-	-	-
_	_	-	1	_	_	_	41	_	_	_	_	_	_	-
_	_					2					_			
		-	-	-	-		12	-	-	_		-	-	-
_	-	-	-	-	-	2	1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9,499	20	-	1,276	6,527	2,810	1,373	19	3,822	76
	주거용	8,386	20	-	704	4,237	1,882	426	1	758	11
	상업업무용	4,069	-	-	43	630	249	573	17	2,351	52
	주상복합용	3,558	-	-	180	1,539	659	367	-	690	12
Hundu	공업용	695	-	-	117	36	8	5	_	7	1
부산광역시	전	1,331	-	-	173	37	8	1	1	10	_
	 답	527	_	_	36	8	1	1	_	_	_
	임야	871	_	_	21	39	2	_	_	1	_
	특수토지	30	_	_	_	1	1	_	_	5	_
	공공용지	32	_	_	2		_	_	_	_	_
	합계	954	_	_	_	141	130	18	_	657	_
	주거용	299	_	_	_	108	112	10	_	68	_
	상업업무용	497	_	_	_	4	1	-	_	492	
부산광역시	주상복합용	149	_	_	_	28	17	8	_	96	_
중구	공업용	2	_	_	_	_	-	_	_	1	-
	임야	1	_	_	_	1	_	_	_	_	_
	공공용지	6	_	_	_	_	_	_	_	_	_
<u> </u>	합계	1,143	_	_	20	487	172	86		287	_
	주거용	637	_	_	13	365	128	32	_	85	_
	상업업무용	195	_	_	-	16	11	32	_	128	_
	장입입 구용 주상복합용		_	_						74	_
부산광역시		231	_	_	4	98	30	22		-	_
서구	공업용	8		_				_	_	_	
	전	26	-	-	1	2	2		_		-
	임야	44	-	_	2	6	1	-		-	-
	특수토지	1	_	-	_	-	-	-	_	-	_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1,354	-	-	10	265	504	19	-	508	-
	주거용	774	-	-	8	199	418	10	-	133	-
부산광역시	상업업무용	307	-	-	-	11	7	3	-	285	-
동구	주상복합용	224	-	-	2	51	79	6	-	86	-
01	공업용	9	-	-	-	-	-	-	_	3	-
	전	7	-	-	-	1	-	-	-	-	-
	임야	33	-	-	-	3	-	-	_	1	-
	합계	1,134	-	-	23	430	170	67	_	282	-
	주거용	614	-	-	17	308	128	28	-	86	-
부산광역시	상업업무용	142	-	-	-	7	2	15	-	107	-
영도구	주상복합용	296	-	-	6	111	40	24	-	86	-
0.7.1	공업용	43	-	-	-	-	-	-	-	3	-
	전	17	-	-	-	-	-	-	-	-	-
	임야	22	_	-	-	4	-	-	_	-	-
	합계	2,109	_	-	11	688	395	138	-	817	12
	주거용	913	-	-	9	461	241	36	-	151	3
	상업업무용	693	-	-	-	86	36	50	-	512	8
부산광역시	주상복합용	463	-	-	-	140	116	51	-	154	1
부산진구	공업용	3	-	-	-	-	1	1	-	-	-
	전	7	-	-	-	_	-	-	_	-	-
	임야	29	-	-	2	1	1	_	_	-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1,088	-	-	3	442	191	188	-	185	14
	주거용	490	-	-	1	264	113	69	-	30	3
	상업업무용	262	-	-	-	43	19	66	-	127	7
부산광역시	주상복합용	279	-	-	-	134	58	53	_	27	4
	공업용	2	-	-	-	1	1	-	-	-	-
동래구	전	15	-	-	-	-	-	-	-	-	-
	임야	35	-	-	1	-	-	-	-	-	-
	특수토지	2	-	-	-	_	-	-	_	1	-
	공공용지	3	-	_	1	_	-	_	_	-	-
		-			· ·	l	1	I.	1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5	51	198	467	150	3	1,290	1,405	-			-	-	-	7
_	3	2	60	8	-	181	88	_	_	_	_	_	_	5
5	1	5	97	1	_	37	8	_	_	_	_	_	_	_
-	-	2	60	-	_	32	17	_	_	_	_	_	_	_
_	47	182	244	_	_	25	23	_	_	_	_	_	_	_
_	_	2	3	35	1	440	618	_	_	-	_	_	_	2
		2		15	2	118	344							
_	-	3	1	90	_	426	288	-	-	_	-	-	-	-
-	-	_	-	1	-	14	8	-	-	_	-	-	-	-
-	-	-	2	-	-	17	11	-	_	_	_	-	-	-
-	-	_	2	-	_	6	-	-	_	_	_	-	-	-
-	-	-	_	-	-	1	_	-	-	_	_	-	-	-
-	-	-	-	-	-	_	-	-	_	-	_	_	-	-
-	-	-	-	-	-	-	-	-	-	-	-	-	-	-
_	-	_	1	_	_	_	_	-	_	_	_	-	-	-
-	-	-	_	-	-	-	-	-	-	_	-	-	-	-
-	-	-	1	-	-	5	-	-	-	-	-	-	-	-
-	-	6	11	4	-	70	_	-	-	_	_	-	-	-
-	-	-	-	-	-	14	-	-	-	-	-	_	-	-
-	-	1	5	-	-	2	-	-	-	-	-	-	-	-
_	-	-	1	-	-	2	-	-	-	-	-	-	-	-
-	-	4	4	_	_	_	_	-	-	_	_	_	-	-
-	-	-	1	1	-	19	-	-	-	-	-	-	-	-
-	-	1	-	3	-	31	-	-	-	_	-	-	-	-
-	-	-	-	-	-	1	-	-	-	_	-	-	-	-
-	-	-	-	-	-	1	-	-	-	-	-	-	-	-
-	-	-	11	-	-	37	-	-	-	-	-	-	-	-
-	-	-	4	-	-	2	-	_	-	-	-	-	-	-
-	-	-	1	-	-	-	-	_	-	_	-	-	-	-
-	_	-	-	-	-	-	-	_	-	_	-	-	-	-
_	-	-	6	_	-	_	-	_	-	_	-	_	_	-
_	_	_	-	_	-	6	_	_	-	-	_	-	-	_
_	_	_	_	_	_	29	_	_	_	_	_	_	-	_
_	22	_	89	_	_	51	_	_	-	_	_	_	-	_
-	3	_	32	_	_	12	_	_	-	_	_	_	-	_
_	1	_	8	_	_	2	_	_	_	_	_	_	_	_
_	_	_	28	_	_	1	_	_	_		_	_	_	_
_	18	_	21	_	_	1	_	_	_	_	_	_	_	_
_	-	_	-	_	_	17	_	_	_	_	_	_	_	_
_	-	-	_	-	-	18	_	_	_	_	_	_	_	_
_	-	_	_	_	-	48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_	_	_	7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5	_	_	_		_	_	_	_
-	-	_	-	-	-	1	-	_	_	-	_	_	-	_
-		-	1	-	-	56	8				-	-	-	-
-	-	_	-	_	-	10	-	-	_	_	_	-	-	-
_	_	_	-	-	_	-	_	-	_	_	_	-	-	-
_	-	_	-	-	-	3	_	-	_	_	_	-	-	-
-	-	_	-	-	-	-	_	-	-	_	_	-	-	-
-	-	-	-	-	-	13	2	-	-	-	-	-	-	-
-	-	-	-	-	-	28	6	-	-	-	-	-	-	-
-	-	-	-	-	-	1	-	-	-	_	-	-	-	-
_	_	_	1	_	-	1	_	-	-	-	-	_	-	-

변성하시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170	-	-	50	512	291	68	-	170	1
부산광여사 남기주를 가장하는 경험에 대한 기를		주거용	637	-	-	30	336	209	18	-	37	-
		상업업무용	224	-	-	9	63	20	32	-	96	1
	부산광역시	주상복합용	235	-	-	9	107	62	18	-	37	-
- 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공업용	21	-	-	_	_	_	_	_	_	_
특수토지 1 - <td></td> <td>전</td> <td>6</td> <td>-</td> <td>-</td> <td>_</td> <td>1</td> <td>_</td> <td>_</td> <td>_</td> <td>_</td> <td>_</td>		전	6	-	-	_	1	_	_	_	_	_
특수토지 1 - <td></td> <td>임야</td> <td>46</td> <td>-</td> <td>-</td> <td>2</td> <td>5</td> <td>-</td> <td>-</td> <td>_</td> <td>-</td> <td>-</td>		임야	46	-	-	2	5	-	-	_	-	-
변산광석			1	-	-	-	-	-	_	_	-	-
부신광역사 취임 주기용 347 - - - - 44 15 66 - 74 - 부신광역사 취임 193 -<			839	_	_	14	429	87	77	_	102	_
부산광석				-	-	3				_		-
부산광석		상업업무용	174	_	-	-	44	15	36	_	74	_
보각 원이 63 1 2 1	부산광역시			_	_	8				-		_
임아 63 - - 1 2 - - - - - - - - -				_	_					_		_
복수토지 1 - <td></td> <td></td> <td></td> <td>_</td> <td>_</td> <td></td> <td></td> <td>_</td> <td>_</td> <td>_</td> <td>_</td> <td>_</td>				_	_			_	_	_	_	_
공공용지 4				_	_			_	_	_	_	_
변시광석시 해운대구				_	_	_		_	_	_	_	_
부산광역시 해당다구 1					_	53	675			16	210	7
부산공역시 해운대구 경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		_							
부산광역시 해오대구 전 64 159 10 12 - 22				_	_					16		7
- 한번역사 해운대구 전 64 66 2					_					-		
N 한 대	부산광역시				_					_		_
담 18	해운대구											
원이 83 - - 2 5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3 - 한계 1,177 - - 30 511 202 109 - 101 18 주거용 598 - - 25 351 132 39 - 26 4 상업단무용 199 - - - 54 11 45 - 57 10 주상복합용 219 - - - 4 98 58 25 - 18 4 전쟁 15 - - - - 2 -												_
변신광역시 사하구 **** *** *** ** **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업업무용 199 4 98 58 25 - 18 4 공업용 92 3 11												
무산용역시 사하구												
- 사하수 경영용 92 3 1 1	부산광역시									_		
전 15 2	사하구											
임이 54 - - 1 3 - - - - - - - - -										_		
함계 1,312 84 565 157 115 - 102 - 7거용 568 48 345 84 37 - 26 - 48 345 84 37 - 26 - 48 345 84 37 - 26 - 48 345 84 37 - 26 - 63 - 78 4합용 260 11 145 47 23 - 13 - 13 - 26 - 13 - 26 - 13 - 25 - 2 - 2 1 1 1 10 - 20 -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공업용 24 11 145 47 23 - 13					_							_
부산광역시 금정구 연합 225					_					_		_
부산광역시 금정구					_					_		
공업용 24 2 1 1 1												
금정구 전	HAIRIOLI											
답 10												
임야 66 1 4	古성구											
특수토지 3 -												
공공용지 5												
함계 1,816 18 - 567 165 11 36 3 66 17 주거용 539 18 - 313 85 5 7 1 3 1 상업업무용 137 - 14 6 2 15 1 54 14 주상복합용 132 - 73 38 - 12 - 2 공업용 246 - 1113 12 - 1 - 2 전 412 - 40 18 4 1 1 9 - 답 259 - 13 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성업업무용 137 - - 14 6 2 15 1 54 14 구상복합용 132 - - 73 38 - 12 - - 2 공업용 246 - - 113 12 - 1 - - - 전 412 - - 40 18 4 1 1 9 - 답 259 - - 13 4 - - - - - 일야 84 - - 1 2 - - - - - 특수토지 6 - - - - - - - - -												
사업업무용 137 14 6 2 15 1 54 14 주상복합용 132 73 38 - 12 2 3 38 구 12 구 구 2 3 38 구 12 구 구 구 2 3 38 구 12 구 구 구 2 3 38 구 12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성복합용 132 - - 73 38 - 12 - - 2 공업용 246 - - 113 12 - 1 - - - 전 412 - - 40 18 4 1 1 9 - 답 259 - - 13 4 - - - - 일야 84 - - 1 2 - - - - 특수토지 6 - - - - -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 412 40 18 4 1 1 9 - 답 259 13 4 임야 84 1 2 특수토지 6												
강서구 전 412 40 18 4 1 1 9 - 답 259 13 4												
답 259 13 4												
임야 84 1 2	강서구											-
특수토지 6												
		공공용지	1	_	-	_	_	_	_	_	_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_	11	-	15	8	-	44	-	-	-		-	-	-	-
-	_	-	_	-	-	7	-	-	-	_	_	-	_	-
_	-	-	2	-	-	1	-	-	-	_	-	-	-	-
-	_	-	2	-	-	_	-	-	-	_	-	-	-	
-	11	-	10	-	-	-	-	-	-	_	-	-	-	-
-	-	-	1	-	-	4	-	-	-	_	-	-	-	-
-	-	-	_	8	-	31	-	-	-	_	-	-	-	-
-	-	-	-	-	-	1	-	-	-	_	-	-	-	-
-	-	-	-	-	-	51	79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1	1	-	-	-	-	-	-	-
-	-	-	-	-	-	15	39	-	-	-	-	-	-	-
-	-	-	-	-	-	24	36	-	-	_	-	-	-	-
-	-	-	-	-	-	-	-	-	-	-	-	-	-	-
_	_	-	-	_	-	1	3	_	-	-	_	-	-	_
-	-	4	24	-	-	57	102	-	-	-	-	-	-	-
-	-	-	9	-	-	4	1	_	-	-	_	_	-	-
-	-	-	5	-	-	2	-	-	-	-	-	-	-	-
-	-	-	6	-	-	1	-	-	-	-	-	-	-	-
-	-	4	4	-	-	1	-	-	-	-	-	-	-	-
-	-	-	-	-	-	26	30	-	-	-	-	-	-	-
-	-	-	_	-	-	2	16	-	-	_	-	-	-	-
	-	-	_	-	-	21	55	-	-	_	-	-	-	
-	-	-	_	-	-	-	-	-	-	_	-	-	-	-
-	18	19	79	6	-	84	-	-	-	_	-	-	-	-
-	-	1	9	-	-	11	-	-	-	-	-	-	-	-
-	-	1	15	-	-	6	-	-	-	-	-	-	-	-
-	-	-	11	-	-	1	-	-	-	-	-	-	-	-
-	18	17	42	-	-	11	-	-	-	ı	-	-	-	-
-	-	-	1	1	-	11	-	-	-	ı	-	-	-	-
-	-	-	1	5	-	44	-	-	-	ı	-	-	-	-
	-	1	32	-	-	83	173	-	-	_	-	-	-	
	-	-	1	-	-	17	10	-	-	_	-	-	-	
-	-	-	7	-	-	2	-	-	-	-	-	-	-	
-	-	-	6	-	-	12	3	-	-	ı	-	-	-	_
-	-	1	18	-	-	-	1	-	-	-	-	-	-	-
_	-	-	-	-	-	29	103	-	-	-	-	-	-	_
_	-	-	-	-	-	5	5	_	-	-	-	_	-	-
_	-	-	-	_	-	17	44	_	-	-	-	_	-	_
_	-	-	-	-	-	1	2	_	-	-	-	-	-	-
_	-	-	-	-	-	-	5	-	-	-	-	-	-	-
5	-	94	29	9	-	218	571	_	-	-	_	-	-	7
_	-	-	-	-	-	39	62	_	-	-	-	-	-	5
5	-	1	19	-	-	1	5	_	-	-	-	_	-	_
_	-	-	-	-	-	1	6	-	-	-	_	_	-	_
-	-	92	10	-	-	-	18	_	-	-	-	-	-	-
_	-	-	-	2	-	132	203	-	-	-	-	-	-	2
_	-	-	-	-	-	8	234	_	-	-	-	-	-	-
_	-	1	-	7	-	34	39	-	-	-	-	-	-	-
-	-	-	-	-	-	2	4	-	-	-	-	-	-	-
_	_	-	_	-	-	1	-	-	_	_	_	-	-	

변경의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유선공액수 전체적 200 1 105 21 73 - 54		합계	803		-	9	354	144	173	-	103	-
유산학식 언제구		주거용	407	-	-	7	239	79	54	-	26	-
관심 수 영화 등 2년 1 1 105 44 46 - 23	디지디다	상업업무용	158	-	-	-	10	21	73	-	54	-
변경 1		주상복합용	220	-	-	1	105	44	46	-	23	-
변신량석	언제구	공업용	1	-	-	-	_	-	_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15		전	1	-	-	-	_	-	_	-	-	-
유산용액시 수영구 173 13 254 38 27 - 111 112 - 112 - 112 - 113 수 150 - 60 - 60 - 74 수 150		임야	16	-	-	1	_	-	_	-	-	-
부산광석시 수성 등 173		합계	689	-	-	16	379	68	112	-	95	-
부산광역시 수영국 2 95 16 26 - 15 95 16 26 15		주거용	347	-	-	13	254	38	27	-	11	-
변설 2 1		상업업무용	173	-	-	1	29	14	59	-	69	-
변상 12 1 1	부산광역시	주상복합용	152	-	-	-	95	16	26	-	15	-
원이	수영구	공업용	2	-	-	-	-	-	-	-	-	-
공용용지 1 1		전	2	-	-	1	-	-	-	-	-	-
부산광역시 시상구		임야	12	-	-	-	1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용지	1	-	-	1	-	-	-	-	-	-
부산광역시 시상구 경임 159 1 76 52 11 - 11		합계	842	-	-	6	270	194	61	-	6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영용 159 1 766 52 111 - 111		주거용	256	-	-	3	124	92	18	-	11	-
유한영식시 사상구 전 21 17 3 3 3		상업업무용	204	-	-	2	53	46	29	-	37	-
사상구 전 21 17 3 3 3	비시되어시	주상복합용	159	-	-	1	76	52	11	-	11	-
선 21		공업용	167	-	-	-	17	3	3	-	-	-
특수토지 1 - <td>사상구</td> <td>전</td> <td>2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사상구	전	21	-	-	-	-	1	-	-	-	-
공용자 3		임야	31	-	-	-	-	-	_	-	-	-
함께 1,798 2 - 380 214 34 43 - 77 7 7		특수토지	1	-	-	-	-	-	_	-	1	-
무신광역시 기장군 163		공공용지	3	-	-	-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130 55 32 11 4 - 1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1 2 1		합계	1,798	2	-	380	214	34	43	-	77	7
무산광역시 기장군 경영용 64 105 32 11 4 - 12 1 1		주거용	400	2	-	182	127	12	4	-	11	-
당하는 경험 등에		상업업무용	163	-	-	7	38	8	34	-	53	5
당하는 경험 등에		주상복합용	130	-	-	55	32	11	4	-	12	1
담 240 23 4 1 1 1	부산광역시		64	-	-	1	2	-	_	-	-	1
임야 252 7 2	기장군	전	530	-	-	105	9	1	-	-	1	-
[부수토지] 12 1		답	240	-	-	23	4	1	1	-	-	-
공용자 7		임야	252	-	-	7	2	-	-	-	-	-
함계 14,049 29 4 2,024 3,692 1,253 946 1,059 512 621 주거용 5,528 29 4 1,217 2,278 805 485 192 145 74 상업업무용 2,931 179 532 186 225 791 299 515 주상복합용 1,910 550 799 254 112 74 58 32 32 328 584 5 56 6 107 1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특수토지	12	-	-	-	-	1	-	-	-	-
자기용 5,528 29 4 1,217 2,278 805 485 192 145 74 상업업무용 2,931 179 532 186 225 791 299 515 주상복합용 1,910 550 799 254 112 74 58 32 32 328 584 5 56 6 107 1 3 - 3 - 3 - 4 56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3 - 3 -		공공용지	7	-	-	-	-	-	_	-	-	-
대구광역시 HT구광역시 장업업무용 2,931 179 532 186 225 791 299 515 주상복합용 1,910 550 799 254 112 74 58 32 공업용 584 5 56 6 107 1 3 - 전 1,596 56 15 2 13 - 3 - 답 746 13 6 - 1 임아 715 3 5 - 3 특수토지 17 1 3 공공용지 22 - 1 1 1 3 장광용지 22 - 1 1 1 1 - 합계 1,417 17 219 270 131 677 - 101 자구용식 중구 성복합용 192 3 65 54 22 42 - 6		합계	14,049	29	4	2,024	3,692	1,253	946	1,059	512	621
대구광역시		주거용	5,528	29	4	1,217	2,278	805	485	192	145	74
대구광역시 공업용 584 5 56 6 107 1 3 - 전 1,596 56 15 2 13 - 3 - 단 746 13 6 - 1		상업업무용	2,931	-	-	179	532	186	225	791	299	515
전 1,596 56 15 2 13 - 3 - 답 746 13 6 - 1		주상복합용	1,910	-	-	550	799	254	112	74	58	32
전 1,596 56 15 2 13 - 3 - 답 746 13 6 - 1		공업용	584	-	-	5	56	6	107	1	3	-
임야 715 3 5 - 3	내구광역시	전	1,596	-	-	56	15	2	13	-	3	-
임야 715 3 5 - 3		답	746	-	-	13	6	-	1	-	-	-
공용지 22 1 1 1 1 1 - 1 1 - 1 1 1 1 1		임야	715	-	-	3	5	-	3	-	-	-
합계 1,417 17 219 270 131 677 - 101 주거용 461 7 104 176 76 87 - 11 상업업무용 762 7 50 40 33 548 - 84 주상복합용 192 - 3 65 54 22 42 - 6		특수토지	17	-	-	-	-	-	-	1	3	-
대구광역시 중구 수상복합용 192 3 65 54 22 42 - 6		공공용지	22	-	-	1	1	-	-	-	1	-
대구광역시 중구 상업업무용 762 7 50 40 33 548 - 84 주상복합용 192 3 65 54 22 42 - 6		합계	1,417	-	-	17	219	270	131	677	-	101
중구 장입업무용 762 7 50 40 33 548 - 84 주상복합용 192 3 65 54 22 42 - 6		주거용	461	-		7	104	176	76	87	-	11
주상복합용 192 3 65 54 22 42 - 6		상업업무용	762	-	-	7	50	40	33	548	-	84
공공용지 2	ਰਿੱਧ	주상복합용	192	-	-	3	65	54	22	42	-	6
		공공용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	1		-	19	-	-10	_		-	- 112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	-	_	1	-	_	_	_	-	_	-	_
			1	-		-	-						-	
-	-	-	-	-	-	1	-	-	-	-	-	-	-	-
_	_	-	-	_	_	15	_	_	-	_	_	_	-	-
_	_	-	3	_	-	16	-	-	-	-	-		-	-
-	-	-	-	-	-	4	-	-	-	-	-	-	-	-
_	-	-	1	_	-	-	-	-	-	-	-	-	-	-
_	_	-	_	_	-	_	-	-	_	-	_	-	-	-
-	_	-	2	_	-	-	-	-	_	-	_	-	-	-
_	_	-	-	_	_	1	_	-	-	_	_	_	-	-
-	-	-	-	-	-	11	-	-	-	-	-	-	-	-
_	_	-	-	-	_	-	-	-	-	-	_	_	-	-
-	-	27	166	-	-	58	-	-	-	-	-		-	-
_	-	-	5	-	-	3	-	-	-	-	-	-	-	-
-	-	2	34	-	-	1	-	-	-	-	-		-	-
_	-	2	6	_	-	_	-	_	-	-	_	-	-	_
-	-	23	121	-	-	-	-	-	-	-	-	-	-	-
-	-	-	-	-	-	20	-	-	-	-	_	-	-	-
_	_	-	_	_	-	31	_	-	-	_	_	-	-	-
	_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47	4	123	3	392	472	-	-	-	_	-	-	-
-	-	1	-	8	-	38	15	-	-	-	-	-	-	_
-	-	-	-	1	-	14	3	-	-	-	-	-	-	-
-	-	-	-	-	-	8	7	-	-	-	-	-	-	-
-	-	41	4	-	-	11	4	-	-	-	-	-	-	-
-	-	2	-	31	1	139	241	-	-	-	-	-	-	-
-	-	2	-	15	2	103	89	-	-	-	-	-	-	-
-	-	1	-	67	-	67	108	-	-	-	-	-	-	-
_	_	-	_	1	-	8	2	_	_	_	_	_	-	_
_	_	-	_	-	-	4	3	_	_	_	-	-	-	-
29	-	348	158	130	144	1,305	1,661	-	-	_	_	-	26	108
_	_	13	15	13	3	174	74	_	_	_	_	_	-	7
29	_	31	52	1	6	64	5	_	_	_	_	_	_	16
-	_	7	11	-	1	8	4	_	_	_	-	_	_	-
_	_	268	74	_	3	60	1	_	_	_	_	_	_	_
_	_	12	3	58	15	544	828	_	_	_	_	_	4	43
_	_	12	2	4	115	259	333	_	-	-	-	_	1	-
_	_	4	_	54	1	177	407	_	_	_	_	_	21	40
_	_	-	1	-	_	8	2	_	_	_	_	_	-	2
_	_	1	_	_	_	11	7	_	_	_	_	_	_	_
_	-	-	-	-	-	2	-	-	-	-	-	-	-	-
_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	_	_	_	2	-	_	-	_	_	_	-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626	11	1	286	429	404	303	197	76	86
	주거용	1,215	11	1	213	308	282	224	72	31	10
	상업업무용	410	-	-	13	51	45	36	109	34	71
	주상복합용	269	-	-	57	70	76	29	15	11	5
대구광역시	공업용	35	-	-	-	_	1	14	-	-	-
동구	전	481	_	_	3	_	_	_	_	_	_
	 답	71	_	_	_	_	_	_	_	_	-
	임야	136	_	_	_	_	_	_	_	_	-
	특수토지	5	_	_	_	_	-	_	1	-	-
	공공용지	4	_	_	_	_	_	_	_	_	-
	합계	1,262	_	_	25	680	118	79	_	72	125
		734	_	_	20	506	88	53	_	19	27
	상업업무용	249	_	_	2	69	10	13	_	41	96
	주상복합용	153	_	_	2	102	18	13	_	9	2
대구광역시	공업용	70	_	_	1	1	2	-	_	2	_
서구	<u> </u>	27	_	_	_	1	_	_	_	_	_
	답	1	_	_	_	_	_	_	_	_	_
	임야	20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1	-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7	_	_	_	1	_	_	_	_	_
	<u> </u>	1,000	_	_	196	525	59	8	_	70	126
	주거용	571	-	_	136	332	44	1	_	41	14
	상업업무용	177	_	_	13	36	1	7	_	18	101
대구광역시	주상복합용	238	-	_	46	157	14	_	_	10	11
남구	전	2	_	_	1	-	-	_	_	-	-
	임야	11	-	_	_	_	_	_	_	_	_
	투수토지	1	_	_	_		_	_	_	1	_
	합계	1,807	15	1	281	535	155	181	92	77	36
	주거용	672	15	1	136	301	83	64	13	21	2
	상업업무용	392	-		21	103	28	52	68	47	34
	주상복합용	331	_	_	121	118	40	29	10	7	-
대구광역시	공업용	159	_	_	1	12	2	35	1	_	_
	<u> </u>	144	_	_	2	1	2	1	_	2	
북구		28	_	_	_		_	_	_		
	답 임야	79	_	_	_		_	_	_	_	
	음수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공공용지		_	_	_		_	_	_	_	_
	<u> </u>	1 510		_	521	370	137				
		1,516						25	30	59	87
	주거용	660	_	_	327	204	75	3	7	10	10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316 285	_	_	64	68	22 40	12 4	20 3	41 8	70 7
대구광역시	공업용	6	_	_	127	95	- 40	6	-	-	-
		159	_	_	3	1	_	0		_	_
수성구	<u>전</u> 답	2	_	_	_		_	_	_	_	_
		86	_	_	_		_	_	_	_	_
	임야 특수토지	1	_	_	_	2	_	_	_	_	_
	공공용지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합계 주거용	1,483 583	-	_	370 191	554 301	94	56 12	63 13	96 17	48
	상업업무용	413	_			94		39		69	47
	주상복합용	325	_	_	46 133	159	38 12	5	46	10	1
대구광역시	공업용	325 80	_	_	-	-	1	5	4	-	_
			_		_	_	-	_	_	_	_
달서구	<u>전</u> 답	34 9	_	_	_		_	_	_	_	_
	<u>답</u> 임야	36	_	_	_	_	_	_	_	_	_
	음아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558 4	ı					_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8	_	21	4	73	10	232	399	-	_		-	_	-	86
_	_	1	_	10	-	32	17	_	_	_	_	_	_	3
8	_	3	_	1	_	22	3	_	_	_	_	_	_	14
_	_	2	1	-	_	3	_	_	_	_	_	_	_	-
_	_	15	3	_	1	_	1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40	3 6	156	242 55	_	_		_	_	_	37
					-	7								
_	_	_	_	19	_	10	77 2	_	_		_	_	_	30
_	_	_	_	_	_		2	_	_		_	_	_	2
				_		2			_		_	_	_	_
		59	40		_	54	10		_		_		_	
_	-	4	9			8		-		_		-		-
_	-	5	12	_	-	1	_	-	_	-	_	-	-	-
_	-	1	6	_	-	-	_	-	_	_	_	-	-	-
_	-	48	13	_	_	3	-	-	_	_	_	-	-	-
_	-	1	_	-	-	22	3	-	-	-	-	-	-	-
-	-	-	-	-	-	1	_	-	-	-	-	-	-	-
-	-	-	-	-	-	13	7	-	-	_	-	-	-	-
-	-	-	-	-	-	-	_	-	-	-	-	-	-	-
_	-	-	-	-	-	6	_	-	-	-	-	-	-	-
_	_	-	-	-	-	16	-	_	-	_	-	-	-	-
_	-	-	-	-	-	3	-	-	-	-	-	-	-	-
-	-	-	-	_	-	1	-	-	-	ı	-	-	-	-
-	-	-	-	-	-	-	-	-	-	-	-	-	-	-
-	_	_	-	_	-	1	_	_	-	-	-	_	_	-
-	-	-	-	-	-	11	-	-	-	-	-	-	-	-
-	_	_	-	_	-	-	-	-	-	_	-	-	-	-
19	-	84	55	1	1	84	190	-	-	-	-	-	-	-
-	-	8	4	-	-	13	11	-	-	-	-	-	-	-
19	-	8	7	-	-	4	1	-	-	-	-	-	-	-
-	-	3	3	-	-	-	-	-	-	-	-	-	-	-
-	_	61	35	-	-	12	-	_	-	-	-	-	-	-
_	_	4	3	-	-	38	91	_	-	-	-	-	-	-
_	_	-	2	-	-	4	22	_	_	_	_	-	-	-
_	_	-	-	1	1	13	64	_	-	_	-	_	-	-
-	-	_	1	-	-	-	_	-	-	-	-	-	-	-
-	-	_	_	_	-	_	1	-	_	_	-	-	-	-
1	-	-	-	-	6	66	214	-	_	_	_	_	-	-
-	_	_	-	_	1	9	14	-	_	_	_	_	-	-
1	-	-	_	_	3	14	1	-	_	_	_	_	_	-
_	_	-	-	-	-	-	1	_	_	_	_	_	-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
_	_	_	_	_	2	23	130	_	_	_	_	_	_	_
_	_	_	_	_	_	-	2	_	_	_	_	_	_	_
_	_	_	_	_	_	19	65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_	_	_	_	_	_	-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83	29	1	_	45	44	_	_	_	_	_	-	_
_	_	-	-	1	_	5	-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14	17	_	_	3	_	_	_		_	_	_	_
_	-	68	11	-	-	-	-	-	-	-	-	-	-	-
-	-	_	_	-	_	13	21	-	_	_	_	-	-	-
-	_	_	_	_	-	3	6	_	_	_	_	-	-	-
-	-	-	-	-	-	19	17	-	-	-	_	-	-	-
-	-	-	-	-	-	2	-	-	-	-	-	-	-	-
-	-	1	-	_	-	_	_	-	_	_	_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938	3	2	328	380	16	163	-	62	12
	주거용	632	3	2	187	222	14	52	-	6	-
	상업업무용	212	-	-	13	61	2	33	-	49	12
	주상복합용	117	-	-	61	33	-	10	-	3	-
대구광역시	공업용	234	-	-	3	43	-	52	-	1	-
달성군	전	749	-	-	47	12	-	12	-	1	-
	답	635	-	-	13	6	-	1	-	-	-
	임야	347	-	-	3	3	-	3	-	-	-
	특수토지	6	ı	-	-	ı	-	-	-	1	-
	공공용지	6	-	-	1	-	-	-	-	1	-
	합계	12,893	71	76	838	2,850	560	909	36	1,680	18
	주거용	4,207	71	75	417	1,500	375	399	-	370	-
	상업업무 용	2,556		-	79	658	80	313	34	1,080	17
	주상복합용	1,605	-	-	314	674	99	176	1	221	1
인천광역시	공업용	495	-	-	8	9	1	6	-	1	-
1207/1	전	1,664	-	1	14	4	2	10	-	3	-
	답	1,102	-	-	2	3	2	1	-	2	-
	임야	1,191	-	-	3	1	-	-	-	-	-
	특수토지	30	-	-	-	-	-	1	1	-	-
	공공용지	43	-	-	1	1	1	3	-	3	-
	합계	1,536	28	73	112	154	17	21	13	463	-
	주거용	436	28	73	29	101	14	8	-	92	-
	상업업무용	446	-	-	15	21	3	7	13	308	-
	주상복합용	206	-	-	68	31	-	5	-	62	-
인천광역시	공업용	46	-	-	-	1	-	-	-	1	-
중구	전	187	-	-	-	-	-	-	-	-	-
	답	81	-	-	-	-	-	-	-	-	-
	임야	114	-	-	-	-	-	-	-	-	-
	특수토지	14	-	-	-	-	-	-	-	-	-
	공공용지	6		-	-	-	-	1	-	-	-
	합계	565	-	-	-	135	200	47	2	136	-
61-1-164	주거용	300	-	-	-	83	138	29	-	44	-
인천광역시	상업업무용	117		-	-	20	18	2	2	67	-
동구	주상복합용	121	-	-	-	32	44	16	-	25	-
	공업용	26	-	-	-	-	-	-	-	-	-
	임야	1	-	-	-	-	-	-	-	-	-
	합계	1,709	-	-	68	762	84	310	1	405	1
	주거용	840	_	-	42	419	55	197	-	116	-
	상업업무용	459	_	-	3	161	10	55	-	226	1
인천광역시	주상복합용	343	_	-	23	180	18	56	_	63	-
미추홀구	공업용	34	_	-	_	2	-	1	-	-	-
	전	10	-	-	_	-	-	-	-	-	-
	임야	16	-	-	-	_	-	-	-	-	-
	특수토지	1	-	-	-	-	-	-	1	-	-
	공공용지	6	_	_	-	-	1	1	-	-	- 40
	합계	476	_	-	62	186	28	62	16	29	13
	주거용	162	-	-	43	78	22	11	-	-	-
	상업업무용	128	_	-	8	19	4	36	15	26	12
인천광역시	주상복합용 고어요	115		-	11	89	2	9	1	1	1
연수구	공업용	10	_	-	-	-	_	5	_	-	-
	전	24	_	-	_	_	_	1 –	-	-	-
	임야	22	-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공공용지	11	_	_	_	_	_	_	_	2	_

THE COS BES BES BES BES BES BES BES BES BES BE	OAL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제	ובוק	Həl	생관	וקוב	누리	자보
- - 2 2 2 104 32 - - - - - - 4 1 1 16 - 3 19 - - - - - - - 2 2 104 32 - - - - - - - - -	유상								미정	관리	보관		계관	농림	-
1													_		
									-						
	-	_							-	-	-	-	_		
	-	-	7	-	18	10	291	341	-	-	-	-	-	4	6
- - - - - - - - 5 - -	-	-	12	-	1	109	244	248	-	-	-	-	-	1	-
- - - - - - - 1 3 - - - - - - - - -	_	-	4	-	34	-	92	177	_	-	_	-	_	21	10
12	_	_	-	_	_	-	5	-	_	-	-	-	-	-	-
- 11	-	-	-	-	-	-	1	3	-	-	-	_	-	-	-
10	12	2	247	241	149	105	950	541	3	1	489	231	2,094	789	1
	-	-	11	36	8	13	175	27	-	-	75	32	589	34	-
2 1 215 133 1 5 94 2 1 1 2 - 10 3 - - - - 5 21 20 292 308 1 - 130 74 699 80 - - - - 42 93 81 1 - 35 65 298 477 - - - - 1 110 - 127 98 - - 244 57 357 192 1 -	10	-	15	52	4	17	91	11	-	-	2	2	90	1	-
2 1 215 133 1 5 94 2 1 1 2 - 10 3 - - - - 5 21 20 292 308 1 - 130 74 699 80 - - - - 42 93 81 1 - 35 65 298 477 - - - - 1 110 - 127 98 - - 2444 57 357 192 1 - - - 1 5 - 19 9 -	-	-	6	13	-	8	38	3	-	-	1	-	48	2	-
	2	1	215		1				1	1	2	_	10		_
												74			_
1 1 110 - 127 98 244 57 357 192 1 - 1 1 1 5 - 19 9 1 3															
- 1															
1 5 - 19 9															
8 43 80 48 476															
4 6 81		-													
7 3 11 58															
8 35 1 1															
7 9 171															
65															
	-	_		-					-	-	-		-	-	-
1 1 1 - 3	-	-	-	-		-		-	-	-	-	-	-	-	-
31 12 2	-	-	-	-	-	-		-	-	-	-	-	-	-	-
4 1 1	-	-	-	1	1	-	3	-	-	-	-	-	-	-	-
4 4 4	-	-	31	12	-	-	2	-	-	-	-	-	-	-	-
- 4 -	_	-	4	1	-	-	1	-	_	-	_	-	-	-	-
- 19 7 -	-	_	4	4	_	_	_	_	-	-	_	_	-	_	-
- - - - 1 -	-	-	4	-	-	-	_	_	-	-	-	-	-	-	-
- - 27 12 13 - 24 2 - <td>-</td> <td>-</td> <td>19</td> <td>7</td> <td>-</td> <td>-</td> <td>_</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19	7	-	-	_	-	-	-	-	-	-	-	-
- - 5 1 1 - 4 -	-	-	-	-	-	-	1	-	-	-	-	-	-	-	-
- - 5 1 1 - 4 -	-	-	27	12	13	-	24	2	-	-	-	-	-	-	-
- - 1 2 -	-	-	5			-	4		-	-	-	-	-	-	-
- - 2 -	-	-	1	2	-	-	-	-	-	-	-	-	-	-	-
- - 19 9 - - 3 -	-	_			-	-	1	_	-	-	-	-	-	-	-
- - - 5 -	-	-		9	-	_		_	-	-	-	-	-	-	_
- -	_	-			5	_		_	_	-	_	_	-	_	_
	_	_	_	-		_		_	_	-	_	_	_	_	_
- - - - 2 2 -															
4 28 - 34 14															
3 - 4 1															
7 1															
- -															
- - <td></td>															
- - - - 6 12 - - - - - - - - - - 17 - 5 - - - - - - - - - - - - - - - - -															
17 - 5															
- - - 3 - 6 - - - - - - -	_			_				_	_	_		_	_	_	_
	-	_	_	-	3	_	6	_	_	-	-	-	_	-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245	11	1	120	500	42	176	-	101	-
	주거용	417	11	1	62	240	30	48	-	7	-
	상업업무용	345	-	-	10	147	6	80	-	89	-
이란진에서	주상복합용	218	-	-	46	113	6	47	-	4	-
인천광역시	공업용	77	-	-	1	-	-	-	-	-	-
남동구	전	150	-	-	1	-	-	1	-	1	-
	 답	6	-	-	_	-	_	_	_	_	
	임야	26	-	-	-	-	_	_	-	-	-
	공공용지	6	-	-	_	-	_	-	_	_	-
	합계	1,312	_	-	45	483	102	174	_	358	-
	주거용	541	-	-	23	252	60	93	-	93	-
	상업업무용	434	-	-	1	122	17	47	-	217	-
01-1710411	주상복합용	241	-	-	21	106	24	34	_	48	
인천광역시	공업용	57	-	_	_	2	1	_	_	_	
부평구	전	7	-	-	-	-	-	-	-	-	
	답	5	-	-	-	-	-	-	-	-	-
	임야	19	-	-	-	_	-	_	-	-	-
	공공용지	8	-	-	-	1	-	-	-	_	-
	합계	720	-	-	72	232	42	53	-	42	-
	주거용	215	-	_	41	106	25	11	_	3	_
	상업업무용	156	_	_	7	62	11	32	_	32	_
	주상복합용	90	_	_	15	61	2	4	_	4	_
인천광역시	공업용	34	_	_	7	2	-	_	_	_	_
계양구	<u> </u>	122	_	_	1	1	2	5	_	1	-
	답	62	_	_	_	_	2	1	_	2	_
	임야	39	_	_	1	_	_	_	_	_	-
	투수토지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_	_
	합계	1,405	32	2	303	335	45	62	4	95	4
	주거용	432	32	1	142	178	31	2	_	8	_
	상업업무용	304	-	_	30	92	11	51	4	79	4
	주상복합용	203	_	_	128	57	3	5	_	6	_
인천광역시	공업용	198	_	_	-	2	_	_	_	_	_
서구	<u> </u>	123	_	1	2	2	_	3	_	1	_
711	답	56	_	_	_	3	_	_	_	_	_
	임야	80	_	_	_	1	_	_	_	_	_
	투수토지	3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6	_	_	1	_	_	1	_	1	_
	<u> </u>	2,841	_	_	55	63	_	4	_	51	_
	<u>합계</u> 주거용	662	_	_	34	43	_	-	_	7	_
	상업업무용	135	_	_	5	14	_	3	_	36	
	주상복합용	40	_	_	2	5	_	_	_	8	_
인천광역시	공업용	13	_	_	_	-	_	_	_	-	
강화군	<u> </u>	721	_	_	10	1	_	_	_	_	_
	<u>신</u> 답	689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임야 특수토지	577 4	_	_	2	_	_	1	_	_	_
	학기 합계		_	_	1	_	_	_	_	_	_
		1,084									
	주거용 사업업무요	202	_	_	1 –	_	_	_	_	_	-
이처고나여시	상업업무용	32	-								-
인천광역시	주상복합용	28	_	-	-	-	-	-	-	-	-
옹진군	전	320	-	-	-	-	-	-	-	-	-
	답	203	-	-	-	-	-	_	-	-	-
	임야	297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1	48	37	2	_	17	189	-	_	_	-	_	-	_
_	_	1	4	_	_	4	9	_	_	_	_	_	_	_
_	_	1	6	_	_	1	5	_	_	_	_	_	_	_
_	_	_	1	_	_		1	_	_	_	_	_	_	_
	1	46	23	_	_	6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3	_	_	2	142	_	_	_	_	_	_	_
						1	5							
_	-	-		2	_	-	24	_	_	-	_	_	_	-
_	-	-			-	3	3	-	-	-	-	-	-	-
_	_	22	64	2	9	29	24	_	_	_	_	-	_	_
_			15			5						-		
_	_	4	19	-	1	4	2	-	-	-	_	_	-	_
	-	-	8	-	-	-	-	-	-	-	_	_	_	-
_	-	18	22	-	1	13		-	-	-	_	_	-	-
	-	-	-	-	2	-	5	-	-	_	_	-	_	-
_	-	-	_	-	5	-	-	-	-	-	-	-	-	-
-	-	-	-	2	-	4	13	-	-	-	_	-	-	-
_	-	-	_	-	-	3	4	-	-	-	_	-	-	-
_	-	2	31	6	-	40	200	-	-	-	_	-	-	-
_	-	-	8	-	-	7	14	-	-	-	-	-	-	-
_	-	-	6	-	-	4	2	-	-	-	_	-	-	-
_	-	-	3	-	-	-	1	-	-	_	-	-	-	-
-	_	2	14	-	-	9	-	-	_	_	-	_	_	-
-	_	-	ı	1	_	13	98	-	-	_	-	-	-	-
-	-	-	ı	-	-	3	54	-	-	_	ı	-	-	-
-	-	-	_	5	-	3	30	-	-	_	-	-	-	-
-	-	-	-	-	-	1	1	-	-	_	-	_	-	-
12	-	106	30	18	13	183	112	-	1	10	2	4	32	-
-	-	1	4	-	1	27	3	-	-	1	-	-	1	-
10	-	5	6	1	1	9	1	-	-	-	-	-	-	-
-	-	-	1	-	-	2	1	-	-	-	-	-	-	-
2	-	100	19	1	4	61	2	-	1	1	-	2	3	-
-	-	-	-	3	1	48	51	-	-	2	1	1	7	-
-	-	-	-	-	6	9	22	-	-	1	-	-	15	-
-	-	-	_	12	-	23	31	-	-	5	1	1	6	-
-	-	-	-	-	-	2	1	-	-	-	-	-	-	-
-	-	-	_	1	-	2	-	-	-	-	-	-	-	-
-	-	3	8	-	35	145	-	1	-	291	151	1,354	680	-
-	-	_	3	-	6	42	-	_	-	65	27	403	32	-
-	-	-	2	_	4	8	-	-	_	2	2	58	1	-
-	-	-	_	-	1	1	-	-	-	1	_	20	2	-
-	-	3	_	-	-	_	-	1	-	1	-	8	_	-
_	-	_	2	-	8	47	-	-	-	86	49	453	65	-
_	-	_	_	-	16	14	-	_	-	24	46	180	407	_
_	-	_	1	_	-	33	-	_	_	112	27	229	173	_
_	_	_		_	_	-	_	_	_	-	_	3	-	_
_	1	_		_	_	_	_	2	_	188	78	736	77	1
_	-	_	_	_	_	_	_	_	_	9	5	186	1	-
_	_	_	_	_	-	_	_	_	_	-	-	32	_	_
_	_	_	_	_	-	_	_	_	_	_	_	28	_	-
_	_	_	_	_	_	_	_	1	_	42	24	245	8	_
_	_	_	_	_	_	_	_	1	_	10	19	118	55	_
	_	_	_	_	_	_	_	_	_	127	29	127		
_		_	_	_	_	_	_	_	_	127		127	13	1 -
	1										_ '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9,405	12	6	1,691	2,516	413	707	378	647	80
	주거용	3,496	11	6	1,346	1,305	214	228	56	129	16
	상업업무용	1,800	_	_	42	404	116	348	286	423	54
	주상복합용	1,400	_	_	245	790	79	130	36	93	10
	공업용	224	_	_	5	9	3	-	_	_	_
광주광역시	전	743	1	_	38	2	1	_	_	1	_
	답	1,162	_	_	14	5	_	1	_	_	
	임야	567	_	_	1	1	_	_	_	_	
	투수토지	7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6	_	_	_	_	_	_	_		_
	합계	1,474	_	_	173	411	56	165	265	117	20
	주거용	607	_	_	145	260	38		33	34	8
				_				65			
고나자고나에 시	상업업무용	442	_	_	6	62	5	68	208	70	7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용	200			21	88	13	32	24	13	5
동구	공업용	2	_	-	-	-	-	_	-	-	_
	전	106	-	-	1	-	-	-	_	-	_
	답	21	_	_	-	-	-	_	-	-	_
	임야	96	_	-	-	1	-	-	-	-	-
	합계	1,258	_	_	205	390	116	113	19	122	3
	주거용	470	-	-	153	183	65	26	-	18	-
	상업업무용	302	-	-	8	53	36	69	19	82	3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용	250	-	-	41	154	15	18	-	21	-
서구	공업용	31	-	-	-	-	-	-	-	-	-
711	전	66	-	-	2	-	-	-	-	-	-
	답	100	-	-	1	_	_	-	-	-	-
	임야	38	-	-	-	-	-	-	-	-	-
	특수토지	1	_	-	-	-	-	-	-	1	-
	합계	1,379	4	-	315	427	82	124	-	55	4
	주거용	599	4	-	262	234	39	35	-	14	-
	상업업무용	203	-	_	3	61	26	66	_	36	4
	주상복합용	230	-	-	50	132	17	23	-	5	-
광주광역시	공업용	16	-	_	-	-	-	-	-	-	-
남구	전	104	-	_	-	-	-	-	_	-	-
	답	148	-	-	-	-	-	-	-	-	-
	임야	75	-	-	-	-	-	-	-	-	-
	특수토지	1	-	-	_	-	-	-	_	-	-
	공공용지	3	-	-	-	-	-	-	-	-	-
	합계	2,514	_	3	471	756	75	229	72	216	45
	주거용	962	-	3	368	377	36	82	23	46	6
	상업업무용	531	-	-	15	167	24	102	37	135	36
	주상복합용	399	-	-	82	204	13	44	12	34	3
광주광역시	공업용	44	-	-	1	2	1	-	-	-	-
북구	전	171	-	-	4	2	1	-	-	1	-
	답	274	-	-	1	4	-	1	-	-	-
	임야	129	-	-	-	_	-	-	-	-	-
	특수토지	1	-	-	-	-	-	-	-	-	-
	공공용지	3	-	-	-	-	-	-	-	-	-
	합계	2,780	8	3	527	532	84	76	22	137	8
	주거용	858	7	3	418	251	36	20	-	17	2
	상업업무용	322	-	-	10	61	25	43	22	100	4
교조관여보	주상복합용	321	-	-	51	212	21	13	-	20	2
광주광역시	공업용	131	-	-	4	7	2	-	-	-	-
광산구	전	296	1	-	31	-	-	-	-	-	-
	답	619	_	_	12	1	_	_	_	-	_
	임야	229	_	_	1	_	_	_	_	-	-
	특수토지	4	-	_	-	-	-	-	_	-	-
L					1		L	l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πο	- -							-	-					- -
		102	83	100	256	602	1,643	_		31	51	76	11	
			18	7	6	97	32		_	1	2	22		-
_	-	3	22	1	27	67	6	_	-	_	_	1	-	-
	-	-	2	-	1	11	3	-	-	-	-	-	-	-
	_	99	26	-	44	30	1	-	-	1	2	4	-	-
-	-	-	7	28	18	185	427	-	-	11	3	21	-	-
-	-	-	3	3	160	106	803	-	_	1	44	22	-	-
-	_	-	5	61	-	100	365	-	-	17	-	6	11	-
-	_	-	-	_	-	3	3	_	_	-	_	-	-	-
-	_	_	-	-	-	3	3	_	-	-	-	-	-	_
-	-	-	2	46	-	64	155	-	-	-	-	-	-	-
_	-	-	-	3	-	16	5	-	-	_	-	_	-	-
_	_	_	1	1	-	13	1	_	_	_	_	-	-	_
_	-	-	_	_	-	4	_	_	-	_	-	-	-	-
_	_	_	1	_	_	1	_	_	_	_	_	_	_	_
	_	_	_	12	_	18	75	_	_	_	_	_	_	_
	_	_	_	2	_	3	16	_	_	_	_	_	_	_
	_	_	_	28	_	9	58	_	_	_	_	_	_	_
-	-	1	16	5	82	111	75	-	-	-	-	-	-	-
	_	_	-	_	3	17	5	-	_	_	_	-	-	_
-	-	-	7	-	11	14	-	-	-	-	-	-	-	-
	-	-	-	-	-	-	1	-	-	-	-	-	-	-
_	-	1	8	-	17	5	-	-	-	-	-	_	-	-
-	-	-	-	1	8	39	16	-	-	-	-	-	-	-
_	-	-	-	-	43	16	40	-	-	-	-	-	-	-
-	_	-	1	4	-	20	13	-	-	_	-	-	-	-
-	-	-	-	_	-	_	-	-	-	-	_	-	-	-
-	-	12	5	32	1	51	267	-	-	-	-	-	-	-
-	-	-	-	3	-	7	1	-	-	-	-	-	-	-
-	-	-	-	-	-	7	-	-	-	-	-	-	-	-
_	_	_	2	-	-	1	_	-	-	_	-	_	_	-
_	_	12	3	-	-	1	_	_	_	_	-	_	-	_
_	_	_	_	10	_	19	75	_	_	_	_	_	_	_
	_	_	_	-	1	8	139	_	_	_	_	_	_	_
_	_	_	_	19	<u> </u>	7	49	_	_	_	_	_	_	_
_	_	_	_	-	_	1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0	5	17	65	171	369							
	-	-	-	1	-	15	5	-	_	_	_	-	-	-
	-	-	-	_	5	8	2	_	-	-	-	-	-	-
	-	-	-	_	-	5	2	_	_	_	_	-	-	-
	-	20	3	-	10	7	-	-	-	-	-	-	-	-
-	-	-	1	5	-	52	105	-	-	-	-	-	-	-
_	-	-	-	1	50	37	180	-	-	-	-	-	-	-
-	-	-	1	10	-	43	75	-	-	-	-	-	-	-
-	-	-	_	-	-	1	-	-	-	-	-	-	-	-
-	-	-	-	-	-	3	-	-	-	-	-	-	-	-
-	-	69	55	-	108	205	777	-	-	31	51	76	11	-
-	-	-	18	-	3	42	16	-	-	1	2	22	-	-
_	_	3	14	_	11	25	3	_	_	_	_	1	-	_
_	-	-	-	_	1	1	-	_	_	_	_	-	_	_
_	_	66	11	_	17	16	1	_	_	1	2	4	_	_
	_	-	6	_	10	57	156	_	_	11	3	21	_	_
	_	_	3	_	66	42	428	_	_	1	44	22	_	_
	_	_	3	_	-	21	170	_	_	17	- 44	6		_
	_	_	-	_	_			_	_	-	_	-	11	_
	_	_	_	_		1	3	_	_	_	_		_	_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등구 등도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37 47 11 2 10 43 11 2 11
대전광역시 FT 전공역시 FT 전공역시 FT 전 1,109 FT 391 FT 392 FT 393 FT 394 FT 395 FT 395	10 43 11 2 11 4 27 10 2 1 21 9 2
자전광역시 - 전상복합용 1,282 142 796 183 40 - 8 8 208 172 23 2 23 2 25 2 1 25 2 1 1 - 25 2 1 1 1 - 25 2 1 1 1 - 25 2 1 1 1 - 25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1 2 1 - - - - - - - 27 10 2 1 21 9 2 - - - - - - - - - - - - - 2 -
대전광역시	1
대전공역시 전 1,109 16 15 2 1 16 15 2 1 17 1 1 1 1 1 1 1 1 1 1 1 1	
전 1,109 16 15 2 1 - 1 - 16 15 2 1 - 1 - 15 391 1	
임야 443 3 2	
특수토지 9	4
장공용지 6 1 1	
합계 1,855 142 522 259 24 - 2 주거용 665 113 289 142 3 - 2 장업업무용 412 2 85 64 18 - 2 주상복합용 227 22 139 52 3 -	27 10 2 1 21 9 2 2
자권용 665 1113 289 142 3 - 2 상업업무용 412 2 85 64 18 - 2 주상복합용 227 22 139 52 3 - 2 전 357 5 2 2 2 139 52 3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 2 2 139 52 3 1	2 1 21 9 2 2
대전광역시 동구 성업업무용 412 2 85 64 18 - 2 7	21 9 22 - 2 -
대전광역시 동구 전 357 22 139 52 3 23 357 7 1	2 - 2 -
대전광역시 동구 전 357 5 2	2
동구 전 357 5 2	 2 -
답 52	 2 -
임야 117	 2 -
특수토지 3	2 –
공공용지 1 3	
합계 1,592 151 586 242 28 - 3 주거용 640 124 347 96 5 - 3 상업업무용 498 4 119 97 17 - 2 주상복합용 238 16 114 49 6 - 5 조건 238 1 16 114 49 6 - 5 조건 139 1 1	- -
자전광역시 주거용 640 124 347 96 5 - 3 상업업무용 498 4 119 97 17 - 2 주상복합용 238 16 114 49 6 - 5 조건용 7 1	22 10
대전광역시 중구 성업업무용 498 4 119 97 17 - 2 전 주상복합용 238 16 114 49 6 - 5 전 139 5 5 1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50 9
중구 전 139 5 5	
답 22	
임야 45 2	
특수토지 2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합계 1,549 2 - 124 559 219 68 34 2 주거용 530 2 - 84 227 109 5 - 상업업무용 289 - - - 105 53 54 34 2 주상복합용 332 - - 38 224 56 9 -	
공공 지 1	1 –
자 구가용 530 2 - 84 227 109 5 - 500 2 - 105 53 54 34 22 전체관역시 주상복합용 332 - 38 224 56 9 -	
상업업무용 289 105 53 54 34 2 38 224 56 9 -	27 6
대저관역시 주상복합용 332 38 224 56 9 -	1 –
I 대전환역시	.4 5
대신공국시 고어요 14 1	2 1
- HEB 가 기 공업용 14 1 1 1	
2 100	
답 1111	
Hel 00	
공공용지 1 1	
합계 1,519 6 - 120 387 49 63 1 S)4 7
주거용 354 6 - 49 167 14	3 –
상업업무용 235 3 26 20 43 1 7	9 7
주상복합용 316 63 193 12 19 - 1	1 -
대전광역시 공업용 31	
유성구 전 292 5 1 2 1 -	
답 170 1	1
임야 116	
특수토지 3	
공공용지 2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1	- 0	115	46	63	11	716	1,408	-	-	103	30	71	45	18
_	_	10	3	6	2	269	84	_	_	20	6	28	-	2
7	_	3	24	-	3	62	10	_	_	_	_	1	_	_
_	_	1	2	_	_	23	9	_	_	_	_	2	1	_
4	_	97	13	_	_	24	1	_	_	3	_	4	-	_
_	_	3	3	28	2	222	699	_	_	62	10	23	15	8
_	_	_	1	_	4	29	321	_	_	7	13	13	-	2
_	_	1	_	29	<u> </u>	80	281	_	_	11	1	-	29	6
_	-		_	_	_	4	1	_	_	_	<u> </u>	_	_	_
_		_	_	_	_	3	2	_	_	_	_	_	_	_
7	_	5	3	3	_	164	401	_	_	35	5	21	9	18
-	-	_	_	-	_	78	20	-	_	4	2	9	-	2
3	-	1	3	-	_	5	-	_	-	-	_	1	-	-
_	-	_	_	-	_	5	3	_	_	_	_	1	-	_
4	-	4	_	-	-	2	_	-	_	1	_	2	-	_
-	-	-	-	2	-	51	250	-	-	26	3	7	3	8
-	-	-	-	-	-	4	45	-	-	-	-	1	-	2
-	-	-	-	1	-	19	81	-	-	4	-	-	6	6
-	-	-	-	-	-	-	1	-	-	-	-	-	-	-
-	1	-	-		-	-	1	-	-	-	-	-	-	-
-	ı	-	-	26	-	75	115	-	-	17	-	6	3	-
-	ı	-	-	4	-	19	10	-	-	3	-	2	-	-
-	ı	-	-	-	_	2	-	-	-	-	-	_	-	-
-	-	-	-	-	-	_	-	-	-	_	-	_	-	-
-	-	-	-		-	3	-	-	-	2	-	1	-	-
-	-	-	_	15	-	32	69	-	-	10	-	2	1	-
-	-	-	-	-	_	4	17	-	-	-	-	1	-	-
-	-	-	-	7	-	13	19	-	-	2	-	-	2	-
-	_	_	_	-	-	1	-	-	-	-	-	-	-	-
-	-	_	_	-	-	1	-	-	-	-	-	-	-	-
-	-	7	5	10	7	105	223	-	-	51	25	44	33	-
-	-	_	_	1	1	48	18	-	_	13	4	17	-	-
-	-	_	3	-	-	11	_	-	_	_	_	-	-	-
-	-		-	-	_	-	_	_	_	_	_	1	1	-
-	-	7	2	-	-	3	-	-	-	-	-	1	-	-
-	-	-	-	1	2	22	98	-	-	26	7	14	11	-
-	-	_	_	- 0	4	9	67	_	_	7	13	11	- 21	-
_			_	8	_	-	40	_	_	5	1 –	_	21	_
						242			_	_	_			
4	-	21	29	8	4		484	_	_	_	_	_	_	_
-	-	-	1	-	1	87	26	-	-	-	-	-	-	-
4	-	-	17	-	3	25	7	-	-	-	-	-	-	-
-	-	-	1	-	-	12	5	-	-	-	-	-	-	-
_	-	21	8	-	-	2	_	_	_	_	_	_	_	_
_	_		1	4	_	84	194	_	_	_	_	_	_	_
-	-	-	1			9	159	-	-	-	-	-	-	-
-	-	-	-	4	-	20	92	-	-	-	-	-	-	-
_	1	-	-	-	-	2	-	-	-	-	-	-	-	-
, ,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092		-	49	436	99	16	-	56	14
	주거용	344	-	-	44	186	44	4	-	5	1
	상업업무용	228	-	-	1	103	41	9	-	36	13
	주상복합용	169	-	-	3	126	14	3	-	14	-
대전광역시	공업용	99	-	-	_	15	_	-	-	1	-
대덕구	전	138	_	_	1	5	_	_	_	_	_
" ' '	 답	36	-	-	_	_	-	-	-	-	-
	임야	76	_	_	_	1	_	_	-	_	-
	특수토지	1	-	-	_	-	_	-	-	-	-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9,261	27	_	547	2,457	181	520	17	784	15
	주거용	2,691	26	_	293	1,382	108	140	3	128	4
	상업업무용	1,243	_	_	17	323	22	227	6	506	7
	주상복합용	1,141	_	_	68	707	32	142	-	145	4
	공업용	315	_	_	4	3	-	1	7	1	_
울산광역시	<u> </u>	1,370	1	_	102	25	10	7	1	3	_
	<u>인</u> 답	1,385	_	_	47	11	7	2	_	1	_
	입아 임야	1,385	_	_	16	6	2	1		_	_
	음아 특수토지	1,090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13				700					
	합계	1,286	16	-	33	708	65	78	2	236	-
	주거용	630	16	-	18	460	41	48	-	36	-
울산광역시	상업업무용	261	-	-	_	82	8	10	2	157	-
중구	주상복합용	241	-	-	8	165	7	18	-	42	-
	전	82	-	-	7	-	5	2	-	1	-
	답	23	-	-	-	1	3	-	-	-	-
	임야	49	-	-	-	-	1	-	-	-	-
	합계	1,651	-	-	29	625	63	311	-	294	-
	주거용	470	-	-	11	277	39	71	-	35	-
	상업업무용	519	-	-	3	116	7	156	-	199	-
	주상복합용	410	_	_	11	232	17	84	-	60	-
울산광역시	공업용	92	-	-	-	-	-	-	-	-	-
남구	전	73	-	-	3	-	-	-	-	-	-
	답	9	_	-	-	-	-	-	-	-	-
	임야	65	-	-	1	-	-	-	-	-	-
	특수토지	1	-	-	_	_	-	-	-	-	-
	공공용지	12	-	-	-	-	-	-	-	-	-
	합계	687	-	-	29	357	14	19	-	115	-
	주거용	285	-	-	8	213	8	7	-	40	-
	상업업무용	104	-	-	-	30	-	6	-	46	-
울산광역시	주상복합용	170	-	-	14	113	6	6	-	29	-
동구	공업용	6	-	-	-	-	-	-	-	-	-
]	전	73	-	-	6	_	_	_	-	-	-
	 답	6	-	-	1	_	_	_	-	-	-
	<u></u> 임야	43	-	-	_	1	-	_	-	-	-
	합계	1,397	10	-	130	339	19	52	15	35	15
	주거용	384	10	-	74	184	11	3	3	2	4
울산광역시 북구	상업업무용	154	-	_	5	49	6	30	4	30	7
	주상복합용	146	_	_	19	90	2	17	-	3	4
	공업용	61	_	_	-	2	-	-	7	-	-
	<u> </u>	252	_	_	27	11	_	2	1	_	-
1 41	답	197	_	_	4	2	_	_	-	_	_
	임야	199	_	_	1	1	_	_	_	_	_
	투수토지				_						
	공공용지 공공용지	3	-	_	_	_	_	_	_	_	_
	_ ㅎㅎㅎ 시	1					_	_	_	_	_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2 1 - - 19 3 - - - - - - - - -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 - 655 3															
- 3 2 6 - 33 88 - - - - - - - -	_				_	_			_	_	_		_	_	_
- - - - - 3 3 33 - -															
													_		
1	_												_		_
	-														
22															
- - - - 17 19 84 7 5 22 - 2 26 - - 65 5 - 1 - 2 - 1 - 11 3 - - 27 8 -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1 - - 1 - 2 - 1 1 -															
22							-								
- - 11 3 - - 27 8 - - 1 - 2 - 1 3 - - 2 - 12 3 - - 2 - 12 3 - - 2 - 12 3 3 - - 2 - 12 3 3 - - 2 - 12 3 - - 8 23 17 219 29 -															
181															
5 11 20 14 537 423 59 71 48 24 9 9 1 22 173 544 341 411 92 33 56 5 9 - 42 1 323 334 68 23 17 219 29 1 1 111 1															
9 - 42 1 323 334 68 23 17 219 29 11 2															
1 - 1 23 121															
4 23 121	-														
22 - 74 32 - 1 140 60 - </td <td></td>															
- - - 1 21 6 -															
22 - 1 7 - - 7 1 -															
69 16 7															
- - 1 - - 51 18 -															
- - - - 2 7 -	_				-								-		-
- - 2 -				-	-				-	-	-		-	-	-
- - 1 -	-				-				-	-	-		-	-	-
- - 4 3 - - 70 76 -															
- -															
- - - 2 - - 20 -															
1 1															
- - 4 - - 1 1 -															
- -	_														
- -		_		-	-	-			-	-	-	_	_	_	
- -	_	-	-	-	-	-			-	-	-	_	-	-	-
- - 26 43 - 29 208 319 - - 38 31 28 60 - - - - 7 - 2 51 14 - - 3 3 12 1 - - - - 8 - - - - 1 -	_	_	_	-	_	-			-	-	-	_	_	_	-
- - - 7 - 2 51 14 - - 3 3 12 1 - - - - 8 - - 13 1 - - - - 1 - - - - - 1 - <td>_</td> <td></td> <td>-</td>	_														-
- - - 8 - - 13 1 -	_	-			-		208		-	-					-
- - - - - 8 2 -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				-	-					-
- - 23 23 - - 2 2 - - 1 - 1 - - - - - - 4 - 11 64 103 - - 7 9 7 6 - - - 2 - - 16 32 107 - - 7 14 3 10 - - - 1 - - - 36 88 - - 20 5 4 43 - - - - - - - - - - - - -	-	-	-	8	-	-	13		-	-				-	-
- - - - - 7 9 7 6 - - - 2 - - 16 32 107 - - 7 14 3 10 - - - 1 - - - 36 88 - - 20 5 4 43 - - - - - - - - - - - -	_	_	_	1	_	_	8	2	_	-	_	_	_	_	-
- - 2 - - 16 32 107 - - 7 14 3 10 - - - 1 - - 36 88 - - 20 5 4 43 - - - - - - - - - - - - -	_	_		23	_	_	2	2	_	_	1	_	1	_	_
- - 1 - - - 36 88 - - 20 5 4 43 - - - - - - - - - - - - -	_		_	4	_	11	64	103	_	_		9	7	6	_
1 2	_		2	_	_	16	32	107	_	_	7	14	3	10	-
	-	_	1	-	_	_	36	88	-	-	20	5	4	43	-
	-	_	-	_	_	_	1	2	-	-	_	_	_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	-	-	-	1	-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4,240	1	-	326	428	20	60	-	104	-
울산광역시	주거용	922	-	-	182	248	9	11	-	15	_
	상업업무용	205	_	-	9	46	1	25	_	74	-
	주상복합용	174	-	-	16	107	-	17	-	11	-
	공업용	156	_	_	4	1	_	1	_	1	_
울주군	<u>전</u>	890	1	_	59	14	5	3	_	2	_
	답	1,150	<u> </u>	_	42	8	4	2	_	1	_
	임야	734	_	_	14	4	1	1	_	_	
	특수토지	9	_	-	-	_	-	-	-	_	_
	합계	2,594	75	1	60	228	_	32	10	74	8
	주거용	657	52	_	35	131	_	8	-	3	_
	상업업무용	178	11	_	_	37	_	15	9	55	8
	주상복합용	92	-	-	7	38	-	5	1	15	_
세종특별	공업용	81	_	_	_	1	-	2	_	1	-
자치시	<u>전</u>	690	5	1	11	13	_	1	_	_	_
1.1.1.1	답	574	4	_	6	5	_	1	_	_	_
	임야	304	2	_	1	3	_	-	_	_	_
	특수토지	6	_	_	-	-	_	_	_	_	_
	공공용지	12	1	_	_	_	_	_	_	_	_
	합계	69,145	305	56	7,856	6,940	1,095	1,703	204	3,371	180
	주거용	18,202	279	54	4,385	3,533	728	340	-	454	8
	상업업무용	8,087	7	-	826	1,350	148	908	195	2,399	152
	주상복합용	5,231	7	1	1,969	1,798	148	269	6	443	14
	공업용	3,605	_	_	211	34	6	42	_	4	3
경기도	<u>전</u>	15,800	10	1	351	157	52	111	-	38	2
	답	9,701	1	_	55	37	7	23	_	11	_
	임야	8,004	1	_	59	30	6	5	_	1	_
	특수토지	310		_	-	-	-	3	3	16	1
	공공용지	205	_	-	-	1	-	2	_	5	-
	합계	735	-	-	234	248	7	19	-	51	-
	주거용	332	-	-	150	135	5	1	-	11	-
	상업업무용	120	-	-	32	39	1	13	_	26	-
경기도	주상복합용	152	-	-	51	74	1	5	_	14	-
수원시	공업용	5	_	-	_	_	_	_	_	-	-
장안구	전	68	_	-	-	_	-	-	-	-	-
021	답	14	-	-	-	_	-	-	-	-	-
	임야	43	_	-	1	_	_	_	_	_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
	합계	884	9	-	226	310	13	29	10	35	2
	주거용	305	7	-	135	123	11	5	-	5	-
	상업업무용	200	-	-	28	78	2	18	10	24	2
경기도	주상복합용	181	-	-	59	108	_	5	-	4	-
	공업용	20	-	-	2	-	-	1	-	-	-
수원시	전	83	2	-	2	1	-	-	-	-	-
권선구	답	76	-	-	_	ı	-	_	-	-	-
	임야	16	-	-	-	ı	-	-	-	-	-
	특수토지	2	-	-	-	-	-	-	-	2	-
	공공용지	1	-	-	-	ı	-	-	-	-	-
	합계	773	-	-	224	221	6	12	32	264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주거용	321	-	-	156	114	4	3	-	44	-
	상업업무용	299	-	-	18	52	1	5	32	188	1
	주상복합용	141	-	-	49	55	1	4	-	32	-
	전	3	-	-	1	ı	_	_	-	_	-
	답	1	-	-	-	-	-	-	-	-	-
	임야	1	-	-	-	-	-	-	-	-	-
	공공용지	7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07	26	96	166	1,501	600	-	-	151	174	171	249	60
_	_	3	3	7	5	298	28	_	_	14	16	72	6	5
_	_	1	9	-	-	23	3	_	_	1	-	2	-	11
_	_	1	1	_	_	15	2	_	_	1	_	2	_	1
_	_	85	9	5	-	35	_	_	_	1	_	11	3	-
	_	4	3	20	3	389	205	_	_	52	62	41	18	9
_	_	7	1	22	157	508	205	_	_	34	78	30	46	5
_	_	6	_	42	1	224	157	_	_	48	18	13	176	29
_	_	-	_	-	-	9	-	_	_	-	-	-	-	_
1	_	30	7	14	16	174	169	9	_	201	235	915	329	6
_	_	1	-	-	1	50	14	2	_	25	22	296	16	1
1	_	1	4	_	3	7	1	_	_	2	_	23	1	_
	_	1	1	_	-	4	_	_	_	1	_	19	_	_
_	_	19	2	_	_	2	_	_	_	1	2	50	1	_
_	_	3	_	2	3	67	57	3	_	61	121	304	35	3
_	_	4	_	_	9	20	70	4	_	16	83	161	190	1
_	_	1	_	8	-	16	27	-	_	95	7	57	86	1
_	_	_	_	-	_	1	-	_	_	95	-	5	-	
_	_	_	_	4	_	7	_	_	_	_	_	-	_	_
57	2	781	280	751	1,590	8,218	5,314	41	2	3,917	4,004	14,998	7,176	304
4	_	37	34	109	1,590	1,828	347	8	_	535	4,004	4,389	448	27
26	_	56	83	39	79	720	123	7	_	51	461	830	32	9
3	_	15	11	5	14	152	60	1	_	8	5	288	5	9
6	2	591	129	6	78	556	49	3	_	52	117	1,607	109	-
3	_	37	15	197	389	2,549	2,791	14	_	1,360	1,732	4,726	1,198	67
10	_	20		13			658				_			
4	_	18	5 3	379	830 19	1,088 1,209	1,229	4	1	350	1,208 405	1,467 1,536	3,864	49 56
-	_	7	-	2	6	60	40	-	-	1,528 17	405 5	1,556	1,511	-
1	_	-	_	1	1	56	17	_	_	16	4	7	7	87
_	_	3	_	1	-	75	97	_	_	-	-	_	-	-
	_	1	_	_	_	17	12	_	_	_	_	_	_	
_	_	_	_	_	_	9	-	_	_	_	_	_	_	_
_	_	_	_	_	_	5	2	_	_	_	_	_	_	_
	_	2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27	41	_	_	_	_		_	
_	_	_	_	_	_	6	8	_	_	_	_	_	_	_
_	_	_	_	1	_	7	34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8	_	_	58	83	101	_	_	_	_	_	_	_
_	_	-	_	_	2	11	6	_	_	_	_	_	_	_
	_	1	_	_	11	25	1	_	_	_	_	_	_	_
		_	_	_	1	25	2		_		_	_	_	
_	_	7	_	_	2	8	_	_	_	_	_	_	_	_
	_	-	_	_	17	22	39	_	_	_	_	_	_	_
_	_	_	_	_	25	12	39	_	_	_	_	_	_	_
	_	_	_	_	-	2	14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12	_	_	_	_	_	_	_	_
_	_	_	_	1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	-	-	-	-	-		-	-	-	-	-	-	-	-
-	-	_	_	1	-	1	_	-	_	-	_	_	-	_
-	-	-	_	-	-	1	-	-	-	-	-	-	-	_
-	-	_	_	_	-	1	_	-	-	-	_	-	-	_
-	_	-	-	-	-	7	-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58			53	151	12	40	6	5	11
	주거용	94	-	-	18	50	7	3	-	-	-
	상업업무용	108	_	-	6	31	5	31	6	3	11
7471	주상복합용	111	_	_	29	66	_	6	_	2	_
경기도	공업용	21	_	_	-	2	_	_	_	_	_
수원시	<u>전</u>	5	_	_	-	1	_	_	_	_	_
영통구	답	2	_	_	_	_	_	_	_	_	_
	임야	10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6	_	_	_	1	_	_	_	_	_
	합계	1,041	7	_	76	280	242	74	_	105	7
	주거용	464	7	_	50	185	158	21	_	18	_
	상업업무용	181		_	6	22	19	34	_	75	5
경기도	주상복합용	180	_	_	20	68	62	10	_	12	1
성남시	공업용	5	-	_	_	-	-	-	_	-	_
1	<u> </u>	148	-	_	_	5	3	9	_	_	1
수정구	답	1	_	_	_	_	_	_	_	_	
	임야	60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u> </u>	합계	717	3	_	22	255	119	98	_	102	5
	주거용	268	3	_	4	141	79	31	_	5	-
	상업업무용	172	_	_	1	29	79	50	_	79	4
경기도			_						_		
	주상복합용	171		_	17	85	33	17	_	18	1 –
성남시	공업용	12	-								
중원구	전	41	-	_	_	_	_	_	_	_	_
	답	1	-			_					-
	임야	44	_	_	-	_	_	_	-	-	_
	공공용지	8	-	-	-	-	-	-	-	-	-
	합계	667	64	7	171	16	18	24	40	13	37
	주거용	210	62	7	64	10	18	2	_	-	_
	상업업무용	134	-	_	-	2	-	16	37	13	35
경기도	주상복합용	128	-	-	106	2	_	5	2	-	1
성남시	공업용	1	-	-	-	_	-	-	-	-	1
분당구	전	108	1	-	1	-	-	-	-	-	-
201	답	5	-	-	-	1	-	1	-	-	-
	임야	77	1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1	-	-
	공공용지	1	-	-	-	_	_	-	-	-	-
	합계	1,216	7	-	145	557	27	15	-	169	-
	주거용	446	7	-	86	266	22	1	-	24	-
	상업업무용	260	_	_	13	104	2	11	-	115	-
	주상복합용	279	-	-	46	186	3	3	-	29	-
경기도	공업용	5	-	-	-	1	-	-	-	-	_
의정부시	전	129	-	-	-	_	-	-	-	-	-
	답	7	-	-	-	_	-	-	-	-	-
	임야	74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3	-	-	-	-	-	-	-	-	_
	합계	690	4	-	188	181	27	20	-	130	-
	주거용	287	4	-	127	89	19	6	-	22	-
경기도	상업업무용	156	-	-	15	33	2	6	-	89	_
안양시	주상복합용	133	-	-	42	56	6	5	-	19	-
	공업용	28	-	-	2	2	-	3	-	-	-
만안구	전	37	-	-	1	1	-	-	-	-	-
	답	3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47	2	1	3	26	1	-	_		-	-	-	-
_	_	11	_	1	-	4	-	_	_	_	_	_	_	_
_	_	10	_	_	_	5	_	_	_	_	_	_	_	_
_	_	8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7	2	_	_	_	_	_	_	_	_	_	_	_
		-					_					_		
	-		_	-	1	3		-	_	_	_		-	-
_	-	-	-	-	1	1	-	-	-	-	-	-	-	-
_	-	1	-	_	-	8	1	-	-	_	_	_	-	-
	-	-	-	-	-	1	-	-	-	_	_	-	-	-
	-	-	-	-	1	4	-	-	-	-	-	-	-	-
_	-	-	5	35	-	42	167	1	-	-	-	-	-	-
-	-	-	-	6	-	13	5	1	-	-	-	-	-	-
-	-	-	-	8	-	8	4	-	-	-	-	-	-	-
_	-	-	-	1	-	5	1	-	-	-	-	-	-	-
-	-	-	5	-	-	-	-	-	-	-	-	-	-	-
_	-	-	-	13	_	9	108	-	-	_	-	-	-	-
_	-	-	-	-	-	-	1	-	-	_	-	-	-	-
-	-	-	-	7	-	7	46	-	-	-	-	-	-	-
-	_	-	-	-	-	-	2	_	-	-	-	-	_	_
-	-	11	1	1		19	81	-	-	-	-	-	-	-
-	_	-	_	-	-	3	2	-	-	_	-	-	-	-
-	-	-	-	-	-	1	1	-	-	-	-	-	-	-
-	_	-	-	_	-	_	-	-	-	_	_	-	-	-
_	_	11	1	-	-	-	-	_	-	_	_	-	-	-
-	-	_	_	-	-	2	39	-	-	_	-	_	-	_
_	_	-	_	_	-	_	1	_	-	_	_	-	-	_
_	_	_	_	_	_	7	37	_	_	_	_	_	_	_
_	_	_	_	1	_	6	1	_	_	_	_	_	_	_
_	_	_	_	195	-	66	16	_	_	_	_	_	_	_
_	_	_	_	24	_	22	1	_	_	_	_	_	_	_
_	_	_	_	19	-	12	-	_	_	_	_	_	_	_
_	_	_	_	2	-	10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82	_	17 -	7	_	_	_	_	_	-	_
	_	_	_	3	_			_	_	_	_	_	_	_
				63		4	8							
	-	-	-	2	-	-	-	-	_	_	_	_	-	_
-	-	-	-	-	-	1	-	-	-	_	_	-	-	_
1	-	_	5	-	-	68	222	-	-	_	_	-	-	-
	-	_	-	_	_	19	21	-	_	_	_	-	-	-
	-	_	1	_	-	5	9	-	_	_	_	-	-	-
	-	_	-	-	-	8	4	-	_	-	_	-	-	-
	-	_	4	_	-	-	-	-	_	_	_	-	-	-
-	-	-	-	-	-	19	110	-	-	-	-	-	-	-
	-	-	-	-	-	1	6	-	-	-	-	-	-	-
_	-	-	-	-	-	10	64	-	-	-	-	-	-	-
_	-	-	-	-	-	1	1	-	-	-	-	-	-	-
1	-	-	-	-	-	5	7	-	-	-	-	-	-	-
-	-	10	17	7	-	34	72	-	-	-	-	-	-	-
-	-	-	6	1	-	6	7	-	-	-	-	-	-	-
-	-	1	3	1	-	2	4	-	-	-	-	-	-	-
-	-	-	2	1	-	-	2	-	-	-	-	-	-	-
-	-	9	6	-	-	4	2	-	-	-	-	-	-	-
-	-	-	-	2	-	7	26	-	-	-	-	-	-	-
-	_	-	-	_	-	2	1	-	-	_	-	-	-	-
-	_	-	-	2	-	13	30	-	-	_	-	_	-	-
Щ													1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441	2	-	89	145	17	41	16	36	-
	주거용	151	2	-	45	66	17	11	-	1	-
경기도	상업업무용	140	-	-	5	51	-	24	16	30	-
	주상복합용	79	-	-	39	27	-	6	-	5	-
안양시	공업용	27	-	_	_	_	_	_	_	_	-
동안구	전	20	-	-	-	-	-	-	-	-	-
	임야	22	-	-	-	1	-	-	-	-	-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_	_
	합계	1,502	7	-	132	810	66	63	12	149	2
	주거용	617	6	-	79	443	29	18	-	13	-
	상업업무용	379	_	_	3	157	24	16	12	126	_
	주상복합용	286	_	_	47	205	12	11	_	8	_
경기도	공업용	85	_	_	_	-	1	3	_	_	2
부천시	전	67	_	_	1	2	-	4	_	_	-
TEN	답	29	1	_	1	3	_	9	_	1	_
	임야	36	<u> </u>	_	1	-	_	1	_		_
	투수토지	2	_	_	_	_	_	-	_	1	_
	공공용지	1	_	_	_	_	_	1	_	_	_
	합계	827	9	1	127	281	40	21	_	107	_
	주거용	319	9	1	62	185	29	7	_	15	_
	상업업무용	144	-	_	8	23	4	11	_	79	_
경기도	주상복합용	122	-	_	30	66	7	3	_	13	_
	공업용	38	_	_	20	1	-	-	_	-	_
광명시		138	_	_	4	6	_	_	_	_	
	<u>전</u> 답		_	_	-	-	_	_	_	_	
		13		_			_	_	_	_	
	임야	53	-		3						
	합계	5,053	_	2	753	112	23	189	5	348	13
	주거용	1,271	-	2	439	47	15	32	-	56	-
	상업업무용	669	_	-	70	31	4	103	5	216	13
7171	주상복합용	411	_	-	221	26	-	49	-	68	-
경기도	공업용	279	-	-	3	-	-	-	-	-	-
평택시	전	912	_	-	13	4	-	2	-	1	-
	답	1,059	-	_	2	2	1	3	_	4	-
	임야	430	_	_	5	2	3	-	-	-	-
	특수토지	6	-	-	-		-	-	-	3	-
	공공용지	16	-	-	-	-	-	-	-	-	-
	합계	1,002	1	-	110	193	5	44	_	211	-
	주거용	395	1	_	57	145	4	22	_	57	-
	상업업무용	170	-	-	12	19	-	13	-	111	-
경기도	주상복합용	100	-	-	25	21	1	8	-	42	-
동두천시	공업용	26	-	-	2	1	-	-	-	-	-
	전	193	-	-	12	6	-	-	-	1	-
	답	26	-	-	2	-	-	-	-	-	-
	임야	88	-	-	-	1	-	-	-	-	-
	특수토지	4	-	-	-	-	-	1	-	-	-
	합계	903	-	3	81	430	12	22	-	36	-
	주거용	298	-	2	53	226	2	1	-	1	-
	상업업무용	70	-	-	1	25	-	10	-	31	-
경기도	주상복합용	185	-	-	17	165	-	2	-	1	-
안산시	공업용	22	-	-	1	-	-	-	-	-	-
	전	191	-	1	9	13	9	9	-	-	-
상록구	답	61	-	-	-	1	1	-	-	1	-
	임야	63	-	-	-	_	-	_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0	-	-	-	_	-	-	-	1	-
		·			I		I	I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33	7		-	20	35	-			-	_	-	-
_	_	-	2	_	_	3	4	_	_	_	_	_	_	_
_	_	8	3	_	_	2		_	_	_	_	_	_	_
-	-	-	-	_	_	_	1	_	_	_	_		_	_
							2							
_	-	25	2	-	-	_	-	-	-	-	-	-	-	-
_	-	-	-	-	-	7	13	-	-	-	-	-	-	-
-	-	-	-	-	-	7	14	-	-	-	-	-	-	-
-	-	-	-	-	-	1	1	-	-	-	-	-	-	-
5	-	69	45	-	3	33	106	-	_	_	_	_	-	-
-	-	_	8	_	_	11	10	-	_	-	-	-	_	-
4	-	15	16	-	1	2	3	-	-	-	-	-	-	-
-	-	-	1	-	-	1	1	-	-	-	-	-	-	-
1	-	54	20	-	2	-	2	-	-	-	-	-	-	-
-	_	-	-	-	-	7	53	-	-	-	-	-	-	-
-	-	_	-	-	-	4	10	-	-	-	-	_	-	_
_	_	_	_	_	_	8	26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1	_	8	11	3	_	128	80	_	_	_	_	-	_	_
						6	5					-		
11	-	-	4	-	-	1	3	-	-	-	-	-	-	-
_	-	-	-	-	-	2	1	-	-	-	-	-	-	-
_	-	7	3	-	-	4	3	-	-	-	-	-	-	-
-	-	1	3	1	-	90	33	-	-	-	-	-	-	-
_	-	_	-	-	-	13	_	-	_	-	-	_	-	-
-	-	_	1	2	-	12	35	-	_	-	_	_	_	-
18	-	66	23	20	127	636	-	1	-	165	308	1,435	784	25
3	-	1	1	4	15	124	-	-	-	25	41	406	57	3
2	-	6	12	-	10	75	-	-	-	6	9	103	4	-
-	_	3	1	_	2	12	_	_	_	1	_	26	2	_
3	_	50	8	-	5	26	_	1	-	3	15	149	16	_
2	_	2	_	5	24	176	_	_	_	43	92	458	82	8
7	_	1	_	1	71	121	_	_	_	15	98	117	604	12
1	_	1	1	10	-	98	_	_	_	64	53	174	18	-
_	_	2	-	-	-	1	_	_	_	-	-	-	-	-
_	_	_	_	_	_	3	_	_	_		_			
				_				_	_	8		111	1	2
	-	17	2		-	184	_			62	30	111	32	
	_	2	-	-	-	57	_	-	-	7	2	40	1	
_	_	1	-	-	_	9	_	-	_	1	_	4	_	-
_	-	-	-	-	-	1	-	_	-	_	_	2	-	_
	-	8	1	-	-	5	-	-	-	-	-	9	-	-
	-	4	1	-	-	68	-	-	-	34	19	46	2	
-	-	1	-	-	-	9	-	-	-	1	7	3	3	-
-	-	-	-	-	-	35	-	-	-	18	2	6	26	
-	-	1	-	-	-	-	-	-	-	1	-	1	-	-
-	-	10	9	27	-	30	243	-	-	-	-	-	-	
-	-	-	-	1	-	3	9	-	-	-	-	-	-	-
-	_	-	-	1	-	_	2	-	-	-	-	_	-	-
_	_	-	-	-	_	_	_	-	_	_	_	_	_	-
_	_	10	9	_	_	_	2	_	_	_	_	_	_	_
_	_	-	-	8	_	12	130	_	_	_	_	_	_	_
_	_	_	_	1	_	-	57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6 -		6	41							
	_	-	_		-	1	1	-	_	_	_	_	_	-
_	_	-	-	-	-	8	1	_	_	_	_	_	_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977	2	-	158	151	3	31	7	24	3
	주거용	224	2	-	73	60	1	3	-	-	-
	상업업무용	93	_	-	8	14	1	15	7	23	3
74716	주상복합용	135	-	-	41	72	1	11	_	-	-
경기도	공업용	60	_	_	-	_	_	_	_	_	_
안산시	전	240	_	_	28	3	_	1	_	_	_
단원구	답	86	_	_	2	1	_	1	_	_	_
	임야	122	_	_	6	1	_	_	_	_	_
	특수토지	8	_	-	_	_	-	-	_	_	_
	공공용지	9	_	_	_	_	_	_	_	1	_
	합계	1,495	6	_	454	168	38	42	12	80	2
	주거용	464	5	_	286	67	18	3	_	3	_
	상업업무용	235	_	-	39	69	9	16	11	67	2
777	주상복합용	148	1	_	115	19	-	1	-	3	_
경기도	공업용	31	_	_	2	2	_	_	_	-	_
고양시	<u>전</u>	439	_	_	8	9	9	21	_	7	_
덕양구	답	49	_	_	_	_	1	_	_	_	_
	임야	118	_	_	4	2	1	1	_	_	
	특수토지	8	_	_	_	-	-	-	1	_	_
	공공용지	3	_	_	_	_	_	_	-	_	_
	합계	690	18	_	115	30	7	14	13	28	1
	주거용	175	15	_	50	10	6	_	-	1	_
	상업업무용	106	3	_	5	15	1	9	13	22	1
	주상복합용	76	_	_	60	4	_	4	_	_	_
경기도	공업용	81	_	_	-	_	_	1	_	_	_
고양시	전	169	_	_	_	1	_	_	_	4	
일산 동구	답	28	_	_	_		_	_	_	_	_
	임야	50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3	_	_	_	_	_	_	_	1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	_
	합계	488	-	-	75	38	11	9	-	37	2
	주거용	108	_	_	32	14	7	_	_	3	_
	상업업무용	97	_	_	11	23	4	1	_	29	2
경기도	주상복합용	37	_	_	31	_	_	3	_	3	_
고양시	공업용	40	-	_	-	1	-	-	-	_	-
일산서구	<u>전</u>	85	-	-	1	_	-	1	-	1	-
ecm	답	108	-	-	-	-	-	4	-	1	_
	임야	12	_	-	-	_	-	-	_	-	
	공공용지	1	_	-	_	_	-	_	_	_	-
	합계	272	8	6	75	17	4	17	_	9	-
	주거용	74	7	6	43	6	3	-	-	-	-
	상업업무용	37	-	-	8	2	1	9	-	7	-
7471-	주상복합용	26	-	-	23	1	-	-	-	-	-
경기도	<u>전</u>	93	1	-	1	7	-	8	-	2	-
과천시	답	1	-	-	-	-	-	-	_	-	-
	임야	36	-	-	-	1	-	-	-	-	-
	특수토지	3	-	-	-	_	-	-	-	-	-
	공공용지	2	_	-	_	_	_	_	_	_	_
	합계	503	_	-	160	97	30	17	_	55	1
	주거용	190	_	-	99	48	23	3	_	5	_
	상업업무용	101	_	-	7	27	6	13	_	41	1
경기도	주상복합용	89	-	-	54	22	-	1	-	9	-
구리시	공업용	3	_	-	_	_	1	_	_	-	_
	<u>전</u>	96	_	-	_	_	_	_	_	_	_
	임야	23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1	_	-	-	-	-	-	_	_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_	-	55	5	78	95	274	90	-	-	-	-	-	-	1
_	-	_	-	2	19	62	2	-	-	-	-	-	-	_
-	-	1	2	1	1	14	3	-	-	-	-	-	-	-
-	-	-	-	-	1	6	3	-	-	-	-	-	-	-
-	-	54	3	-	-	1	2	-	-	-	-	-	-	-
-	-	-	-	25	34	103	46	-	-	-	-	-	-	-
-	-	_	-	2	33	31	16	-	-	-	-	-	-	-
-	_	_	-	48	1	50	16	-	-	-	-	-	-	_
-	-	-	-	-	6	1	1	-	-	-	-	-	-	-
-	_	_	_	-	-	6	1	-	-	_	-	-	-	1
_	_	_	_	-	-	81	501	-	-	10	21	62	18	_
-	_	_	_	_	-	14	31	-	-	3	1	31	2	_
-	-	_	-	_	-	8	9	-	-	_	-	5	-	-
_	-	-	-	_	-	2	6	-	-	-	-	1	-	-
-	-	-	-	_	-	6	6	-	-	-	2	12	1	-
_	-	-	-	-	-	33	323	-	-	1	10	11	7	-
_	_	_	_	_	_	3	34	_	_	-	7	-	4	_
_	_	_	_	_	_	13	85	_	_	5	1	2	4	_
_	_	_	_	_	_	1	5	_	_	1	-	_	-	_
_	_	_	_	_	_	1	2	_	_	-	_	_	_	_
_	_	_	_	_	_	26	51	_	_	36	32	241	78	_
_	_	_	_	_	_	7	4	_	_	3	3	66	10	_
_	_	_	_	_	_	9	_	_	_	_	1	27	-	_
_	_	_	_	_	_	_	1	_	_	_	<u> </u>	7	_	_
_	_	_	_	_	_	1	-	_	_	5	3	69	2	_
_	_	_	_	_	_	7	39	_	_	8	11	54	45	_
_	_	_		_	_		1	_	_	_	12	2	13	_
_	_	_	_	_	_	1	5	_	_	19	2	15	8	_
_	_	_	_	_	_	_	1	_	_	1	_	-	_	
_	-	_	_	_	_	1	_	_	_	_	_	1	_	_
_	_	_	2	_	_	14	_	_	_	8	10	130	152	_
_	_	_	_	_	_	2	_	_	_	-	1	40	9	_
_	_	_	_	_	_	4	_	_	_	_	<u> </u>	22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1	_	_	_	2	2	34	_	_
_	_	_	1	_	_	4	_	_	_	2	4	29	42	_
_	_	_	1	_	_		_	_	_	_	1	1	100	
_	_	_		_	_	2	_	_	_	4	2	4	-	-
_	_	_	_	_	_	1	_	_	_	-	_	_	_	_
_	_	_	_	_	-	19	117	_	-	_	_	_	_	-
_	_	_	_	_	-	2	7	_	-	_	_	_	_	
_	_	_	_	_	_	2	8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10	64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_	_	_	_	_	_	_
_	_	_	_	_	_	4	31	_	_	_	_	_	_	_
	_	_	_	_	_	-	3	_	_	_	_	_	_	_
_	_	_	_	_	_	1	1	_	_	_	_	_	_	_
1	_	_	_	_	_	12	130	_	_	_	_	_	_	_
-	_	_	_	_	_	4	8	_	_	_	_	_	_	_
1	_	_	_	_	_	1	4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2	_	_	_	_	_	_	
						1								-
_	-	-	-	-	-	4	92	-	-	-	-	-	-	_
_	_	-	-	-	_	1 -	22	-	_	_	_	_	_	_
	_	_	_	-	_	_	1	_	_	_	_	_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888	16	2	681	119	81	100	-	72	3
	주거용	864	15	2	395	57	42	20	-	8	-
	상업업무 용	265	-	-	84	21	8	53	-	40	2
	주상복합용	179	-	-	125	12	2	6	-	7	1
경기도	공업용	173	-	-	41	3	1	-	-	1	-
남양주시	전	949	1	-	29	24	25	20	-	14	-
	답	66	-	-	1	1	1	-	-	1	-
	임야	380	-	-	6	1	2	1	-	1	-
	특수토지	11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659	13	-	147	50	9	48	-	98	1
	주거용	201	13	-	88	24	7	19	_	10	-
	상업업무용	172	-	_	22	18	2	16	_	80	1
	주상복합용	56	-	-	27	7	-	13	-	8	-
경기도	공업용	40	_	-	_	_	-	-	-	-	-
오산시	전	80	-	-	8	-	-	_	_	-	-
'	답	70	-	-	1	1	-	-	-	-	-
	임야	38	_	_	1	_	_	_	_	_	_
	<u></u>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1,403	9	5	403	165	18	49	13	72	_
	주거용	315	8	4	197	66	12	1	-	3	
	상업업무용	197	1		29	33	5	38	12	60	-
	주상복합용	175		1	114	47	_	2	_	5	-
경기도	공업용	143	-	<u> </u>	58	6	1	6	_	_	-
시흥시	전 전	324	_	_	4	8	_	1	_	2	_
71671	답	112	_	_	1	5	_	1	_	_	_
	임야	124	_	_		_	_	_	_	_	_
	투수토지	9	_	_	_	_	_	_	1	_	_
	공공용지	4	-	_	_	_	_	_	_	2	_
	합계	555	_	_	58	164	30	33	7	56	1
	주거용	133	_	_	27	73	18	5	_	6	_
	상업업무용	112	_	_	_	39	6	16	7	37	1
	주상복합용	106	_	_	26	52	6	8	_	13	_
경기도	공업용	66	_			- 52	-	4	_	-	_
군포시	<u> </u>	85	_	_	5	_	_	-	_	_	_
L L T/1	- 인 답	13	_	_	-		_	_	_	_	_
	임야	37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519	10	_	111	42	35	29	_	29	_
	합계 즈게요		9	_		23	26	9	_	4	_
	주거용	156			63				_		
	상업업무용	68	-	-	7	5	4	13		22	-
7171	주상복합용	74	1 –	-	36	11	5	5	-	3	-
경기도	공업용	23		-	3	1			-		-
의왕시	전	126	_	_	2	2	_	2	_	_	-
	답	8	-	-	-	-	-	-	-	-	-
	임야	61	-	-	-	-	-	-	_	-	-
	특수토지	2	-	-	-	-	-	-	-	-	-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	4	15	4	181	716	-10	_	108	141	527	102	13
_	_	-	_	4	1	51	67	_	_	9	17	171	5	-
_	_	_	2	-	_	13	18	_	_	2	-	22	-	_
_	_	_	_		_			_	_	_			_	_
	_			1 –	_	2	6	_	_		1	16		_
		3	2			4	2			1	2	109	4	
	_			5	3	84	452	-	-	34	85	157	12	4
_	_	_	_		_	2	26	_	_	2	16	11	5	
	_	_	_	5		24	144		_	59	20	32	76 –	9
_					-	1	1	-		1		8		
_	_	-	-	-	-	-	_	-	_	_	_	1	-	-
_	-	16	3	15	41	218	-	-	_	_	_	_	-	-
_	-	-	1	1	2	36	-	-	-	-	-	-	-	-
_	-	-	1	-	4	28	-	-	-	-	-	-	-	-
-	-	-	-	-	-	1	-	-	-	-	-	-	-	-
_	-	16	1	-	-	23	-	-	-	-	-	-	-	-
_	-	-	-	4	11	57	-	-	-	-	-	-	-	-
-	-	-	-	-	24	44	-	-	-	-	-	-	-	-
_	-	-	-	10	-	27	-	_	-	-	-	-	-	-
-	-	-	-	-	-	1	-	-	-	-	-	-	-	-
-	-	-	-	-	-	1	-	-	-	-	-	-	-	-
_	-	47	8	2	-	60	552	-	-	-	-	-	-	-
_	-	-	-	1	-	6	17	-	-	-	-	-	-	-
_	-	-	1	-	-	3	15	-	-	-	-	-	-	-
-	-	-	-	-	-	1	5	-	-	-	-	-	-	-
-	-	47	6	-	-	1	18	-	-	-	-	-	-	-
-	-	-	1	-	-	36	272	-	-	-	-	-	-	-
-	-	-	-	-	-	8	97	-	-	-	-	-	-	-
_	-	-	-	1	-	5	118	-	-	-	-	-	-	-
_	-	-	-	-	-	-	8	-	-	-	-	-	-	-
-	-	-	-	-	-	-	2	-	-	-	-	-	-	-
-	-	54	8	-	-	8	136	-	-	-	-	-	-	-
-	-	-	-	-	-	2	2	-	-	-	-	-	-	-
-	-	3	-	-	-	2	1	-	-	-	-	-	-	-
_	_	1	_	_	-	_	_	-	-	_	_	-	-	_
-	-	50	8	-	-	2	2	-	-	-	-	-	-	-
-	-	-	-	-	-	1	79	-	-	-	-	-	-	-
_	_	-	_	_	_	_	13	_	-	_	-	_	-	_
_	_	-	_	_	-	1	36	_	-	_	-	-	-	_
-	-	-	-	-	-	-	2	-	-	-	-	-	-	-
-	-	-	-	-	-	-	1	-	-	-	-	-	-	-
_	_	22	3	_	_	16	222	_	_	_	_	_	_	_
_	_	2	1	_	_	2	17	_	_	_	_	_	_	_
_	_	2	1	_	_	2	12	_	-	_	_	_	_	_
_	_	1	_	_	_	1	11	_	_	_	_	_	_	_
_	_	17	1	_	_		1	_	_	_	_	_	_	_
_	-	-	-	-	-	6	114	-	_	_	_	_	_	_
_	_	_	_	_	_	-	8	_	_	_	_	_	_	_
_	_	_	_	_	_	4	57	_	_	_	_	_	_	_
_	_	_	_	_	_	-	2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u> </u>		'		_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895	15	-	281	83	33	91	7	41	10
	주거용	275	11	_	153	41	20	22	_	5	_
	상업업무용	143	1	_	46	4	4	33	7	27	9
	주상복합용	107	2	-	73	15	2	7	-	5	-
경기도	공업용	13	_	_	1	1	2	_	_	_	_
하남시	전	245	1	_	8	17	4	27	_	3	1
O D A	답	4	-	_	_	1	1	_	_	1	_
	임야	103	_	_	_	4		2	_	<u> </u>	_
	투수토지	3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_
	합계	2,826	_	_	101	180	8	22	10	67	2
	주거용	691	_	_	60	99	8	3	-	9	_
		191	_	_	11		-	10		50	2
경기도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72	_	_	12	42	_	5	8 2	8	_
						24					
용인시	공업용	165	-	-	2	2	-	2	-	-	-
처인구	전	601	-	-	9	5	-			_	-
	답	624	-	-	5	4	-	2	-	-	-
	임야	443	_	-	2	4	-	-	-	-	-
	특수토지	39	-	-	-	-	-	-		-	-
	합계	703	7	7	105	122	30	28	-	33	3
	주거용	253	7	7	54	54	23	1	-	3	-
34316	상업업무용	149	-	-	18	31	6	22	-	25	3
경기도	주상복합용	70	-	-	22	36	-	3	-	4	-
용인시	공업용	48	-	-	5	-	-	2	-	1	-
기흥구	전	98	-	-	5	1	1	-	-	-	-
	답	9	-	-	-	-	-	-	-	-	-
	임야	64	-	-	1	-	-	-	-	-	-
	특수토지	12	-	-	_	-	-	-	-	-	-
	합계	399	4	8	24	66	35	18	1	19	4
	주거용	160	4	8	14	19	25	2	-	-	-
	상업업무용	90	-	-	5	21	9	12	1	16	4
경기도	주상복합용	45	-	-	4	26	-	3	-	3	-
용인시	공업용	3	-	-	_	-	-	1	_	-	-
수지구	전	46	-	-	1	-	1	-	-	-	-
	답	4	-	-	-	-	-	-	-	-	-
	임야	49	-	-	-	-	-	-	-	-	-
	특수토지	2	-	-	-	-	-	_	-	-	-
	합계	3,827	-	2	227	139	19	32	1	146	4
	주거용	847	_	2	133	73	12	7	_	31	-
	상업업무용	308	-	_	38	40	6	20	1	94	4
	주상복합용	182	-	-	52	25	1	3	-	21	_
경기도	공업용	249	-	-	1	-	-	2	-	-	-
파주시	전	936	_	_	1	_	-	_	-	-	_
-11/1	답	830	_	_	1	_	_	_	_	_	_
	임야	423	_	_	1	1	_	_	_	_	_
	특수토지	11	_	-	-	-	_	_	_	_	_
	공공용지	41	_	_	_	_	_	_	_	_	_
	합계	3,113	3	_	104	105	12	27	-	78	_
	주거용	602	2	_	49	49	6	2	_	1	_
	상업업무용	194	_	_	11	26	2	18	_	65	_
	주상복합용	95	1	_	22	27	4	5	_	11	_
경기도	공업용	118	_	_	22	-	-	1	_	-	_
			_	_			_		_	_	_
이천시	전	914			14	1		1			
	답	720	-	-	2	1	-	_	-	-	-
	임야	448	-	-	4	1	-	-	-	-	-
1	특수토지	20	-	-	-	-	-	-	-	1	-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_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6	5		-	30	293	-10	-		- 01	- 110	-	-
_	_	-		_	_	6	17	_	_	_	_	_	_	_
_	_	_	2	_	_	2	8	_	_	_	_	_	_	_
_	_	-	_	_	_	1	2	_	_	_	_	_	_	_
_	_	6	3	_	-	_	_	_	_	_	_	_	_	_
_	_	-		_	_	16	168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_	_	_	_	_	_	_
_	_	_	_	_	_	3	94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9	_	33	2	95	133	1,206	_	_	_	83	128	503	244	_
1	_	4		13	10	300	_	_	_	6	15	146	17	_
1	_	1	_	-	2	54	_	_	_	_	1	9	-	_
_	_	_	_	_	1	16	_	_	_	_	-	4	_	_
1	_	12	2	1	5	100	_	_	_	_	2	34	2	_
1	_	6		9	32	314	_	_	_	16	49	141	19	_
2	_	5		3	82	215	_	_	_	9	45	103	149	_
3	_	5		69	1	178	_	_	_	51	16	57	57	_
-	_	-	_	-	-	29	_	_	_	1	-	9	-	-
_	_	7	4	29	5	323	_	_	_	_	_	_	_	_
-	-	-	-	10	-	94	_	_	_	_	_	_	_	_
_	_	1	1	1	_	41	_	_	_	_	_	_	_	_
_	-	_	-	_	_	5	_	_	_	_	_	_	_	_
_	_	5	3	_	_	32	_	_	_	_	_	_	_	_
_	_	_	_	5	4	82	_	_	_	_	_	_	_	_
_	_	_	_	_	1	8	_	_	_	_	_	_	_	_
_	_	1	_	13	-	49	_	_	_	_	_	_	_	_
_	_	_	_	-	_	12	_	_	_	_	_	_	_	_
_	_	_	_	36	_	173	11	_	_	_	_	_	_	_
-	-	-	_	17	-	71	-	-	-	-	_	-	-	-
-	-	_	_	1	-	21	-	-	-	-	_	-	-	-
-	_	_	_	_	_	9	_	_	-	_	_	_	-	-
_	_	_	_	-	_	2	_	_	-	_	_	_	-	-
-	-	-	_	3	-	36	5	-	-	-	_	_	-	-
-	-	-	_	-	-	4	_	-	-	-	_	-	-	-
-	-	_	_	15	-	28	6	-	-	-	_	-	-	-
_	_	_	_	-	-	2	_	_	-	_	_	_	-	-
-	-	43	23	6	56	282	-	8	-	285	419	1,404	635	96
	-	1	3	-	2	56	-	3	-	27	39	435	17	6
	-	_	8	_	1	14	-	_	_	1	2	76	3	_
-	-	-	6	-	-	7	-	1	-	1	1	59	-	5
-	-	32	6	-	3	13	-	-	-	1	12	177	2	-
-	-	6	_	1	6	90	_	1	_	99	177	440	93	22
-	-	1	_	-	44	52	_	2	_	37	164	91	418	20
-	-	2	_	5	-	50	-	1	-	116	23	116	97	11
-	-	1	-	-	-	-	-	-	-	-	-	10	-	-
-	-	-	_	-	-	-	-	-	-	3	1	-	5	32
-	-	16	_	17	196	395	-	-	-	252	294	1,027	587	-
-	-	_	_	2	17	87	-	_	-	28	25	306	28	-
-	-	1	-	-	3	29	-	-	-	-	2	36	1	-
-	-	-	_	_	1	5	-	-	-	_	_	19	-	-
-	-	12	-	-	3	14	-	-	-	4	14	60	8	-
-	-	2	_	1	50	136	_	-	-	98	147	337	127	_
-	-	_	_	_	116	43	_	-	_	23	74	115	346	_
-	-	1	_	14	6	78	_	-	-	97	32	138	77	-
-	-	_	_	-	_	1	-	-	-	2	_	16	-	-
		1	1	1				1	1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443	13	_	208	86	4	34	-	81	27
	주거용	754	10	-	141	42	4	10	-	8	4
	상업업무용	293	1	-	32	25	_	17	_	70	18
24-1-	주상복합용	71	2	-	26	18	_	5	_	3	4
경기도	공업용	166	_	-	1	-	-	-	-	-	-
안성시	<u></u> 전	795	_	_	6	_	_	1	_	_	-
	답	962	_	_	1	1	_	_	_	_	-
	임야	381	_	_	1	_	_	_	_	_	-
	특수토지	21	_	-	-	_	-	1	_	_	1
	합계	2,276	12	2	216	68	9	46	_	55	2
	주거용	467	10	2	92	30	9	3	_	3	_
	상업업무용	268	1	_	37	27	_	38	_	44	2
	주상복합용	107		_	73	6	_	-	_	5	_
경기도	공업용	294	_	_	11	1	_	3	_	1	_
김포시	<u>전</u>	461	1	_	3	1	_	1	_	1	_
	<u></u> 답	453	<u> </u>	_	_	2	_	1	_	1	_
	임야	225	_	_	_	1	_	_	_	-	_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5.423	32	10	420	187	29	103	10	97	24
	주거용	1,068	30	10	251	75	26	14	-	8	-
	사업업무용	466	-	-	45	29	_ Z0 _	68	8	76	21
	주상복합용	247		_	110		1	10	2	10	3
경기도		448		_		67	-		_	10	- -
	공업용				9	2	_	10			
화성시	<u>전</u>	1,173	2	_	3	7			_	1 –	
	답	1,330				6	2	1			-
	임야	674	_	-	2	1	_	_	-	-	
	특수토지	15	_	-	_		-	_	-	-	
	공공용지	2	-	-	_	-	-	-	-	1	-
	합계	2,456	-	-	274	63	5	49	-	33	-
	주거용	645		_	153	33	4	12	-	5	-
	상업업무용	253	-	-	46	16	1	31	-	28	-
경기도	주상복합용	57	-	-	19	3	-	3	-	-	-
광주시	공업용	306	-	-	10	4	-	2	-	-	-
8171	전	639	-	-	33	4	-	-	-	-	-
	답	185	-	-	5	-	-	-	-	-	-
	임야	352	-	-	8	3	_	-	-	-	-
	특수토지	19	-	-	-	-	-	1	-	-	-
	합계	2,231	22	1	375	135	8	60	2	28	2
	주거용	536	22	1	131	63	6	11	-	3	-
	상업업무용	208	-	-	34	35	2	31	2	21	2
	주상복합용	132	-	-	64	24	-	14	-	4	-
경기도	공업용	243	-	-	29	2	-	1	-	-	-
양주시	전	621	-	-	93	8	-	2	-	-	-
	답	245	-	-	15	2	-	-	-	-	-
	임야	235	-	-	9	1	-	-	-	-	-
	특수토지	8	-	-	-	-	-	-	-	-	-
	공공용지	3	-	-	-	-	-	1	-	-	-
	합계	3,398	_	_	145	134	2	30	_	113	-
	주거용	683	_	-	71	70	2	7	_	22	-
	상업업무용	294	-	-	20	33	_	16	_	75	-
	주상복합용	65	_	_	10	17	_	6	_	14	_
경기도	공업용	215	_	_	6	2	_	_	_	_	_
포천시	<u>전</u>	1,170	_	_	28	7	_	1	_	_	_
	 답	469	_	_	8	3	_	_	_	1	-
	임야	474	_	_	2	2	_	_	_	-	_
	특수토지	28		_	_	_	_	_	_	1	
		۷۵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	-	33	7	73	115	876	- × 11×11	-	1	283	364	607	628	2
_	_	1	2	11	12	184	_	_	-	39	52	200	34	_
1	_	2	1	1	3	68	_	_	_	6	8	32	8	_
	_	_	_	_	-	7	_	_	_	_	-	5	1	_
	_	26	3	_	2	53	_	_	_	8	7	58	8	_
-	_		-				_	_	_					
	_	2		16	6	266	_	_		106	149	150	91	2
		_	1	3	92	221			1 –	35	131	100	374	
	-	_	_	42	_	73	_	_	_	88	17	48	112	-
-	_					4			_	1		14		-
5	_	31	14	39	136	372	122	_	_	87	159	588	311	2
		2	2	8	16	75	9			12	26	143	25	
5	_	_	7	3	6	46	5	-	-	5	2	39	1	-
_	_	-	-		-	7	1	-	_	-	-	15	-	-
-	_	24	3	1	15	67	3	-	_	3	10	134	18	-
	-	4	1	8	32	98	54	-	-	19	56	158	23	1
_	-	1	1	-	66	43	34	_	-	10	48	47	199	-
	-	_	-	19	1	36	16	-	-	38	17	51	45	1
_	-	-	-	-	-	-	-	_	-	-	-	1	-	-
3	_	48	16	24	250	716	523	5	1	195	508	1,587	614	21
-	-	2	-	1	22	131	36	-	-	16	70	356	18	2
_	-	2	11	2	14	71	1	1	-	8	9	91	2	7
3	-	1	-	-	1	15	2	-	-	1	1	19	-	1
-	-	42	5	1	19	94	2	1	-	3	19	233	7	-
-	-	-	-	2	46	202	177	-	-	37	173	447	71	5
_	-	-	-	-	142	96	202	2	_	15	175	231	455	3
-	-	1	-	18	6	104	99	1	1	115	60	202	61	3
-	-	-	-	-	-	2	4	-	-	_	1	8	-	-
-	_	-	-	_	-	1	-	-	_	_	-	_	-	-
2	-	7	-	22	18	184	299	16	-	93	182	1,031	178	-
-	-	1	-	2	1	44	17	2	-	10	14	337	10	-
1	-	-	-	1	2	29	2	5	-	3	7	79	2	-
_	_	-	-	_	-	2	1	-	-	_	-	29	-	-
1	-	6	-	2	2	24	1	-	-	5	9	224	16	-
-	-	-	-	6	9	49	146	8	-	17	73	267	27	-
-	-	-	-	-	4	13	43	-	-	-	55	37	28	-
-	-	-	-	11	-	23	89	1	-	52	23	48	94	-
_	-	-	-	-	-	-	-	-	-	6	1	10	1	-
_	-	53	19	8	170	325	226	8	-	91	81	415	202	-
-	_	8	1	-	24	86	17	2	-	20	17	103	21	-
-	-	1	2	-	12	25	9	1	-	-	-	30	1	-
-	-	1	-	-	5	8	3	-	-	-	-	8	1	-
-	-	23	11	1	19	57	2	1	-	2	4	87	4	-
-	-	10	5	-	59	94	108	3	-	32	41	124	42	-
-	-	5	_	-	51	19	39	_	-	2	16	24	72	-
_	_	5	-	7	-	34	44	1	_	34	2	37	61	-
_	_	-	-	-	-	-	4	-	_	1	1	2	-	_
_	-	-	-	-	_	2	-	-	_	-	-	-	-	_
_	2	12	4	1	68	194	_	2	_	334	319	1,323	713	2
_	_	-	-	-	12	35	_	_	_	44	39	334	47	_
-	_	_	1	_	4	26	_	_	-	12	1	102	4	-
_	_	_	_	_	-	1	_	_	_	1	-	16	-	_
_	2	10	3	_	1	8	_	_	_	7	6	152	18	_
	_	-	-	_	23	73	_	2	_	172	175	512	177	_
_	_	_	_	_	25	21	_	_	_	21	65	115	209	1
	_	_	_	1	3	30	_	_	_	75	33	70	257	1
	_		_						_		-			
_	_	2	_	-	-	_	-	-	_	2	_	22	1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910	_	_	69	78	1	11	_	28	-
	주거용	558	_	_	36	30	1	2	_	1	-
	상업업무용	137	_	_	15	21	_	6	_	23	-
7471	주상복합용	69	_	_	16	26	_	3	_	2	_
경기도 여주시	공업용	69	-	-	-	_	-	-	-	-	_
91174	전	780	-	_	-	1	-	-	_	-	-
	답	822	-	-	2	_	-	-	-	-	-
	임야	444	-	-	-	_	-	-	-	-	_
	특수토지	31	-	-	-	-	-	-	-	2	-
	합계	2,078	-	-	156	13	-	6	-	89	10
	주거용	421		-	113	12	-	2	-	19	4
	상업업무용	116	-	_	20	_	_	2	_	60	3
	주상복합용	45	-	-	11	-	-	2	-	9	3
경기도	공업용	24	-	-	-	_	_	_	_	-	-
연천군	전	668	-	-	9	1	_	_	_	-	-
	답	423	-	_	2	_	-	_	-	-	-
	임야	311		-	1	_	-	-	-	-	-
	특수토지	7		-		-	-	-	-	1	-
	공공용지	63		-		-	-	-	-	-	-
	합계	2,319	2	-	40	164	-	9	-	77	-
	주거용	655	1	-	27	119	-	4	-	12	-
	상업업무용	123		-	4	18	-	3	-	50	-
	주상복합용	58	-	-	2	18	-	2	_	14	-
경기도 기평군	공업용	8		-		_	-	-	-	-	-
기당도	전	677	1	-	4	5	-	-	-	-	-
	답	243	-	_	3	2	-	-	_	_	-
	임야	544	-	_	-	2	-	-	_	-	-
	특수토지	11		-		-	-	-	-	1	-
	합계	3,590	-	-	43	86	-	37	-	65	-
	주거용	905	-	-	29	51	-	11	-	9	-
	상업업무용	169	-	-	6	20	-	21	-	42	-
	주상복합용	49	-	-	3	9	-	5	-	12	-
경기도	공업용	2	-	-	-	-	-	-	-	-	-
양평군	전	1,147	-	-	4	6	-	-	-	1	-
	답	539	-	-	1	-	-	-	-	-	-
	임야	770	-	-	-	-	-	-	-	-	-
	특수토지	8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1	-	3	20	-	26	124	-	-	-	490	404	999	642	14
_	-	-	6	-	4	24	-	-	-	60	39	308	44	3
_	-	-	2	-	4	17	-	-	-	3	4	40	2	-
_	-	-	1	-	1	1	-	-	-	1	-	17	1	-
_	-	2	7	-	-	1	-	-	-	5	10	41	3	-
-	-	-	2	-	7	39	-	-	-	151	185	299	93	3
1	-	-	1	-	10	21	-	-	-	61	135	156	430	5
-	-	-	1	-	-	21	-	-	-	209	29	112	69	3
-	-	1	-	-	-	-	-	-	-	-	2	26	-	-
-	-	9	4	-	36	124	-	-	-	154	254	783	382	58
-	-	1	-	-	3	24	-	-	-	10	18	192	23	-
-	-	-	2	-	-	5	-	-	-	-	-	24	-	-
-	-	-	-	-	1	1	-	-	-	-	-	18	-	-
-	-	3	1	-	-	1	-	-	-	2	-	17	-	-
-	-	-	-	-	12	63	-	-	-	50	137	340	55	1
-	-	4	1	-	20	13	-	-	-	9	80	100	191	3
-	-	1	-	-	-	15	-	-	-	78	16	86	112	2
-	-	-	-	ı	-	2	-	-	-	-	-	4	-	-
-	-	-	-	ı	ı	ı	-	-	-	5	3	2	1	52
-	-	1	-	Ī	21	306	-	-	-	339	126	958	255	21
-	-	-	-	Í	6	72	-	-	-	59	21	311	18	5
-	-	-	-	-	1	12	-	-	-	-	1	34	-	
-	-	-	-	-	-	6	-	-	-	-	1	13	-	2
-	-	1	-	-		-	-	-	-	1	-	6	-	
-	-	-	-	-	5	90	-	-	-	141	52	342	30	7
-	-	-	-	-	9	26	-	-	-	13	35	109	45	1
-	-	-	-	-	-	100	-	-	-	125	16	133	162	6
-	-	-	-	-	-	-	-	-	-	-	-	10	-	-
-	-	-	2	-	29	223	104	-	-	842	224	1,267	619	49
-	-	-	1	-	6	52	14	-	-	157	41	464	62	8
_	-	-	-	-	-	16	-	-	-	4	-	55	3	2
-	-	-	-	-	-	1	-	-	-	3	1	14	-	1
-	-	-	-	-	-	-	-	-	-	-	-	2	-	-
-	-	-	1	-	8	89	53	-	-	300	97	414	160	14
-	-	-	-	-	14	35	20	-	-	97	44	105	219	4
-	-	-	-	ī	1	30	17	-	-	281	41	205	175	20
-	-	-	-	-	-	-	-	-	-	-	-	7	-	-
-	-	-	-	-	-	-	-	-	-	-	-	1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6,398	12	5	1,339	3,435	129	653	5	2,274	34
	주거용	8,803	12	5	848	2,361	91	282	-	396	8
	상업업무용	2,578	-	-	97	333	19	215	4	1,414	21
	주상복합용	1,644	-	-	213	519	17	142	-	417	5
7101	공업용	426	_	-	2	2	-	1	_	1	_
강원도	전	12,258	-	-	131	166	2	11	_	14	-
	답	3,900	-	-	17	12	-	-	_	3	-
	임야	6,573	-	-	31	40	-	1	-	2	-
	특수토지	186	-	-	-	1	-	1	-	25	-
	공공용지	30	-	-	-	1	-	-	1	2	-
	합계	3,490	1	-	169	600	20	64	-	260	-
	주거용	1,014	1	-	136	380	17	22	_	41	-
	상업업무용	277		_	9	51	1	21	_	159	
	주상복합용	315		_	21	168	2	21	_	59	-
강원도	공업용	33	-	_	1	_	_	_	_	-	-
춘천시	<u>전</u>	1,082	-	_	_	_	_	_	_	-	-
	 답	248	-	-	-	_	-	-	_	-	_
	임야	495		_	2	1	_	-	_	-	
	특수토지	24		_	-	-	_	_	_	1	
	공공용지	2	-	-	-	-	-	-	-	-	_
	합계	3,456	5	5	233	309	45	89	5	199	2
	주거용	839	5	5	101	209	35	19	_	19	-
	상업업무용	409	_	-	37	76	7	60	4	174	2
	주상복합용	162	_	_	92	22	2	9	_	3	-
강원도	공업용	63	-	-	1	-	-	1	_	-	_
원주시	<u>전</u>	956	_	-	-	1	1	-	_	-	_
	답	471	-	-	-	-	-	-	-	-	_
	임야	532	-	-	2	1	-	-	-	-	-
	특수토지	20	-	-	-	-	-	-	-	2	_
	공공용지	4	-	-	-	-	-	-	1	1	-
	합계	3,651	3	_	148	508	19	98	_	226	18
	주거용	1,056	3	-	76	356	12	44	_	31	4
	상업업무용	379	-	-	12	61	2	40	_	170	12
	주상복합용	153	-	-	17	71	4	12	-	23	2
강원도	공업용	62	-	-	-	2	-	-	_	-	-
강릉시	전	1,021	-	-	34	11	1	2	-	-	-
	 답	359	-	-	1	_	-	-	_	-	_
	임야	606	-	-	8	7	-	-	-	-	-
	특수토지	10	-	-	_	-	_	_	_	2	-
	공공용지	5	-	-	-	_	-	-	_	-	-
	합계	1,216	3	-	68	407	3	39	-	146	-
	주거용	429	3	-	41	247	_	22	-	23	-
	상업업무용	182	-	-	2	57	2	9	-	93	-
	주상복합용	68	-	-	5	37	1	2	_	21	-
강원도	공업용	32	_	-	-	-	-	-	_	-	_
동해시	전 전	280	_	_	14	54	_	5	_	5	_
	답	44	_	_	2	4	_	-	_	3	_
	임야	175	_	-	4	8	-	1	_	-	_
	특수토지	4	_	_	_	_	_	-	_	1	_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	_
L	0001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22	174	147	395	381	3,317	- > \(\)	3	4	2,245	3,375	12,253	5,532	664
_	1	11	51	41	41	665	_	1	1	208	386	3,023	317	54
_	1	15	15	3	6	115	_	_	_	10	7	292	3	8
_	1	6	6	2	4	45	_	_	_	13	5	241	5	3
_	15	116	44	_	1	30	_	_	_	13	22	162	17	-
_	3	13	21	138	145	1,439	_	_	3	831	2,005	5,887	1,238	211
_	-	6	1	22	182	355	_	1	_	116	490	949	1,719	27
_	1	2	8	177	2	636	_	1	_	1,051	458	1,571	2,231	361
	_	5	-	2	_	21	_	_	_	2	2	1,371	2,231	-
_	_	-		10	_	11	_	_	_	1	_	3	_	_
_	_		1				_		_					
		25	3	214	158	836		3		149	142	591	170	85
-	-	2	-	24	25	188	-	1	-	20	15	123	8	11
-	-	4	-	-	2	19	-	-	-	2	-	9	-	-
-	-	-	-	2	1	16	-	_	-	2	2	21	-	-
_	-	18	3	-	-	5	-	_	-	1	-	5	-	-
-	-	1	-	81	75	411	-	-	-	64	100	291	31	28
-	-	-	-	5	53	79	_	1	_	5	19	58	25	3
-	-	-	_	98	2	114	_	1	_	55	6	67	106	43
-	-	-	-	2	-	4	-	-	-	-	-	17	-	-
-	-	-	-	2	-	-	-	-	-	-	_	-	-	-
-	-	20	16	9	32	307	-	-	-	144	328	1,188	470	50
-	-	1	3	2	2	63	-	-	-	18	23	302	28	4
-	-	-	2	-	-	16	-	-	-	2	-	29	-	-
-	-	1	-	-	-	7	-	-	-	1	-	23	-	2
-	-	14	7	-	-	4	_	-	-	1	1	30	4	-
-	-	1	2	1	8	96	-	-	-	27	202	483	117	17
-	-	1	-	-	22	52	-	-	-	6	80	127	182	1
-	-	2	2	6	-	67	-	-	-	89	21	177	139	26
-	-	-	-	-	-	1	-	-	-	-	1	16	-	-
-	-	-	-	-	-	1	-	-	-	-	_	1	-	-
-	-	29	11	88	36	411	-	-	-	127	203	1,255	437	34
-	-	-	3	7	2	114	-	-	-	13	25	335	29	2
-	-	3	1	2	1	20	-	-	-	_	2	52	-	1
_	_	-	_	-	-	7	_	_	-	_	2	14	1	-
_	-	19	6	-	1	3	-	-	-	1	3	24	3	-
_	_	4	-	25	13	168	-	-	-	44	116	527	64	12
_	_	2	-	2	19	42	-	-	-	7	30	104	150	2
_	_	-	1	51	-	53	-	-	-	62	25	192	190	17
_	-	1	-	-	-	1	-	-	-	-	-	6	-	-
-	-	-	-	1	-	3	-	-	-	_	-	1	-	-
-	19	16	21	15	-	357	-	-	-	28	9	14	46	25
-	-	-	13	2	-	65	-	-	-	5	1	3	1	3
-	1	2	2	-	-	12	-	-	-	1	-	1	-	-
-	1	-	1	-	-	-	-	-	-	-	-	-	-	-
_	14	13	1	_	-	4	_	_	-	_	_	_	-	_
_	2	1	2	5	_	146	_	_	_	12	5	9	4	16
_	_	_	1	_	_	28	_	_	_	2	2	_	1	1
_	1	_	1	8	_	97	_	_	_	8	1	1	40	5
_	_	_	_	_	_	3	_	_	_	_	_	_	-	_
_	-	_	_	_	-	2	_	_	_	_	_	-	-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739	-	-	62	142	-	69	-	140	-
	주거용	261	-	-	39	97	-	31	-	40	-
	상업업무용	76	-	-	1	6	-	7	-	51	-
강원도	주상복합용	108	-	-	5	29	-	31	-	41	-
	공업용	19	-	-	-	-	-	-	-	-	-
태백시	전	169	-	-	15	7	-	-	-	6	-
	임야	98	-	-	2	3	-	-	-	1	-
	특수토지	6	-	-	-	-	-	-	-	1	-
	공공용지	2	-	-	-	-	-	-	-	-	-
	합계	973	-	-	134	178	15	47	-	280	2
	주거용	359	-	-	81	138	9	30	-	64	_
	상업업무용	239	-	-	13	18	4	8	-	175	2
7101=	주상복합용	99	-	-	26	19	2	9	-	35	
강원도	공업용	11	-	-	-	-	-	_	-	-	
속초시	전	128	-	-	9	2	-	-	-	2	-
	답	56	-	-	3	-	-	-	-	-	-
	임야	69	-	-	2	1	-	_	-	-	-
	특수토지	12	-	-	-	-	-	_	-	4	-
	합계	2,458	-	-	57	296	14	39	-	130	_
	주거용	580	-	-	24	186	10	18	-	32	_
	상업업무용	95	_	_	-	10	1	9	-	59	_
	주상복합용	103	_	_	5	29	3	11	_	35	_
강원도	공업용	28	_	_	_	_	_	_	_	1	_
스 스 삼척시	<u> 전</u>	879	_	_	23	55	_	1	_	_	_
	답	188	_	_	3	3	_	_	_	_	_
	임야	569	_	_	2	13	_	_	_	1	_
	특수토지	15	_	_	_	-	_	_	_	2	_
	공공용지	1	-	_	_	_	_	_	_	-	_
	합계	2,729	_	_	43	110	_	11	_	65	_
	주거용	529	_	_	27	62	_	3	_	1	_
	상업업무용	94	_	_	1	7	_	7	-	49	_
	주상복합용	103	_	_	8	41	_	1	_	14	_
강원도	공업용	17	-	_	-	-	-	-	-	-	_
홍천군	전	1,099	-	-	5	_	-	-	-	-	_
	답	342	-	_	2	_	-	-	-	-	_
	임야	529	-	-	-	-	-	-	-	-	-
	특수토지	16	-	_	-	_	-	-	-	1	_
	합계	2,174	-	_	44	26	-	25	-	46	_
	주거용	432	_	_	34	16	_	11	_	-	_
	상업업무용	83	-	-	2	2	-	10	-	42	_
	주상복합용	33	-	-	6	8	-	4	-	3	
강원도	공업용	27	-	-	-	-	-	-	-	-	-
횡성군	<u>전</u>	888	_	-	_	_	-	_	_	-	-
	답	292	-	-	-	-	-	-	-	-	_
	임야	405	-	-	2	-	-	-	-	-	-
	특수토지	13	-	-	-	-	-	-	-	1	_
	공공용지	1	-	-	-	-	-	-	-	-	_
	합계	2,136	-	-	110	57	2	17	-	92	_
	주거용	482	-	-	94	45	1	7	-	22	-
	상업업무용	93	-	-	8	4	1	6	-	53	-
	주상복합용	63	-	-	8	7	-	4	-	16	-
강원도	공업용	16	-	-	-	-	-	-	-	-	-
영월군	전	1,080	-	-	-	-	-	-	-	-	-
	답	70	-	-	-	-	-	-	-	-	-
	임야	324	-	-	-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L			1					1	1	1	1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11	18	4	-	71	_	-		29	34	92	57	10
_	_	2	7	_	_	11	_	_	_	3	5	21	5	-
_	_	_	1	1	_	3	_	_	_	_	1	4	_	1
		_	2	-	_	-	_	_	_	_	-	_	_	-
_	_	8	5	_	_	2	_	_	_	_	_	4	_	_
_	_	1	2	1 _	_	30	-	_	_	12	21	45	23	6
			1			25	-			14	7	13	29	3
-	_	-	-	-	-	_	-	-	-	-	_	5	_	-
_	-	-	-	2	-	-	-	-	-	-			_	-
-	-	15	5	25	18	220	-	-	_	-	_	4	-	30
_	-	1	_	2	-	33	-	-	-	-	-	1	-	-
_	-	1	2	-	1	13	-	-	-	-	_	_	-	2
-	-	2		-	2	4	-	-	-	-	-	-	-	-
_	-	10	1	-	-	-	-	-	-	-	-		-	-
-	_	1	1	10	9	86	-	-	-	-	-	1	-	7
-	-	-	_	10	6	37	-	-	-	-	-	-	-	-
-	-	-	1	3	-	41	-	-	-	-	-	-	-	21
-	-	-	-	-	-	6	-	-	-	-	-	2	-	-
-	3	25	34	10	14	309	-	-	-	99	271	812	289	56
-	1	4	16	2	-	41	-	-	-	5	35	196	6	4
_	-	2	1	-	-	6	-	-	-	_	_	7	-	-
-	-	2	2	-	-	5	-	-	-	-	-	10	-	1
-	1	11	2	-	-	5	-	-	-	-	-	8	-	-
-	1	2	11	3	2	145	-	-	-	45	147	391	25	28
-	-	1	_	2	12	14	-	-	-	5	29	69	48	2
-	-	-	2	2	-	90	-	-	-	44	60	125	209	21
-	-	3		-	-	3	-	-	-	-	-	6	1	-
-	-	-	-	1	-	-	-	_	-	-	-	-	-	-
-	-	11	-	3	25	126	-	_	-	137	441	1,104	643	10
-	-	1	_	-	4	24	-	-	-	7	64	281	54	1
-	-	-	_	-	-	5	-	-	-	-	1	24	-	_
_	-	-	-	_	-	-	-	_	-	_	_	37	2	_
_	_	8	_	-	_	1	-	_	-	2	1	5	_	_
_	_	_	_	1	7	48	-	_	-	29	293	528	182	6
_	_	2	_	2	14	25	-	_	-	-	46	75	176	_
_	_	_	_	_	_	23	_	_	_	98	36	140	229	3
_	_	_		_	_	_	_	_	_	1	-	14	-	_
_	_	5	6	_	16	44	_	_	_	74	274	1,137	424	53
_	_	-	1	_	-	8	_	_	_	10	39	285	21	7
_	_	_	_	_	2	4	_	_	_	-	-	21	_	_
_	_	_	_	_	1	-	_	_	_	_	_	11	_	_
_	_	4	2	_	-	1	_	_	_	1	1	17	1	_
_	_	1	3	_	5	15	_	_	_	30	147	567	108	12
_	_	_	_	_	8	7	_	_	_	4	35	95	137	6
_	_	_	_	_	-	9	_	_	_	29	52	128	157	28
_	_	_	_	_	_	-	_	_	_	-	-	120	-	_
_	_	_		_	_	_	_	_	_	_	_	12	_	_
_	_	5 -	9	5 -	10	71	_	-	_	200	252	951	353	2
			4		1	13	-			13	38	223	21	
_	-	-	2	_	-	2	-	_	_	2	2	13	-	-
-	-	-		_	_	2	-	-	_	4	-	22	_	-
	-	3	3	-	-	3	-	-	_	-	-	7	-	-
_	-	1	_	3	9	35	-	-	-	109	179	596	146	2
-	-	-	-	-	-	2	-	-	-	3	9	20	36	-
-	-	-	-	1	-	14	-	-	-	69	24	66	149	-
-	-	1	-	-	-	-	-	-	-	-	_	4	1	-
_	_	_	_	1	_	_	_	-	_	_	_	_	_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248	-	-	23	86	-	24	-	66	1
	주거용	478	-	-	15	69	_	12	-	9	1
	상업업무용	104	-	_	3	8	_	7	-	39	_
	주상복합용	38	-	-	_	7	_	4	-	15	_
강원도	공업용	8	_	-	_	_	-	-	_	-	_
평창군	전	1,054	_	_	5	1	_	_	_	_	_
005	답	31	_	_	_		_	_	_	_	_
	임야	512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22	_	_	_	1	_	1	_	3	_
	공공용지	1	_	_	_	<u> </u>	_		_	_	_
	합계	2,106	_	_	34	166	2	25	_	181	2
	주거용	481	_	_	20	116	2	13	_	51	_
	상업업무용	96	_	_	1	2	_	1	_	68	2
	주상복합용	103	_	_	2	17	_	8	_	59	_
강원도		17	_	_		- 17	_	-	_	- 59	_
	공업용			_			_			_	
정선군	전	911	-		10	25		3	_	_	_
	답	39	-	-	-	3	-	-	-	-	-
	임야	440	-	-	1	2	-	-	_	-	-
	특수토지	10	-	-	_	-	_	-	_	2	_
	공공용지	9	-	-	-	1	-	-	-	1	-
	합계	2,124	-	-	65	207	-	15	-	118	6
	주거용	467	-	-	48	171	-	8	-	28	3
	상업업무용	98	-	-	2	13	-	2	-	70	1
강원도	주상복합용	72	-	-	9	20	-	5	-	19	2
철원군	공업용	28	-	-	-	-	-	-	-	-	-
걸건군	전	458	-	-	4	3	-	-	-	-	-
	답	679	-	-	2	ı	-	-	-	-	-
	임야	319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합계	1,071	-	-	28	47	-	12	-	51	-
	주거용	202	-	-	12	36	-	3	-	7	_
	상업업무용	49	-	-	1	5	-	3	-	33	-
강원도	주상복합용	29	-	-	1	4	-	6	-	10	-
화천군	공업용	8	-	-	-	-	-	-	-	-	-
	전	448	-	-	10	2	-	-	-	1	-
	답	84	-	-	3	-	_	_	-	-	_
	임야	251	-	-	1	-	-	-	-	-	-
	합계	1,176	-	-	3	51	-	15	-	40	-
	주거용	217	_	-	2	36	-	7	_	2	-
	상업업무용	55	-	-	-	2	-	7	-	33	-
7101=	주상복합용	32	_	_	1	12	-	1	_	4	_
강원도	공업용	14	_	_		-	_	_	_	_	_
양구군	전	452	_	_	_	_	_	_	_	_	-
	답	175	_	_	-	_	_	_	_	_	-
	임야	230	_	_	_	1	_	_	_	_	_
	특수토지	1	_	_	_		_	_	_	1	_
	합계	1,458	_	_	20	134	8	29	_	106	3
	주거용	347	_	_	15	105	4	16	_	13	-
	상업업무용	99	_	_	2	4	1	5	_	61	2
			_	_					_		
강원도	주상복합용 고려요	79		_	1	19	3	8		31	1
인제군	공업용	16	-		-				-		-
	전	541	-	-	1	5	-	-	-	-	-
	답	118	-	_	1	1	-	-	_	-	-
	임야	253	_	_	_	_	-	-	_	-	-
	특수토지	5	-	-	-	-	_	-	_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	_	2	4	62	-	-		236	335	1,052	336	21
_	_	_		_	_	14	_	_	_	27	55	246	29	1
_	_	_	_	-	_	2	_	_	_	2	1	42	_	_
_	_	_	_	_	_	_	_	_	_	1	_	11	_	_
_	_	_	_	_	_	_	_	_	_	_	1	7	_	_
_	_	_		1	4	34	_	_	_	101	219	557	125	7
_	_	_	_	_	_	4	_	_	_	4	2	1	20	_
_	_	_		_	_	8	_	_	_	101	56	172	162	13
_	_	_	_	_	_	_	_	_	_	-	1	16	-	-
_	_	-	_	1	-	_	_	_	_	_	-	-	_	_
_	_	4	12	5	14	148	_	_	_	204	159	728	388	34
_	_		3	1	2	30	_	_	_	25	18	167	27	6
_	_	_	2	-	_	6	_	_	_	_	-	14	-	-
_	_	_	1	-	_	1	_	_	_	_	_	15	_	_
_		4	5	_	_	_	_	_	_	1	1	5	1	_
_	_	-	-	1	5	72	_	_	_	85	100	461	129	20
_	_	_	_	-		3	_	_	_		-		22	-
_	_	_			7		_	_	_	2		2		
_		_		2		30	_		_	89	40 -	59	209	8 –
	_	_			-	2		-		1	_	5	-	_
_	_		1	1	-	4	-	_	-	100			- 074	
_	-	3	2	6	28	113	-	-	-	108	203	452	674	124
_	-	-	_	1	3	18	-	-	-	8	9	147	23	-
_	-	_		-	_	1	-	-	-	-	-	9	-	-
	-	-	-	_	-	2	-	-	-	3	1	10	1	-
_	-	3	2	-	-	1	_	-	_	1	3	16	2	-
_	_	-	_	3	6	48	-	-	-	38	95	153	107	1
_	-	-	-	-	19	30	-	-	-	12	65	74	472	5
_	-	-	_	2	_	13	-	-	_	46	30	41	69	118
_	-	-	-	-	-	-	-	-	-	-	-	2	-	-
	_	-	2	-	8	46	-	-	-	94	128	425	180	50
	_	-	_	_	2	9	-	-	-	12	10	90	14	7
_	-	-	_	-	-	1	-	_	-	-	-	4	-	2
-	-	-	-	-		-	-	-	-	1	-	7	-	-
-	_	-	2	-		-	-	-	-	-	-	6	-	-
-	-	-	-	-	2	22	-	-	-	20	90	237	41	23
_	-	-	-	-	4	6	-	-	-	5	6	23	34	3
_	-	-	-	-	_	8	-	-	-	56	22	58	91	15
-	-	-	4	-	-	19	-	-	-	118	148	506	252	20
_	-	-	1	-	-	3	-	-	-	7	18	120	19	2
_	-	-	1	_	-	-	-	-	-	1	-	11	-	-
-	-	-	-	-	-	-	-	-	-	-	-	14	-	-
-	-	-	2	-	-	-	-	-	-	1	4	7	-	-
_	-	-	-	-	-	10	-	-	-	44	87	235	71	5
-	-	-	ı	-	-	2	-	-	-	8	27	57	79	2
_	-	-	-	-	-	4	-	-	-	57	12	62	83	11
-	-	-	-	-	-	-	-	-	-	-	-	-	-	-
-	-	-	3	1	2	55	-	-	-	112	134	626	200	25
-	-	-	ı	ı	ı	12	-	-	-	6	15	144	14	3
-	-	-	ı	ı	ı	4	-	-	-	-	-	18	1	1
-	-	-	ı	ı	ı	-	-	-	-	-	-	16	ı	-
-	-	-	3	-	-	1	-	-	-	-	4	7	1	-
-	-	-	-	-	-	27	-	-	-	41	87	337	36	7
-	-	-	-	1	2	4	-	-	-	5	14	46	44	-
-	-	-	-	-	-	7	-	-	-	60	14	54	104	14
_	_	-	-	-	-	_	-	-	-	_	-	4	_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477	_	_	86	28	1	20	-	63	_
	주거용	312	_	-	75	22	1	10	_	8	_
	상업업무용	56	_	_	2	1	_	6	_	30	_
	주상복합용	57	_	_	4	4	_	4	_	24	_
강원도	공업용	19	_	_	<u> </u>		_	_	_	_	_
고성군	<u> </u>	320	_	_	1	_	_	_	_	_	_
工名工	<u></u> 단	376	_	_		_	_	_	_	_	_
	임야	325	_	_			_	_	_	_	_
	특수토지	11		_	4	1 _		_		1	
		1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_	12	83		15			
	합계	1,716		_			_			65	
	주거용	318	-		8	70		6		5	
	상업업무용	94	_	-	1	6	-	7	-	55	_
7101=	주상복합용	27	-	-	2	5	-	2	-	5	
강원도	공업용	8	-	-	-	-	-	-	-	-	-
양양군	전	492	-	-	-	-	-	-	-	-	-
	답	328	-	-	-	1	-	-	-	-	-
	임야	441	-	-	1	1	-	-	-	-	-
	특수토지	7	-	-	-	-	-	-	-	-	-
	공공용지	1	-	-	-	-	-	-	-	_	-
	합계	30,363	9	2	1,241	2,213	19	382	14	1,304	39
	주거용	7,000	9	2	712	1,300	16	93	-	163	_
	상업업무용	2,088	-	-	146	318	3	203	13	929	33
	주상복합용	1,198	-	-	284	478	-	71	-	180	3
	공업용	614	-	-	2	1	-	1	-	2	_
충청북도	전	10,603	_	_	67	77	_	5	-	14	2
	답	4,695	_	-	24	25	_	6	_	5	1
	임야	4,053	_	_	5	14	_	3	_	1	_
	<u></u> 특수토지	88	_	_	1	_	_	_	1	10	_
	공공용지	24	_	_		_	_	_	-	-	_
	합계	2,129	1	_	170	237	_	48	_	206	13
	주거용	574	1	_	102	136	_	14	_	23	-
	상업업무용	285	_	_	22	40	_	21	_	159	13
충청북도	주상복합용	141	_	_	41	57	_	12	_	23	-
청주시	공업용	13	-	_	-	-	_	-	_	-	-
	<u> </u>	474	_	_	4	1	_	_	_	1	_
상당구							_		_	_	
	답	380	-	-	1	3		1		_	_
	임야	258	-	-		_	-	-	-	_	
	특수토지	4	_	-	-	-	-	-	-	-	-
	합계	1,284	_	-	175	199	8	56	-	54	-
	주거용	391	_	-	99	112	5	15	-	11	-
* 카디드	상업업무용	172	-	-	26	31	3	36	-	37	_
충청북도	주상복합용	120	-	-	45	53	-	4	-	5	-
청주시	공업용	42	-	-	-	-	-	-	-	1	
서원구	전	221	_	-	1	1	-	-	-	-	-
	답	213	-	-	4	1	-	-	-	-	-
	임야	122	-	-	-	1	-	1	-	-	-
	특수토지	3	-	-	-	-	-	-	-	-	-
	합계	1,781	ı	-	218	154	2	60	8	77	-
	주거용	429	-	-	88	76	2	6	-	8	-
	상업업무용	206	-	-	27	35	-	36	7	57	-
충청북도	주상복합용	164	-	-	94	37	-	10	-	1	-
	공업용	66	_	_	1	1	_	_	_	1	_
청주시	전	319	-	_	6	4	-	2	-	6	-
흥덕구	답	431	_	_	2	1	_	4	_	4	_
	임야	156	_	_	_	_	_	2	_	-	_
	투수토지	4	_	_	_	_	_	_	1	_	_
	공공용지	6	-	_		_	_	_	-	_	_
	000/1	l o		l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5	_	4	11	60		-	4	140	147	606	289	13
_	_	_	_	-	-	7	_	_	1	6	6	166	8	2
_	_	3	_	_	_	1	_	_	_	-	_	13	-	_
_	_	1	_	_	_	1	_	_	_	1	_	17	1	_
	_		_	_	_	_	_	_	_					
		1								2	3	9	4	
_	-	-	-	2	-	21	-	-	3	38	48	193	11	3
_	-	-	-	-	11	9	-	-	-	13	75	93	173	2
-	-	-	-	2	-	20	-	-	-	80	15	105	92	6
-	-	-	-	-	-	-	-	-	-	-	-	10	-	-
-	-	-	-	-	-	1	-	-	-	-	_	-	-	-
_	-	-	1	4	5	62	-	_	_	246	167	710	324	22
_	-	_	_	-	-	12	-	_	-	23	10	173	10	1
_	-	-	1	-	-	_	-	_	-	-	_	21	2	1
-	-	-	-	-	-	-	-	-	-	-	-	13	-	-
-	-	-	-	-	-	-	-	-	-	2	-	5	1	-
-	-	-	-	1	-	25	-	-	-	92	69	276	18	11
-	-	_	_	_	5	11	-	_	-	35	51	105	120	-
-	-	-	-	2	_	13	-	-	-	94	37	111	173	9
_	_	_	_	_	_	1	_	_	_	-	-	6	-	-
_	_	_	_	1	_	_	_	_	_	_	_	_	_	_
10	_	273	108	265	530	2,762	274	9	1	3,416	3.163	8.743	4,725	861
-	_	17	13	31	41	628	12	2	-	285	298	3,016	240	122
4	_	8	28	3	10	130	6	_	_	16	15	207	8	8
_	-	-	17	-	2	36	-	-	-	6	2	108	2	9
-	-	158	35	2	2	50	-	_	-	13	21	310	17	-
3	-	40	8	74	121	1,090	112	5	1	1,904	1,944	3,492	1,266	378
2	-	24	3	25	352	454	88	-	-	226	572	822	1,975	91
_	-	26	4	123	2	358	56	2	-	962	308	722	1,215	252
1	-	-	-	-	-	8	-	_	-	2	_	62	2	1
_	-	-	_	7	-	8	-	_	-	2	3	4	-	-
1	-	-	-	116	67	259	-	-	-	75	162	349	233	192
-	-	-	-	17	1	68	-	-	-	5	20	138	13	36
1	-	-	-	2	2	10	-	-	-	2	1	12	-	-
-	-	-	-	-	-	3	-	-	-	-	-	5	-	-
-	-	_	_	_	-	-	_	_	-	_	1	11	1	-
_	-	_	-	32	8	94	_	_	-	26	83	121	41	63
_	_	_	_	12	56	56	_	_	_	1	31	36	127	56
_	_	_	_	53	-	27	_	_	_	41	26	23	51	37
_	_	_	_	-	_	1	_	_	_	-	-	3	-	-
	_	6	2	39	20	286	148	_	_	35	48	156	43	9
_	_	-	_		3			_	_					
	_	_	_	8		78	9	_	_	3	5	40 9	2	1
				1	1	22	5				1			
-	-	-	-	-	1	11	_	-	-	-	-	1	-	-
-	-	6	2	-	-	5	-	-	-	1	2	25	-	-
_	-	-	-	9	3	87	42	-	-	10	18	42	5	3
-	-	-	-	1	12	56	63	-	-	3	21	28	21	3
-	-	-	-	20	-	27	29	-	-	18	1	8	15	2
_	-	-	-	-	-	-	-	-	-	-	-	3	-	-
4	-	44	52	47	94	417	-	9	-	56	73	255	211	1
-	-	6	8	4	3	102	-	2	-	5	8	94	17	-
1	-	2	19	-	1	10	-	-	-	-	-	11	-	-
-	-	-	12	-	-	4	-	-	-	-	-	6	-	-
_	-	19	9	1	_	20	_	-	-	-	_	13	1	_
1	_	7	3	9	15	114	_	5	_	17	27	67	36	_
2	_	5	_	4	74	117	_	_	_	6	32	44	136	_
_	_	5	1	26	1	47	_	2	-	28	6	17	21	_
_	_	-	-	-	-	-	_	_	_	-	-	3	-	_
_	_	_	_	3	_	3	_	_	_	_	_	-	_	_
	_					J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755	7	-	193	157	4	36	6	61	8
	주거용	463	7	-	118	88	4	13	-	9	-
	상업업무용	198	-	-	30	47	-	21	6	47	8
충청북도	주상복합용	72	-	-	40	21	_	2	-	5	-
청주시	공업용	68	-	-	1	-	-	-	-	-	-
청원구	전	399	-	-	3	1	_	-	-	-	-
	답	354	-	-	-	-	_	-	-	-	-
	임야	195	-	-	1	-	_	-	-	-	-
	특수토지	6	-	-	-	-	_	_	_	-	-
	합계	4,022	-	2	109	432	2	22	-	263	10
	주거용	990	-	2	67	251	2	6	-	30	-
	상업업무용	285	-	-	6	41	_	7	-	185	8
	주상복합용	225	-	-	21	137	_	7	-	44	-
충청북도	공업용	77	-	-	-	-	_	1	-	-	-
충주시	전	1,358	-	-	10	2	ı	1	-	2	2
	답	604	-	-	5	-	-	-	-	-	-
	임야	459	-	-	-	1	-	-	-	-	-
	특수토지	21	-	-	-	-	_	-	-	2	-
	공공용지	3	-	-	-	-	_	_	-	-	-
	합계	2,889	-	-	29	292	-	29	-	150	3
	주거용	681	-	-	15	171	-	7	-	13	-
	상업업무용	228	-	-	1	40	-	20	-	113	2
	주상복합용	134	-	-	10	75	-	2	-	22	1
충청북도	공업용	35	-	-	-	-	_	-	-	-	-
제천시	전	1,073	-	-	2	5	_	-	-	-	-
	답	276	-	-	-	-	_	-	-	-	-
	임야	448	-	-	1	1	-	-	-	-	
	특수토지	9	-	-	-	-	-	-	-	2	-
	공공용지	5	-	-	-	-	-	-	-	-	-
	합계	2,063	-	-	17	113	_	11	-	63	-
	주거용	403	-	-	8	71	_	1	-	10	-
	상업업무용	57	-	-	-	5	-	3	-	37	-
소원보드	주상복합용	42	-	-	1	12	_	7	-	14	-
충청북도	공업용	19	-	-	-	-	-	-	_	-	-
보은군	전	756	-	-	6	16	-	_	-	2	-
	답	394	-	-	1	9	-	-	-	-	-
	임야	389	-	-	1	-	ı	-	-	-	-
	특수토지	3	-	-	-	-	-	-	-	-	-
	합계	2,407	-	-	27	125	ı	9	-	66	-
	주거용	485	-	-	16	88	-	3	-	15	-
	상업업무용	61	-	-	1	8	ı	3	-	31	-
	주상복합용	55	-	-	6	9	ı	2	-	20	-
충청북도	공업용	42	-	-	-	-	-	-	-	-	-
옥천군	전	1,014	-	-	3	18	-	1	-	-	-
	답	325	-	-	1	1	-	-	-	-	-
	임야	419	-	-	-	1	-	-	-	-	-
	특수토지	3	-	-	-	-	-	-	-	-	-

0.11	되고	017	X 7	니티	411.4.1	TIM	711711	n I T J	7171	шп	41171	71171	L-31	TI니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_	_	34	4	41	64	269	_	_	-	70	135	486	180	-
_	_	1	-	1	2	61	-	_	_	7	6	138	8	-
_	_	-	1	-	1	20	-	_	_	_	-	17	_	-
_	-	-	-	-	-	4	_	_	_	-	-	-	-	-
_	-	11	1	1	-	15	_	_	-	1	2	35	1	-
_	-	12	-	15	3	94	_	-	-	20	57	163	31	-
_	-	4	1	4	58	43	_	_	_	5	54	64	121	-
_	-	6	1	20	_	32	_	-	_	37	16	63	19	-
_	-	-	-	-	_	_	_	-	_	-	-	6	-	-
1	-	26	9	2	84	384	-	-	-	353	603	1,154	533	33
_	-	-	-	-	6	87	-	-	-	23	76	407	28	5
1	-	-	1	-	1	13	-	-	-	1	1	18	-	2
_	-	-	-	-	1	2	-	_	-	-	-	12	1	-
_	-	22	8	-	1	1	-	-	-	-	4	39	1	-
_	-	2	-	2	24	183	-	-	-	157	378	474	103	18
	_	1	-	-	51	45	_	-	_	21	107	121	253	-
-	-	1	-	-	-	49	-	-	-	148	37	68	147	8
-	-	-	-	-	-	3	-	-	-	1	_	15	-	-
-	-	-	-	-	-	1	-	-	-	2	-	-	-	-
-	-	20	16	1	46	318	-	-	1	157	468	956	350	53
_	-	1	3	-	9	64	-	-	-	10	51	307	26	4
_	-	-	4	-	2	21	-	-	-	1	3	19	1	1
_	-	-	3	-	-	9	-	-	-	_	1	9	1	1
_	-	15	5	-	-	1	-	-	-	1	1	12	-	-
-	-	3	-	1	16	124	-	-	1	85	288	439	84	25
-	-	-	1	-	18	41	-	-	-	1	38	74	101	2
-	-	1	-	-	1	55	-	-	-	59	83	90	137	20
-	-	-	-	-	-	2	-	-	-	-	-	5	-	-
-	-	-	-	-	-	1	-	ı	-	-	3	1	-	-
-	-	9	4	3	28	63	-	-	-	342	157	629	499	125
-	-	-	1	-	3	22	-	-	-	23	9	228	13	14
-	-	-	-	-	-	-	-	-	-	2	-	10	-	-
-	-	-	1	-	-	-	-	-	-	-	-	6	-	1
_	-	8	2	-	-	1	_	-	-	1	_	7	-	_
_	-	-	_	-	5	26	_	-	-	193	97	233	120	58
_	-	-	-	2	20	4	-	-	-	34	30	55	230	9
_	_	1	-	1	-	10	_	ı	-	89	21	87	136	43
_	_	_	-	-	-	_	_	_	_	_	-	3	-	_
_	-	21	2	2	27	148	126	1	-	514	97	529	375	339
-	_	1	1	_	2	35	3	_	_	30	7	221	9	54
-	-	1	-	-	-	7	1	-	-	2	-	6	1	-
-	-	-	-	-	-	1	-	-	-	1	-	9	-	7
-	-	14	1	-	1	1	-	-	-	3	1	21	-	-
-	-	3	-	-	15	68	70	-	-	324	61	189	100	162
_	_	1	_	_	9	15	25	-	_	53	16	44	141	19
_	_	1	_	_	-	20	27	-	-	101	12	37	124	96
_	_	_	_	_	_	_	_	_	-	_	_	2	_	1
_	-	-	-	2	-	1	-	-	-	-	_	-	-	-
	1		ı			· · · · · ·				ı			L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814	-	-	45	111	-	25	-	67	-
	주거용	528	_	_	35	79	_	9	_	9	_
	상업업무용	87	_	_	2	7	_	5	_	55	_
	주상복합용		_	_		22		11	_	3	_
		48			2		-				
충청북도	공업용	22	-	-	-	-	-	-	-	-	-
영동군	전	1,456	-	-	4	2	-	_	-	-	-
	답	288	_	_	1	1	-	_	_	_	-
	임야	382	-	-	1	-	-	-	_	-	-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_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728	_	_	7	122	1	10	_	46	_
	주거용	185	-	-	2	69	1	3	-	2	-
	상업업무용	91	-	_	1	29	-	6	_	42	_
	주상복합용	26	-	-	3	20	-	1	-	1	-
충청북도	공업용	21	-	-	-	-	-	-	-	-	-
증평군	전	193	-	-	-	3	-	-	-	-	-
	답	144	-	-	1	1	-	-	-	-	-
	임야	64	-	-	-	-	-	-	-	-	-
	특수토지	3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1,805	1	_	63	44	1	18	-	64	1
	주거용	409	1	-	43	28	1	2	-	9	-
	상업업무용	111	-	-	8	8	_	13	_	47	1 -
춰ᄇᆮ	주상복합용	31		_	10	6	_	3	_	7	
충청북도 진천군	- 공업용 전	67 489	-	_	2	1	_	_	_	_	_
선선군	답	476	_	_	_	1	_	_	_	_	_
	임야	214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7	_	-	_	_	-	_	_	1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2,321	-	-	35	43	-	17	-	37	-
	주거용	515	-	-	27	27	-	4	-	3	
	상업업무용	97	-	-	3	6	-	12	-	31	_
충청북도	주상복합용	31	-	-	1	8	-	1	-	2	-
괴산군	공업용	28	-	-	-	-	-	-	-	-	-
-126	전	1,043	-	-	2	1	-	-	-	-	-
	답	265	-	-	2	1	-	-	-	-	-
	임야	340	_	_	_	_	-	_	_	-	_
	특수토지	2	-	_	-	-	-	-	-	1	-
	합계 조권요	2,536	_	_	143	93	1	33	_	97	1
	주거용 상업업무용	552	-	-	85	43	1 –	17	-	15	-
	주상복합용	161 50	_	_	19 9	19 9	_	17 6	_	63 14	_
충청북도	공업용	90	_	_	-	-	_	-	_	14	_
음성군	<u> </u>	866	_	_	22	13	_	1	_	1	_
	답	498	_	_	6	6	_	1	_	1	1
	임야	303	_	_	1	3	_	-	_	-	-
	특수토지	14		_	1	-	_	_	_	3	-
	공공용지	2	-	_	-	-	-	-	_	-	-
				1	İ	İ	l .	I .	-	1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8	2	8	21	182	- 1111	-10	-	600	387	744	603	1
	-	-	-	1	-	33	-	-	-	33	22	286	21	-
_	_	-	1	-	_	4	-	_	-	1	1	9	2	-
_	-	-	-	-	-	2	-	-	-	-	-	8	-	-
-	_	11	1	-	-	1	-	-	-	-	-	8	1	-
-	-	6	-	5	10	105	-	-	-	411	303	331	278	1
_	_	_	_	1	11	17	_	_	_	42	31	52	132	_
	_	1	_	1	_	20	_	_	_	113	30	47	169	_
	_	_	_	_	_		_	_	_	-	_		-	_
						-						2		
_	-	-	-	-	-	-	-	-	-	-	-	1	-	-
_	-	9	1	-	2	106	-	-	-	57	73	183	111	-
_	_	- 1	-	_	1	20	_	_	_	4	7	68	8	_
	_	1 –	_	_	_	6	_	_	_	_	2	1	_	_
_	_	8	1	_	_	1	_	_	_	1	2	8	_	_
_	_	-	-	-	-	44	_	_	_	28	43	56	19	_
_	-	-	-	-	1	24	-	-	-	6	15	21	75	-
-	-	-	-	-	-	11	-	-	-	18	4	22	9	-
_	_	_	_	-	-	_	_	-	-	_	_	2	-	_
_	_	-	_	-	-	_	-	-	-	_	-	1	-	-
_	-	21	2	1	31	101	_	_	-	215	135	698	409	-
_	-	2	-	-	3	20	-	-	-	28	22	224	26	-
	_	1	1	-	1	8	-	_	-	3	1	17	2	-
	-	-	1	-	-	-	-	-	-	1	-	3	-	-
_	_	13	_	_	3	41	_	_	_	107	3 57	42 215	4 62	_
	_	3	_	_	24	19	_	_	_	25	45	120	239	_
_	_	1	_	_	_	12	_	_	_	47	7	71	76	_
_	_	-	_	_	_	-	_	_	_	-	_	6	-	_
_	_	_	_	1	-	_	_	_	_	_	_	-	-	-
-	-	6	-	1	12	43	-	-	-	393	263	919	509	43
-	-	-	-	-	3	11	-	-	-	45	33	321	37	4
-	-	1	-	-	1	1	-	-	-	1	3	34	-	4
-	-	-	-	-		-	-	-	-	1	1	17	-	-
-	-	5	-	-	-	-	-	-	-	-	1	20	2	-
_	_	_	_	_	5	22	_	_	_	226	156	413	199	19
_	_	_	_	1	3	3	_	_	_	16 104	39	46 67	154	1
	_	_	_	_	_	6	_	_	_	-	30	67	117	15 –
4	_	52	11	1	32	86	_	_	_	147	412	947	476	_
-	-	6	-	-	5	17	-	-	-	7	15	324	26	-
1	-	2	-	-	-	4	-	-	-	-	2	32	2	-
-	-	-	-	-	-	-	-	-	-	-	-	12	-	-
-	-	20	3	-	-	1	-	-	-	-	4	57	5	-
2	-	6	5	1	13	36	-	-	-	52	250	328	136	-
-	-	10	1	-	14	11	-	-	-	5	110	104	228	-
-	-	8	2	-	-	15	-	-	-	82	31	82	79	-
1	-	-	-	-	-	-	-	-	-	1	-	8	-	-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829	-	-	10	91	-	8	_	53	3
	주거용	395	_	_	7	61	_	2	_	6	_
	상업업무용	49	_	_		2	_	3	_	25	1
	주상복합용	59	_	_	1	12	-	3	-	19	2
충청북도	공업용	24	-	-	-	-	-	-	-	-	-
단양군	전	942	-	-	2	9	-	-	-	2	-
	답	47	_	_	-	-	-	-	-	-	-
	임야	304	-	-	-	7	-	-	-	1	-
	특수토지	7	-	-	-	-	-	-	-	-	-
	공공용지	2	_	_	_	_	_	_	_	-	_
	합계	46,106	13	3	681	3,387	31	369	13	1,392	44
	주거용	10,424	12	3	358	1,708	24	66	_	198	8
	상업업무용	2,703	_	_	54	655	2	206	13	1,000	27
	주상복합용	1,417	-	_	143	674	4	86	_	166	8
	공업용	800	_	_	1	15	_	1	_	_	_
충청남도	<u> </u>	12,329	_	_	82	233	1	2	_	1	1
	답	12,293	1	_	35	70	_	6	_	10	_
	임야	6,003	_	_	6	31	_	_	_	-	_
			_	_	_						
	특수토지	123				1	-	2	-	17	-
	공공용지	14	-	-	2	-	-	-	-	-	-
	합계	2,375		-	68	441	9	6	-	182	12
	주거용	620	_	_	32	212	5	- 4	_	36	3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284 156	_	_	6 13	100 97	4	1	_	126 19	5
충청남도	공업용	66	_	_	-	3	-	_	_	-	-
천안시	<u> </u>	516	_	_	13	17	_	_	_	_	_
동남구	답	471	_	_	3	8	_	1	_	_	_
	임야	247	_	_	1	4	_	_	_	_	_
	특수토지	12	_	-	_	_	-	-	-	1	_
	공공용지	3		_	-		_	_	_	-	
	합계	1,686	_	-	25	413	4	35	-	83	1
	주거용	382	-	-	9	140	3	3	-	8	1
	상업업무용	238	_	-	2	106	1	21	-	67	-
충청남도	주상복합용	182	ı	-	9	140	-	11	-	8	-
천안시	공업용	83	-	-	-	8	-	-	-	-	-
서북구	전	438	-		4	14	-	-	-	-	-
	답	264	-	-	1	4	-	-	-	-	-
	임야	97	-	-	_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	-
	합계	3,853	2	-	10	260	1	48	-	100	7
	주거용	817	1	-	9	159	1	9	-	12	3
	상업업무용	199	_	-	1	34	-	29	-	82	3
충청남도	주상복합용	88	-	-	-	47	-	9	-	4	1
공주시	공업용	42	-	-	_	-	-	_	-	-	-
	전	1,114	-	-	-	13	-	-	-	-	
	답 임야	1,075	1 -	-	-	5 2	-	1 -	-	_	-
	특수토지	510 8	_	_	_	_	_	_	_	2	_
	7121			l			l	L	L		

	OAL	1 7 7	OL 7		보전	المالما	자연	711711	D174	관리	Hal	생관	레리	L 21	자보
	유상	전공	일공	준공		생산		개제	미정		보관		계관	농림	
	_	_		3	3	2	100		_	_					66
	_	-	-	-	_	-	10	-	_	-	62	17	220	6	4
□ □ □ □ □ □ □ □ □ □ □ □ □ □ □ □ □ □ □	-	-	-	1	_	_	4	-	-	-	3	-	9	-	1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3	-	19	-	-
	-	-	6	2	-	-	2	-	-	-	1	-	12	1	-
	_	-	-	-	-	1	52	-	-	-	248	126	421	52	29
	_	_	_	_	1	1	3	_	_	_	8	3	13	17	1
	_	_	1	_				_	_	_					
The color of the	_														
The image	_		-	-		-		-	-	-	-	-		-	-
2 1 14 30 3 17 179 - 4 - 7 14 453 19 3 - - 2 - - 5 49 2 1 - 6 4 263 4 - - 7 155 36 - 2 62 - 1 - 20 53 392 54 1 - 3 31 14 78 53 1,292 35 13 - 1,081 2,396 5,554 1,368 91 2 8 28 13 26 377 914 23 22 - 439 1,718 2,182 6,376 43 - 5 13 4 147 3 425 16 5 - 1,233 541 1,60 1,871 99 - 1 2 - - -	4	32	261	118	281	499	3,874	78	50	-	3,100	5,490	15,822	10,301	263
- - 2	-	4	14	21	27	42	927	2	4	-	308	750	5,318	606	24
- 7 155 36 - 2 62 - 1 - 20 53 392 54 1 - 3 31 14 78 53 1,292 35 13 - 1,081 2,396 5,554 1,368 91 2 8 28 13 26 377 914 23 22 - 439 1,718 2,182 6,376 43 - 5 13 4 147 3 425 16 5 - 1,233 541 1,604 1,871 99 - 1 2 - - 19 - - - 6 14 54 3 2 - 1 2 - - 1 6 14 54 3 2 - 1 2 - - - - - - - - <t< td=""><td>2</td><td>1</td><td>14</td><td>30</td><td>3</td><td>17</td><td>179</td><td>-</td><td>4</td><td>-</td><td>7</td><td>14</td><td>453</td><td>19</td><td>3</td></t<>	2	1	14	30	3	17	179	-	4	-	7	14	453	19	3
The color of the	-	-	2	-	-	5	49	2	1	-	6	4	263	4	-
The color of the	-	7	155	36	-	2	62	-	1	-	20	53	392	54	1
2 8 28 13 26 377 914 23 22 - 439 1,718 2,182 6,376 43 - 5 13 4 147 3 425 16 5 - 1,233 541 1,604 1,871 99 - 1 2 - - - 19 - - - 6 14 54 3 2 - 1 2 - <td< td=""><td>_</td><td></td><td></td><td>14</td><td>78</td><td></td><td>1,292</td><td>35</td><td></td><td>-</td><td>1,081</td><td>2,396</td><td>5,554</td><td>1,368</td><td></td></td<>	_			14	78		1,292	35		-	1,081	2,396	5,554	1,368	
	2						· ·			_					
- 3 2 - - 19 - - - 6 14 54 3 2 - 1 2 -	-									_			· ·		
- 1 2 - - - 7 - - - - 2 - - - - - - - - 168 82 793 370 6 - - 1 - - 1 39 - - - 12 6 254 18 1 - - 1 3 - - 19 - - - - 21 - - - - 1 1 - - 3 - - - - 13 1 - - - 13 1 - - - 1 40 7 - - - 13 1 - - - - 1 - - - 1 - - - 1 - - 1 - - - -															
- - 24 4 17 13 180 - - 168 82 793 370 6 - - 1 - - 1 39 - - - 12 6 254 18 1 - - 1 3 - - - - - - 21 - - - 1 1 - - 3 - - - 13 1 - - - 11 1 - - 3 - - - 13 1 - - - 13 39 129 191 4 - - - 131 39 129 191 4 - - - 36 4 73 97 - - - 36 4 73 97 - - - 1 -		-													
- - 1 - - 1 39 - - 12 6 254 18 1 - - 1 3 - - 19 -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1 3 - - 19 - - - - - 13 1 - - - - - - 13 1 - - - - - 13 1 - - - - - - 13 1 - - - - 1 - 40 7 - - - - 1 - 40 7 - - - - 1 - 40 7 - - - - 1 -															
- -	-	-													
- - 111 1 - - 3 - - - 1 - 40 7 - - - 4 - 3 1 48 - - - 86 33 254 56 1 - - 4 - 4 111 46 - - - 31 39 129 191 4 - - 4 - 10 - 19 - - 31 39 129 191 4 - - 3 - 10 - 19 - - 36 4 73 97 - - - - - - 2 - - 1 - 4 1 - - - 1 - 4 1 - - - 1 1 1 1 1 <															
- - 4 - 3 1 48 - - - 86 33 254 56 1 - - 4 - 4 11 46 - - - 31 39 129 191 4 - - 3 - 10 - 19 - - - 36 4 73 97 - - - - - - - - - 2 - 8 - - - - - - - - - 2 - - - 1 -															
- 4 - 4 11 46 - - - 31 39 129 191 4 - - 3 - 10 - 19 - - - 36 4 73 97 - - - - - - - - 2 - 8 - - - - - - - - - 2 - - - 2 - - - - 1 - - - - - - 1 -															
- - - - 1 - - 2 - - 2 -	_	_		_				-	-	-					
- - - - 2 - - - - 1 -	_	-	3	-	10	-	19	-	-	-	36	4	73	97	-
1 - 52 10 13 36 420 - - - 26 15 336 214 2 - - 5 3 - 2 93 - - - 3 1 101 10 - 1 - 4 3 - 2 20 - - - 1 - 9 1 - - - 2 - - 1 5 - - - 1 10 1 - 4 1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4 5 30 115 - - 27 11	_	-	-	_	_	_	1	-	-	-	2	-	8	-	-
- - 5 3 - 2 93 - - - 3 1 101 10 - 1 - 4 3 - 2 20 - - - 1 - 9 1 - - - 2 - - 1 5 - - - 1 - 9 1 - - - 2 - - - - 1 - 4 1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4 5 30 115 - - - 1 - 11 - 3 -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	-	-	-	-	-	2	-	-	-	-	-	1	-	-
1 - 4 3 - 2 20 - - - 1 - 9 1 - - - 2 - - 1 5 - - - 1 - 4 1 - - - 25 3 - 1 20 - - - 1 25 -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10 8 139 76 2 - - 1 - 11 - 39 - - - 4 5 30 115 - - - 1 - 11 - 39 - - - 7 - 27 11 - - - 12 18 2 2	1	_	52		13			_	-	-				214	2
- - 2 - - 1 5 - - - 1 - 4 1 - - - 25 3 - 1 20 - - - - 1 25 -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10 8 139 76 2 - - 1 - 11 - 39 - - - 4 5 30 115 - - - 1 - 1 - - 27 11 - - 27 11 - - 11 - - 27 11 - - 11 - -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 - 25 3 - 1 20 - - - - 1 25 -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5 - - 23 77 - - - 4 5 30 115 - - - 1 - 11 - 39 - - - 7 - 27 11 - - - - - - - - - - 11 - - - - 11 - - - - - 11 - - - - - 11 -															
- - 10 1 2 7 165 - - - 10 8 139 76 2 - - - 5 - - 23 77 - - - 4 5 30 115 - - - 1 - 11 - 39 - - - 7 - 27 11 - - - - - - - - 7 - 27 11 - - - - - - - - - 11 -	$\vdash =$				_						_				_
- - 5 - - 23 77 - - - 4 5 30 115 - - - 1 - 11 - - - 7 - 27 11 - - - - - - - - - 11 - - - - 11 - - - - 11 - - - - - 11 - - - - - 11 - - - - - 11 -	_				2				_		10				2
- - 1 - 11 - 39 - - - 7 - 27 11 - - - - - - - - - 1 - - - - 1 - - - - 1 - - - - - 1 -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12 12 18 2 226 30 - - 368 395 1,529 783 50 - - - - 2 1 - 63 1 - - 31 12 480 28 5 - - - - - - 1 - 40 1 - - - - - - - - 1 - 40 1 - - - - - - - - - - 21 - - -	-	-		-	11			-	-	-					-
- - - 2 1 - 63 1 - - 31 12 480 28 5 - - - - - - - 1 - 40 1 - - - - - - - 1 - 40 1 - - - - - - - - - 21 - - - - 3 9 - - 2 - - - 2 3 21 2 - - - 2 - 9 1 74 13 - - 177 173 536 92 24 - - 5 1 - 1 51 8 - - 93 170 284 452 3 - - 2 - 8 - - 64 36 142 208 18	-	-	-	-	-	-	1	-	-	-	-	-	1	-	-
- - - - - - - - - - 40 1 - - </td <td>_</td> <td>-</td> <td>12</td> <td></td> <td></td> <td></td> <td>226</td> <td></td> <td>-</td> <td>-</td> <td>368</td> <td></td> <td>1,529</td> <td>783</td> <td>50</td>	_	-	12				226		-	-	368		1,529	783	50
- -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3 9 - - 2 - - - 2 3 21 2 - - - 2 - 9 1 74 13 - - 177 173 536 92 24 - - 5 1 - 1 51 8 - - 93 170 284 452 3 - - 2 - 8 - 24 6 - - 64 36 142 208 18	-														
- - 2 - 9 1 74 13 - - 177 173 536 92 24 - - 5 1 - 1 51 8 - - 93 170 284 452 3 - - 2 - 8 - 24 6 - - 64 36 142 208 18	-														
- - 5 1 - 1 51 8 - - 93 170 284 452 3 - - 2 - 8 - 24 6 - - 64 36 142 208 18	-														
- - 2 - 8 - 24 6 - - 64 36 142 208 18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431	-	-	2	217	-	24	-	81	1
	주거용	794	-		2	117	-	3	-	10	-
	상업업무용	224	_	_	_	51	_	19	_	66	1
	주상복합용	85	_	_		33	_	1	_	5	_
충청남도		39	_	_	_	1	_	_	_	_	_
보령시	공업용										
	전	791	_	-	-	10	-	_	_	-	-
	답	1,011	-	-	_	4	-	-	-	-	-
	임야	478	_	-	-	1	-	-	-	-	-
	특수토지	9	_	_	-	-	_	1	_	_	-
	합계	3,965	10	1	83	429	6	61	-	186	4
	주거용	989	10	1	29	193	5	8	-	24	-
	상업업무용	331	_	_	7	75	_	29	_	134	3
	주상복합용	190	_	_	33	90	_	20	_	20	_
충청남도	공업용	122	_	_	_	3	_	_	_	_	_
중성담도 이산시	O L O	1,000	_	_	10	53	1	1	_	1	1
이근시							_				
	답	917	-	_	4	8		3	_	4	-
	임야	407	_	-	-	7	-	-	-	-	-
	특수토지	8	-	-	-	-	-	-	-	3	-
	공공용 지	1	_	_	-	-	_	_	-	_	-
	합계	4,133	-	-	21	298	-	46	-	101	4
	주거용	824	-	-	5	146	-	13	-	16	1
	상업업무용	218	-	-	2	48	-	31	-	72	3
	주상복합용	68	-	-	14	31	-	2	-	10	-
충청남도	공업용	45	-	-	-	-	-	-	-	-	-
서산시	전	1,100	_	_	-	39	_	_	_	-	_
	답 임야	1,246 616	_	_	_	23 11	_	_	_	2 –	_
	특수토지	13	_	_	_	-	_	_	_	1	_
	공공용지	3	_	_	_	_	_	_	_	_	_
	합계	3,569	1	_	154	211	2	29	_	154	1
	주거용	935	1	_	89	106	2	11	_	23	_
	상업업무용	226	_	_	9	44	_	12	_	108	1
	주상복합용	131	_	_	29	45	_	5	_	19	-
충청남도	공업용	74	-		1	-	-	1	-	-	-
논산시	전	955	_	-	16	13	-	-	-	-	-
	답	935	-	-	8	2	-	-	-	2	-
	임야	304	-	-	2	-	-	-	-	-	-
	특수토지	7	-	-	-	1	-	-	-	2	-
	공공용지	2		-	_	_	-	-	-	-	-
	합계	330	-	-	53	54	2	9	9	6	-
	주거용	91	-	-	32	27	2	1	-	-	-
	상업업무용	30	-	-	-	2	-	5	9	6	-
충청남도	주상복합용	27	-	-	6	16	-	3	-	-	-
계룡시	공업용	5	-	-	-	-	-	-	-	-	-
11011	전	74	-	-	10	6	-	-	-	-	-
	답	55	-	-	5	2	-	-	-	-	-
	임야	46	_	-	-	1	-	_	_	-	-
	특수토지	2	_	-	-	-	-	-	_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πο		16					7 n^1i -		-					
	5	-	8	14	59	138	_	2	_	345	433	1,126	950	10
_	_	_	3	1 –	4	32	_	1 –	_	70	90	412	48	1 –
			1		4	5				1	1	73	2	
-	-	-	-	-	2	4	-	-	-	1	-	39	-	-
_	2	12	2	-	-	2	-	-	-	3	2	11	4	-
-	-	3	-	1	2	40	-	1	-	114	173	350	94	3
-	-	-	2	-	47	44	-	-	-	63	104	134	610	3
-	1	1	-	12	-	9	-	-	-	93	63	103	192	3
-	2	-	-	-	-	2	-	-	-	-	-	4	-	-
-	-	40	11	53	60	372	-	47	-	215	408	1,183	783	13
-	-	3	1	9	8	87	-	3	-	32	57	465	51	3
-	-	3	4	2	3	17	-	4	-	2	3	41	4	-
-	-	-	-	-	1	7	-	1	-	1	1	16	-	-
_	-	20	3	-		10	_	1	_	2	2	74	7	-
_	_	4	_	19	9	142	_	11	_	79	172	377	119	1
_	_	7	3	1	39	72	_	22	_	27	141	110	468	8
_	-	3	_	22	_	36	_	5	_	72	32	96	133	1
_	_	_	_	_	_	_	_	_	_	_	_	4	1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25	30	11	57	56	616	_	_	_	251	448	1,113	1,056	_
-	4	3	2	6	8	116	-	-	-	37	76	285	106	-
-	1	3	2	1	1	29	-	-	-	-	-	24	1	-
-	-	-	-	-	-	3	-	-	-	-	-	8	-	-
-	4	12	-	-	-	3	-	-	-	-	8	15	3	-
-	3	3	3	7	4	161	-	-	-	77	193	427	183	-
_	8	5 2	2	13 30	42 1	196 100	_	_	_	24 112	115 55	192 160	624 139	_
_	-	_	_	-	_	8	_	_	_	1	1	2	-	_
-	1	2	-	-	-	-	-	-	-	-	-	-	-	-
1	-	9	7	5	73	418	-	-	-	174	361	1,146	813	10
-	-	-	-	-	7	123	-	-	-	11	27	499	36	-
1	-	-	1	-	2	26	-	-	-	-	1	19	2	-
-	-	-	-	-	- 1	8	-	-	-	-	- 10	25	-	-
_	_	9	3	1	11	9 121	_	_	-	- 54	10 177	34 349	6 209	3
_	_	_	1	1	51	98	_	_	_	23	124	159	466	-
-	-	-	1	3	1	31	-	-	-	85	22	58	94	7
-	-	-	-			-	-	-	-	1	-	3	-	-
-	-	-	-	-	-	2	-	-	-	-	-	-	-	-
-	-	3	1	34	6	144	7	-	-	-	-	-	-	2
_	-	- 1	_	3	-	26 7	-	_	-	-	_	-	_	-
_	_	-	_	_	1	1	_	_	_	_	_	_	_	_
_	-	2	1	-	-	2	-	-	-	-	-	-	-	-
-	-	-	-	10	3	42	3	-	-	-	-	-	-	-
-	-	-	-	3	2	41	2	-	-	-	-	-	-	-
-	-	-	-	18		23	2	-	-	-	-	-	-	2
-	-	-	-	-	-	2	-	-	-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889	-	-	49	210	1	41	-	82	7
	주거용	857	-	-	24	111	1	5	-	7	-
	상업업무용	194	-	-	2	39	-	16	-	57	5
	주상복합용	132	-	-	19	46	-	20	_	16	2
충청남도	공업용	85	-	-	-	-	-	-	-	-	-
당진시	전	896	-	-	1	11	-	-	-	-	-
	답	1,167	-	-	2	1	-	-	-	-	-
	임야	548	ı	-	1	2	-	-	-	-	-
	특수토지	8	1	-	1	1	-	-	-	2	ı
	공공용지	2	-	-	-	-			-	-	-
	합계	2,573	-	_	28	130	1	14	_	58	-
	주거용	513	-	-	16	82	1	6	-	11	-
	상업업무용	107	_	-	1	31	_	5	_	41	_
	주상복합용	31	_	-	2	14	-	2	-	5	-
충청남도	공업용	52	-	-	-	-	-	-	_	-	-
금산군	전	933	_	_	7	2	-	1	_	_	_
	답	557	-	_	1	1	-	-	-	_	-
	임야	375	_	_	1	_	_	_	_	_	_
	특수토지	5	-	-	_	-	-	-	_	1	_
	합계	3,085	_	_	79	65	_	3	_	89	_
	주거용	660	_	_	56	37	-	_	-	13	_
	상업업무용	111	_	_	17	11	-	3	_	58	_
	주상복합용	45		-	2	8	-	-	-	16	-
충청남도	공업용	43		-	-	-	-	-	_	_	-
부여군	 전	698		-	2	6	-	-	_	_	-
	 답	1,130		-	2	3	-	-	-	1	-
	임야	392	_	-	_	_	_	_	_	-	-
	특수토지	6	-	-	_	-	-	-	-	1	-
	합계	2,534	-	-	4	178	-	11	-	82	-
	주거용	602	ı	-	4	88	-	2	-	12	-
	상업업무용	132	-	-	-	30	-	7	-	60	-
충청남도	주상복합용	68	-	-	-	35	-	2	-	10	-
성임도 서천군	공업용	26	-		-	-	-	-	-	-	-
시킨트	전	640	_	-	-	21	-	-	-	-	-
	답	690	-	-	-	4	-	-	-	-	-
	임야	368	-	-	-	-	-	-	-	-	-
	특수토지	8	_	-	-	-	-	-	-	-	-
	합계	1,956	_	-	-	51	-	3	-	18	-
	주거용	406	_	-	_	35	-	-	-	-	-
	상업업무용	46	_	-	-	8	-	2	-	14	-
충청남도	주상복합용	27	-	-	-	8	-	1	-	3	-
청양군	공업용	18	-	_	-	-	-	-	-	-	-
	전	544			-	-	-	-	-	-	-
	답 임야	580 334	-	_	_	_	_	-	-	-	_
	투수토지	1	-	_	_	_	_	_	_	1	_
	— .						L	L		<u> </u>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2	30	12	1	20	293	_	-		124	530	1,716	768	1
_	_	_	_	_	1	77	_	_	_	9	82	489	51	
_	_	1	7	_	1	11	_	_	_	_	_	55	_	_
_	_	_	_	_	_	6	_	_	_	1	_	22	_	_
_	1	29	3	-	-	4	-	-	-	1	4	39	4	-
_	-	-	-	-	-	97	-	-	-	17	177	571	22	-
2	-	-	2	-	18	56	-	-	-	6	199	288	592	1
-	_	_	-	1	-	39	-	-	-	90	68	249	98	-
-	1	-	-	-	-	1	-	-	-	-	-	3	1	ī
-	-	-	-	-	-	2	-	-	-	-	-	-	-	-
-	-	1	6	16	24	165	41	-	-	310	232	1,071	469	7
-	-	-	1	1	3	26	1	-	-	15	7	315	27	1
-	-	-	2	-	-	5	-	-	-	1	-	20	1	ı
-	-	-	-	-	-	-	-	-	-	1	-	7	-	-
-	-	1	-	-		4	-	-	-	3	2	36	6	-
-	-	-	3	5	6	80	19	-	-	174	119	436	78	3
-	-	-	-	-	15	33	13	-	-	62	72	126	234	-
-	-	-	-	10	-	17	8	-	-	54	32	127	123	3
_	-	-	-	-	-	-	-	-	-	-	-	4	-	-
-	-	-	3	17	60	198	-	-	-	231	306	1,191	841	2
_	-	-	1	4	1	59	-	-	-	11	25	435	17	1
-	-	-	-	-	-	4	-	-	-	-	-	17	1	-
_	_	_	_	_	-	1	_	_	_	_	-	18	-	_
-	-	-	-	-	-	-	-	-	-	5	5	28	5	-
	_	_	1 –	6	1	61	_	_	_	75	120	377	49	_
	_	_	1	3	58 -	55 18	_	_	_	37 103	141 15	198 114	631 137	1
	_	_	-	-	_	-	_	_	_	-	-	4	1	_
_	_	15	15	2	38	105	_	_	_	223	312	889	660	_
_	_	2	4	_	6	30	_	_	_	19	59	333	43	_
-	-	-	4	-	3	3	-	-	-	-	1	23	1	_
_	-	-	-	-	-	1	-	-	-	1	1	16	2	-
-	-	12	3	-	-	-	-	-	-	-	2	7	2	-
_	-	-	4	-	3	35	-	-	-	73	143	290	71	-
_	-	-	-	-	25	22	-	-	-	22	91	112	414	-
	-	-	-	2	1	14	-	-	-	107	13	104	127	ı
_	-	1	-	-	-	-	-	-	-	1	2	4	-	-
_	-	1	-	-	5	37	-	-	-	125	357	778	557	24
_	-	-	-	-	-	8	-	-	-	8	39	294	22	-
_	-	-	-	-	1	3	-	-	-	-	1	15	2	-
_	_	- 1	-	-	-	-	-	-	-	-	-	15	-	_
_	_	1 –	_	_	_	12	_	_	_	23	2 155	13 310	2 34	10
_	_	_	_	_	4	11	_	_	_	6	117	96	344	2
_	_	_	_	_	-	3	_	_	_	88	43	35	153	12
_	_	_	_	-	-	-	_	_	_	-	-	-	-	-
			<u> </u>				l	<u> </u>	<u> </u>	<u> </u>	l			

100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151	-	1	27	225	1	20	2	96	5
	주거용	758	_	1	16	143	1	2	_	13	_
	상업업무용	142	_	_	1	29	_	13	2	60	5
			_	_			_		_		_
	주상복합용	83			7	27		5		21	
충청남도	공업용	44	-	-	-	-	-	-	-	-	-
홍성군	전	918	-	-	2	24	-	-	-	-	-
	답	766	_	_	-	-	-	-	_	-	-
	임야	436	-	-	-	2	-	-	-	-	-
	특수토지	3	-	-	-	-	-	-	-	2	-
	공공용지	1	-	-	1	_	_	-	-	-	-
	합계	2,776	_	1	38	140	4	17	2	52	2
	주거용	652	_	1	16	83	3	3	_	12	_
	상업업무용	126	_	_	1	27	1	9	2	33	2
									_		
	주상복합용	58	-	-	5	23	-	4		7	-
충청남도	공업용	42	-	-	_	-	-	-	-	-	-
예산군	전	785	-	-	10	4	-	-	-	-	-
	답	754	_	-	5	3	_	-	-	-	-
	임야	354	_	_	_	-	-	-	_	-	-
	특수토지	4	-	-	-	-	-	1	-	-	-
	공공용지	1	-	-	1	-	-	-	-	-	-
	합계	2,800	-	-	40	65	-	2	-	22	_
	주거용	524	-	-	19	29	-	-	-	1	-
	상업업무용	95	-	-	5	20	-	1	-	16	-
	주상복합용	46	-	-	4	14	-	-	-	3	-
충청남도	공업용	14	-	-	-	-	-	-	-	-	-
태안군	전	927	-	-	7	-	-	-	-	-	-
	답	675	-	_	4	2	-	1	_	1	-
	임야	491	-	-	1	-	-	-	-	-	-
	특수토지 공공용지	27	-	_	-	-	-	-	_	1	
	합계	1 46,374	13	2	2,291	3,407	64	253	24	2,124	6
	주거용	10,959	13	2	1,441	1,803	38	62	_	398	1
	상업업무용	3,079	-	_	167	820	15	126	23	1,385	5
	주상복합용	1,803	_	_	401	707	11	63	1	307	_
	공업용	859	-	-	2	5	-	-	_	1	-
전라북도	전	12,206	-	-	147	36	-	2	-	3	-
	답	11,447	-	-	87	21	-	-	-	5	-
	임야	5,912	-	-	46	14	-	-	-	1	-
	특수토지	94	-	-	_	-	-	-	-	24	-
	공공용지	15	-	-	ı	1	-	-	-	-	ı
	합계	1,864	5	-	448	558	19	22	21	321	-
	주거용	647	5	-	220	251	13	-	-	52	-
전라북도	상업업무용	545	-	-	62	175	5	22	20	236	-
전주시	주상복합용	338	-	-	162	132	1	-	1	33	-
완산구	공업용	1	-	-	-	-	-	-	-	-	_
	전	151	-	-	1	-	-	-	-	-	-
	답	84	-	_	-	_	_	_	_	_	_
	임야	98	_	-	3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	10	18	17	266	-	1	_	192	659	961	642	4
_	_	_	2	1	_	74	_		_	18	116	328	42	1
_		_		_	_		_	_	_	-				
_		_	1	_	_	8		-	_	_	4	18	1	_
-	-	-	_	-	-	5		-	-	-	1	17	-	-
-	-	4	6	_	_	3	-	ı	-	2	6	21	2	-
-	-	-	-	8	2	102	-	1	-	53	297	349	79	1
-	-	_	1	-	15	53	-	1	-	18	154	109	416	_
_	-	-	-	9	-	21	-	-	-	101	81	118	102	2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	-	22	5	5	29	180	-	-	-	136	392	936	784	31
-	-	-	1	1	1	51	-	-	-	12	60	339	66	3
-	-	1	2	-	-	11	-	-	-	-	-	35	1	1
-	-	-	-	-	-	1	-	-	-	-	-	18	-	-
-	-	13	2	-	-	-	-	-	-	1	3	20	3	-
-	_	5	_	3	3	65	_	_	_	36	193	339	120	7
_	_	2	_	_	25	32	-	_	_	14	106	99	462	6
	_	1	_	1	_	20	_	_	_	72	30	84		14
													132	
-	-	-	-	-	-	-	-	-	-	1	-	2	-	-
-	-	-	-	-	-	- 110	-	-	-	-	-	- 1.054	- 011	-
_	_	2	3	11	1	116 23	_		_	212	560 93	1,054 289	611 41	101
_	_	_	_	_	_	3	_	_	_	1	3	43	1	2
_	_	_	_	_	_	-	_	-	_	-	1	24	-	_
-	-	1	_	_	-	-	-	-	_	_	3	8	1	1
-	-	-	1	4	-	47	-	-	-	33	263	450	86	36
-	-	-	1	-	1	27	-	ı	-	9	140	116	357	16
-	-	-	-	7	-	12	-	-	-	149	47	114	125	36
-	-	1	_	-	-	4	-	-	-	_	10	9	-	2
_	-	-	-	-	-	-		-	-	-	-	1	-	-
5	24	193	150	300	1,116	3,896	-	3	5	3,981	6,545	12,696	8,676	600
3	- 1	12 13	45	26 1	87	942	-	- 2	-	248	415	5,098	259 6	68 22
-	1	1	39 12	1	39 9	133 61	_	2	_	10 7	10 5	259 204	2	11
_	23	127	40	-	36	44	_	_	_	49	182	286	64	-
_	-	18	5	105	145	1,377	-	1	2	1,836	3,145	4,182	978	224
1	-	17	7	32	796	844	-	-	1	634	1,807	1,540	5,613	42
-	-	5	2	135	4	482	-	-	2	1,193	979	1,072	1,749	228
-	-	-	ī	-	-	8	-	ı	-	1	2	53	2	4
-	-	-	-	-	-	5	-	-	-	3	-	2	3	1
-	-	2	-	75	61	332	-	-	-	-	-	-	-	-
_		- 1	-	8	8	90	_	-	_	_	_	_	-	_
	_	1 -		1	6	17 6	_	-	_	_	_	_		_
_	_	_		_	1	-	_	_	_	_	_	_	_	_
_	-	-	-	23	9	118	-	-	-	-	-	-	-	-
-	-	-	-	8	35	41	-	-	-	-	-	-	-	-
-	-	1	-	34	-	60	-	-	-	-	-	-	-	-

102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시리	합계	1,882	5	2	305	501	19	27	1	222	_
								-	_		_
	주거용	654	5	2	196	219	10			27	
	상업업무용	431	_	-	19	171	3	24	1	173	-
TINHE	주상복합용	246	_	-	86	108	6	3	-	21	-
전라북도 전주시	공업용	59	_	_	-	-	-	-	-	-	_
덕진구	전	202	_	_	1	2	-	-	-	-	_
'-'	답	225	-	-	2	-	-	-	-	-	-
	임야	62	-	-	1	-	-	-	-	-	-
	특수토지	1	_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2	_	_	_	1	_	_	_	_	_
	합계	3,670	_	_	182	667	8	50	_	512	_
	주거용	1,196	_	_	131	380	7	14	_	132	_
	상업업무용	520	_	_	7	141	1	19	_	291	_
		271		_			_				
TINH-	주상복합용				23	130		17		83	_
전라북도 군산시	공업용	71	-	-	-	4	-	-	-	1	
	전	499	_	_	4	-	_	-	-	1	-
	답	773	_	-	5	1	-	-	-	1	-
	임야	331	_	-	12	11	-	-	-	1	-
	특수토지	7	-	_	-	-	_	_	_	2	_
	공공용지	2	-	-	Ī	Ī	-	-	-	-	-
	합계	5,096	2	-	271	577	2	53	-	283	2
	주거용	1,382	2	-	188	285	1	16	-	56	-
	상업업무용	448	-	-	17	144	-	26	-	196	2
	주상복합용	250	-	-	36	143	1	11	-	29	-
전라북도	공업용	137	-	-	1	_	-	-	-	-	-
익산시	전	997	-	-	17	4	-	-	-	-	-
	답	1,460	-	-	9	1	-	-	-	-	-
	임야	414	-	-	3	-	-	-	-	-	-
	특수토지	7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합계	4,758	-	-	200	270	14	8	-	177	1
	주거용	1,062	-	-	108	154	5	4	-	34	-
	상업업무용	219	_	-	12	53	6	-	-	112	1
	주상복합용	134	-	_	10	57	3	3	-	28	_
전라북도	공업용	89	_	-	-	_	_	-	-	-	-
정읍시	전	1,366	_	-	40	5	-	1	-	-	-
	답	1,329	-	-	24	1 -	-	-	-	1 -	-
	임야 특수토지	551 7	-	-	6		_	-	-	2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3,958	_	_	42	255	_	4	_	99	_
	주거용	756	_	_	23	151	_	1	_	16	_
	상업업무용	159	_	_	4	56	_	1	_	63	_
7771111	주상복합용	90	_	_	4	31	-	2	_	16	_
전라북도	공업용	68	-	-	-	1	-	_	-	-	-
남원시	 전	908	_	-	7	9	_	_	-	-	_
	답	1,370	-	-	2	5	-	-	-	1	-
	임야	596	_	-	2	2	-	-	-	-	-
	특수토지	11	-	_	-	-	_	_	_	3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4	57	53	23	145	446	-	-	_	1	13	31	25	-
_	_	7	32	1	14	123	_	_	_	_	_	17	1	_
2		4	7	_	6	21	_	_	_	_	_	_		
_	-	1	5	-	4	11	-	-	-	-	-	1	-	_
_	4	34	8	-	9	1	-	_	-	_	2	1	-	-
-	-	2	-	6	16	157	-	-	-	-	6	9	3	-
-	-	8	1	1	96	89	-	-	-	1	4	2	21	-
-	1	1	-	15		43	-	-	-	-	1	1	-	-
-	-	-	-	-	-	-	-	-	-	-	-	-	-	-
_	-	-	-	-	-	1	-	-	-	-	-	-	-	_
2	20	2	56	10	259	289	_	1	_	238	303	604	465	2
1		_	12	3	31	78	_		_	16	48	318	24	1
-	1	-	22	-	16	10	-	-	-	-	1	11	-	
-	-	-	6			-	-	-	-	1	-	11	-	_
-	19	2	13	-	9	1	-	-	-	1	5	13	3	-
-	-	-	2	3	13	88	-	1	-	83	127	173	4	-
1	ī	-	-	1	189	47	-	-	-	5	111	40	372	-
-	-	-	1	3	1	63	-	-	-	131	11	35	61	1
_	-	-	_	-	-	-	-	_	-	1	-	3	1	_
_	_	-	-	-	-	2	-	-	-	-	-	-	_	_
1	-	51	17	12	98	577	-	-	-	154	789	1,426	719	62
-	ı	2	-	1	3	158	-	-	-	9	32	594	24	11
1	-	3	4	-	4	21	-	-	-	-	2	26	2	-
_	-	-	-	-	-	11	-	-	-	-	-	19	-	-
_		45	13	-	3	9	-	_	-	-	20	44	2	-
_		1 –	_	5 1	7 81	206 107	_	_	_	41 13	294 374	360 265	51 600	9
_		-	-	5	-	62	-	-	-	91	67	115	40	31
-	-	-	-	-	-	2	-	-	-	-	-	3	-	-
-	-	-	-	-	-	1	-	-	-	-	-	-	ı	-
-	-	15	6	-	56	326	-	-	-	504	780	1,438	940	23
-	-	1	-	-	2	67	-	-	-	43	56	568	20	-
-	_	1 -	- 1	-	1	8	-	-	-	1 -	_	24	_	_
_	-	9	2	_	1 –	6 8	-	_	_	8	27	25 31	4	-
_	-	4	1	_	1	133	_	_	_	256	368	496	52	9
_	-	-	2	-	51	61	-	-	-	90	226	180	693	_
-	Ī	-	-			41	-	-	-	106	103	110	171	14
-	-	-	-	-	-	1	-	-	-	-	-	4	-	-
-	-	-	-		-	1	-	-	-	-	-	-	-	-
	-	8	-	-	9	209	-	-	5	366	503	1,350	1,064	44
_		_	_	_	-	28 12	_	_	_	23	26 -	460 19	24 1	4
_		_	_	_	_	5	_	_	_	2	1	25	-	4
_	_	6	_	_	-	3	_	_	_	8	10	30	10	_
-	-	1	-	-	1	44	-	-	2	143	195	377	112	17
-	-	1	-	-	8	80	-	-	1	103	165	263	738	3
-	-	-	-	-	-	35	-	-	2	84	106	170	179	16
-	_	_	-	_	-	2	-	_	_	_	_	6	-	-

104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946	1	-	121	189	-	35	-	115	3
	주거용	1,009	1	_	97	125	_	12	_	31	1
	상업업무용	155	_	_	8	25	_	14	_	64	2
	주상복합용	94	_	_	10	34	_	9	_	18	_
전라 북 도	공업용	140	_	_	_	_	_	_	_	_	_
김제시			_	_			_	_	_	_	_
	전	959			2	2					
	답	1,215	-	-	1	3	-	-	-	-	_
	임야	368	-	-	3	-	-	-	-	-	-
	특수토지	6	-	_	_	_	-	_	-	2	-
	합계	3,062	_	_	139	82	2	17	2	81	-
	주거용	762	-	-	95	46	2	4	-	22	-
	상업업무용	103	-	-	4	11	-	8	2	44	-
	주상복합용	89	_	_	30	15	_	5	_	14	_
전라북도	공업용	44	_	_	_	_	_	_	_	_	_
완주군	전 전	1,010	_	_	7	6	_	_	_	_	_
	 답	671	_	_	2	3	_	_	_	_	_
	_	379	_	_			_	_	_	_	_
	임야				1	1					
	특수토지	4	-	-	-	-	-	-	-	1	-
	합계	2,496	-	-	53	1	-	2	-	28	-
	주거용	404	-	-	35	-	-	-	-	2	-
	상업업무용	56	-	-	7	1	-	1	-	21	-
전라북도	주상복합용	12	-	-	3	-	-	1	-	4	-
진안군	공업용	14	_	-	-	-	-	-	-	-	-
	<u>전</u> 답	1,059	_	_	6	-	_	_	_	_	_
	임야	424 523	_	_	1		_	_	_	_	
	특수토지	4	_	_	_	_	_	_	_	1	_
	합계	2,138	_	_	81	35	_	10	_	56	_
	주거용	403	_	_	68	28	_	2	_	3	_
	상업업무용	62	_	_	1	2	_	5	_	34	_
	주상복합용	38	-	-	4	4	-	3	_	17	_
전라북도	공업용	10	_	-	_	-	-	-	-	-	
무주군	전	1,017	-	_	5	_	_	_	-	-	_
	답	257	-	-	2	1	-	-	-	-	-
	임야	336	-	-	1	-	-	-	-	-	-
	특수토지	13	-	-	-	-	-	-	-	2	-
	공공용지	2	-	-	ı	ı	-	-	-	-	-
	합계	2,038	-	-	50	6	-	8	-	30	-
	주거용	341	-	-	41	4	-	2	-	2	-
	상업업무용	39	-	-	2	-	-	1	-	18	-
전라북도	주상복합용	31	-	_	7	_	-	5	-	8	-
장수군	공업용	31	-	-	-	-	-	-	-	-	-
	전	623	-	-	-	1	-	-	-	-	-
	답	500	_	_	_	1	-	_	-	-	-
	임야	468	_	-	-	-	-	_	-	-	_
	특수토지	5	_	_	_	_	_	_	_	2	-

0 11	ᅯᄀ	οl¬	ᄌᄀ	μп	All A I	TIM	711711	D174	2121	Həl	AII 71	게기	누리	TI LI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3	-	9	36	277	-	1	-	185	775	1,268	852	66
-	-	-	-	-	1	59	-	-	-	24	62	551	27	18
-	-	1	-	-	1	12	-	1	-	-	2	20	-	5
-	-	-	-	-	-	5	-	-	-	1	-	16	-	1
-	-	5	-	-	4	6	-	-	-	2	46	65	12	-
-	-	4	-	1	3	90	-	-	-	75	348	373	35	26
-	-	1	-	-	27	68	-	-	-	28	195	147	742	3
-	-	2	-	8	-	36	-	-	-	55	122	93	36	13
-	-	-	_	-	_	1	-	-	_	-	-	3	_	-
_	_	16	3	110	277	471	_	_	_	191	293	757	565	56
_	_	_	_	8	15	147	_	_	_	29	26	325	33	10
_	_	2	3	_	2	7	_	_	_	2	1	13	-	4
_	_	_	_	_	2		_	_	_	_	_		_	
_			_			4	_	_				17		2
		14			9	5			-	1	4	10	1	
-	-	-	-	36	77	172	-	-	-	87	176	289	144	16
-	-	-	-	17	170	104	-	-	-	26	62	63	215	9
-	-	-	-	49	2	32	-	-	-	46	23	38	172	15
-	-	-	-	-	-	-	-	-	-	-	1	2	-	-
-	-	-	3	5	8	63	-	-	-	413	428	878	579	35
-	-	1	-	-	-	7	-	-	-	17	17	304	21	1
-	-	-	2	-	-	1	-	-	-	1	2	13	1	6
-	_	_	_	-	-	-	-	_	_	-	-	4	-	-
-			1	4	4	36	_	_	_	238	2 257	10 377	126	10
_	_	_	_	-	4	9	_	_	_	42	74	89	203	2
_	_	_	_	1	_	10	_	_	-	114	76	78	227	16
-	-	_	_	_	_	_	_	_	-	_	-	3	_	-
-	-	ī	3	2	17	97	-	-	-	387	357	647	338	108
-	-	ī	1	-	2	14	-	-	-	16	13	238	14	4
-	-	-	-	-	-	3	-	-	-	-	-	17	-	-
-	-	-	-	-	_	1	_	_	-	1	-	8	_	_
-	-		2	-	-	-	-	_	-	2	1	5	- 110	-
_	_	-	_	2	5 10	53 17	_	_	-	244 40	261 42	274 37	116 103	57 5
-	_	_	_	_	-	9	_	_	_	84	40	58	105	39
-	-	-	-	-	-	-	-	-	-	-	-	8	-	3
-	-	i		-		-	-	-	-	-	-	2	-	-
-	-	1	4	4	11	52	-	-	-	274	494	632	457	16
-	-	1	-	-	1	7	-	-	-	6	12	252	11	3
-	-	-	1	-	-	1	-	-	-	-	-	16	-	-
-	-	-	-	-	-	3	-	-	-	-	- 10	8	-	-
-	_	-	2 –	3	-	14	-	_	_	6 122	13 240	9 182	1 52	9
_	_	_	1	- -	10	22	_	_	_	39	130	81	216	-
-	-	_	-	1	-	5	-	-	-	101	99	81	177	4
-	-	-	-	-	-	-	-	-	-	-	-	3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515	-	-	52	43	-	12	-	35	-
	주거용	413	-	-	31	30	-	5	-	6	-
	상업업무용	42	_	_	5	2	_	5	_	16	_
	주상복합용	40	_	_	2	10	_	1	_	10	_
전라북도	공업용	66	-	-	-	-	-	-	-	-	-
임실군	전	735	-	-	6	-	-	1	-	-	-
	답	648	-	-	7	1	-	_	_	1	-
	임야	558	-	-	1	-	-	-	-	-	-
	특수토지	7	-	-	-	-	-	-	-	2	-
	공공용지	6	-	-	-	-	-	-	-	-	-
	합계	2,096	_	_	38	26	_	_	_	18	-
	 주거용	360	_	_	22	14	_	_	_	1	_
	상업업무용	63	_	_	10	6	_	_	_	15	_
				_			_	_	_		_
전라북도	주상복합용	23	-		6	4				1	
순창군	공업용	25	-	-	-	-	-	-	-	-	-
	전	624	-	-	-	1	-	-	-	-	-
	답	610	_	-	-	1	-	_	-	-	-
	임야	387	_	_	-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합계	3,600	-	-	110	61	-	1	-	65	-
	주거용	766	-	-	80	29	-	-	-	6	-
	상업업무용	92	-	-	6	12	-	-	-	46	-
전라 북 도	주상복합용	71	-	-	12	19	-	1	-	10	-
고창군	공업용	36	-	-	-	-	-	-	-	-	-
705	전	1,066	-	-	9	-	-	-	-	-	-
	답	1,012	-	-	3	1	-	-	-	1	-
	임야	544	-	-	-	-	-	-	-	-	-
	특수토지	13	_	-	-	-	-	-	-	2	-
	합계	3,255	-	-	199	136	-	4	-	82	-
	주거용 상업업무용	804 145	-	_	106 3	87 21	_	2	_	8 56	_
	주상복합용	76	_	_	6	20	_	2	_	15	_
전라 북 도	공업용	68	_	_	1	-	_	_	_	-	_
부안군	<u> </u>	990	_	_	42	6	_	_	_	2	_
722	<u></u> 답	869	_	_	29	2	_	_	_	_	_
	임야	297	_	_	12	_	_	_	_	_	_
	특수토지	5	_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1	_	_	_	_	-	_	_	-	_
	합계	71,150	97	49	4,265	2,920	82	655	86	2,423	46
	주거용	15,385	55	37	2,896	1,642	44	139	-	355	9
	상업업무용	3,083	2	-	178	428	8	272	84	1,597	21
	주상복합용	2,340	1	1	539	640	6	214	1	411	15
	공업용	936	-	-	13	15	1	2	-	1	-
전라남도	<u>전</u>	21,058	28	8	441	113	9	17	-	22	1
	답	17,154	5	1	133	54	3	7	-	9	_
	임야	10,933	6	2	65	27	11	1	-	3	-
	특수토지	240	_	_	-	1	-	3	1	25	-
	공공용지	21	-	_	-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9	-	14	8	143	-	-	-	516	273	772	636	2
	_	-	1	-	2	-	26	-	1	-	3	2	297	9	1
	-	-	-	-	-	-	4	-	-	-	-	-	9	1	
	-	-	-	-	-	-	3	-	-	-	-	-	14	-	-
	_	_	4	_	_	_	3	_	_	_	11	17	21	10	_
	_	-	2	_	7	1	52	_	-	_	219	106	279	61	1
1	_	_		_				_	_	_					
1 1 1 4 3 - 3 3 1															
		_		_											
22 66 128 362 627 702 17 2 111 13 11 271 15 1 1 10 1 25 - 2 1 1 1 1 - 10 10 1 1 1 1 - 10 1 1 1 1 - 10 2 19 108 194 198 98 4 1 1 9 57 68 56 186 10 1 3 3 5 111 4 1 1 9 57 68 56 186 10 1 1 22 57 68 56 186 10 1 1 3 - 11 221 444 681 1,182 765 1 1 42 38 50 497 17 66 1 1 66 444 681 1,182 765 1 1 6 1 1 1 1 1 1 1	_			_	_	_				_					_
2 111 13 11 271 15 1															
1 1 3 1 25 - 2 1 1 1 1 - 10 1 1 10 2 3 5 11 4 2 19 108 194 198 98 4 17 22 33 5 11 4 17 22 33 5 83 54 399 1 1 1 9 57 68 56 186 10 1 1 9 57 68 56 186 10 1 1 221 444 681 1,182 765 55 1 1 42 38 50 497 17 6 1 1 42 38 50 497 17 6 1 1 6 1 14 1 1 5 1 1 2 21 2 3 - 1 1 1 1 2 2 2 1 2 3 - 1 1 1 1 1 1															
1 1 1 - 10					_										
2 3 5 11 4 1					_										
-															
17 22 33 83 54 399 1 1 1 9 57 68 56 186 10 1 3 - 11 221 444 681 1,182 765 55 1 3 - 1 1 42 38 50 497 17 6 1 1 6 1 14 1 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9 57 68 56 186 10 1 3 - 11 221 444 681 1,182 765 55 1 3 - 11 42 38 50 497 17 6 1 1 6 1 1 14 1 5 1 1 1 1 15 1 1 14 1 5 2 21 2 3 1 1 2 21 2 3 1 1 2 21 2 3 1 1 33 10 18 4 2 21 2 3 1 1 1 1 2 21 2 3 1 1 1 1 16 319 385 88 13 1 1 75 165 159 132 525 7 1 1 28 105 159 132 525 7 1 1 28 122 139 107 127 20 1 1 1 1 8 1 1 1 1 2 36 98 327 - 1 1 - 90 494 1,084 569 114 1 1 - 3 7 85 11 60 406 19 9 1 1 2 9 9 - 1 11 60 406 19 9 1 1 2 9 9 - 1 52 1 1 1 6 1 1 2 25 - 1 1 1 6 1 1 2 25 - 1 1 1 6 1 1 8 12 1 1 1 8 12 1	_	-	-	-	-			-	-	-	108	194	198	98	
1 2 2	_	-	-	-	-	17	22	-	-	-	33	83	54	399	1
- - 1 3 - 11 221 - - - 444 681 1,182 765 55 - - - - - 1 42 - - - 38 50 497 17 6 - - - - - - - 1 14 1 5 - - - - - - - 1 14 1 5 - - 1 - - - - - 2 21 2 3 - - 1 - - - - - 176 319 385 88 13 - - - 1 - - - - 176 319 385 88 13 - - - 1 - - - 105 <td>-</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9</td> <td>-</td> <td>-</td> <td>-</td> <td>57</td> <td>68</td> <td>56</td> <td>186</td> <td>10</td>	-	-	-	-	-	1	9	-	-	-	57	68	56	186	10
- - - - 1 42 - - - 38 50 497 17 6 - - - - - - - 1 14 1 5 - - - - - - - - 1 14 1 5 - - 1 - - - - - 2 21 2 3 - - 1 - - - - - 105 159 132 525 7 - - 1 - - 75 - - - 105 159 132 525 7 - - 1 - 9 69 - - 105 159 132 525 7 - - 1 - 9 69 - - 105	-	-	-	-	-	-	1	-	-	-	-	-	2	-	_
1 1 6 1 1 14 1 5 1 1 1 1 6 1 1 14 1 1 5 1 1 1 1 2 21 2 3 1 1 3 10 18 4 176 319 385 88 13 1 1 75 176 319 385 88 13 1 1 - 9 69 105 159 132 525 7 1 1 28 105 159 132 525 7 1 1 28 122 139 107 127 20 1 1 28 122 139 107 127 20 1 1 28 1 1 60 406 19 9 1 1 - 3 7 85 11 60 406 19 9 1 1 2 9 - 1 52 12 25 - 1 1 1 2 9 - 1 52 1 2 25 - 1 1 1 2 9 - 1 1 2 25 - 1 1 6 3 20 18 12 1 1 2 25 - 1 1 6 2 2 82 69 10 96 105 463 3 1 6 - 34 1 66 64 39 49 1 6 - 34 1 66 64 39 49	_	-		3	-			-	-	-					
- - - - 1 - - - 2 21 2 3 - - 1 - - - - - 3 10 18 4 - - - 1 - - - - 176 319 385 88 13 - - 1 - 9 69 - - - 105 159 132 525 7 - - - 1 - 9 69 - - - 105 159 132 525 7 - - - - - - - 122 139 107 127 20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 - 1 -															
- - 1 - - - - - 3 10 18 4 - - - - 1 - - 75 - - - 176 319 385 88 13 - - - 1 - 9 69 - - - 105 159 132 525 7 - - - 1 - - 28 - - - 122 139 107 127 20 - - - - - - - 1 8 1 1 - - - - - - - - 1 1 8 1 1 - - 19 2 36 98 327 - 1 - - - 1 8 1 1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 - 1 - 9 69 - - - 105 159 132 525 7 - - - 1 - - 28 - - - 122 139 107 127 20 - - - - - - - - 122 139 107 127 20 - - - - - - - - 1 8 1 1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 - 1 - </td <td>_</td> <td>-</td> <td></td> <td></td> <td>_</td> <td>_</td> <td></td> <td></td> <td>_</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_	-			_	_			_						
- - - - - - - - 1 8 1 1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 - 1 - 3 7 85 - - - 11 60 406 19 9 - - 1 - - - 11 60 406 19 9 - - 1 - - - 11 60 406 19 9 - - 1 - - - 11 60 406 19 9 - - - - 1 6 - - - 1 2 25 - - - - - - 15 6 120 - -	_	_	-		_	9		-	-	-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 - 1 - 3 7 85 - - - 11 60 406 19 9 - - 1 - - - 1 - - 52 - - - - - - - 4 - - - 11 60 406 19 9 - - - - - - - - 52 - - - - - - - - 1 2 25 - 1 - - - 15 6 120 - - - 44 254 410 36 51 - - 6 2 2 82	-	-	-	1	-	-	28	-	-	-	122	139	107	127	20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_	-	-	-	-	-	-	-	ı	-	-	1	8	1	1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	19	2	36	98	327	-	1	-	90	494	1,084	569	114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_	-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b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 -	-	-						-	_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_	-	-	-		_		_		_					
- - - 32 23 10 72 1,181 38 - 2 473 595 7,120 417 245 1 - 19 43 2 12 131 3 - - 20 13 232 6 11 - - 4 14 - 10 54 - - - 15 16 386 5 8 - - 226 102 - 7 82 1 1 1 44 95 261 65 19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8 43 110 9 22	-	-	-	-	-		-	-		-	-	-			1
1 - 19 43 2 12 131 3 - - 20 13 232 6 11 - - 4 14 - 10 54 - - - 15 16 386 5 8 - - 226 102 - 7 82 1 1 1 44 95 261 65 19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1	_	423	253	363	1,172	6,160	1,273	17	40	6,511	7,811			2,633
- - 4 14 - 10 54 - - - 15 16 386 5 8 - - 226 102 - 7 82 1 1 1 44 95 261 65 19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	-	32	23			1,181	38	-		473	595	7,120	417	245
- - 226 102 - 7 82 1 1 1 44 95 261 65 19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 - 67 36 127 145 2,569 426 3 21 2,849 4,010 6,426 2,753 987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 - 46 26 25 915 1,048 548 11 14 833 2,189 2,121 8,566 600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 - 25 8 199 10 1,072 256 2 2 2,265 850 1,530 3,861 738 - - 3 - - 1 14 - - 8 43 110 9 22															
- - 3 - - 1 14 - - 8 43 110 9 22															
1	_	-	1	1	-	-	9	1	-	-	4	-	2	-	3

108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727	1	3	652	323	3	87	21	286	-
	주거용	705	1	3	437	163	1	13	-	37	-
	상업업무용	394	_	_	33	69	1	43	21	212	_
	주상복합용	302	_	_	159	76	1	27	_	35	_
		66	_	_	2		_		_	_	_
전라남도	공업용					5		1			
목포시	전	168	-	-	17	8	-	3	-	-	-
	답	26	-	-	3	1	-	-	-	1	-
	임야	58	-	-	1	1	-	-	-	-	-
	특수토지	4	_	_	-	-	-	_	_	1	-
	공공용지	4	-	-	-	-	-	-	-	-	-
	합계	5,144	42	-	735	599	2	100	41	349	-
	주거용	1,431	20	_	484	357	2	28	_	37	-
	상업업무용	535	1	_	32	78	_	49	40	277	-
	주상복합용	319	_	_	81	147	_	22	1	30	_
전라남도	공업용	139	_	_	1	1	_	_	_	_	_
여수시				_			_		_		_
-111	전 .	1,319	16		88	8		1		1	
	답	555	2	-	26	1	-	-	-	1	-
	임야	834	3	-	23	7	-	-	-	-	-
	특수토지	10	-	-	-	-	-	-	-	3	-
	공공용 지	2	-	-	-	-	-	-	-	-	-
	합계	5,318	10	22	270	560	6	76	-	338	6
	주거용	1,107	8	16	157	287	5	15	-	55	2
	상업업무용	399	-	-	14	77	-	41	-	217	2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295	-	_	46	150	-	18	-	62	2
순천시	공업용	65	-	-	1	-	_	-	_	-	_
	<u>전</u> 답	1,270 1,339	2	1	33 13	23 16	1	1	_	2	_
	임야	830	_	1	6	7	_	_	_	_	_
	투수토지	13	_	_	-	_	_	_	_	1	_
	합계	4,560	12	19	346	151	13	45	_	127	1
	주거용	1,161	11	17	243	106	10	5	_	22	_
	상업업무용	185	1	-	9	19	1	32	_	90	1
-1-1:1-	주상복합용	131	_	_	56	21	2	6	_	14	_
전라남도	공업용	76	-	-	1	3	_	1	_	_	-
나주시	전	1,280	-	2	28	1	-	-	-	-	-
	답	1,217	-	-	5	1	-	-	-	-	-
	임야	501	-	-	4	-	-	-	-	-	-
	특수토지	9	-	-	-	-	-	1	-	1	-
	합계	3,039		5	234	379	28	78	19	137	15
	주거용	597	-	1	136	118	10	9	-	15	3
	상업업무용	319	-	-	16	108	1	24	18	105	5
	주상복합용	203	-	1	29	98	-	40	-	7	6
전라남도	공업용	71	-	-	2	2	-	-	-	-	-
광양시	전	992	-	2	40	26	6	4	-	4	1
	답	271	-	-	1	16	2	-	-	2	-
	임야	573	-	1	10	11	9	1	-	3	-
	특수토지	6	_	-	-		-	-	1	1	-
	공공용지	7	-	-	-	_	-	-	_	_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그건		게근	0 🗇	시 <u>エ</u> -
	-	35	31	56	-	229	-		-		-	_		
-	-	-	1	5	-	44	-	-	-	-	-	-	-	-
_	-	5	2	1	-	7	-	-	-	-	-	_	-	-
_	-	-	1	-	-	3	-	-	-	-	-	-	-	-
-	-	25	25	-	-	8	-	-	-	-	-	-	-	-
-	-	5	-	30	-	105	-	-	-	-	-	-	-	-
-	-	-	1	-	-	20	-	-	-	-	-	-	-	-
-	-	-	-	20	-	36	-	-	-	-	-	-	-	-
-	-	-	-	-	-	3	-	-	-	-	-	-	-	-
-	-	-	1	-	-	3	-	-	-	-	-	-	-	-
_	_	176	43	107	76	1,245	_	_	_	196	288	446	246	453
_	_	18	4	4	_	175	_	_	_	18	78	155	14	37
_	_	6	11	_	1	30	_	_	_	1	1	7	-	1
		_		_	_				_				_	
			6			9				1	3	17		2
_	-	83	19	-	-	21	-	-	-	1	2	5	4	2
_	-	25	2	24	4	448	-	-	-	117	140	186	42	217
_	-	28	-	12	70	248	-	-	-	10	26	35	60	36
-	-	13	1	67	1	309	-	-	-	48	38	40	126	158
_	-	2	-	-	-	4	-	-	-	-	-	1	-	-
_	-	1	-	-	-	1	-	-	-	-	-	-	-	-
1	-	18	9	76	229	1,064	-	-	39	478	643	755	637	81
-	_	_	1	_	11	213	_	_	2	10	19	288	11	7
1	_	_	2	_	1	26 7	_	_	_	3	2	8	_	2
_	_	11	1	_	2	18	_	_	1	4	7	15	5	_
-	-	4	2	31	25	440	-	-	21	225	217	182	36	22
	-	2	2	6	185	186	-	-	14	76	350	186	284	15
_	-	1	1	39	1	173	-	-	1	156	46	63	300	35
_	-	-	-	-	-	1	-	-	-	3	2	5	1	-
_	-	18	5	-	60	332	255	-	-	521	537	1,118	999	1
_	_	_	3	-	1	75 11	9	_	_	40 3	42	540 8	40	_
_	_	_	-	_	1	1	-	_	_	-	_	28	2	_
_	_	18	2	-	2	5	1	-	-	7	11	20	5	-
-	-	-	-	-	6	135	104	-	-	213	285	329	176	1
-	-	-	-	-	49	54	97	-	-	84	146	125	656	-
-	-	-	-	-	-	51	41	-	-	174	51	62	118	-
_	_	- 57	- 61	- 51	- 41	- 544	_	_	_	41.0	160	6	1 256	- 16
_	_	57 6	61 8	51 1	41 1	544 80	_	_	_	413 28	160 15	445 149	356 16	16 1
_	_	4	13	-	_	17	_	_	_	3	-	4	-	1
-	-	3	1	-	-	4	-	-	-	6	2	6	-	-
-	-	22	14		-	12	-	-	-	4	1	12	2	-
-	-	11	9	14	10	234	-	-	-	258	90	173	100	10
-	-	6	13	3	30	50	-	-	-	19	18	40	71	-
-	-	5	3	33	-	141	-	-	-	92	34	59	167	4
_	_	-	_	-	-	2	-	-	-	3	_	2	_	-
		_				4	_			J			_	_

110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601	7	-	244	89	3	10	-	38	9
	주거용	582	7	_	157	51	2	4	_	8	2
	상업업무용	48	_	_	4	6	_	_	_	20	1
	주상복합용	93	_	_	13	24	1	6	_	10	6
전라남도	공업용	33	_	_	3	1	_	_	_	_	_
단양군 담양군	 전	583	_	_	43	2	_	_	_	_	_
805											
	답	846	-	_	19	4	-	_	_	_	-
	임야	410	-	-	5	-	-	-	-	-	-
	특수토지	5	-	-	-	1	-	-	-	-	-
	공공용 지	1	-	_	-	-	-	_	-	-	-
	합계	2,386	-	-	91	16	-	8	_	48	-
	주거용	460	-	-	64	8	-	4	-	12	-
	상업업무용	59	-	-	12	3	-	1	-	26	-
	주상복합용	35	_	_	5	3	-	3	_	9	_
전라남도	공업용	22	_	_	_	_	_	_	_	_	_
곡성군	 전	680	_	_	5	2	_	_	_	_	_
	답		_	_		_	_	_	_	_	_
		711			5						
	임야	414	_	-	-	-	-	-	-	-	-
	특수토지	5	-	-	_	-	-	-	-	1	-
	합계	1,843	-	-	99	47	-	6	-	57	-
	주거용 상업업무용	385	_	-	64	30	_	1 –	_	11 32	_
	장입입 구용 주상복합용	51 73	_	_	17	15	_	5	_	11	_
전라남도	공업용	12	_	_	-	-	_	_	_	-	_
구례군	<u> </u>	625	_	_	11	_	_	_	_	1	_
	 답	390	_	_	7	_	_	-	_	1	-
	임야	303	-	-	_	-	-	-	-	-	-
	특수토지	4	-	-	-	-	-	-	-	1	-
	합계	4,478	-	-	130	51	1	9	-	95	-
	주거용	883	-	-	90	35	1	3	-	16	-
	상업업무용	76	-	-	10	5	-	2	-	42	-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92	-	-	16	10	-	4	-	34	
고흥군	공업용	36	-	-	-	-	-	-	-	1	
<u> </u>	전	1,494	-	-	9	1	-	-	-	-	-
	답	1,173	-	_	4	-	-	-	-	-	-
	임야	719	-	-	1	-	-	-	-	-	-
	특수토지	5	-	-	-	-	-	-	-	2	-
	합계	3,408	-	-	127	20	-	15	-	96	-
	주거용	737	-	-	107	17	-	3	-	14	-
	상업업무용	109	-	_	5	1	-	6	-	70	-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38	-	_	8	1	-	6	-	10	-
보성군	공업용	18		-	-	-	-	-	-	-	-
	전	861	-	-	3	1	-	-	-	_	-
	답	1,022	_	-	3	_	-	-	-	-	-
	임야 투스트지	616	_	_	1 –	_	-	-	-	-	-
	특수토지	7	_	_	_	_	_	_	_	2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3	1	_	50	128	498	-	_	174	264	604	479	
	_	_	_	_	6	33	17	_	_	13	30	237	15	_
_	_	_	_	_	_	2	_	_	_	-	1	14	-	_
	_	_	_	_		8	_	_	_	2	5	13	1	_
					4									
	-	3	1	-	-	1	-	-	-	-	2	19	3	-
	-	-	-	-	1	38	134	-	-	53	99	164	49	-
_	-	-	-	-	39	32	245	-	-	18	111	103	275	-
-	-	-	-	-	-	14	101	-	-	88	16	50	136	-
-	-	-	-	-	-	-	-	-	-	-	-	4	-	-
-	-	-	-	-	-	-	1	-	-	-	-	-	-	1
-	-	5	-	1	25	133	-	-	-	281	261	837	678	2
_	-	-	-	-	2	38	-	-	-	10	16	292	14	-
_	_	_	_	_	1	1	_	_	_	1	1	13	-	_
_	_	_	_	_	_	1	_	_	_	_	_	14	_	_
_	_	1	_	_	_	1	_	_	_	1	3	14	2	_
	_	4	_	_	2	53	_	_	_	129	128	282	74	1
_	-	-	-	-	20	25	-	-	-	40	102	149	370	-
	-	-	-	1	-	14	-	-	-	100	11	69	218	1
_	-	-	-	-	-	-	-	-	-	-	-	4	-	-
	-	-	6	8	48	75	-	-	-	273	198	600	394	32
_	_	_	_	_	4	13	_	_	_	17	10	222 14	13	
_	_	_	_	_	_	_	_	_	_	2	2	21	_	_
-	-	-	4	-	-	-	-	-	-	2	-	3	3	-
-	-	-	2	3	16	35	-	-	-	157	113	198	74	15
-	-	-	-	2	26	20	-	-	-	30	44	70	189	1
_	-	-	-	3	2	5	-	-	-	65	28	69	115	16
	_	-	-	-	-	-	_	-	-	-	700	3	1 000	- E10
	_	1 –	4	2	51 3	204 44	_	9	_	265 19	732 50	1,390 525	1,022	512 76
_	_	_	_	_	-	1	_	_	-	-	-	15	-	1
-	-	-	-	-	-	-	-	-	-	-	-	25	-	3
-	-	-	4	-	-	-	-	-	-	2	9	14	2	4
-	-	-	-	1	14	100	-	3	-	111	389	552	149	165
	_	1	-	-	32	31	-	4	-	34	190	135	580	162
_	_	_	_	1 –	2	28 _	-	2 –	-	99	93	123	270 –	100
_	_	1	_	14	52	167	_	_	_	514	500	902	964	36
-	-	-	-	-	3	40	-	-	-	116	84	327	24	2
-	-	-	-	-	2	5	-	-	-	2	-	17	1	ı
-	-	-	-	-	-	1	-	-	-	1	-	11	-	-
-	-	1	-			-	-	-	-	2	4	8	3	-
_	-	-	-	8	2	69	-	-	-	166	192	306	102	12
_	_	_	-	1 5	45 -	31 21	_	_	_	70 156	152 67	128 102	573 261	19 3
_	_	_	_	-	_	-	_	_	_	1	1	3	-	- -
		L	L	L					L	_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121	합계	3,394	1		142	77	6	18	-	57	-
	주거용	671	1	-	104	48	4	5	_	15	_
	상업업무용	70	-	-	5	11	-	5	-	23	-
	주상복합용	64	_	-	7	14	1	6	-	16	-
전라남도	공업용	30	_	_	_	_	1	_	_	_	_
화순군	전	987	_	_	20	2	_	_	_	2	_
	답	798	_	_	4	2	_	2	_	_	_
	임야	766	_	_	2		_		_	_	_
	트수토지 특수토지	8	_	_		_	_		_	1	_
	합계	2,916	_	_	129	27	1	17	_	79	_
		·	_	_					_		_
	주거용	671			84	18	1	3		13	
	상업업무용	69	-	-	3	1	-	8	_	41	_
	주상복합용	81	-	-	17	5	-	6	-	24	_
전라남도	공업용	24	_	-	_	_	-	-	-	-	-
장흥군	전	659	-	-	18	3	-	-	-	-	-
	답	856	_	-	5	-	-	-	-	-	-
	임야	547	Ī		2	Ī	-	Ī	-	-	-
	특수토지	6	_	_	-	_	_	-	_	1	_
	공공용지	3	-	-	-	-	-	-	-	-	-
	합계	2,450	1	-	126	56	-	4	-	86	-
	주거용	544	1	-	92	41	-	1	-	15	-
	상업업무용	77	_	-	3	3	-	2	-	58	-
	주상복합용	50	_	-	11	4	-	1	-	12	-
전라남도	공업용	26	_	-	-	1	-	-	-	-	-
강진군	전	551	-	-	11	5	-	-	_	-	-
	답 임야	807 392	-	-	6	1	-		_	_	_
	투수토지	2	_	_	-	_	_	_	_	1	_
	공공용지	1	_	-	_	_	-	_	-	-	-
	합계	4,480	9	-	96	110	8	41	-	98	2
	주거용	816	-	-	65	81	3	10	-	10	1
	상업업무용	126	_	-	7	13	-	13	-	62	1
저기나는	주상복합용	86	_	-	9	11	-	11	-	19	-
전라남도 해남군	공업용 전	61 1,436	5	_	12	3	3	4	_	4	_
세리스	전 답	1,299	3	_	2	2	-	3	_	2	_
	임야	643	1	_	1	_	2	-	_	_	_
	특수토지	12	-	_	_	_	-	_	_	1	_
	공공용지	1	_	-	ı	-	-	ı	-	-	-
	합계	3,281	_	-	176	34	1	10	-	66	-
	주거용	624	_	-	102	17	1	2	-	5	-
	상업업무용	76	-	_	5	2	-	3	_	43	-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공업용	56 55	-	-	21 1	5 1	_	3	_	12	_
영암군	<u> </u>	923	_	_	32	6	_	1	_	5	_
	답	1,123	_	_	11	3	_	1	_	-	_
	임야	420	_	_	4	_	-	_	-	_	-
	특수토지	3	-	-	-	-	-	1	-	1	-
	공공용지	1	_	_	_	_	_	_	-	_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85	205	123	-	-	634	75	1,090		10
	_	-	1	-	-	7	50	1	-	-	43	2	366	23	1
	-	-	-	-	-	1	5	-	-	-	2	-	18	-	-
	-	-	-	-	-	1	4	-	-	-	1	-	14	-	-
	-	-	5	-	-	1	1	-	-	-	2	1	18	1	-
□	-	-	6	-	-	13	82	54	-	-	289	37	359	120	3
- - - - - - - - - -	-	-	-	-	-	61	36	26	-	-	120	31	155	357	4
	-	-	1	-	-	1	27	42	-	-	176	4	154	357	2
	-	-	-	-	-		-	-	-	-	1	-	6	-	-
The color of the	-	-	12	2	-	92	197	-	-	-	389	156	886	889	40
	-	-	2	-	-	6	65	-	-	-	27	4	420	28	-
	_	_	_	_	_	_	1	_	_	_	1	_	14	_	_
□ □ □ □ □ □ □ □ □ □	_	_	_	_	_	2	_	_	_	_	_	_	26	-	1
□ □ □ □ □ □ □ □ □ □	_	_	8	2	-		_	_	_	_	1	1		2	
- - 1 - - 79 33 - - - 85 48 84 510 11 - - 1 - - - 31 - - - 134 35 96 231 17 - - - - - - - - -	_	_			_	5	67	_	_	_					9
	_	_	1	_	_			_	_	_		48		510	11
	_	_		_	_			_	_	_					
- - - - - - - - 1 - - 2 2 - - 2 1 - - - - 1 - - 2 1 - - 1 - - - - 2 1 - - 1 - - - - 1 5 - 1 1 - - - - 1 5 - 1 1 - - - - 1 1 5 - 1 1 - - - 1 1 1 1 - - - 1	_	_		_	_	_		_	_	_					
- - 12 5 1 54 143 - - 214 205 622 767 154 - - - - - 5 30 - - - 13 20 295 20 11 - - 2 1 - - 1 - - - - 1 5 - 1 - - 10 2 - 1 - - - - - 1 2 7 1 1 - - 10 2 - 1 - - - - - 1 2 7 1 1 - - - 1 - - 57 - - - 1 2 7 1 1 - - - 1 - - 57 - - - 1 2 7 1 1 - - - 1 - - 57 - - - 40 88 170 104 35 - - - - - - 48 27 - - 41 69 63 482 70 - - - - - 1 - 26 - - - 79 25 64 159 34 - - - - - - - - - -		_	_	_	_	_	_	_	_	_		_			2
- - - - - - - - 13 20 295 20 11 - - 2 1 - - 1 - - - - 1 5 - 1 - - 1 - - 2 - - - - 17 1 1 - - 10 2 - 1 - - - - 17 1 1 - - 10 2 - 1 - - - - 1 <t< td=""><td></td><td>_</td><td></td><td></td><td></td><td></td><td></td><td></td><td>_</td><td></td><td></td><td></td><td></td><td></td><td></td></t<>		_							_						
- - 2															
- 10 2 - 1 1 1 1 2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_				-			-	-						
- - - - - - - 80 88 170 104 35 - - - - - - - - 41 69 63 482 70 - - - - - - - - 41 69 63 482 70 - - - - - - - - 79 25 64 159 34 - 1 - - - 1 - - - 1 - - - - </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7</td> <td>1</td> <td>1</td>	-	-	-	1	-	-	2	-	-	-	-	-	17	1	1
- - - 48 27 - - 41 69 63 482 70 - - - - - - - 79 25 64 159 34 - - - - - - - - - 79 25 64 159 34 -	_	-	10	2	-	1	-	-	-	-	1	2	7	1	1
- - - 1 - 26 - - 79 25 64 159 34 -<	_	-	-	1	-	-		-	-	-	80	88	170	104	35
- -	-			-				-	-						
- - - - - - - - - - -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1 - - - 1 - - - 1 - - - - 1 - - - 1 - - - 1 -															
- 10 4 4 48 121 - - 456 436 1,259 1,632 146 - - 1 - - 2 17 - - 21 22 529 40 14 - - - - - - - 2 - 24 1 - - - - - - - - - 2 - 24 1 - - - - - - - - - - 1 - - - - - - 2 - - - - - 11 1 4 0 9 3 - - - - 11 1 4 20 9 3 - - - - 182 252 445 406 42 2 -															
- 1 - - 2 17 - - - 21 22 529 40 14 - - - - - - - 2 - 24 1 - - - - - - - - - 2 - 24 1 - - - - - - - - - 1 - - 24 1 - - - 1 - - - 1 2 1 - - - 11 14 20 9 3 - - - 11 14 20 9 3 - - - 11 14 20 9 3 3 - - - - 11 14 20 9 3 3 - - - - - -	-														
- - - - - - 2 - 24 1 - - - - - 4 - - 1 - 31 - - - - - - 1 - - 11 14 20 9 3 - - 6 1 2 10 59 - - 111 14 20 9 3 - - 6 1 2 10 59 - - 111 14 20 9 3 - - 6 1 2 10 59 - - 1182 252 445 406 42 - 1 - 2 16 - - - 54 118 91 906 62 - 1 - - 1 - - -															
- - - 3 - - 1 - - - 11 14 20 9 3 - - 6 1 2 10 59 - - - 182 252 445 406 42 - - 2 - - - - 54 118 91 906 62 - - 1 - 2 2 16 - - 54 118 91 906 62 - - 1 - - - 183 29 112 270 24 - - - - 1 - - - 183 29 112 270 24 - - - - - - - 2 1 6 - 1 - - - - - -<	_	-		-	-			-	-	-					
- - 6 1 2 10 59 - - - 182 252 445 406 42 - - 2 - - - - 54 118 91 906 62 - - 1 - 2 2 16 - - - 183 29 112 270 24 - - 1 - - - - - 183 29 112 270 24 - - - - - - - - 183 29 112 270 24 - - - - - - - 2 1 6 - 11 - - - - - - - - - - - - - - - - - - -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4</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31</td> <td>-</td> <td>-</td>	-	-	-	-	-	-	4	-	-	-	1	-	31	-	-
- - 2 - - 34 20 - - - 54 118 91 906 62 - - 1 - - - - 183 29 112 270 24 - - - - - - - - 183 29 112 270 24 - - - - - - - - 183 29 112 270 24 - - - - - - - 2 1 6 - 1 - - - - - - - - - - 1 - - 1 - - 1 - - - - - 1 - - - - 1 - - - - - - -	-	-	-	3	-	-	1	-	-	-	11	14	20	9	3
1 - 2 2 16 183 29 112 270 24 1 2 1 6 2 1 6 - 1 1 2 1 6 - 1 1 2 1 6 - 1 19 26 13 69 311 - 8 - 231 419 978 893 27 1 5 - 5 61 6 22 381 15 1 1 5 7 9 - 1 1 5 5 61 1 9 - 1 1 5 5 61 1 9 - 1 1 5 7 1 9 12 2 4 14 5 5 5 - 1 - 1 9 12 2 4 5 2 11 127 83 179 361 110 1 3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10 1 39 97 61 70 125 13 1	-	-	6	1	2	10	59	-	-	-	182	252	445	406	42
- -	-				-										
- -															
- - 19 26 13 69 311 - 8 - 231 419 978 893 27 - - 1 5 - 5 61 - - 6 22 381 15 1 - - 1 5 - - 7 - - - - 9 - 1 - - 1 - - 1 - - - 9 - 1 - - 1 - - 1 - - - - 9 - 1 - - 1 - - - - - - 13 - - - - 14 5 - - 5 - 1 - 1 9 12 2 4 - - 5 2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1 5 - 5 61 - - - 6 22 381 15 1 - - 1 5 - - 7 - - - - 9 - 1 - - 1 - - - - - 13 - - - - 14 5 - - 5 - 1 - 1 9 12 2 4 - - - 5 2 11 127 - - 83 179 361 110 1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 - 97 61 70 125 13 - - -															
- - 1 5 - - 7 - - - - 9 - 1 - - - 1 - - - - - 13 - - - - 14 5 - - 5 - 1 - 1 9 12 2 4 - - - 5 2 11 127 - - 83 179 361 110 1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 - 97 61 70 125 13 - - - - - - - - - - - - - - - - - -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														
- - 14 5 - - 5 - 1 - 1 9 12 2 4 - - - 5 2 11 127 - - 83 179 361 110 1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 97 61 70 125 13 - - - - - - - - - 1 - -	-	-			-			-	-	-					
- - - 5 2 11 127 - - - 83 179 361 110 1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10 1 39 - - 97 61 70 125 13 - - - - - - - - - 1 - -	-	-	-	1	-	-	1	-	-	-	-	-	13	-	-
- - 3 5 1 52 69 - 7 - 44 148 131 641 7 - - - - 10 1 39 - - - 97 61 70 125 13 - - - - - - - - - 1 - - - - - 1 - -	-					-									
- - - - 10 1 39 - - - 97 61 70 125 13 - - - - - - - - - - 1 - -															

114 Ⅱ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129	5	-	81	76	10	38	5	66	-
	주거용	600	5	-	56	52	4	11	-	12	-
	상업업무용	83	-	-	2	9	5	11	5	38	-
	주상복합용	61	_	_	11	11	1	16	_	15	_
전라남도	공업용	44	_	_	_	_	_	_	_	_	_
무안군	 전	1,306	_	_	11	3	_	_	_	_	_
	 답	692	_	_			_	_	_	_	_
					1	1					
	임야	329	-	_		_	-	_	-		-
	특수토지	14	_	_	_	_	_	_	_	1	-
	합계	2,421	-	-	84	52	-	20	-	65	-
	주거용	482	-	-	61	35	_	5	-	11	-
	상업업무용	60	_	_	1	4	-	8	_	37	-
	주상복합용	55	-	-	7	7	-	7	-	16	-
전라남도	공업용	32	-	-	-	1	-	-	-	-	-
함평군	전	745	-	-	9	4	-	-	-	-	-
	답	701	_	_	6	1	_	_	_	_	_
	임야	336	_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9	_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2,829	_	_	88	94	_	24	_	97	6
	주거용	628	_	_	50	56	_	2	_	21	_
	상업업무용	104	-	-	8	8	-	8	-	59	6
TITLE.	주상복합용	78	-	-	9	19	_	13	-	15	-
전라남도	공업용	22	-	-	1	-	-	-	-	-	-
영광군	전	899	-	-	16	7	-	1	-	-	-
	답	725	-	-	4	4	-	-	-	-	-
	임야	359	-	-	_	_	-	-	-	-	-
	특수토지	14	-	-	ı	ı	-	-	-	2	-
	합계	2,777	9	-	227	52	-	24	-	74	2
	주거용	680	1	-	201	42	-	9	-	16	-
	상업업무용	66	-	-	1	2	-	9	-	37	2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42	1	-	6	3	-	4	-	17	-
장성군	공업용	36	-	-	1	-	-	-	-	-	-
885	전	810	5	-	13	4	-	2	-	1	_
	답	721	-	-	3	1	-	-	-	1	-
	임야	417	2	-	2	-	-	-	-	-	-
	특수토지	5	-	-	-	-	-	-	-	2	-
	합계	3,028	-	_	92	61	-	16	-	105	-
	주거용	657	-	-	64	46	-	5	-	3	-
	상업업무용	97	-	-	5	2	-	4	-	71	-
전라남도	주상복합용	92	_	-	4	11	_	7	_	28	-
완도군	공업용	34	-	-	-	-	-	-	-	-	-
	전	1,112	-	-	16	2	-	-	-	2	-
	답 임야	477 529	-	-	3	-	_	_	-	_	-
	음아 특수토지	30	_	_	_	_	_	_	_	1	_
	コーエハ	50		l	<u> </u>				L	_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4	3	4	28	141	- 1141	-	_ 근데	205	314	987	1,019	143
_	_	1	1	_	4	25	_	_	_	13	28	341	38	9
	_	_	1	_	1	1	_			-	1	9	-	-
	-	-	-	-	-	1	-	1	-	-	-	6	-	
_	-	1	-	-	-	1	-	-	-	2	9	19	10	2
-	-	1	1	2	2	84	-	-	-	79	195	467	383	78
-	-	1	-	-	21	16	-	-	-	9	54	63	486	40
-	-	-	-	2	-	12	-	-	-	102	25	74	102	12
-	-	-	-	-	-	1	-	-	-	-	2	8	-	2
-	-	15	13	-	60	161	-	-	1	198	261	725	675	91
-	-	-	-	-	1	34	-	-	-	6	11	295	14	9
_	_	_	4	_	1	_	_	_	_	1	_	4	_	_
_	_	1	_	_	-	_	_	-	_	-	_	17	_	_
	_	14	3	_	_	1	_		_	1	1	10	1	_
_	_	-	4	_	7	78	_		_	84	147	251	122	39
	_	_		_			_		_					
			1	-	51	24				16	66	91	412	33
_	-	-	1	-		24	-	-	1	90	36	49	125	10
-	-	-	-	-	-	-	-	-	-	-	-	7	1	-
-	-	-	-	-	-	-	-	-	-	-	-	1	-	-
_	-	5	5	16	22	228	-	-	-	241	316	870	761	56
	_	-	1	_	2	54	_	-	-	35	37	347	21	2
	_	1 –	-	_	-	6	_		_	_	-	7	1 –	_
	_	3	2	_	1 –	2	_		_	_	2	16 11	1	_
_	_	-	1	8	1	105	_	_	_	115	158	331	137	19
_	_	_	1	-	18	36	_	_	_	24	82	97	441	18
-	-	-	-	8	-	21	-	-	-	67	32	58	160	13
-	_	1	-	-	-	-	_	ı	-	_	4	3	-	4
_	-	19	15	_	29	161	397	1	-	160	395	633	551	29
-	-	2	-	-	6	37	11	-	-	12	35	290	17	1
-	-	-	1	-	-	2	-	-	-	1	2	7	2	-
-	-	-	2	-	-	-	-	_	-	-	-	9	-	-
_	_	7	4	_	1	52	134	-	_	2	216	18	- Ω1	15
	-	5 2	3	_	4 18	52 49	134 180		_	64 8	216 86	210 67	81 303	15 -
_	_	3	1	_	-	20	72	_	_	73	54	30	147	13
-	-	-	-	-	-	-	-	_	-	-	-	2	1	-
-	-	-	8	6	19	173	-	-	-	79	630	907	359	573
-	-	-	1	-	2	25	-	ı	-	-	30	420	10	51
-	-	-	-	-	-	-	-	-	-	-	-	13	-	2
-	-	-	-	-	-	3	-	-	-	-	1	37	-	1
-	-	-	3	-	-	2	-	-	-	-	8	15	3	3
-	-	-	3	1	4	96	-	-	-	43	396	310	32	207
	_	-		- 5	12	15	-		_	32	138	73	121 193	111 185
_	_	_	1 –	5	1	31 1	_		_	32	53	29 10	193	185
				<u> </u>		_ '				_	4	10		13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327	-	-	85	38	-	7	-	45	5
	주거용	445	_	_	69	27	_	1	_	4	1
	상업업무용	55	_	_	3	5	_	3	_	34	3
	주상복합용	28	_	_	6	4	_	2	_	7	1
전라남도			_	_	_	_	_	_	_	_	_
진도군	공업용	20									
	전	855	-	-	6	2	-	-	-	-	-
	답	528	-	-	1	-	-	-	-	-	-
	임야	387	_	-	-	-	-	-	-	-	-
	특수토지	9	_	-	-	-	-	1	-	-	-
	합계	3,614	_	-	11	8	-	2	-	14	-
	주거용	519	_	-	9	7	-	-	-	3	-
	상업업무용	25	_	-	-	-	-	-	-	3	-
	주상복합용	66	-	-	1	1	-	1	-	8	-
전라남도	공업용	14	_	_	_	_	_	_	_	_	_
신안군	전	1,503	-	-	-	-	-	-	-	-	-
	 답	877	_	_	1	_	_	_	_	_	_
	임야	550		_	_	_	_	_	_	_	-
	특수토지	60	_	_	_	_	_	1	_	_	_
	합계	75,822	9	_	3,550	4,131	257	627	1	3,356	54
	주거용	16,808	7	_	2,325	2,592	149	268	_	610	5
	상업업무용	4,011	_	_	275	661	37	182	1	2,157	38
	주상복합용	2,160	_	_	454	601	42	134	-	534	6
경상 북 도	공업용	1,125	_	-	15	6	2	19	-	-	1
904 <u>T</u>	전	24,930	-	-	302	146	9	15	-	16	3
	답	15,894	1	-	127	85	14	2	_	8	1
	임야	10,744	1	-	52	40	4	6	-	7	-
	특수토지	140	-	-	-	-	-	1	-	24	-
	공공용지	10		-	-	-	-	-	-	-	
	합계	2,995	_	_	135	635	47	178	_	213	-
	주거용	1,045	_	_	91	439	32	95	_	36	-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333 184	-	_	16 16	85 82	7 8	51 31	_	144 29	-
경상 북 도	공업용	93	_	_	-	-	-	-	_	-	_
포항시	<u> </u>	444	_	_	6	9	_	1	_	_	_
남구	 답	514	_	_	3	9	_	-	_	_	_
	임야	378	_	_	3	11	_	_	_	3	-
	특수토지	2	_	-	-	-	-	-	-	1	-
	공공용지	2	_	-	-	-	-	-	-	-	-
	합계	3,655	-	-	122	420	150	63	-	428	-
	주거용	953	-	-	74	229	83	18	-	60	-
	상업업무용	487	-	-	15	75	30	21	-	304	-
경상북도	주상복합용	242		-	28	79	32	21	-	61	-
포항시	공업용	27	_	-	-	-	-	-	-	-	-
북구	전	738	_	-	4	10	2	-	-	-	-
	답	753	-	-	1	17	-	1	-	2	-
	임야	451		-	-	10	3	2	-	1	
	특수토지	4	_	-	-	_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_	-	-	10	2	26	151	-	-	-	166	309	715	632	136
_	_	_	1	_	1	23	_	_	_	4	5	277	14	18
_	_	_	_	1	_	2	_	_	_	_	_	2	_	2
_	_	_	2	_	_	_	_	_	_	_	_	6	_	_
-	-	-	7	-	-	2	-	-	-	-	2	5	4	-
_	-	-	-	-	4	79	-	-	-	64	221	312	112	55
-	-	-	-	-	21	20	-	-	-	20	56	76	326	8
-	-	-	-	1	-	25	-	-	-	78	24	32	175	52
-	-	-	-	-	-	-	-	-	-	-	1	5	1	1
_	-	-	2	2	8	47	-	-	-	423	712	1,419	871	95
_	-	-	_	-	-	5	-	_	-	22	35	424	9	5
_	_	_	_	_	_	1	_	_	_	_	1	20	_	_
_	_	_	_	_	_	1	_	_	_	_	2	51	1	_
_	_	_	1	_	_	_	_	_	_	_	5	6	2	_
-	-	-	1	1	4	26	-	-	-	198	400	605	227	41
_	-	-	-	-	4	6	-	-	-	27	154	159	523	3
_	-	-	-	1	-	8	-	-	-	176	88	125	106	46
-	-	-	-	-	-	-	-	-	-	-	27	29	3	-
3	19	646	266	791	1,496	5,524	474	2	1	7,849	6,193	23,029	16,227	1,317
-	-	45	57	97	111	1,076	22	1	-	575	450	7,678	593	147
2	-	21	53	5	18	195	1	-	-	14	8	316	9	18
_	-	4	15	3	3	54	1	-	-	9	5	280	2	13
_	16	355	106	-	1	61	-	1	-	29	21	456	34	2
-	-	78	18	229	325	2,109	258	-	1	4,125	3,468	9,084	4,196	548
1	1	78 62	9	239 217	1,028	1,090 914	127 63	_	_	1,027 2,063	1,558 683	3,165 1,971	7,179 4,211	155 432
_	2	2	-	-	-	19	2	_	-	7	-	78	3	2
_	-	1	1	1	-	6	_	-	-	-	-	1	-	-
-	17	70	83	17	78	628	-	-	-	111	128	430	164	61
_	-	9	24	1	4	112	-	-	-	10	3	185	2	2
_	-	1	10	-	-	11	-	-	-	-	1	7	-	-
-	-	-	6	-	-	3	-	-	-	-	-	9	-	-
_	16	28	38	- 10	7	100	-	-	-	20	- 56	2	- 1.4	17
_	_	6 12	4	10	7 67	199 153	_	_	_	30 23	56 54	89 101	14 74	17 10
_	1	13	1	2	-	140	_	_	_	47	14	37	74	32
-	-	-	-	-	-	1	-	-	-	-	-	-	-	-
-	-	1	-	-	-	1	-	-	-	-	-	-	-	-
-	-	23	7	1	92	411	-	-	-	116	326	902	565	29
-	-	5	2	-	3	77	-	-	-	1	12	367	21	1
-	-	1	1	1	1	16	-	-	-	-	-	19	-	3
-	-	-	-	-	-	4	-	-	-	-	-	13	-	4
	_	6	3	_	- 5	1 117	-	_	_	- 50	173	14 272	91	1 8
_	_	2	1	_	82	86	_	_	_	13	88	134	324	2
_	_	5	-	_	1	109	_	_	_	52	53	80	125	10
-	-	-	-	-	-	1	-	-	-	-	-	3	-	
	1		L					L	1	L				L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6,696	2	-	266	592	4	18	-	405	-
	주거용	1,715	_	-	168	375	1	2	-	102	-
	상업업무용	453	_	_	31	92	-	7	_	246	-
	주상복합용	212	_	_	32	82	_	8	_	52	_
7,110		124	_	_	1	2	_	_	_	-	_
경상북도	공업용										
경주시	전	1,508	-	-	21	23	1	1	-	2	-
	답	1,823	1	-	11	15	2	-	-	1	-
	임야	830	1	-	2	3	-	-	-	-	-
	특수토지	29	_	-	-	-	-	-	-	2	-
	공공용지	2	_	-	-	_	-	-	-	-	-
	합계	4,684	_	-	181	203	3	43	1	201	-
	주거용	874	_	-	107	98	3	15	-	37	-
	상업업무용	230	_	-	11	29	-	22	1	132	-
	주상복합용	110	-	-	26	39	-	3	-	25	-
경상 북 도	공업용	52	_	_	1	_	-	-	_	_	_
김천시	 전	1,851	_	_	27	25	_	3	_	5	_
	답	759	_	_	7	8	_	_	_	1	_
	임야	799	_	_	2	4	_	_	_	_	_
	투수토지	6	_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_	_		_	_	_	_	_
	합계	3	2	_		527	2		_		3
	주거용	5,430	2	_	47 32		2	6	_	317 80	- -
	사업업무용 - 사업업무용	1,216 303	_	_	-	348 65	_	5	_	184	3
	주상복합용	153	_	_	5	79	_	-	_	52	- -
경상 북 도	공업용	40	_	_	_	-	_	_	_	- -	_
안동시	<u> </u>	1,880	_	_	7	18	_	_	_	_	_
	답	948	_	-	-	9	-	-	-	1	_
	임야	880		-	3	8	-	-	-	-	-
	특수토지	9		_	_	_	_	_	-	-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3,349	-	-	339	415	11	67	-	195	35
	주거용	787	-	-	187	228	4	28	-	21	5
	상업업무용	353	_	-	30	90	-	12	-	145	24
경상 북 도	주상복합용	200	ı	-	45	87	1	26	-	22	3
구미시	공업용	86	_	-	-	_	_	1	_	_	_
Talvi	전	631	_	-	29	7	1	-	-	2	2
	답	906	_	-	36	2	5	-	-	2	1
	임야	378	_	-	12	1	-	-	-	1	-
	특수토지	8	_	-	-	-	-	-	-	2	-
	합계	2,943	-	-	246	123	2	18	-	193	-
	주거용	696	-	-	148	78	1	7	-	33	-
	상업업무용	208	_	-	32	24	-	4	-	133	-
경상북도	주상복합용	80	_	-	31	19	-	4	-	24	-
영주시	공업용	24	-	-	-	-	1	-	-	-	-
	전	1,046	-	-	30	1	-	1	-	2	-
	답	505	_	-	2	-	-	-	-	-	-
	임야	383	-	-	3	1	-	1	-	1	-
	특수토지	1	-	_	_	-	-	1	_	-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_	2	105	17	697	486	1,008	-	-	-	358	534	1,276	886	40
_	_	2	2	89	45	324	_	_	-	29	42	496	34	4
_	_	2	1	3	6	38	_	_	_	1	1	22	3	_
	_				_		_	_	_	_			_	_
		1	1	3		20					1	12		
_	-	68	10	-	-	7	-	-	-	1	1	34	-	-
_	-	9	2	187	70	285	-	-	-	131	256	391	118	11
-	-	13	-	224	359	224	-	-	-	70	190	227	480	6
-	-	10	1	191	6	99	-	-	-	125	43	79	251	19
-	2	-	-	-	-	9	-	-	-	1	-	15	-	-
_	-	-	_	_	_	2	-	_	-	_	-	-	-	-
_	_	27	8	6	43	209	_	_	_	405	618	1,678	1,054	4
	_	1	1	_	2	21	_	_	_	12	16	530	31	
-	-	5	1	-	4	8	-	-	-	-	1	16	-	-
-	-	-	-	-	-	4	-	-	-	-	-	13	-	-
_	-	19	2	-	1	1	-	-	-	-	3	25	-	-
-	_	2	3	4	23	110	_	-	-	199	377	745	327	1
_	-	-	-	-	13	22	-	-	-	38	125	172	370	3
_	-	-	1	1	-	42	-	-	-	156	96	171	326	-
_	_	_	_	_	_	_	_	_	_	_	_	5	_	_
_	_	_	_	1	_	1	_	_	_	_	_	1	_	_
_	_	23	6	-	35	287	_	-	-	378	699	1,651	996	451
_	-	1	1	-	5	54	-	-	-	42	78	471	24	75
-	-	1	2	-	1	17	-	-	-	1	2	19	1	2
_	-	1	-	-	1	2	-	-	-	-	-	12	-	1
_	-	11	2	_	-	1	-	-	-	-	4	20	2	_
	_	4	1	_	9	109	_	_	-	207	378	673	272	202
_	-	2	-	-	19	42	-	-	-	44	124	267	375	65
_	_	2	-	-	_	59 2	_	-	_	84	113	183 6	322	106
_	_	_	_	_	_	1	_	_	_	_	_	-	_	_
_	_	90	54	17	99	467	_	_	_	277	86	545	612	40
_	_	4	14	_	6	65	_	_	-	18	3	186	17	1
-	-	2	20	-	-	25	-	-	-	-	-	4	-	1
-	-	-	4	-		6	-	-	-	1	-	5	-	
-	-	39	16	-	-	12	-	-	-	2	1	14	1	-
-	-	10	-	6	11	141	-	-	-	123	39	173	75	12
_	-	24	-	9	82	122	-	-	-	81	33	105	400	4
_	_	11	_	2	_	94	_	_	_	51 1	10	56 2	118	22
_	_	32	4	_	28	272	_	_	_	436	194	795	540	60
_	_	4	-	_	4	62	_	_	-	53	29	245	30	2
-	-	-	-	-	-	7	-	-	-	-	-	8	-	-
-	-	-	-	-	-	-	-	-	-	-	-	2	-	-
-	-	14	1	-	-	2	-	-	-	1	-	3	2	-
-	-	8	1	-	11	133	-	-	-	231	97	349	154	28
-	-	4	1	-	13	36	-	-	-	26	49	115	258	1
-	-	2	1	-	-	32	-	-	-	125	19	73	96	29
_	_	_	_	-	-	_	-	-	-	_	_	_	_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4,331	-	-	93	264	3	5	-	136	-
	주거용	833	_	-	44	170	2	1	-	40	-
	상업업무용	183	_	_	7	47	_	2	_	85	_
	주상복합용	38	_	_	4	16	_	2	_	10	_
경상북도	공업용	77	_	_	_	_	_	_	_	_	_
영천시	 전	1,971	_	_	27	21	_	_	_	_	_
	답	625		_	9	10	_	_	_	_	_
						-				_	
	임야	595		-	2		1	-	-		-
	특수토지	9	_	_	-	-	_	-	_	1	-
	합계	4,868		-	211	173	-	9	-	183	-
	주거용	1,080	-	-	122	103	-	3	-	33	-
	상업업무용	178	-	_	15	29	_	3	-	113	-
	주상복합용	135	-	-	30	35	-	3	-	35	-
경상북도 상주시	공업용	37	-	-	-	-	-	-	-	-	-
경구시	전	1,467	_	-	26	2	-	-	-	1	-
	답	1,382	_	_	13	4	_	_	_	_	_
	임야	585	_	_	5	_	_	_	_	_	_
		4	_	_	_	_	_	_	-	1	-
	합계	3,025	_	_	340	17	3	7	_	168	_
	주거용	743	_	_	236	13	3	5	_	14	_
	상업업무용	163	_	-	23	1	-	-	-	112	-
경상 북 도	주상복합용	110	-	-	43	3	-	1	-	41	-
문경시	공업용	26	-	-	-	-	-	1	-	-	-
	전	989	_	-	27	_	-	1	-	-	-
	답 임야	593 397		_	6 5	-	-	_	_	_	_
	투수토지	4		_	-	_	_	_	_	1	_
	합계	2,891	5	_	293	330	26	30	_	150	5
	주거용	715	5	-	171	185	13	2	-	26	-
	상업업무용	292	_	_	20	96	-	14	-	106	3
	주상복합용	141	_	-	60	40	-	8	-	14	-
경상북도	공업용	115	_	-	5	2	1 -	-	-	-	1
경산시	전 답	1,163 202		-	32 4	7	5 7	6	-	1	1 -
	임야	253	_	_	1	_	-	_	_	_	_
	특수토지	8	_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2	-	-	-	-	-	-	-	-	-
	합계	2,372	_	-	31	11	-	2	-	22	-
	주거용	322	-	-	20	9	-	1	-	4	-
	상업업무용	40	_	_	1	-	_	1	-	14	-
경상북도	주상복합용 공업용	9 18		-	4	-	-		-	3	-
군위군	<u> </u>	1,080		_	4	_	_		_	_	_
	- 인 답	459		_	2	2	_	_	_	_	_
	임야	434	_	_	-	-	_	_	_	_	_
	특수토지	10	-	-	_	_	_	-	_	1	_

Table Asset Asse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1 1 1 4 - 1 1	_														
19 6 4 5 - 38 5 12 7 63 119 395 62 665 568 32 5 5 5 4 39 28 23 111 346 8 3 28 111 3 107 311 21 7 1 1 7 1 1 7 1 1															
12 7 - 63 119 396 62 665 568 32 5 5 54 39 28 111 346 - 8 3 28 111 3 107 311 21 111 3 107 311 21 111 3 107 311 21 7 1 404 505 1,694 1,337 17 22 1 1 - 3 43 19 35 678 37 1 1 - 1 1 1 8 19 35 678 37 1 1 - 1 1 1 8 7 7 111 1 3 20 1 1 -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_	-		-	-	1	-	-	-	-	-	-	4	-	1
-	-	-	19	6	-	-	4	-	-	-	5	-	38	5	-
- 8 3 28 1111 3 107 311 21 1 111 3 107 311 21	-	-	12	7	-	63	119	-	-	-	395	62	665	568	32
-	-	-	5	-	-	54	39	-	-	-	28	23	111	346	-
2 - 15 7 - 65 245 - - 1 404 505 1,694 1,337 17 - - 2 1 - 3 43 - - - 19 35 678 37 1 - - 1 1 - - 8 - - - - 7 - <td>-</td> <td>-</td> <td>8</td> <td>3</td> <td>-</td> <td>-</td> <td>28</td> <td>-</td> <td>-</td> <td>-</td> <td>111</td> <td>3</td> <td>107</td> <td>311</td> <td>21</td>	-	-	8	3	-	-	28	-	-	-	111	3	107	311	21
- - 2 1 - 3 43 - - - 19 35 678 37 1 1 - 1 1 - - 8 - - - - 7 - - -<	-	-	-	-	-	-	-	-	-	-	-	-	7	1	-
1 - 1 1 - - 8 -	2	-	15	7	-	65	245	-	-	1	404	505	1,694	1,337	17
-	_	-	2	1	_	3	43	-	_	-	19	35	678	37	1
-	1	-			_		8	_	_	_					
- 8 8 3 1 1 1 1 73 20 1 1 1 1 3 20 1 1 1 1 1 73 264 565 327 5 1 1 - 2 1 1 - 52 74 1 1 173 264 565 327 5 1 1 - 2 1 1 - 52 74 81 156 259 737 2 2 1 1 -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_			_	_		_	_	_	_	_		1	_
- - 2 1 - 10 90 - - 1 173 264 565 327 5 1 - 2 1 - 52 74 - - - 81 156 259 737 2 - - - - - - 130 47 134 234 9 - - - - - - - - - 3 - - - - 29 4 2 36 187 - - - 183 366 1,008 612 63 - - 2 - - - - - 18 20 381 16 99 - - - - - - - - 13 - - - 13 - - - - <	_														
1 - 2 1 - 52 74 - - - 81 156 259 737 2 - - - - - - - - 130 47 134 234 9 - - - - - - - - - - - - 3 - - - - 29 4 2 36 187 - - - - 3 - - - - 2 - - 2 34 - - - 8 20 381 16 9 - - - - - - 8 20 381 16 9 - - - - - - - - - 13 - - - - - 13 <	_														
26 130 47 134 234 9 3 3 3 3 3 3 3 3 3															
29	_	-	-	-	-	-	26	-	-	-	130	47	134	234	9
2 2 34 8 20 381 16 9 2 8 13 - 4 13 - 4 1 1 1 1 2 15 - 3 8 3 1 1 1 1 2 15 - 3 8 1 1 4 84 66 242 346 177 32 7 1 - 27 31 15 86 140 281	-	-	-	-	-	-	-	-	-	-	-	-	3	-	-
- - - - - - - - - 13 - 4 - - - - 1 - - - 1 2 15 - 3 - - 8 3 - - 1 - - - 1 133 - - - 1 133 - - - 1 133 - - - 1 133 - - - - 1 133 - - - - 1 133 -	-	-	29	4	2	36	187	-	-	-	183	366	1,008	612	63
- - - - 1 - - - 1 2 15 - 3 - - 8 3 - - 1 - - - 1 13 - - - 1 133 - - - 1 133 - - - 1 133 - - - 66 242 346 177 32 - - 7 - - 27 31 - - - 15 86 140 281 - - - 4 - 1 - 29 - - 93 15 97 138 15 - - 4 - 1 65 327 126 - - 97 145 657 557 7 - - 1 1 1 65 327 1	_														
- - 8 3 - - 1 - - - 1 133 - - - - - 1 133 - - - - 66 242 346 177 32 - - 7 - - 27 31 - - - 15 86 140 281 - - - 4 - 1 - 29 - - 93 15 97 138 15 - - - - - - - 97 145 657 557 7 - - 11 - 2 45 8 - - 2 6 221 28 - - - 14 - 1 16 - - - 97 145 657 557 7 - <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8 1 1 1 4 84 66 242 346 177 32 7 7 27 31 15 86 140 281 4 - 1 - 29 93 15 97 138 15 3 37 23 11 65 327 126 97 145 657 557 7 1 - 1 - 2 45 8 - 2 6 221 28 1 - 14 - 1 16 2 6 221 28 14 - 1 16 99 - 1 31 4 - 1 16 99 - 1 31 4 9 1 54 7 1 1 - 1 17 14 15 - 5 7 16 114 1 1 - 1 17 14 15 5 7 16 114 1 1 - 5 - 47 9 54 13 41 78 4 1 1 - 1 1 - 1 1 1 1 1 1 - 4 1 1 24 38 20 2 231 28 1 1 1 1 1 1 1 1 1 1 1 1															
- - 7 - - 27 31 - - - 15 86 140 281 - - - 4 - 1 - 29 - - - 93 15 97 138 15 -															
- - 4 - 1 - 29 - - - 93 15 97 138 15 -<		-													
- -	-	-													
- - - 1 - 2 45 8 - - 2 6 221 28 - - - - 1 16 - - - - - 20 2 - - - - - - - - - - 9 - - - - 9 - - - - 9 - - - - 9 - - - - 1 </td <td>_</td> <td>_</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_</td> <td>-</td> <td></td> <td>-</td> <td>-</td>	_	_	-	-	-	-		-	-	-	_	-		-	-
14 - 1 16 20 2 1	-	-	37	23	11	65	327	126	-	-	97	145	657	557	7
- - - 6 - - - 9 - - - 9 - - - - 9 - - - - 1 54 7 - - - 1 54 7 - - - 1 54 7 -	-	-	-	1	-	2	45	8	-	-	2	6	221		-
- - 31 4 - - 9 - - - - 1 54 7 - - - 4 - 5 45 187 94 - - 35 118 292 328 2 - - 1 - 1 17 14 15 - - 5 7 16 114 - - - 1 - 5 - 47 9 - - 54 13 41 78 4 - - - - - 54 13 41 78 4 - - - - - 54 13 41 78 4 - - - - - - - - - - - - - - - - - - -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						
- - 4 - 5 45 187 94 - - 35 118 292 328 2 - - - 1 - 1 17 14 15 - - 5 7 16 114 - - - 1 - 5 - 47 9 - - 54 13 41 78 4 - - - - - 54 13 41 78 4 - - - - - - 54 13 41 78 4 - - - - - - 11 -<															
- - 1 - 1 17 14 15 - - 5 7 16 114 - - - - 1 - - 54 13 41 78 4 - - - - - - 54 13 41 78 4 - - - - - - - 54 13 41 78 4 - - - - - - - 1 -															
- - 1 - 5 - 47 9 - - 54 13 41 78 4 -		ļ													
- -	_								_						
- - - 1 -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	+							-						
- - - - - 2 4 - - - 20 2 231 28 1 1 -	-	-	-	1	-	-		-	-	-		-		-	-
1 - <td>1</td> <td>-</td> <td>-</td> <td>-</td> <td>-</td> <td>24</td> <td>38</td> <td>-</td> <td>-</td> <td>-</td> <td>451</td> <td>110</td> <td>942</td> <td>722</td> <td>18</td>	1	-	-	-	-	24	38	-	-	-	451	110	942	722	18
- - <td></td> <td>_</td> <td>-</td> <td>-</td> <td>-</td> <td>2</td> <td>4</td> <td>-</td> <td>-</td> <td>_</td> <td>20</td> <td></td> <td>231</td> <td></td> <td>1</td>		_	-	-	-	2	4	-	-	_	20		231		1
- - - - - - - - - - 14 3 - - </td <td>-</td> <td></td>	-														
- - - - - - - - 227 68 474 228 8 - - - - - - 39 22 100 264 2 - - - - - - - 114 18 91 199 7															
- - - - - 20 8 - - - 39 22 100 264 2 - - - - - - - 114 18 91 199 7															
- - - - - 114 18 91 199 7															
		-													
	_	-	-	-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968	-	-	125	6	-	17	-	89	-
	주거용	705	-		105	5		12	-	5	
	상업업무용	82	_	_	4	_	_	1	_	59	_
	주상복합용	64	_	_	12	1	_	4	_	24	_
경상북도	공업용	29	_	_			_		_	_	_
의성군			_	_	4	_	-	_	_	_	_
	전	1,349			1						
	답	1,106	-	-	3	-	-	-	_	-	-
	임야	627	-	-	-	-	1	-	-	-	-
	특수토지	6	-	-	-	-	-	-	-	1	_
	합계	2,068	_	_	61	8	-	-	-	37	-
	주거용	409	-	-	45	6	-	-	-	6	-
	상업업무용	28	-	-	_	_	_	-	-	13	_
	주상복합용	43	-	-	5	-	-	-	-	16	-
경상북도	공업용	4	_	_	_	_	_	_	-	_	_
청송군	전	1,137	_	_	7	1	_	_	_	_	_
	다 답	183	_	_	4	1	_	_	_	_	_
			_	_	-	_	-	_	_	_	_
	임야	260									
	특수토지	4	-	-	_	-	-	-	-	2	-
	합계	1,657	-	-	61	28	-	-	-	48	-
	주거용	347	-	-	39	17	-	-	-	19	-
	상업업무용	10	-	-	2	-	-	-	-	6	-
경상북도	주상복합용	45	-	-	12	2	-	-	-	22	-
영양군	공업용	8	-	-	-	-	-	-	-	-	-
	전	790	-	-	6	9	-	-	-	-	
	답	142	-	-	2	-	-	-	_	_	-
	임야 특수토지	314 1	_	_	_	_		_	_		_
	합계	2,420	_	_	143	36		17	_	73	
	주거용	570			112	30		4	_	13	
	상업업무용	75	_	_	7	5	_	7	_	41	_
	주상복합용	58	_	_	17	1	-	6	_	17	-
경상북도	공업용	21	_	_	_	_	_	_	_	_	_
영덕군	<u>전</u>	794	_	_	2	_	_	-	-	-	_
	 답	450	-	-	1	-	-	-	-	-	-
	임야	450	_	_	4	_	_	_	_	1	_
	특수토지	2	-	-	_	_	_	_	_	1	_
	합계	3,335	-	-	27	78	-	10	-	48	-
	주거용	591	-	-	18	67	-	3	-	9	-
	상업업무용	60	-	-	4	2	-	5	-	21	-
경사보드	주상복합용	37	-	-	4	3	ı	2	-	17	-
경상북도 청도군	공업용	9	-	-	ı	ı	ı	-	-	-	-
SIZE	전	1,531	-	-	1	3	-	-	-	-	-
	답	592	-	-	-	3	-	-	-	-	-
	임야	509		-		-	-		-	-	
	특수토지	6	-	-	_	_	_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3	3		31	159	- >11111	-	_ 근데	387	434	1,268	1,420	16
_	_	-	-	_	1	20	_	_	_	22	17	484	33	1
_	_	_	_	_	_	3	_	_	_	_	_	15	_	_
_		_	_	_		_	_	_	_	_	_	23	-	
-	-	13	2	-	-	_	-	-	-	2	-	10	2	-
-	-	-	-	-	2	74	-	-	-	194	279	442	348	9
-	-	-	1	-	28	49	-	-	-	48	62	178	732	5
-	-	-	-	-	-	13	-	-	-	120	76	112	305	1
-	-	-	-	-	-	-	-	-	-	1	-	4	-	-
-	-	2	-	-	14	29	-	-	-	415	147	771	545	39
_	-	-	-	-	2	5	-	-	-	45	22	247	27	4
_	-	-	-	-	-	-	-	-	-	4	-	10	-	1
_	-	-	-	-	-	-	-	-	-	-	1	21	-	-
-	-	1	-	-	-	-	-	-	-	1	-	2	-	-
-	-	1	-	-	8	15	-	-	-	299	105	408	269	24
-	-	-	-	-	4	5	-	-	-	9	10	33	117	-
-	-	-	-	-	-	4	-	-	-	57	9	48	132	10
-	-	-			-	-	-	-	-	-	-	2	-	-
-	-	3			27	59	-	-	-	324	85	606	414	2
_	-	-	-	-	3	8	-	-	-	31	9	207	14	-
_	_	_	_	_	_	1	_	_	_	- 1	_	2 7	_	_
	_	2	_	_	_	1	_	_	_	1 –	_	5	_	
_	_	_	_	_	14	38	_	_	_	202	58	325	137	1
_	_	1	_	_	8	2	_	_	_	4	5	15	104	1
	_	_	_	_	2	9	_	_	_	86	13			_
	_	_	_	_	_	-	_	_	_	- 00	-	45 -	159	_
	_	11	5	_	22	92	_	1	_	338	151	864	527	140
_	_	2	3	_	3	18	_	1	_	22	4	335	13	10
_	_	2	-	_	-	1	_	_	_	_	-	10	-	2
_	_	_	_	_	_	_	_	_	_	_	_	14	_	3
_	_	6	2	_	_	_	_	_	_	3	1	7	1	1
_	_	-	_	_	3	36	_	_	_	181	84	310	119	59
_	_	1	_	_	16	17	_	_	_	46	41	89	216	23
_	-	_	_	_	-	20	_	_	_	86	21	98	178	42
_	-	-	-	-	-	-	-	-	-	-	-	1	-	-
-	-	1	1	-	43	132	-	-	-	550	192	1,199	968	86
_	-	_	_	_	2	22	-	_	-	38	12	365	43	12
-	-	_	_	_	-	5	-	_	-	1	_	20	-	2
-	-	-	-	-	-	1	-	-	-	-	-	10	-	-
-	-	1	1	_	-	1	-	-	-	1	-	3	2	-
-	-	-	-	_	8	67	-	-	-	346	138	619	308	41
-	-	-	-	-	32	20	-	-	-	47	26	91	370	3
-	-	-	-	-	1	16	-	-	-	116	16	88	244	28
_	-	-	-	-	-	-	-	-	-	1	-	3	1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942	-	-	54	35	-	42	-	33	-
	주거용	406	_	-	39	31	-	27	-	4	-
	상업업무용	47	_	_	7	_	_	5	_	20	_
	주상복합용	29	_	_	3	4	_	1	_	8	_
경상 북 도	공업용	73	_	_	1	_	_	7	_	_	_
고령군		497	_		2	_	_	_			_
	전			_					_	_	
	답	579	_	_	2	_	-	_	_	_	-
	임야	305	-	-	_	_	-	2	-	-	-
	특수토지	6	-	-	-	-	-	-	-	1	-
	합계	2,672	-	-	76	11	-	10	-	40	-
	주거용	469	-	-	52	6	-	3	-	3	-
	상업업무용	49	-	-	9	-	-	1	-	23	-
	주상복합용	54	_	-	13	5	-	5	-	14	-
경상북도	공업용	66	_	_	_	_	_	1	_	_	_
성주군	 전	652	_	_	1	_	_	_	_	_	_
	 답	940	_	_	1	_	_	_	_	_	-
	임야	440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2	_	_			_	_	_	_	_
	합계		_	_	303	75	4	21	_	92	8
	- 13세 주거용	2,353 589	_	_	218	55	3	10	_	25	-
	상업업무용	115	_	_	23	10	_	-	_	51	5
	주상복합용	88	_	_	39	8	1	2	_	15	3
경상북도	공업용	133	_	_	5	2	-	9	_	-	_
칠곡군	<u> </u>	708	_	_	11	_	_	_	_	_	_
	답	463	-	_	3	_	_	_	_	_	-
	임야	249	_	_	4	_	_	_	_	_	-
	<u></u> 특수토지	8	_	_	_	_	_	_	_	1	_
	합계	2,863	_	_	40	88	2	13	_	78	3
	주거용	537	_	_	19	54	2	2	_	7	_
	상업업무용	96	-	-	1	9	-	8	-	59	3
	주상복합용	50	-	_	7	11	_	2	_	10	
경상북도	공업용	23	-	_	2	_	_	1	_	_	
예천군	전	827	-	_	3	8	_	_	_	1	
	답	957	-	-	6	4	-	-	-	-	-
	임야	371	-	_	2	2	_	_	_	_	
	특수토지	2	-	_	_	_	-	-	_	1	-
	합계	2,299	-	_	84	6	_	1	_	38	-
	주거용	441	-	-	77	6	_	1	-	2	-
	상업업무용	56	_	_	4	_	_	_	_	32	-
3.,,,,,	주상복합용	18	_	_	3	_	_	_	-	3	-
경상북도	공업용	13	_	-	_	_	-	-	-	-	-
봉화군	전	1,035	_	_	_	_	_	_	-	-	-
	 답	350	_	-	_	_	_	_	-	-	-
	임야	384	_	_	_	_	-	-	_	_	-
	특수토지	2	-	-	-	-	-	-	-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_	31	6		26	35	94	1	_	260	63	740	518	4
_	_	_	_	_	6	3	2	_	_	16	4	254	19	1
_	_	1	1	_	_	1	_	_	_	2	_	10	-	_
	_	_	_		_	_	_	_	_		_			_
										3		9	1	
_	-	20	5	-	-	-	-	1	-	3	1	34	1	-
_	-	3	-	-	1	14	37	-	-	121	25	256	36	2
_	-	3	-	-	19	4	43	-	-	55	32	115	306	-
	-	4	-	-	-	12	12	-	-	60	1	58	155	1
-	-	-	-	-	-	1	-	-	-	-	-	4	-	-
-	-	9	-	-	30	36	-	-	-	281	404	1,095	661	19
-	-	1	-	-	3	8	-	-	-	14	32	312	35	-
_	_	_	_	_	_	1	_	_	_	1	_	14	_	_
_	_	_	_	_	_	1	_	_	_	1	_	15	-	_
_	_	8	_	_	_	_	_	_	_	1	1	55	_	_
	_	_	_		2	12	_	_	_	120	152	333	27	5
_	_	_	_	_			_	_	_					
					25	10				57	167	255	423	2
	-	-	-	-	-	4	-	-	-	86	52	110	176	12
_	-	-	-	-	-	-	-	-	-	1	-	1	-	-
_	-	43	7	2	69	258	254	-	-	148	115	706	226	22
_	-	3	-	-	4	41	12	-	-	8	12	189	8	1
_	_	3	_	-	_	9	1	_	-	-	1	12	-	-
_	-	-	-	-	-	2	1 –	-	-	1	-	16	-	-
	-	36	7	-	-	8 92	127	_	-	2	1 60	62	1 62	2
	_	_	_	1	20 45	64	69	_	_	56 30	34	277 116	98	3
_	_	1	_	_	-	41	42	_	_	51	7	30	57	16
_	_	_	_	_	_	1	2	_	_	-	_	4	-	-
_	_	7	_	_	7	72	_	_	_	409	374	1,048	722	_
_	_	2	_	_	1	19	_	_	_	21	21	355	34	_
_	_	_	_	_	_	3	_	_	_	_	_	13	_	_
_	-	-	-	_	-	_	-	-	-	_	1	19	_	-
-	-	2	-	-	-	1	-	-	-	3	2	10	2	-
_	-	2	-	-	2	23	-	-	-	182	203	339	64	_
_	-	1	-	-	4	14	-	-	-	93	135	219	481	-
-	-	-	-	-	-	12	-	-	-	110	12	92	141	-
_	-	-	-	-	-	-	-	-	-	-	-	1	Ī	-
_	-	4	-	-	8	48	-	-	-	379	267	890	515	59
_	-	1	-	-	1	10	-	-	-	39	41	234	22	7
_	-	-	-	-	-	2	-	-	-	2	1	15	-	-
_	-	-	-	-	-	-	-	-	-	-	-	12	-	-
_	-	3	-	-	-	-	-	-	-	2	1	7	-	-
_	-	-	-	-	4	23	-	-	-	259	167	436	122	24
	-	-	-	-	3	3	-	-	-	21	35	128	159	1
-	-	-	-	-		10	-	-	-	56	22	57	212	27
_	_	_	-	-	-	_	_	-	-	_	_	1	_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624	-	-	236	49	-	23	-	128	-
	주거용	646	-	-	170	39	-	12	-	27	-
	상업업무용	124	_	_	13	2	_	5	_	82	_
	주상복합용	50	_	_	14	5	_	5	_	16	_
경상북도	공업용	22	_	_	_		_	_	_	_	_
울진군	<u> </u>	717	_	_	24	2	_	_	_	_	_
				_				4		_	
	답	663	-	_	11	1	-	1	_	_	-
	임야	396		_	4	-	_	-	-	-	-
	특수토지	6	-	-	-	-	-	-	-	3	-
	합계	382	-	-	36	1	-	27	-	41	-
	주거용	119	_	_	31	1	-	16	_	4	-
	상업업무용	46	-	_	_	_	_	8	_	32	-
경상 북 도	주상복합용	10	-	-	1	-	-	-	-	4	-
울릉군	공업용	5	-	-	-	-	-	_	_	_	-
	 전	125		-	4	-	-	2	-	1	_
	 임야	76	_	_	_	_	_	1	_	_	_
	트	1	_	_	_	_	_	_	_	_	_
				59				661			72
	합계	67,144	533		3,077	5,992	414		38	3,047	
	주거용	16,183	429	46	1,857	3,767	309	178	2	634	18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3,620 2,909	3 83	2	180 494	586 1,156	30 65	285 144	35 1	1,856 510	41 9
3411.10	공업용	1,364	-	1	27	55	2	13	_	4	-
경상남도	<u> </u>	17,541	11	3	328	248	3	15	_	8	1
	답	15,009	4	3	148	137	3	21	-	11	3
	임야	10,354	3	2	43	42	2	3	-	1	-
	특수토지	122	_	-	-	_	_	2	-	23	-
	공공용지	42	-	1	-	1	-	-	-	-	-
	합계	1,932	239	14	374	43	2	34	-	45	12
	주거용	601	196	8	212	17	2	3	-	1	5
	상업업무용	146	1	-	43	5	-	27	-	42	3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111	35	-	62	6	-	2	-	-	3
80日 <u></u> 창원시	공업용	63	-	1	3	-	-	-	-	-	-
의창구	전	490	3	2	36	13	_	1	-	-	
701	답	333	3	2	15	-	-	1	-	1	1
	임야	185	1	1	3	2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656	276	32	26	9	3	27	18	48	1
	주거용	280	225	28	12	3	3	-	-	-	-
74.411.1-	상업업무용	111	2	1	3	1	-	27	18	47	1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55	47	2	3	1	-	-	-	1	-
창원시	공업용	42	-	-	-	-	_	_	_	_	-
성산구	전	90	1	-	7	2	-	-	-	-	-
	답	3	-	_	-	-	_	_	_	_	_
	임야 공공용지	71 4	1 -	1	1 –	2	_	_	_	_	-
	00001	4		_ '			_	_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9	13	12	42	256	- 11:31	-10	-	497	155	803	330	61
	_	3	6	3	1	40	_	_	_	45	24	258	9	9
	_	_	2	1	_	4	_	_	_	1	_	11	_	3
	-	2	1	-	-	1	-	-	_	-	-	6	-	-
_	-	11	1	-	-	2	-	-	-	-	-	8	-	-
_	-	1	2	3	2	103	-	_	-	213	67	261	23	16
_	-	-	1	-	39	51	-	-	-	154	54	179	150	22
-	-	1	-	5	-	55	-	-	-	84	10	79	148	10
-	-	1	-	-	-	-	-	-	-	-	-	1	-	1
-	-	3	-	26	-	34	-	-	-	54	-	105	34	21
-	-	-	-	4	-	7	-	-	-	9	-	45	-	2
_	-	-	-	-	-	1	-	-	-	-	-	5	-	-
-	-	-	-	-		-	-	-	-	1	-	4	-	-
_	_	3	_	_	-	_	-	-	_	_	_	2	_	-
_	_	_	_	12	_	18	_	_	_	35	_	44	2	7
_	_	_	_	10	-	8	_	_	_	9	_	5	32	1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30	_	729	341	968	1,252	5,189	1,728	2	4	6,121	6,267	18,197	10,695	1,728
	_	43	58	58	101	1,004	53	_	_	425	499	6,241	293	168
28	_	20	87	4	14	113	7	_	_	15	15	277	8	15
_	_	4	20	_	9	63	9	_	_	11	14	307	2	6
_	_	457	130	_	13	118	5	1	_	22	30	441	30	15
1	_	88	29	446	202	2,047	826	_	1	2,609	2,838	6,187	1,055	595
_	_	65	11	77	883	897	364	1	2	1,033	1,965	3,023	5,942	416
1	_	48	5	378	27	891	453	_	1	2,002	898	1,682	3,364	508
_	_	2	_	5	-	35	7	-	-	3	1	39	1	4
_	_	2	1	_	3	21	4	_	_	1	7	-	_	1
18	_	30	13	7	7	124	336	-	-	65	77	219	273	_
_	_	1	2	1	-	17	11	-	-	2	5	107	11	-
18	-	-	2	-	-	2	1	-	-	-	-	2	-	-
-	-	-	-	-	-	1	-	-	-	-	Ī	2	-	-
-	-	25	8	-	-	9	1	-	-	-	Ī	11	5	-
-	-	3	1	1	7	60	161	-	-	38	55	70	39	-
-	-	1	-	-	-	10	89	-	-	1	10	15	184	-
-	-	-	-	5	-	24	72	-	-	24	7	12	34	-
-	-	-	-	-	-	-	1	-	-	-	-	-	-	-
-	-	-	-	-	-	1	-	-	-	-	-	-	-	-
1	-	51	11	-	-	49	104	-	-	-	-	-	-	-
-	-	-	4	-	-	3	2	-	-	-	-	-	-	-
1	_	_	6	_	-	3	1	_	-	_	_	_	_	-
-	-	-	-	-	-	1	-	-	-	-	-	-	-	-
_	_	41	1 –	_	-	-	- 50	_	_	_	-	_	_	_
	_	4	_	_	_	23	53	_	_	_	_	_	_	_
_	_	3	_	_	_	18	1 46	_	_	_	_	_	_	_
_	_	1	_	_	_	1	1	_	_	_	_	_	_	_
	<u> </u>		l	l		<u>'</u>			<u> </u>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945	-	-	201	380	197	39	-	438	6
	주거용	889	-	-	116	285	155	14	-	92	2
	상업업무용	368	_	_	5	22	8	8	_	283	3
-1.11.1-	주상복합용	207	_	_	24	60	32	16	_	61	1
경상남도											
창원시	공업용	37	_	-	-	1	1	-	-	1	-
마산합포구	전	695	-	-	49	9	-	1	-	-	-
	답	357	-	-	6	3	-	-	-	-	-
	임야	388	_	_	1	-	1	-	_	-	-
	특수토지	4	-	-	-	-	-	-	-	1	-
	합계	1,274	-	-	201	347	74	53	-	151	5
	주거용	501	-	_	141	219	49	23	_	34	-
	상업업무용	141	_	_	5	17	6	13	_	91	5
	주상복합용	169	_	-	21	89	19	15	-	23	-
경상남도	공업용	45	_	_	_	1	_	_	_	1	_
창원시	 전	273	_	_	30	19	_	_	_	_	_
마산회원구	<u></u> 답	30	_	_	2	2	_	2	_	_	_
	_										
	임야	112	-	-	2	-	-	-	-	-	-
	특수토지	2	_	-	-	-	-	-	-	2	-
	공공용지	1	-	-	-	-	-	-	-	-	-
	합계	1,397	-	-	37	615	23	65	-	213	-
	주거용	642	-	-	27	441	22	25	-	74	
	상업업무용	126	-	-	-	23	-	10	-	79	-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237	-	-	7	127	1	27	-	60	-
창원시	공업용	36	-	-	-	1	-	2	-	-	-
진해구	전	204	-	-	1	18	-	1	-	-	-
	답	69	-	-	1	5	-	-	-	-	-
	임야	79	-	-	1	-	-	-	-	-	-
	특수토지	4	-	-	-	-	-	-	-	-	-
	합계	5,530	-	-	67	1,069	22	40	-	399	2
	주거용	1,571	-	-	51	635	13	5	-	78	-
	상업업무용	387	-	-	1	84	7	27	-	232	2
74 A L L C	주상복합용	444	_	_	12	310	2	6	-	86	-
경상남도	공업용	82	-	_	3	-	-	2	-	-	-
진주시	<u>전</u> 답	1,221	-	_	_	28 8	_	_	_	_	-
		1,073		_			_	_	_		_
	임야	744	_	_	_	4	_	_	_	-	_
	특수토지	7								3	
	공공용지	1	-	- 0	-	-	- 14	- 24	-	140	-
	합계	2,892		8	50	525	14	34		149	4
	주거용 상업업무용	179	-	5 –	29	372	13	9	-	18	2
		178	_	_	1	32		11	_	114	-
거시나나	주상복합용 고어요	129	_		3	74	1 -	9	_	16	_
경상남도 통영시	공업용	47	_	-		9	_		_	_	_
우있시	<u>전</u>	949		1	6	22		2			
	답	350	-	1	11	14	-	1 –	_	1	1
	임야 트스트지	385	-	1 –	_	2	_		_	_	_
	특수토지 공공용지	6 4	_	_	_	_	_	1 –	_	_	-
	ততঙ্গ	4					_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πъ	-							-	-					-
		10	11	21	46	261	241			98	146	534	185	131
-	-	-	-	-	3	47	8	-	-	3	4	128	3	29
_	-	2	8	-	-	8	3	-	-	-	-	11	-	7
_	_	_	_	_	_	2	_	_	_	_	_	7	_	4
-	-	8	3	-	1	6	-	-	-	-	-	15	-	1
_	-	-	-	6	6	104	124	-	-	36	74	218	20	48
_	_	-	-	-	36	52	26	-	-	9	37	100	66	22
_	_	-	_	15	_	40	80	-	_	50	31	54	96	20
_	_	_	_	_	_	2	_	_	_	_	_	1	_	_
2	_	51	3	_	_	55	208	_	_	7	_	100	17	_
-														
	-	1	1	-	-	9	2	-	-	-	-	22	-	-
2	-	-	-	-	-	1	1	-	-	-	-	-	-	_
-	-	-	-	-	-	1	-	-	-	-	-	1	-	
-	-	36	2	-	-	2	1	-	-	-	-	2	-	-
-	-	9	-	-	-	23	132	-	-	2	-	58	-	
_	-	4	-	-	-	1	13	-	-	-	-	5	1	-
_	_	1	_	-	_	17	59	-	-	5	_	12	16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_	_
	_	40	15	6	6	231	145	1	_	_	_	_	_	_
_	_	7	2	-	1	35	8	_	_	_	_	_	_	_
_	_	2	3	_	1	8	-	_	_	_	_	_	_	_
_	_	2	3	_	-	7	3	-	-	-	-	-	-	-
_	-	19	6	-	1	6	-	1	-	_	-	-	-	-
_	-	6	1	2	2	94	79	-	-	-	-	-	-	-
_	-	1	-	-	1	39	22	-	-	-	-	-	-	-
_	_	3	_	4	-	38	33	_	_	_	_	_	_	_
3	_	48	40	581	294	4 650	_	_	_	350	283	950	724	8
_	_	-	13	42	19	234	_	_	_	22	21	425	12	1
3	_	1	12	2	3	9	_	_	_	-	-	4	-	_
_	_	-	8	-	1	7	-	-	-	-	-	12	-	-
-	-	46	6	-	1	6	-	-	-	-	1	15	2	-
-	-	-	1	276	46	238	-	-	-	173	125	280	50	4
-	-	1	-	55	224	87	-	-	-	73	98	151	376	-
	-	_	_	204	_	- 68 -	_	_	_	81	38	62	284	3
	_	_	_	2	-	1	_	_	_	1 –	_	1 –	_	-
_	_	21	23	204	113	269	_	_	_	129	282	502	132	433
_	_	4	3	10	11	64	-	-	-	7	19	230	2	46
-	-	-	9	1	1	3	-	-	-	-	-	4	-	1
-	-	-	1	-	3	8	-	-	-	-	1	13	-	-
-	-	10	9	-	3	1	-	-	-	-	-	10	-	4
-	-	4	1	118	47	121	-	-	-	73	172	186	7	189
-	-	1	-	13	29	38	-	-	-	28	62	39	35	76
	_	2	_	60	19	28	-	_	_	21	28	20	88	116 1
_	_	_	_	_	_	4	_	_	_	_	_	_	_	-
	1	L	l	1	I	Ι Τ							l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합계 3,878 15 - 382 271 1 37 - 주거용 1,020 6 - 244 151 1 14 - 성업업무용 280 21 44 - 13 - 주상복합용 133 1 - 23 40 - 4 - 24 - 24 - 24 - 24 - 24 - 24 -	282 85 148 44 - 1 1 1 2 - 230 34	근상 12 6 5 - 1 - - - 8
중거용 1,020 6 - 244 151 1 14 - 상업업무용 280 21 44 - 13 - 주상복합용 133 1 - 23 40 - 4 - 24 - 24 - 24 - 24 - 24 - 24 -	148 44 - 1 1 1 2 - 230 34	5 - - 1 - - - - - 8
장남도 사천시	44 - 1 1 1 2 - 230 34	- - 1 - - - - 8
경상남도 사천시 주상복합용 133 1 - 23 40 - 4 - 경압용 55 - 1 1 1 전 1,009 6 - 59 17 - 2 1 1 1 1	44 - 1 1 1 2 - 230 34	- - 1 - - - - 8
경상남도 사천시 공업용 55 1 1 1	- 1 1 1 2 - 230 34	- 1 - - - - 8
자전시 전 1,009 6 - 59 17 - 2 - 답 947 1 - 29 15 - 2 - 임야 420 1 - 5 2 - 1 - 특수토지 9 1 - 1 - 공공용지 5 1 1 - 합계 4,198 - 4 560 643 25 106 5 주거용 1,002 - 4 273 320 13 18 - 상업업무용 490 - 50 124 7 53 5 주산복합용 371 200 94 2 15 -	1 1 2 - 230 34	1 - - - - 8
답 947 1 - 29 15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1 1 2 - 230 34	- - - - 8
임야 420 1 - 5 2 - 1 - 특수토지 9 1 - 공공용지 5 1	1 2 - 230 34	- - - 8
공공용지 5 1	230 34	- 8
합계 4,198 - 4 560 643 25 106 5 주거용 1,002 - 4 273 320 13 18 - 상업업무용 490 50 124 7 53 5 주산복합용 371 200 94 2 15 -	230	8
주거용 1,002 - 4 273 320 13 18 - 상업업무용 490 50 124 7 53 5 주산복합용 371 200 94 2 15 -	34	
상업업무용 490 50 124 7 53 5 주상복합용 371 200 94 2 15 -	-	1
주상복합용 371 200 94 2 15 -	163	_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371 200 94 2 15 -	1 100	8
	26	_
- - 3 24 - 6 - - 3 24 - 6 -	1	-
전 958 20 42 1 4 -	1	-
답 535 12 29 2 8 -	4	-
임야 425 2 10 - 2 -	-	_
특수토지 16	1 -	_
합계 4,546 1 - 137 298 15 18 10	147	_
주거용 1,008 112 186 13 5 2	34	_
상업업무용 183 4 53 - 8 7	84	_
주상복합용 113 4 49 2 3 1	28	_
경상남도 고어요 /1 1	_	_
밀양시 전 1,519 1 - 11 8 - 1 -	_	_
답 985 3 2 - 1 -	-	_
일야 691 2	_	_
특수토지 5	1	-
공공용지 1	_	_
합계 3,232 87 428 3 29 -	238	12
주거용 896 45 260 1 7 -	70	1
상업업무용 222 2 42 - 12 -	126	7
주상복합용 175 6 81 1 7 -	38	3
경상남도 거제시	_	-
전 642 13 12	2	-
답 818 19 23 1 3 -	1	1
임야 440 2 10	-	-
특수토지 7	1 –	_
공공용지 1	187	4
	30	1
상업업무용 254 7 32 2 40 5	132	2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190 - 74 53 5 20 -	20	1
양산시 공업용 160 13 16 1 2 -	1	-
전 609 63 32 2 2 - 담 325 16 7	2	_
답 325 16 7 임야 422 23 8 1	1 –	_
등수토지 21	1	_
공공용지 8	<u> </u>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2	-	51	15	14	121	535	_	-	_	259	477	730	600	74
_	_	8	1	1	12	102	_	_	_	22	69	275	17	6
_	_	1	7	-	1	16	_	_	_	1	1	21	-	1
_	_	_		_	_		_	_	_	_			_	_
			1			6					4	10		
-	-	17	6	-	1	4	-	-	-	1	4	19	-	1
1 –	_	12 9	_	5 2	12 91	206 117	_	_	_	108 24	228 144	244 106	83 382	24 24
1	_	4	-	6	3	81	_	_	_	103	27	49	118	18
_	-	-	-	-	-	-	-	-	-	-	-	6	-	-
_	_	_	-	-	1	3	_	-	-	-	-	-	-	-
1	-	152	93	38	63	554	482	1	-	151	145	661	276	-
_	_	9	10	_	5	89	14	-	_	12	11	182	8	_
1	-	10	17	-	4	18	1	-	-	1	-	27	1	-
-	-	1	3	-	-	6	4	-	-	-	-	19	1	-
-	-	106	50	-	4	35	3	-	-	1	6	147	3	-
_	-	12	9	15	12	235	190	-	-	63	82	227	45	_
_	-	9	2	1	37	46	176	1	-	8	7	34	159	_
-	-	5	1	22	-	114	89	-	-	65	33	23	59	
_	_	_	1	_	1	7	5	-	_	1 –	- 6	2	-	_
_	_	24	5	7	111	194	_	_	_	415	343	1,750	1,048	23
_	_			_			_	_	_				-	
		4	1		8	30				27	21	531	30	4
_	-	-	-	-	2	1	-	-	-	2	-	22	-	_
_	-	-	-	-	2	1	-	-	-	1	2	19	-	1
_	-	10	-	-	1	1	-	-	-	-	-	25	3	_
	-	3 5	2	1 –	27 70	116 10	-	_	-	180 63	184 66	805 203	169	11
	_	2	1	6	1	34	_	_	_	142	70	141	561 285	7
_	-	-	-	-	-	-	-	-	-	-	-	4	-	-
_	-	-	-	-	-	1	-	-	-	-	-	-	-	-
-	-	11	12	33	10	320	-	-	-	178	274	936	332	329
-	-	-	1	1	1	52	-	-	-	13	26	365	17	36
_	-	-	5	1	-	13	-	-	-	_	-	11	2	1
_	_	_	_	-	_	1	_	_	_	1	_	36	-	1
_	-	8	4	-	_	1	-	_	-	-	-	15	-	3
_	_	_	_	15	_	80	_	_	_	58	100	245	21	96
-	-	1	1	-	9	92	-	-	-	57	120	209	165	116
-	-	2	1	16	-	79	-	-	-	49	28	52	127	74
-	-	-	-	-	-	1	-	-	-	-	-	3	-	2
-	_	100	- 56	- 42	- 21	776	100	_	-	-	106	-	70	- 40
2	-	109	56	43	31	776	189	-	-	90	126	66	79	42
-	-	4	15	2	2	110	8	-	-	6	12	43	1	1
2	-	4	11	-	-	13	-	-	-	-	2	1	-	1
-	-	-	2	-		7	2	-	-	2	-	4	-	
-	-	74	12	-	1	40	-	-	-	-	-	-	-	
-	-	12	12	3	9	233	79	-	-	41	77	16	17	9
_	-	5	2	4	19	178	31	-	-	7	29	2	11	13
_	_	9	2	33	-	175 17	65 1	_	_	34	5 -	_	50 -	17
_	_	1	_	-	_	3	3	_	_	_	1	_	_	-
	L	<u> </u>	L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2,587	1	-	113	11		3	-	57	-
	주거용	490	1	-	75	5	-	1	-	8	_
	상업업무용	54	_	_	11	1	_	_	_	34	_
	주상복합용	35	_	_	7	_	_	1	_	14	_
경상남도	공업용	14	_	_		_	_	_	_	_	_
의령군		684		_	8		_	_	_	_	_
	전					2					
	답	835	-	-	12	3	-	1	-	-	-
	임야	473	_	_	-	-	-	-	-	-	-
	특수토지	2	_	_	_	_	_	_	-	1	-
	합계	2,925	-	-	60	154	-	9	_	73	5
	주거용	591	-	-	37	102	_	3	_	15	1
	상업업무용	73	-	-	5	6	-	4	-	39	3
	주상복합용	65	_	-	6	26	-	2	-	16	1
경상남도	공업용	104	-	-	2	-	-	-	_	-	_
함안군	전	758	_	_	6	11	-	_	_	2	_
	답	896	_	_	4	9	_	_	_	_	_
	임야	431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4	_	_		_	_	_	_	1	_
	공공용지	3	_	_	_	_	_	_	_	_	_
	합계	3.161							_		_
	주거용	693		1	30 20	206 133	1	20 4	_	60 10	_
	상업업무용	121	_	-	2	35	_	10	_	44	_
	주상복합용	50	_	_	3	21	_	4	_	3	_
경상남도	공업용	47	_	_	1	1	-	-	-	-	_
창녕군	 전	959	_	_	2	7	-	-	-	-	-
	답	902	-	-	2	8	-	2	-	-	-
	임야	381	-	ı	ı	1	-	-	-	-	-
	특수토지	7	-	-	_	-	-	_	_	3	-
	공공용지	1	_	-	-	-	-	-	-	-	-
	합계	3,477	_	-	121	46	-	14	-	40	-
	주거용	692		-	92	36	-	5	-	5	-
	상업업무용	78		-	11	5	-	5	-	31	-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고어요	56		_	17 _	4	-	4	_	4	-
고성군	공업용 전	45 914		_	_	1 –	_	_	_	_	_
	- 인 답	1,036		_	1	_	_	_	_	_	_
	임야	652	_	_	_	_	_	_	_	_	_
	투수토지	4	_	_	_	_	_	_	_	_	_
	합계	3,107	-	-		92		11	-	47	-
	주거용	732	-	-	-	68	-	7	-	10	-
	상업업무용	58	-	_	_	7	-	1	-	25	-
71 1 1 -	주상복합용	77	-	-	-	15	-	3	-	11	-
경상남도 나	공업용	16	-	-	-	-		-	-		-
남해군	전	826	-	-	-	ı	-	-	-	-	-
	답	889	_	_	-	2	-	-	-	-	_
	임야	503	-	-	-	-	-	-	-	-	-
	특수토지	6	-	_	_	_	_	_	_	1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1	1	1	33	71	-	-	-	288	430	906	655	6
_	-	1	_	-	2	8	-	_	-	24	13	339	13	-
_	_	_	_	_	_	1	_	_	_	1	_	6	_	_
_	_	_	_	_	_	1	_		_	_	_	12	_	_
_														
	-	4	1	-	_	-	-	-	-	1	-	7	1	-
_	-	3	-	-	5	37	-	-	-	124	179	291	33	2
-	-	2	-	-	26	8	-	-	-	63	171	185	363	1
_	-	1	_	1	-	16	_	-	-	75	67	65	245	3
-	-	-	-	-	-	-	-	-	-	-	-	1	-	_
-	-	39	17	1	80	129	23	-	-	437	382	862	642	12
_	-	2	1	-	11	23	-	-	-	34	30	311	21	_
_	_	_	2	_	_	2	_	_	_	_	1	10	_	1
_	_	_	_	_	_	3	_	_	_	_	-	11	_	_
														_
	-	23	11	-	-	2	-	1	-	2	3	59	2	
-	-	4	1	-	3	55	8	-	-	200	171	254	42	1
_	-	5	2	-	65	26	6	-	-	63	140	161	411	4
-	-	5	-	1	-	17	9	ı	-	137	37	53	166	6
-	-	-	-	-	-	-	-	-	-	-	-	3	-	-
-	-	-	-	-	1	1	-	-	-	1	-	-	-	-
-	-	27	11	-	53	259	-	-	-	482	306	994	688	23
_	-	-	1	-	1	47	-	1	-	56	31	364	22	2
-	-	-	1	-	-	6	-	1	-	1	1	20	1	-
_	-	-	-	-	-	3	-	-	-	2	-	14	-	-
_	-	5	7	-	-	2	-	-	-	1	1	25	4	-
_	_	8 10	2	_	4	110 57	_	_	_	254 60	139 107	358 134	70 467	7 5
_	_	4	_	_	-	32	_	_	_	108	27	77	124	8
_	-	-	-	-	-	2	-	_	-	-	-	2	-	-
_	_	-	-	-	-	_	-	-	-	_	_	-	-	1
_	-	24	-	6	40	101	-	-	-	316	390	1,270	879	230
-	-	2	-	1	5	21	-	-	-	20	36	420	33	16
-	-	-	-	-	-	2	-	-	-	-	1	21	1	1
	_	7	_	_	-	3	_	-	_	-	1 2	22	2	-
_	_	7 5	_	2	2	45	_		_	117	148	24 433	88	6 74
_	-	4	_	1	33	14	_	-	-	53	134	211	511	74
-	-	4	-	2	-	15	-	-	-	124	67	137	244	59
-	-	1	-	-	-	-	-	ı	-	-	1	2	-	-
-	-	-	-	-	50	101	-	-	-	354	876	1,007	381	188
_	-	-	-	-	5	29	-	ı	-	24	110	454	16	9
-	-	-	-		1	1	-	-	-	-	4	18	-	1
_	-	-	-	-	2	-	-	-	-	1 2	3	42	-	-
	_	_	_	_	1	35	_		_	109	352	9 248	19	62
_	_	_	_	_	40	21	_	_	_	85	309	194	189	49
-	-	-	-	-	1	15	-	_	-	133	94	37	156	67
-	-	-	-	-	-	-	-	-	-	-	-	5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3,698	-	-	10	94	-	9	-	41	-
	주거용	712	-	-	3	68	-	3	-	4	
	상업업무용	90	_	_	2	11	_	5	_	26	_
	주상복합용	33	_	_	_	7	_	1	_	8	_
경상남도	공업용	23	_	_	_		_	_	_	_	_
하동군			_	_	4		_	_	_	_	_
	전	1,048			1	3					
	답	950	_		4	4	-	-	_	2	-
	임야	840	-	-	_	1	-	-	-	-	-
	특수토지	2	-	-	-	-	-	-	-	1	-
	합계	2,682	-	-	50	33	-	7	-	29	1
	주거용	493	-	-	41	23	_	1	_	4	-
	상업업무용	49	-	-	1	6	-	4	-	18	1
	주상복합용	42	-	-	7	4	-	2	-	7	-
경상남도	공업용	21	_	_	_	_	_	_	_	_	_
산청군	<u></u> 전	689	_	_	1	_	_	_	_	_	_
	 답	830	_	_	_	_	_	_	_	_	_
	임야	557	_	_		_	_	_	_	_	_
	투수토지	1	_	_	_	_	_	_	_	_	_
	합계	2,755	-	_	27	119	3	_	_	59	-
	주거용 상업업무용	528 58	_	_	22 1	90 5	3	_	-	10 28	-
	주상복합용	66	_	_	2	24	_	_	_	20	_
경상남도	공업용	18	_	_	_	_	_	_	_	_	_
함양군	<u> </u>	881	_	_	1	_	_	_	_	_	_
	답	712	_	_	1	_	_	_	_	_	_
	임야	487	_	_		_	_	_	_	_	_
	특수토지	5	_	_	_	_	_	_	_	1	-
	합계	3,423	_	_	66	211	1	8	_	61	_
	주거용	621	-	-	53	122	1	1	-	6	-
	상업업무용	91	_	-	1	25	_	6	_	43	_
74.41.15	주상복합용	87	-	-	4	59	-	1	-	11	-
경상남도	공업용	31	-	-	-	-	-	-	-	-	-
거창군	전	1,067	-	-	6	3	-	-	-	-	-
	답	835	-	-	2	2	-	-	-	-	-
	임야	685	-	-	-	-	-	-	-	-	-
	특수토지	6	-		-	-	-	-	-	1	-
	합계	4,185	-	-	95	44	-	7	-	53	-
	주거용	702	-	-	65	25	-	3	-	12	-
	상업업무용	62	-	-	4	6	-	1	-	27	-
경상남도	주상복합용	64	-	-	9	12	-	2	-	13	-
합천군	공업용	17	-	-		-	-	-	-	-	-
	전	1,056	-	-	8	-	-	1	-	-	-
	답	1,299	_	-	8	1	-	-	-	-	_
	임야 특수토지	983	_	_	1 –	-	_	_	_	1	-
	국 구도시	2	-	-	_	_	_	_	_	1	_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6	5		28	60	_	-	_	697	303	1,493	856	86
_	_	_	_	_	3	17	_	_	_	68	18	491	32	5
_	_	_	4	_	1	_	_	_	_	2	-	38	1	_
	_	_	_	_	_	_		_	_	1	_	16	_	_
_	_		_	_	_	_	_	_	_					_
		5								1	3	11	3	
_	-	2	-	-	1	28	-	-	-	292	129	476	90	26
_	-	5	1	-	23	7	-	-	-	140	77	227	446	14
-	-	3	-	-	-	8	-	-	-	193	76	234	284	41
-	-	1	-	-	-	-	ı	-	-	-	-	-	-	-
1	-	2	2	1	11	59	-	-	-	265	250	1,293	651	27
-	-	-	-	-	1	14	-	-	-	21	6	363	16	3
1	-	-	-	-	-	-	-	-	-	2	1	15	-	-
-	-	-	1	-	-	1	-	-	-	-	1	19	-	-
-	-	2	1	-	-	-	-	-	-	2	3	12	1	-
-	-	-	-	-	-	31	-	-	-	79	114	398	57	9
_	_	_	_	_	9	6	_	_	_	55	86	304	366	4
_	_	_	_	1	1	7	_	_	-	106	39	181	211	11
_	-	_	_	_	_	_	_	_	-	_	-	1	-	_
_	_	3	7	1	37	134	_	_	4	223	553	988	554	43
_	_	_	3	_	1	19	_	_	_	18	39	309	11	3
_	-	-	-	-	-	3	-	-	-	1	2	17	-	1
_	-	-	1	-	-	-	-	-	-	2	2	14	1	-
_	-	3	2	-	-	1	-	-	-	1	1	9	1	-
_	-	-	1	1	2	50	-	-	1	94	271	382	70	8
_	-	-	-	-	34	40	-	-	2	25	151	147	312	-
_	-	-	-	-	-	21	-	-	1	81	87	108	158	31
_	-	-	-	-	-	-	_	-	-	1	-	2	1	-
_	-	9	1	4	96	132	-	-	-	820	138	1,125	716	35
	-	_	-	_	7	18	-	_	_	27	6	368	8	4
-	-	_	-	_	-	-	-	_	_	2	-	13	1	-
_	_	-	-	-	-	1	_	-	-	-	-	11	-	_
_	-	8	1	-	-	1	-	-	-	7	-	13	1	-
-	-	1	-	1	15	71	_	-	-	393	56	417	90	14
_	_	_	_	1 2	72 2	25 16	_	-	-	121 270	59 17	184 114	358 258	11 6
	_	_	_	_	-	-		_	_	270 -	-	5	258	-
	_	_	_	_	22	125	_	_	_	497	486	1,811	1,007	38
_	_	_	_	_	3	16	_	_	_	19	22	514	20	3
_	_	_	_	_	-	3	_	_	_	2	2	16	1	-
_	_	_	_	_	1	3	_	_	_	1	_	23	_	_
_	-	-	-	_	_	-	_	-	-	1	2	13	1	-
_	-	-	-	-	1	52	-	-	-	175	182	581	45	11
_	-	-	-	-	17	23	_	-	-	98	158	412	579	3
-	-	-	-	-	-	28	-	-	-	201	120	251	361	21
-	-	-	-	-	-	-	-	-	-	-	-	1	-	-

시군구	이용상황	합계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중상	일상	근상
	합계	11,256	3	-	470	1,351	1	295	-	645	9
	주거용	2,942	3	-	335	1,046	1	129	-	136	1
	상업업무용	749	-	-	21	48	-	93	-	424	7
	주상복합용	435	_	-	39	133	-	72	-	81	1
제주특별	공업용	101	-	-	1	2	-	-	-	-	-
자치도	전	4,941	-	-	72	122	-	1	-	2	-
	답	28	_	_	_	-	-	-	-	-	-
	임야	1,907	_	-	1	-	-	-	_	-	-
	특수토지	142	-	-	-	-	-	-	-	2	-
	공공용지	11	_	-	1	-	-	_	_	_	-
	합계	6,591	3	-	309	769	-	198	-	414	7
	주거용	1,733	3	-	202	596	-	77	-	88	1
	상업업무용	473	_	_	20	30	_	70	_	271	5
	주상복합용	305	_	_	31	96	_	51	_	53	1
제주특별	공업용	79	_	_	1	2	_	_	_	_	-
자치도 제주시	전	2,708	_	_	55	45	_	_	_	1	-
	답	18	_	_	_	_	_	_	_	_	-
	임야	1,201	_	_	_	_	_	_	_	_	-
	특수토지	71	_	_	_	-	_	_	_	1	_
	공공용지	3	-	-	-	-	-	_	_	_	-
	합계	4,665	-	-	161	582	1	97	-	231	2
	주거용	1,209	-	_	133	450	1	52	-	48	-
	상업업무용	276	-	-	1	18	-	23	-	153	2
	주상복합용	130	-	-	8	37	-	21	-	28	-
제주특별	공업용	22	-	-	-	-	-	-	-	-	-
자치도 서귀포시	전	2,233	-	-	17	77	-	1	-	1	-
NIT-N	답	10	-	-	-	-	-	-	-	-	-
	임야	706	-	-	1	-	-	-	-	-	-
	특수토지	71	-	-	-	-	-	-	-	1	-
	공공용지	8	-	-	1	-	-	-	-	-	-

유상	전공	일공	준공	보전	생산	자연	개제	미정	관리	보관	생관	계관	농림	자보
-	-	12	31	277	210	3,096	-	4	-	396	755	3,651	8	42
-	-	2	2	13	21	525	-	1	-	20	33	674	-	-
-	-	1	3	13	1	95	-	-	-	-	1	42	-	-
-	-	1	1	4	3	60	-	-	-	2	1	37	-	-
-	-	5	25	-	1	11	-	-	-	3	8	45	-	-
-	-	1	-	131	140	2,013	-	-	-	82	329	2,037	-	11
_	-	_	-	1	6	10	_	_	-	1	5	5	_	-
-	-	-	-	104	37	340	-	3	-	287	373	723	8	31
-	-	2	-	9	1	36	-	-	-	1	5	86	-	-
-	-	-	-	2	-	6	-	-	-	-	-	2	-	-
-	-	4	28	125	210	1,624	-	4	-	254	532	2,073	4	33
-	-	-	2	7	21	316	-	1	-	18	30	371	-	-
-	-	-	2	8	1	39	-	-	-	-	1	26	-	-
-	-	-	1	3	3	43	-	-	-	1	1	21	-	-
-	-	2	23	-	1	9	_	-	-	3	7	31	-	-
-	-	1	-	46	140	1,003	-	-	-	49	201	1,157	-	10
-	-	-	-	-	6	6	-	-	-	1	4	1	-	-
-	-	-	-	56	37	188	-	3	-	181	285	424	4	23
-	-	1	-	5	1	18	-	-	-	1	3	41	-	-
-	-	-	-	-	-	2	-	-	-	-	-	1	-	-
-	-	8	3	152	-	1,472	-	-	-	142	223	1,578	4	9
-	-	2	-	6	-	209	-	-	-	2	3	303	-	-
-	-	1	1	5		56	-	-	-	-	-	16	-	
-	-	1	-	1		17	-	-	-	1	-	16	-	-
-	-	3	2			2	-	-	-	-	1	14	-	-
-	-	-	-	85		1,010	-	-	-	33	128	880	-	1
-	-	-	-	1	-	4	ı	-	-	-	1	4	-	-
-	-	-	-	48	-	152	-	-	-	106	88	299	4	8
_	-	1	-	4	-	18	ı	-	-	-	2	45	-	-
_	-	-	-	2	-	4	-	-	-	-	-	1	-	-

[별표2]

표 준 지 위 치 표 시 부 호

구 분	전	답	대	임 야	기 타
부 호	0	Θ	0		Ф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표 준 지 선 정 총 괄 표

시·군·구명:

(단위: 필지수)

	전년도		조사연도	표준지 수		표준지		_
지역명	표준지수 (A)	계(B) (C+E)	재선정 (C)	삭제(D)	신규(E)	증감(△) (B-A= F)	교체율 (D/A)	증감률 (F/A)
계								
○○읍 ○○면 ○○동								

※ 작성요령

- 1. "지역명" 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 2. "재선정" 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 3. "삭제"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조사연도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 4. "신규"란은 전년도 표준지가 아닌 토지 중에서 조사연도에 신규로 선정된 표준지수를 기재한다.
- 5. "표준지증감(△)"라은 조사연도 표준지 수에서 전년도 표준지 수를 빼 수를 기재한다.
- 6. "교체율", "증감률"은 소수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 기재한다.
- 7. 표준지선정총괄표의 계(B)는 표준지증감현황의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지목별 금 년도 "계"란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 8.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삭제(D)는 표준지삭제사유별 내역 "계"와 삭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 9. 표준지선정총괄표의 신규(E)는 신규표준지 필지별 내역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40 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표 준 지 증 감 현 황

시·군·구명:

ㅇ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금 년 도	증 감	증감비율(%)
	丁 ゼ	(A)	(B)	(C)	(C/A)
	계				
	소 계				
도시	주거지역				
JI. 1	상업지역				
2.2	공업지역				
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용도미지정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토지이용상황별 현황

(단위: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금 년 도	증 감	증감비율(%)
一 工	(A)	(B)	(C)	(C/A)
계				
주거/상업/공업				
전/답/임야				
특수토지 등				

ㅇ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수)

구 분	전 년 도	금 년 도	증 감	증감비율(%)
구 분 	(A)	(B)	(C)	(C/A)
계				
대				
<u></u> 전				
답				
임야				
기타				

 $210\text{mm}{ imes}297\text{mm}$

(신문용지 54g/m³)

※ 용도지역별 "계", 토지이용상황별 "계"와 지목별 "계"는 일치되어야 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표준지 삭제사유별 내역

시·군·구명:

		삭 제 사 유								
지역명	계	① 행정	② 용도	③ 개발	④ 지적	⑤ 형질	⑥ 토지	⑦ 분포	⑧ 기타	비고
		구역 개편	지역 변경	사업 시행	사항 변경	변경	이용 상황	밀도 조정		
							변경			
계										
 () () () () () () () () () () () () () (
00동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 1. "지역명"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 2. "기타"란에는 숫자만 표기하고 구체적인 삭제사유는 별지로 첨부한다.

142 Ⅱ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삭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소재지 및 지번	일련번호	지 목	토지이용 상황	용도지역	삭제사유
月 21.0 mm×2.07 mm					(A) = 8.7) 5.4 c/m ³)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 1. "소재지 및 지번"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 2. "일련번호"란은 해당 토지의 전년도 표준지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 에 따라 기재한다.
- 3. "삭제사유"란은 뒷면의 "삭제사유 작성요령"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뒷 면>

삭 제 사 유 작 성 요 령

유 형	사유	작 성 예 시
①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표준지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개편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 편입)
②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기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
③ 개발사업 시행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 발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 는 경우 도로사업 등으로 표준지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 등에 편입되어 교체하는 경우 	(○○개발사업)
④ 지적사항 변경	 ○ 합병·분할 등으로 면적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표준지의 위치(지번변경 포함)가 변경되어 교체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기형으로 변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분할면적 : 20㎡) 지적사항 변경 (지번변경)
⑤ 형질변경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의 형질변경으로 당해 표준지가 대표성 등을 상실하여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표준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형질변경 (임→전, 전→답, 전→대 등) 형질변경 (임→일부 전 등)
⑥ 토지이용상황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으로 대표성 등이 결여되어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변경 (가옥이 철거되고 전으로 이용)
⑦ 분포밀도 조정	표준지 분포기준에 따라 표준지를 교체하는 경우	분포밀도 조정
⑧ 기 타	해당 시·군·구의 요청 등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 타의 사유로 표준지가 교체되는 경우	기 타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규 표준지 필지별 내역

시 · 군 · 구명 :

소재지 및 지번	일련번호	지 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선 정 사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작성요령

- 1. "소재지 지번"란은 읍·면·동·리와 지번을 기재한다.
- 2. "일련번호"란은 해당 표준지의 조사연도 일련번호를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 3. "선정사유"란은 표준지로 신규선정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기재하며, 삭제사유외에도 대표성이 낮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토지유형의 경우, 특수토지인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 일단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규표준지로 선정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장 총칙	149
제2장 조사·평가절차 ·····	151
제3장 평가기준	158
제4장 용도별 토지의 평가	161
제5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67
제6장 특수토지의 평가	171
[별표1]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78
[별표2] 주택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0
[별표3] 공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2
[별표4] 농경지대(전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3
[별표5] 농경지대(답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4
[별표6] 임야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5
[별표7] 후보지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186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2023.01.3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정 1996.12.24.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 개정 2000. 9.25. 건설교통부훈령 제296호 2003. 2.24. 건설교통부훈령 제403호 2004. 8.11. 건설교통부훈령 제479호 2005. 8.26. 건설교통부훈령 제549호 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 48호 2009. 8.24. 국토해양부훈령 제338호 2010.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 2012. 8.20. 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 9.21. 국토해양부훈령 제887호 2013. 5. 3. 국토교통부훈령 제186호 2014. 8.29. 국토교통부훈령 제415호 2014.12.29. 국토교통부훈령 제470호 2015. 8.18. 국토교통부훈령 제575호 2015.10. 6. 국토교통부훈령 제596호 2016. 9. 1. 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2017.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927호 2019.10.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5호 2021.8. 13. 국토교통부훈령 제1424호 2023. 1.30.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개발이익"이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 3. "일시적 이용상황"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임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용을 말한다.
- 4.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 한다.
- 5. "특수토지"란 토지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 6. "택지"란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7. "후보지"란 인근지역의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 8. "인근지역"이란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격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9. "유사지역"이란 해당 토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10. "동일수급권"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와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11.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2장 조사·평가절차

- 제4조(조사·평가절차)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1. 공부조사
 - 2. 실지조사
 -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 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 6.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 7. 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 8.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 9.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청취
- 10. 조사 · 평가보고서의 작성
- 제5조(공부조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환지계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통해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 3.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 제6조(실지조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한다.
 - 1.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2. 위치 및 주위 환경
 - 3. 토지 이용 상황 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 152 Ⅲ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 4. 도로 및 교통 환경
- 5. 형상 · 지세 · 지반 · 지질 등의 상태
- 6. 편익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 7. 유해시설의 접근성 및 재해·소음 등 유해정도
- 8.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7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등과 세평가격 등 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1.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인 것
 -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 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 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 제8조(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①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한다.

- ②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 변동률로서 가격자료가 소재한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 변동률로 시점수정
- 2.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시점수정
- 3. <삭 제>
- 4. <삭 제>
- 제9조(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① 수집·정리된 거래사례 등의 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 ②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는 표준지의 공법상 용도지역과 실제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용도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도지대를 분류하고,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다.
 - 1. 상업지대 : 고밀도상업지대 · 중밀도상업지대 · 저밀도상업지대

- 2. 주택지대: 고급주택지대·보통주택지대·농어촌주택지대
- 3. 공업지대: 전용공업지대 · 일반공업지대
- 4. 농경지대: 전작농경지대·답작농경지대
- 5. 임야지대: 도시근교임야지대·농촌임야지대·산간임야지대
- 6. 후보지지대: 택지후보지지대 · 농경지후보지지대
- ③ 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조건·항목·세항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한다.
- ④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를 위한 인근지역의 판단은 토지의 용도적 관점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지형·지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 1. 지반·지세·지질
- 2. 하천 · 수로 · 철도 · 공원 · 도로 · 광장 · 구릉 등
- 3. 토지의 이용상황
- 4. 공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 5. 역세권, 통학권 및 통작권역
- 제10조(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③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가격의 유효숫자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경계지역간 가격균형 여부 검토) ① 제10조에 따라 표준지의 평가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의 균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격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용도지대 및 토지이용상황별지가수준을 비교하는 것 외에 특수토지 및 경계지역 부분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에 대하여 개별필지별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표준지 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필요한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지의 필지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별·지목별 최고·최저지가,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지의 내역 및 변동사유, 표준지 위치표시도면 등 표준지의 평가가격 검토에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평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 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자처리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준

- 제15조(적정가격 기준 평가) ①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를 "적정가격"이라 한다) 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 ② 특수토지 등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곤란한 토지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또는 임료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해당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16조(실제용도 기준 평가)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제17조(나지상정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제18조(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평가)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 지역·지구·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19조(개발이익 반영 평가) ①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2.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3. 그 밖에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반영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단계별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지가 수준과 비교하여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일단지의 평가) 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하 "일단지"라 한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한다.
 - ② 제1항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 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 ④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축 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 ⑤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가 조경수목재배지, 조경자재제조장, 골재 야적장, 간이창고, 간이체육시설용지(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등)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 표준지의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불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평가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4조에 따른 조사ㆍ평가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 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성이 없거나 토지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토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거나, 해당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적정이윤)]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 ⑤ (삭 제)
- ⑥ (삭 제)

제4장 용도별 토지의 평가

제22조(주거용지) ①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한다)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 2. 상가와의 거리 및 배치상태
- 3. 학교, 공원, 병원 등의 배치상태
- 4. 거주자의 직업ㆍ계층 등 지역의 사회적 환경
- 5. 조망, 풍치, 경관 등 지역의 자연적 환경
- 6. 변전소, 폐수처리장 등 위험 · 혐오시설 등의 유무
- 7. 소음,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상태
- 8. 홍수, 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 9. 각 획지의 면적과 배치 및 이용 등의 상태
-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과 유사한 규모(층수·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 제23조(상업·업무용지) ①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를 제외한다)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익사례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한다),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배후지의 상태 및 고객의 질과 양
- 2. 영업의 종류 및 경쟁의 상태
- 3. 고객의 교통수단의 상태 및 통행 패턴
- 4. 번영의 정도 및 성쇠의 상태
- 5. 해당 지역 경영자의 창의와 자력의 정도
- 6. 번화가에의 접근성
- ② 상업·업무용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임대동향 표본(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임대동향조사를 위하여 선정한 오피스빌딩 및 매장용 빌딩을 말한다)이 소재하는 경우 상업·업무용지는 임대 동향표본을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거래 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비교가능한 적정 거래사례가 충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음(-)의 수익가격이 산출되는 등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한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업용지) ① 공업용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제품생산

및 수송·판매에 관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 2. 항만, 철도, 간선도로 등 수송시설의 정비상태
- 3. 동력자원 및 용수·배수 등 공급처리시설의 상태
- 4. 노동력 확보의 난이
- 5. 관련산업과의 위치관계
- 6.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공해발생의 위험성
- 7. 온도, 습도, 강우 등 기상의 상태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는 해당 토지 등의 분양가 격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이자 및 비용상당액과 해당 산업단지의 성숙도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양이 완료된 후에 상 당기간 시일이 경과되어 해당 토지 등의 분양가격자료에 따른 평가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의 다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업용지의 분양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25조(농경지) ① 전·답·과수원 등 농경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농경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간척지 등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토질의 종류 및 비옥도
 - 2. 관개·배수의 설비상태
 - 3. 한 · 수해의 유무와 그 정도
 - 4. 관리 또는 경작의 편리성
 - 5. 단위면적당 평균수확량
 - 6. 마을 및 출하지와의 접근성
 - ② 과수원은 그 지상에 있는 과수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임야지) ① 임야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임야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 1. 표고, 지세 등의 자연상태
 - 2. 지층의 상태

- 3. 일조 · 온도 · 습도 등의 상태
- 4. 임도 등의 상태
- 5. 노동력 확보의 난이
- ② 임야지는 그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상입목을 임야지에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상입목은 따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 입목가격이 임야지가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 2. 자연림으로서 입목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③ 「초지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조성된 목장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 1. 초지는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해당 초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개량비를 포함한다)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
- 2.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지는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에 해당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
- 3.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대" 부분은 목장용지로 보지 아니하며,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제27조(후보지) ① 택지후보지는 토지의 일반적인 조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택지조성 후의 토지가격에서 택지조성에 필요한 통상의 비용 상당액 및 적정이윤 등을 뺀 가격에 성숙도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택지화 등을 조장하거나 저해하는 행정상의 조치 및 규제정도
 - 2.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의 정비동향
 - 3. 인근에 있어서의 주택·점포·공장 등의 건설동향
 - 4. 조성의 난이 및 그 정도
 - 5. 조성 후 택지로서의 유효이용도
 - ② 제1항의 규정은 농경지후보지의 평가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8조(도시·군계획시설 등 저촉토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촉된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으로 인한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토지의 일부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부분과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토지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잔여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것으로 본다.
- ③ 표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었으나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 ④ <삭제>
- 제29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 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평가한다. 다만,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된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용도지역의 가격을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0조(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 현재 건설공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황 도로로 보며, 건설공사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및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제31조(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실제용도 또는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개축・ 재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 하여 평가
 -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를 포함하며, 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 3. 제2호 이외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목이 대인 토지는 현실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 제32조(재개발구역 등 안의 토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구역·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등의 고시 전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 제33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의 위치,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면적, 형상, 도로접면상태와 그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2. 환지예정지의 지정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이용상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
 -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34조(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 이후에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해당 택지의 지정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2. 택지로서의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기 전인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그 공사의 시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택지 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법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 제35조(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 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에 있는 토지는 그 공법상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에 그공법상 제한정도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삭제>

제6장 특수토지의 평가

제36조(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광천지"라 한다)는 그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공구당 총가격은 광천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7조(광업용지) ① 광산 및 오석, 대리석 등 특수채석장의 용지(이하 이 조에서 "광업용지"라 한다)는 광물의 종류와 매장량, 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② 광업용지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광산전체의 평가가격에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 •기구 등의 시설 및 광업권의 평가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 ③ 용도폐지된 광업용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용도폐지된 광업용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유사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가격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다른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용도전환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등을 고려한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38조(염전부지) 염전시설의 부지(이를 "염전부지"라 한다)는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등의 상태, 염생산가능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의 비율, 주위 환경 변동에 따른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제39조(유원지) ① 유원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유원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1.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
 - 2.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조건
 - 3.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 4.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 5. 공법상 제한사항 및 그 내용
 - 6. 그 밖에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 제40조(묘지) ① 묘지(공설묘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묘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묘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로서 제1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공작물등이 토지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서 토지의 가치 자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지 아니한 관리시설 및 분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1조(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174 Ⅲ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
- 제42조(종교용지등) 종교용지 또는 사적지(이하 이 조에서 "종교용지등"이라 한다)는 그 토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가격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그 용도 제한 및 거래제한의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그 종교용지등이 농경지대 또는 임야지대 등에 소재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가격수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원가법에 따르되,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공작물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43조(여객자동차·물류터미널 부지) ①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 부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여객자동차 ·물류 터미널 부지의 용도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 사업자의 면허(또는 등록, 허가, 신고 등)내용 및 해당 여객자동차·물류 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물류운송사업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44조(공공용지등) ①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용도의 토지(이를 "공공용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과같이 평가한다.
 -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다만,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 으로 본다.
 -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4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상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의 폭,	폭		가로의 폭, 사로	폭
가로 조건	구조 등의 상태	포장 보도	가로		포장
	734I	계통 및 연속성	조건	구조 등의 상태	보도
	가구(block)의	가구의 정연성		경네	게트 미 여시니
	상태	가구시설의 상태			계통 및 연속성
		인근교통시설의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이용 승객수		UOLTIGIT II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접근	교통수단 및	주차시설의 정비	접근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 과의 편의성	
조건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교통규제의 정도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관공서 등 공공	조건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선당시 등 등등 시설과의 접근성			
		백화점, 대형상가의 수와 연면적		고객의 유동성 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전국규모의 상가 및 사무소의 수와	취건	0175174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환경	상업 및 업무 시설의 배치	연면적 관람집회시설의 상태	환경 조건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 황과의 적합성
조건	시설의 메시 상태	부적합한 시설의 상태(공장, 창고, 주택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기타 고객유인시설 등		면적, 접면	면적
		배후지의 인구	획지	선식, 집면 너비, 깊이,	접면너비
		배후지의 범위	조건	니미, 숲이, 형상 등	깊이
		고객의 구매력 등		00 0	부정형지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경쟁의 정도 및 경영자의	상가의 전문화와 집단화		면적, 접면	삼각지
	능력	고층화 이용정도		너비, 깊이, 청사 드	자루형획지
		고객의 통행량		형상 등	맹지
환경	번화성의 정도	상가의 연립성	획지		방위
조건	인외경의 경포	영업시간의 장단	조건	방위, 고저 등	고저
		범죄의 발생정도			경사지
					각지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접면도로상태	2면획지
					3면획지
		용도지역, 지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구역 등
행정적	행정상의	용적제한	행정적	행정상의	용적제한
조건	규제정도	고도제한	조건	규제정도	고도제한
		기다기대			기타규제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7151	장래의 동향
조건	/I닉 	기타	조건	기타	기타

[별표2]

주택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인근교통시설의			계통 및 연속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편의성 인근교통시설의		접근성 상가와의	및 편의성 인근상가와의
접근	상태	도시중심 접근성	접근	접근성	거리 및 편의성
조건	상가의 배치상태	인근상가의 편의성 인근상가의 품격	조건	공공 및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등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거주자의 직업, 연령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환경	사회환경	학군 등	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조건		획지의 표준적인 면적	조건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수도
	획지의 상태	획지의 정연성		시니시 _르 니 상태	하수도
		건물의 소밀도		- U II	도시가스
		주변의 이용상황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고그 및 처리	상수도		위험 및	유무
	공급 및 처리 ' 시설의 상태 '	하수도 도시가스 등		혐오시설 등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변전소, 가스탱크,			면적
	위험 및	오수처리장 등의			접면너비
	혐오시설	유무		면적, 접면	깊이
	D12	특별고압선 등의		너비, 깊이,	부정형지
		통과 유무		형상 등	삼각지
환경	재해발생의	 홍수, 사태,	획지		자루형획지
고 조건	위험성	절벽붕괴 등	조건		맹지
	1160	2707 0			방위
				방위, 고저 등	고저
	공해발생의	 소음, 진동,			경사지
	정도	대기오염 등			각지
	-0.T	네기프리 증		접면도로 상태	2면획지
					3면획지
		용도지역, 지구,			용도지역, 지구,
행정적	행정상의	구역 등	행정적	행정상의	구역 등
조건	규제정도	규제정도 기타규제		규제정도	기타규제
		기니기에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조건	19	기타	조건	119	기타

[별표3]

공업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가로의 폭,	폭	· 가로	가로의 폭,	폭
기도 조건	구조 등의	포장	기도 · 조건	구조 등의	포장
————	상태	계통 및 연속성	고긴	상태	계통의 연속성
	판매 및 원료	도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구입시장과의	항만, 공항, 철도,			접근성
	위치관계	고속도로, 산업도로			
접근	TIMEN	등과의 접근성	접근	교통시설과의	 철도전용인입선
조건	 노동력확보의 난이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조건	거리	2
		7741101 81 5174			
	관련산업과의 관계	관련산업 및 협력			전용부두
		업체간의 위치관계			ENTIO
	공공 및 처리	동력자원	-174	공급 및 처리	동력자원
	시설의 상태	공업용수	환경	시설의 상태	공업용수
환경		공장배수	조건		공장배수
조건	공해발생의	수질, 대기오염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위험성	1 2, 11 12 0	획지		면적
	자연환경 자연환경 기	지반, 지질 등	조건	면적, 형상 등	형상
-	71000	ME, ME 6			고저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조장의 정도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조장의 정도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조건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 11/11/0/1	기타규제	그건	중 비세이스	기타규제
기타		공장진출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니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다 · 조건	기타	기타
<u> </u>		기타	그건		/14

[별표4]

농경지대(전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취락과의 접근성			취락과의 접근성
접근	교통의 편부	출하집적지와의	접근	교통의 편부	
조건	#64 인T	접근성	조건	#6기 인T	 농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710111	통풍, 강우량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지세	경사의 방향	TIM		관개의 양부
	NAM	경사도	자연	관개, 배수	배수의 양부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 조건		수해의 위험성
자연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시인 조건		배수의 양부			위험성
-					면적
		수해의 위험성	획지	면적, 경사 등	경사도
	재해의 위험성				경사의 방향
	세에의 귀엄성	7101 711-1101	조건		형상부정 및 장애
		기타 재해의		경작의 편부	물에 의한 장애의
		위험성			정도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보조금, 융자금 등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보조금, 융자금 등
왕경역 조건	행성성의 조성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조건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u> 고</u> 인	ТЛІ́О́┸	규제의 정도	<u> 고</u> 인	〒△16工	규제의 정도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조건	기닉	기타	조건	/ 기뇌	기타

[별표5]

농경지대(답 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취락과의 접근성			취락과의 접근성
접근	교통의 편부	출하집적지와의	접근	교통의 편부	
조건	<u> </u>	접근성	조건	#67 E1	 농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7621	통풍, 강우량 등			<u> </u>
	지세	경사의 방향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	경사도	자연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조건	선계, 메구	배수의 양부	
자연		관개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조건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배수의 양부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면적 등	면적
	재해의 위험성	구에의 취임성	획지		경사
	세에의 제임경	기타 재해의	조건	겨자이 떠버	형상부정 및 장애
		위험성		경작의 편부	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해저사이 ㅈ자 미	보조금, 융자금 등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행정상의 조장 및	조장의 정도			정도
조건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조건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조건	/ 기닉	기타	조건	기닉	기타

[별표6]

임야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접근성
접근	교통의 편부		접근	교통의 편부	인도의 배치, 폭,
조건	- HO - HO - HO - HO - HO - HO - HO - HO	인도의 배치, 폭,	_ ㅁㄴ 조건	표 ₀ 기 단구 등	구조 등
ㅗ근	0	구조 등	그건	0	반출지점까지의
		인근시장과의			거리
		전문사성과의 접근성			반출지점에서
		HE'0			시장까지의 거리
	기상조건	일조, 기온, 강우량, 안개, 적설량 등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五 H.7 T.2 G G			 丑고
자연	지세 등	경사도	자연		 방위
조건		경사의 굴곡	조건	지세, 방위 등	경사
					경사면의 위치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상의 조장의			조장의 정도
		정도			 국·도립공원,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국·도립공원,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조건	규제정도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조건	규제정도	규제
		규제			기타규제
7151		기타규제	7151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조건		기타	조건		기타

[별표7]

후보지지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 목	세 항 목	조건	항 목	세 항 목
	도심과의 거리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의		교통시설과의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및 교통시설의 상태	성격 인근교통시설의 도시중심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접근성		공공 및	유치원, 초등학교,
접근	상가의	인근상가와의 접근성	접근	ㅇㅇ ㅊ 편익시설과의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조건	배치 상태	인근상가의 품격	조건	접근성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 상태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		주변가로의 상태	주변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가로의 종류 등
	주변가로의 상태	주변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및 가로의 종류 등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등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으 이 이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 - 1		사고 6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치의 난이
환경 조건	인근환경	주변기존지역의 성격 및 규모	조건	위험 및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시가화 정도	시가화 진행의 정도		혐오시설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도시의 규모	도시의 인구, 재정, 사회,	회, 획지 면적, 형상 등		면적
	및 성격 등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조건	L'7, 00 0	형상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조건	항목	세 항 목	조건	항목	세 항 목
	위험 및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면적, 형상 등	접면도로상태
환경 조건	혐오시설	특별고압선 등의 통과유무	획지		방위
<u> </u>	재해발생의 위험성	그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방위, 고저 등	경사	
	공해발생의 정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고저
택지 조성	택지조성의 난이 및	택지조성의 난이 및 필요정도	택지 조성	택지조성의 난이 및	택지조성의 난이도 및 필요정도
조건	유용성	택지로서의 유효 이용도	조건	유용성	택지로서의 유효 이용도
		조장의 정도			조장의 정도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용도지역, 지구,	행정적	행정상의 조장 및	용도지역, 지구,
조건	규제정도	구역 등	조건	규제정도	구역 등
		기타규제			기타규제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기타	장래의 동향
조건	119	기타	조건	/19	기타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가준 … 1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2023.8.1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2008. 4.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059호 2009. 7.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1호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2호 2010.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1호 2010. 8.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97호 2011. 7.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71호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9.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19호 2013.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22호 2015. 8.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1호 2016.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2017. 8.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호 2018. 10.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0호 2019.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7호 2020. 7.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2021.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13호 2021. 8.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3호 2023. 8.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를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의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 1.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 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적 정의견이 표명된 감사보고서에 한한다)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 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로서, 최근 3년간 연 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을 선정기준일 이전에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 3. 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심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사가참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 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의뢰한다.
- ③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 ·도지역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해당지역의 표준지공시지 가 조사·평가를 우선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 력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5항 단서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가격변동이 예상되는 표준지
- 3. 골프장 등 업무난이도가 현저히 높은 표준지
- 4.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가 시·군·구별 표준지수의 90% 이상인 경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표준지
- 제4조(공시전문평가법인)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공시전문평가법인"이라

한다)에게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 7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의 조사·평가의 업무배정에 있어 우선 의뢰할 수 있다.

-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에서 정한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 2. 제1호에 따른 최소 주재 감정평가사의 인원을 두고 있는 분사무소를 5 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의뢰를 받은 공시전문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특수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경력이 5년 이상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전문평가법인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70점(100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업무수행능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공시전문평가법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 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준지공시

지가 조사·평가의 업무 배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전체 감정평가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1. 감정평가 실적 및 수행능력
- 2. 가격공시 성과 및 기여정도
- 3.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 제6조(감정평가사 선정기준) 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 1. 감정평가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2.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 3. 자격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1년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8. 감정평가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선정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9. 선정기준일 이전 3년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사람.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본다.
- 10. 법인의 대표자
- 11. 그 밖에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및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 중인 사람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 제7조(수탁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마련)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장은 위탁 받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물량 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한국부동산원장이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475호, 2023. 8.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 2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2021.01.06.)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정 2016.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9호 개정 2017.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호 개정 2021.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 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 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

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연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수수료
-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
- 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 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 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202 V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 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70%
 -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연도 1표준 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times 해당연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times 50%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끝수정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천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1.	서론	 207
2	평가반번	 208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1. 서론

가. 정의(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제2조)

• 토지의 용도가 특수하고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나. 특징

- ① 비준표가 없어 특수토지의 개별지가 산정시 비준율은 "1"이 된다.
- ② 거래사례가 희소하며, 거래사례가 있더라도 사정보정, 개별요인 비교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③ 평가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성이 강하여 비교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시·군·구별로 특수토지가 적을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나.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다. 표준지 선정

- ① 특수토지는 표준지로 선정한다. 특수토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특수토지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용상황별 가치구성을 달리하면 각각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고, 특수토지가 여러 개 있더라도 1개의 표준지로 개별지가 산정에 지장이 없다면 1개만 선정할 수 있다.

(예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경우 장래 이용계획, 사업진행정도 등에 따라 각각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Ⅱ. 평가방법

1. 골프장 용지

가. 의의

•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 비회원제 골프장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나.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1) 골프장(허가)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2) 골프연습장(신고)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 및 그 밖에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골프장은 특수토지로, 골프연습장은 상업용으로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제41조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 · 창고 · 오수 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함)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일단지 조사·평가방법(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골프장용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서상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 용지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함)으로 한다.
- ※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전체가 체육용지로 지적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분등록 대상토지(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등록된 토지로서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원형보전상태에 있는 부분 등은 임야로 지적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회원제골프장에 비회원제 골프장이 병설되어 있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체육시설이므로 각각 표준지를 선정하여 조사·평가한다(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2. 스키장

가. 의의

•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시설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패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10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평가방법

• 골프장용지 등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3. 경마장

가. 의의

• "경마"란 기수가 타고 있는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

나. 시설기준(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

- ∘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 ·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주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 예시장, 마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 ·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4. 승마장

가. 의의

• 승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시설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한다.
- 마사, 관리사, 마장(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

■ 근거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 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 · 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 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벽표 1]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시설					
이 될 수 있는 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다. 평가방법

• 유원지 평가 방법(「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39조)을 준용한다.

5. 터미널 부지

1.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가. 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한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호)

나. 평가방법

1) 표준지 선정 대상

상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공영 및 공용터미널만을 표준지로 선정한다.

※ 공영 및 공용터미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는 기능이 미미하거나 단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14 VI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2)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평가방법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 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기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3조제1항 참조)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건물 내에서의 자동차정류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율과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부대·편익시설의 현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의 면허 내용,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 물류터미널부지

가. 의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 사업자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제2호)

< 참고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류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 (제2조 제2호)
-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제2조 제3호)

나. 표준지 선정 대상

 상기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만을 표준지로 선정한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2조
 따른 유통업무설비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시설 중 동 규칙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은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6. 공항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 항공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 부지를 말한다.(공항시설법 제2조)

• 표준지선정

- ① 청사부지와 활주로 부지를 구분하여 표준지로 선정한다.
- (「국유재산법」및「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 산정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 ② 군용비행장의 경우 청사부지만 표준지로 선정하고, 활주로 부지는 군용부지로 할 수 있다.
- ※ 사유 : 활주로 범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시설 특성상 활주로 지하 활용 내역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출입제한에 따른 확인 불가능

7. 고속도로 휴게소

• 표준지 선정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의 표준지 선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시군구와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 · 민자 구분 없이 선정한다.

• 평가 방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 이용상황의 토지 거래사례 등 가격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임대료 등을 고려한 수익환원법 및 조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원가법 등을 통해 그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다.

8. 콘도부지

가. 의의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나. 현황

- 1) 일반콘도 : 상업지대, 해안가 등에 일반적인 콘도
- 2) 스키장 연계 콘도
- 3) 골프장 연계 콘도
- 4) 스키장·골프장 연계 콘도

다. 기타

- 상업지대내 콘도는 상업용으로 할 수 있다.
- 콘도부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양어장·양식장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양식장 :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
 시키는 곳

10. 염전

가. 의의

 바닷물을 끌어 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올려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8조)
- 염전부지는 입지조건, 규모 및 시설 등의 상태, 염생산가능면적과 부대시설면적의 비율, 주위환경 변동에 따른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일단지의 판단

- 일단지의 범위는 "조사·평가시점의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염전지목"과는 다른 것으로서 염전, 유지, 잡종지, 구거 등이 염 생산에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의 조사·평가범위에 포함한다. 염전시설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염 생산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잡종지 상태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일시적인 상태는 제외한다)는 염 생산에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지의 조사·평가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법규정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같은법 시행령 별표2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으로 천일염의 경우에는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해주, 소금창고 및 용배수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공원묘지

가. 의의

• "공원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한다.(공설묘지는 제외)

나. 시설기준

1) 묘지의 구분

① 개인묘지 ② 가족묘지 ③ 종중·문중묘지 ④ 법인묘지 ⑤ 공설묘지

2) 규모(법정)

종중 · 문중묘지 : 1,000m²이하, 법인묘지 : 100,000m² 이상

다. 평가방법

1) 표준지 선정대상

표준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하며 공설묘지는 제외한다.

2) 평가방법

- ① 묘지는 그 묘지가 위치한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묘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 및 분묘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12. 광천지

가. 의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를 광천지라 하며,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36조 참조)

광천지는 그 광천의 종류, 질 및 양의 상태, 부근의 개발상태 및 편익시설의 종류·규모, 사회적 명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래비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공구당 총가격은 광천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의 가격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

※ (공구당 총가격 ÷ 해당 광천지의 면적) = 평가가격

2) 공구당 총가격 산정방법

① 광천지 거래사례로 평가한 가격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기타요인비교 ≒ 광천지 공구당 총가격

공시지가 = 공구당총가격 : 면적

13. 유원지

가. 평가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제39조 참조)

- 유원지를 평가할 때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그 시설물의 상태, 조망, 경관 등 자연환경 조건, 도시지역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시설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에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건물 등 관리시설과 공작물 등의 가격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것으로 한다.
- 유원지로 지정·고시된 구역 내의 개발지와 원형보전지 등은 원칙적으로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나. 일단지의 판단

 유원지는 일정한 구역에서 일반 공중의 위략·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수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유기적인 시설을 갖추어 이용되므로 그 중 대표적인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유원지 전체 토지를 일 단지로 본다.

14. 발전소 부지

- 수력발전소 :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의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을 사용하는 발전소
- 화력발전소 : 석탄 또는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기관에 의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소
- 원자력발전소 : 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
- 발전소부지로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는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특수토지 기타

• 특수토지 기타는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로서, 토지이용상황 등을 세분화, 특정하기 곤란하여 개별지가 산정시 비준표에 의할 경우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토지특성 주요 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227

Ⅵ.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가. 토지이용상황(15)

1) 1989~1990년 이용현황

실제용도	표시방법	비고
 전	보통작물	특용작물재배지 이외의 전
	특용작물	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답	수도작	 수도작이외의 용도(미나리, 연, 왕골 등)
	특용작물	
대	단독주택 주택상가 일반상가 아 파주택 업무용빌딩 장 유 자 장 테니스장 테니스장 네 나	순수주거 목적의 주택 주택과 상가용도가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1층: 상가 1층: 상가, 주택 2층: 주택 2층: 주택 주된 용도가 상가로 이용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오피스빌딩
임 야	조 림 자 연 림	
공장용지	공 장 창 고 발 전 소	
유 원 지	유 프 용 존 자 당 된 마 이 · · · ·	
 과 수 원	과 수 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초지와 축사

2) 1991년 이용상황

실제용도	표시방법	비고
	보통작물	특용작물재배지 이외의 전
전 	특용작물	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답	수 도 작 특용작물	수도작 이외의 용도(미나리, 연, 왕골 등)
	단독주택	순수주거 목적의 주택
	주·상복합용	주택과 상가용도가 비슷한 비중으로 이용되는 경우
		예) 1층 : 상가 1층 : 상가, 주택
		2층 : 주택 2층 : 주택
	상 업 용	주된 용도가 상가로 이용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대		(시장, 상가, 호텔, 여관, 휴게소, 유치원, 극장, 목욕탕, 병원, 주유소, 수영장
ч		등)
	아 파 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용주택
	업 무 용	은행, 사무실(오피스텔) 등 업무용 건물부지
	특수상업용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등
	주거용나대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주거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상업용나대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상업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나 대 지	공업용나대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지역이나 빈터인 토지
니 네 시	녹지형나대지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전·답 임야이나 빈터인 토지
		▶ 나지범위 : 일시적 이용상태인 조경수목재배지, 자재야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간이주차장 등 포함
임 야	조 림	
	자 연 림	
공장용지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부지나 창고부지와 발전소 부지 등
광 천 지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업용지	광산 채석장 등
염 전	염 전	
운 동 장	운 동 장	
도 로	도 로	
공 원	공 원	
과 수 원	과 수 원	
목장용지	목장용지	
기 타	기 타	묘지,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도축장 등의 혐오시설

3) 1992년 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 부지	1	단독주택
연립주택용	연립주택 부지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부지	3	다세대
아파트용	아파트 부지	4	아파트
상 업 용	토지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지	5	상업용
 업 무 용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의 부지	6	업무용
<u>ㅂ ㅜ 등</u> 주상복합용	다 시 글 및 교육 다 시 글 (학교 시 되 가 그 구 시 주 가용 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비슷한 건축물의 부지	7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	8	주상복합 특수상업
특수상업용		O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 창고 및 발전소용부지 단, 상업용과 공업	9	공업용
	용이 혼합되어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분류		
주거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10	주거나지
	높은 토지		
상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업, 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	11	상업나지
01471	성이 높은 토지	11	0.847
701.171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1.0	701.171
공업나지	있는 토지	12	공업나지
 녹지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 또는 임야로서 공지상태로 있는 토지	13	녹지나지
 전(특용작물)	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특용작물재배지	14	특용작물
전(보통작물)	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 재배지	15	보통작물
답(특용작물)	미나리, 연, 왕골 등 특수작물 재배지	16	<u> </u>
답(수 도 작)		17	<u> </u>
입야(조 림)	계획 조림지	18	조림
임야(<u>소 </u>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19	<u> </u>
목 (농) 장	목장 및 농장용지	20	목(농)장
- (8/8 _ 과 수 원	「지적법」시행령 제5조의 "과수원"과 동일	21	과 수 원
<u> </u>	「지적법」시행령 제5조의 "광천지"와 동일	22	<u> </u>
등 전 시 광업용지	자격리 시청당 제2도의 당신자 되 등을 광산, 채석장 용지	23	<u> </u>
		24	<u> </u>
<u>염 전</u> 운 동 장	「지적법」시행령 제5조의 "염전"과 동일 야외 체육시설용지 포함	25	원 선 운동 장
	아파 제표시절용시 포함		
도로		26	도 로
하 천		27	하 천
<u>공</u> 원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28	공 원
창 고	물품의 저장·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 부지	29	창 고
종교시설	교회, 성당, 향교등 종교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30	종교시설
학 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용 부지	31	학 교
공공청사		32	공공청사
혐오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도 축장 등의 부지	33	혐오시설
유 지		34	유 지
<u>기</u> 타	갈대밭, 토취장 등 위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99	기 타
	ETIE, -110 0 117 0- 147 0 104- MC -1	00	1 9

4) 1993년 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 부지, <주택지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 포함>	1	단독주택
연립주택용	면립주택 부지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부지	3	다세대
아파트용	아파트 부지	4	아파트
상 업 용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지	5	상업용
 업 무 용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의 부지	6	 업무용
주상복합용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비슷한 건축물의 부지	7	주상복합
특수상업용	골프장, 스키장 및 유원지, 경마장 등	8	특수상업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공장, 창고 및 발전소용부지 단, 상업용과 공업용이 혼합되어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분류	9	공업용
주거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0	주거나지
상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1	상업나지
공업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역으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2	공업나지
녹지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 또는 임야로서 나지상태로 있는 토지	13	녹지나지
전(특작)	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의 특용작물재배지	14	특용작물
전(보작)	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의 보통작물재배지	15	보통작물
답(특작)	미나리, 연, 왕골 등 특수작물 재배지	16	특용작물
답(수도작)	벼 재배지	17	수 도 작
임야(조림)	계획 조림지로 조림대장에 등재된 임야	18	조 림
임야(자연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19	자 연 림
목 (농) 장	목장 및 농장용지	20	목(농)장
과 수 원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과수원"과 동일	21	과 수 원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광천지"와 동일	22	
광업용지	광산, 특수 채석장(오석, 대리석등 채석지)용지	23	광업용지
염 전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염전"과 동일	24	염 전
체육용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체육용지"중 "특수사업용"에 기재된 용 지를 제외한 체육시설용 토지	25	체육용지
도 로		26	도 로
 하 천		27	<u></u> 하 천
공 원	도시공원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	28	공 원
<u></u> 창 고	물품의 저장·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 부지	29	· · · · · · · · · · · · · · · · · · ·
종교용지	교회, 성당, 향교 등 종교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 물의 부지	30	종교용지
학교용지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31	학교용지
공공청사	공공의 청사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2	공공청사
혐오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도축장 등의 부지	33	혐오시설
유 지		34	유 지
기 타	갈대밭, 토취장, 채석장, 사토장 등 위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99	기 타

5) 1994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u> </u>			주 거 용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용지(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 부지 포함)	11	단 독
연립주택용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m² 초과)	12	연 립
다세대주택용	「건축법」시행령상 다세대주택 및 다중주택 용지	13	다 세 대
아 파 트 용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 파 트
주거용나대지	주거지대내의 나대지	15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16	기 타
상업·업무용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용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 병원, 주유소 등	21	상 업 용
업 무 용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용지	22	 업 무 용
상업용나대지	상업, 업무지대내의 나대지	23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상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24	기 타
주상복합용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 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용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 택은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봄)	30	주상복합용
 공 업 용			공 업 용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 로 조사	41	공 업 용
공업용나대지	공업지대내의 나대지	42	나 대 지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3	기 타
 전			 전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등) 또는 보통작물(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	51	전
과 수 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52	과 수 원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또는 특수작물(미나리,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60	답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임야			임 야
조 림	조림대장에 계획조림지로 등재된 임야	71	조 림
자 연 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토 지 임 야 (토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 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 야	73	토지임야
목 장 용 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74	목장용지
특 수 필 지			특수필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유지를 위한 부지	81	광 천 지
광 업 용 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염 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 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83	염 전
도 로		84	도 로
하 천		85	하 천
골 프 장	골프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6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7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8	경 마 장
기 타	기타 특수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부지	89	기 타

6) 1995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위	CODE	표기방법
주 거 용		10	주 거 용
단독주택용	주거용 단독주택용지(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부지 포함), 다중주택용지	11	단 독
연립주택용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m² 초과)	12	연 립
다세대주택용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13	다 세 대
아 파 트 용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 파 트
주거용나대지	주거지대내의 나대지	15	주거나대지
주거용기타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	16	주거기타
상업·업무용		20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상가,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용지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극장, 병원, 주유소 등	21	상 업 용
업 무 용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용지	22	업 무 용
상업용나대지	상업, 업무지대내의 나대지	23	상업나대지
상업용기타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상업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주거용지,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	24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용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주거 용 단독주택으로 봄)	30	주상복합용
공 업 용		40	
공 업 용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조사)	41	공 업 용
공업용나대지	공업지대내의 나대지	42	공업나대지
공업용기타	현재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공업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3	공업기타
 전		50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특수작물(인삼, 관상수, 뽕나무, 약초 등) 또는 보통작물(보리, 감자, 옥수수, 채소 등)을 재배하는 토지(밭)와이에 접속된 저장고,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51	전
과수원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 속시설물 부지	52	과 수 원

구 분	범위	CODE	표기방법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또는 특수작물(미나리, 연, 왕골 등)을		
답	재배하는 토지(논)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	60	답
	지		
임 야		70	
조 림	조림대장에 계획조림지로 등재된 임야	71	조 림
자연림	조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토지임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토지임야
(토림)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포시터에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		목장용지
	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		
트 수 필 지		80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81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염 전	조수를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하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83	염 전
도 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사도포함)	84	<u></u> 도 로
하 천	하천부지	85	하 천
골 프 장	골프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6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7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해서 조성된 부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부지	88	경 마 장
기 타	기타 특수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부지 (※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89	기 타

7) 1996년 토지이용상황

구 분	범	위	CODE	표기방법
주 거용			10	주 거 용
단독주 용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 함	또는 아파트 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주택(점포주택)용지 및 다중주택용지 포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11	단 독
연립주 용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 660㎡	초과)	12	연 립
다세다 주택용	「건축법」시행령상 다세다※ 다세대주택 : 동당 연면	배주택 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13	다 세 대
아파트용	5층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14	아파트
주거용니	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리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 배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 지, 벽돌공장 등		주거나지
주거용?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기타
 상업·업무용			20	
상업용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라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	21	상 업 용
업무용		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업 무 용
상업·업· 나지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	당업·업무지대로서 상업·업무용 건축물이 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 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 지, 야적장		상업나지

=	구 분	범위	CODE	표기방법
	상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24	상업기타
2	주·상복합용		30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 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가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 으로 본다)	31	주 상 용
	주·상 복합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 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33	주상기타
-	 공 업 용		40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한다.	41	용
	공업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2	공업나지
	공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 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43	공업기타
	전		50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봉나 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51	전

구	분	범위	CODE	표기방법
과=	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2	과 수 원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 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 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53	전 기타
답			60	
- C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61	답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 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 용되고 있지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62	답 기타
임	O‡		70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71	조 림
자	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72	자 연 림
	ll임야 .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	토지임야
목징	상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74	목장용지
임야	: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 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75	임야기타
특 수 필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로서 거래사례가 극히 희소하고 일률적인 가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	
광	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1	광 천 지
광업	は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	광업용지

Ξ	구 분	범위	CODE	표기방법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83	염 전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84	유 원 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에 한한다.	85	공원묘지
	골프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	골 프 장
	스키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7	스 키 장
	경마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8	경 마 장
	특수필지 기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 내 대 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89	특수기타
Ę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 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90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91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등)	92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93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광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4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정류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5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 등) ※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96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7	유해·혐오 시설
	기 타		99	기 타

8) 1997~2024년 토지이용상황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주 거	용		100	주 거 용
	'97 ~ 2000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또는 아파트 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및 「건축법」상 다중 주택용지 포함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2001 ~ 2006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단독주 택용지	2007	단독주택용지(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상 동		단 독
	2008 ~ 2019	·다가구주택: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함)가 3개층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20	단독주택용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 시설을 포함) ·단독주택 : 주택용지로서 연립·다세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 하인 것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용		100	주 거 용
	2020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층 이하(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독주 택용지	2022	단독주택 용지(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 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	110	단 독
	'97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²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2000			
연립주	2001 ~ 2019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20	연 립
택용지	2020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주택용지 포함)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20	연 립

구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주 거	용		100	주 거 용
	'97 ~ 2011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130	다 세 대
다세대 주택	2012 ~ 2019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의2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130	다 세 대
용지	2020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3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130	다 세 대
	'97 ~ 2006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용지	2007 ~ 2020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140	아파트
	2013 ~ 2020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거용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150	주거나지
	'(용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160	주거기타
상업·업무	용		200	상업·업무용
상 업 용 지	'97 ~ 2023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에)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 '98~2011년은 유치원이 삭제되어 주거기타·상업기타로 분류함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210	상 업 용
	2024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유치원,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전기차충전소(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상업·업무용		200	상업·업무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	220	업 무 용
상업·업무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 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230	상업나지
상업용기타 ※2002 년에 상업·업무용기 로 개정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주상용건물 (2002년 추가),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240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300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310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 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320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 (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330	주상기타
공 업 용		400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한다.	410	공 업 용
공업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420	공업나지

Ξ	구 구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공 업	용		400	
	공업용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 시설 (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 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430	공업기타
	빌	양광 전소 쿠지 년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 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태양전지로 구성 된 모듈과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토지 ※ 공장 등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조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440	태양광
	전			500	
	전	'97 ~ 2003 2004 ~ 2018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제외한다)·약초·뽕나무·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 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 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 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510	전
	과수	'97 '98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 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520	과 수 원
	헌	2003 2004 ~ 2018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 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설용 칭고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530	전창고
	축사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540	전축사
	전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 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 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 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550	전 기타

구 분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답			600	
	답	'97 ~ 2003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610	답
	В	2004 ~ 2018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010	В
	농업 용창 고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620	답창고
	축사	2017 ~ 2018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630	답축사
	답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 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 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 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640	답 기타
	임) †		700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710	조 림
	자	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720	자 연 림
	토지임야 (토 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730	토지임야
		'97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 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 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장용 지	'98 ~ '99	낙농업을 목적으로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였거나, 「초지법」시행이전에 임의개간한 토지로서 초식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한다. ('98년 신설)	740	
		2000 ~ 2003	축산업을 목적으로 「초지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였거나, 「초지법」시행이전에 임의개간한 토지로서 초식가축 사육에 사용하는 토지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구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임	0‡		700	
목장	2000 ~ 2003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 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5 40	
용지	2004 ~ 2018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한다. *지적공부상 조사한다.	740	목장용지
임	야 기타	*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 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 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750	임야기타
특 수 <u>!</u>	토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0	
광천지	'97 ~ 2003 2004 ~ 2018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제외한다.	810	광 천 지
골	 방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820	광업용지
염 전	'97 ~ 2003 2004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	830	염 전
	2018	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831	양어·양식
	양식장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		

-	구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투 수	토	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800	
	유원지		'97 ~ 2002 2003 ~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 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840	유 원 지
			2018 '97 ~ 2001 2002	토지와 그 부속토지 사설공원묘지에 한한다.	850	공원묘지
			2018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 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한다.		
		골 프 장	'97 ~ 2013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0	골 프 장
		회 원 제	0010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0	회원제
	F	대 중 제	중 2019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한다.	861	대중제
	#	간 이		간이골프장업은 각 홀의 부지면적이 13,000㎡를 초과하고 3홀 이 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2	간이
	J	회 원 제 대 중	2020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0	회원제
			2020 ~ 2023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1	대중제
		간 이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862	간이
		<u>스</u> 커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고 경영하는 골프장 부지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60 870	골 프 장 스 키 장
		경□	୩ଖ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80	경 마 장

구		분	범 위	CODE	기재방법
(미니엄 크 추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891	콘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2009~20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용터미널의 부지. 다만,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지역여건 및 도로교통의 변경등으로 인해 당초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격균형 제 고를 위한 특수토지로서의 선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제외 가능 * 공영터미널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	890	여객
	고	·항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 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 부지	892	공항
		·도로 세소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주변에 승객과 운전자의 휴식, 차량의 정비등을 위한 편의시설 부지	893	휴게소
	발	수력	물이 갖는 위치에너지를 수차의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을 사용하는 발전소		
	전 소	화력	석탄 또는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기관에 의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소	895	발전소
		원자력	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 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제2호)		물류
	특수토지 기타		*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 기타로 조사된 경우에는 "※ 기타()"란에 구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한글 4자 이내로 기재한다.	899	특수기타
고 2	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 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900	

구	-	<u></u>	범	CODE	기재방법
		'97			
		~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2002		010	도로 등
	등	2003		910	도도 등
		~	도로(사도 포함), 철도, 녹지, 수도, 공동구		
		2020			
		'97			
		~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등)		
	하천	2017		000	
	등	2018		920	하천 등
		~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		
		2020	못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930	공원 등
		'97			
		~	운동장, 광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9			
	운동장	2000		0.10	운동장 등
	등	~	운동장, 광장	940	
		2002			
		~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2020			
		'97			
		~	 주차장, 정류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99			
		2000			
1	주차장	~	주차장, 정류장	950	주차장
		2002			
		2003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2018			
		'97	 위험시설(변전소, 송전탑, 송유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 등)		
	OI=LL	~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위험시	2002		960	위험시설
	설	2003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18			

구 분		분	범위	CODE	기재방법
	현오 시설 - 1	'97 ~ '99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2000 ~ 2001	화장장,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등	970	유해·혐오 시설
		2002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쓰레기 처리장, 폐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도살장 등		
		2003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쓰레기 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 및 혐오	2004 ~ 2005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970	유해·혐오 시설
	시설	2006 ~ 2018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설 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기 타		'97 ~ 2019		990	기타
		2020	'일반토지(주거,상업,주상,공업,전,답,임야)',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미분류 토지	990	기타

나. 지형지세 : 고 저(16)

연 도	내용
	평지
	고지 및 저지 - 간선도로 기준
	구릉지 - 지형의 굴곡이 있는 지역
'89년	계단식
	완경사지 — 경사도 15°미만
	급경사지 - 경사도 25°이상
	보통경사지 — 경사도 15°이상 25°미만
'90년	계단식 - "논"의 경우
	구릉지, 계단식, 보통경사지를 삭제
	완경사지 — 경사도 15°미만에서 이하로 변경
'91년	급경사지 — 경사도 15°초과로 변경
016	평지, 고지 및 저지 - 변경사항 없음
	완경사지 — 경사도 15°이하인 경우
	급경사지 — 경사도 15°초과한 경우
	③ 지세는 간선도로와 비교하여 다음의 유형으로 기재한다(신설).
	① 저지 - 간선도로면 보다 낮음
'92년	② 평지 — 간선도로와 높이가 비슷한 수준
026	③ 완경사지 — 도로보다 높고 경사도 15°이하인 경우(구릉지 포함)
	④ 급경사지 — 도로보다 높고 경사도 15°초과한 경우
	⑤ 고지 — 급경사 이상의 높은 지대(신설)
'93년	변경사항 없음
'94년	완경사 및 급경사 판단시 "도로보다 높고"를 "간선도로보다 높고"로 변경
	□ '92년 □항을 "토지의 지세(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다음의 유형으로 기재한다"로 변경
'95년	© 저지, 평지, 고지는 변경사항 없음
	③ 완경사지 — 경사도가 15°이하인 경우(구릉지 포함)
	④ 급경사지 —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연 도	내용
'96년	 □ '92년 □항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로 변경 ① 저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② 평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지대의 토지 ③ 완경사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구릉지 포함" 삭제) ④ 급경사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⑤ 고지 - 급경사 이상의 높은 지대의 토지(변경없음)
'97년	② 평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로 변경 ⑤ 고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로 변경
'98년	변경사항 없음
'99년	○ '96년 ○항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 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로 변경
2000년~ 2020년	변경사항 없음
2021년	조사의 정확성 등을 위해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해당 토지가 속한 지대의 경사도(측량자료 또는 수치지형도 등 기준)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
2022년~ 2023년	변경사항 없음
2024년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한다"는 내용 삭제하여 간선도로 기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삭제

다. 지형지세 : 형 상(17)

연 도	ā	형상의 구분(토지의 모양은 다음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			
<u> </u>	정방형, 장방형, 제형, 삼각형, 부정형으로 구분				
<u>'91년</u>	위 형상외 자루형 신설				
	장방형을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으로 구분				
		형과 역삼각형으로 구분			
	라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			
	가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92년	세로장방형	·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삼각형	····= -6 · - ·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 삼각형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향하고 있는 토지			
	부정형	·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 00} 자루형				
 '93년~'94년		의 길이 비율이 1 : 1.3 이하인 토지로 정함			
 '95년	정방형을 "정사각형으로서 긴변과 짧은변의 길이가 비슷한 토지"로 변경				
· '96년	정방형을 양변의 길이 비율이 1 : 1.1 내외인 토지로 정함				
'97년	제형을 사다리형으로 명칭 변경				
'98년~'99년	변경사항 없음				
2000년	변형사다리형은 사다리형으로, 역사다리형은 역삼각형 토지로 봄				
2001년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인접도로방향으로 조사함. 다만,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 주				
	된 도로방향을 기준으로 조사				
2002년~2011년	변경사항 없음				
	사다리형은 변형사다리형, 다학형의 불규칙한 형상이나 그로 인하여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				
2016년~2016년	을 받는 토지로 정의함				
	부정형중 다각형의 정의 수정				
2017년~2018년		l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019년~2020년	변경사항 없음				
	형상 세부특성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이 우려되는 바, 삼각				
	형 및 역삼각형을 삭제하되, 사다리 부정형 자루형 정의를 다소 변경함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2021년	세로장방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다리꼴(변형사다리꼴 포함) 모양의 토지			
	부 정 형	불규칙한 형상 또는 삼각형 토지 중 최소외접직사각형 기준 1/3 이상의 면적손 실이 발생한 토지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겼거나 역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2022년~2025년 변경사항 없음					

라. 지형지세 : 방 위(18)

연 도	내용
20013	① 남향, 남동, 남서, 동향, 서향, 북향, 북동, 북서의 8방위로 기재
'89년	② 대지와 임야의 경우만 표시
	①,② 상동
'90년	③ 대지의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시함
	④ 임야의 경우는 경사방향으로 표시함
'91년	①,②,③,④ 상동
	① 표준지 평가보고서상의 8방위로 표시(결과는 같음)
'92년	② 상동
022	③ 대지의 경우는 진입로(대문)를 기준으로 표시
	④ 상동
'93년	① 방위는 표준지 평가보고서의 "지리적위치"표시 예와 같이 8방위로 표시한다.
	②,③,④ 상동
	①,② 상동
'94년	③ 대지의 경우는 진입로(대문) 또는 건물의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
	④ 상동
	① 상동
20 = 1 =	② 방위는 토지이용상황(토지용도)이 주거용, 임야의 경우에만 표시
'95년	③ 주거용은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한
	다.
 '96년	④ 상동 상동
 '97년	상동
	상동
'98년	[영향 [①, ②, ③ 상동
'99년	(선) 선) 성당 (④) 임야는 경사방향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인근 임야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주된 경사방향이라
ớ	고 판단되는 방위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2000년~2025년	포 한민과는 영위를 조사이어 기세한다. 변경사항 없음

마. 도로조건 : 도로접면(20)

연 도		내 용			
	① 도시계획구역과 비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			
	② 사도에 관한 도로구분이 있었음				
	③ 소로를 4m 이상 1	2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맹지에 관한 도로구	분이 없음			
		광로(폭 40m 이상)			
		대로(폭 25m 이상 — 40m 미만)			
	도시계획구역	중로(폭 12m 이상 — 25m 미만)			
'001 3	도시계획구역 	소로(폭 4m 이상 - 12m 미만)			
'89년		세로(폭 4m 미만)			
		사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비도시계획구역	지방도			
		군도			
		소로(폭 4m 이상)			
		농로(우마차, 경운기 이용정도의 도로)			
'90년	'89년과 동일				
	① 도로의 분류는 도로	일의 폭을 추정할 수 있는 도로차선을 기준으로 한다.(차선이 구분되지 않			
	은 경우는 도로폭에 따라 분류)				
	② 자전거전용도로나 버스전용 차선 등은 1차선으로 인정한다.				
	③ 건설공사중인 도로와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도 도로로 간주한다.				
	④ 종전,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				
	⑤ 맹지에 대한 도로구분 신설(현재와 정의가 다름)				
'91년	광 로 : 편도 6차선 이상(40m 이상)				
01 <u>L</u>	대 로 : 편도 3차선 이상 5차선 이하(25 — 40m 미만)				
	중 로 : 편도 2차선(12- 25m 미만)				
	소 로: 편도 1차선(6 — 12m 미만)				
	세 로 : 왕복 1차선 이하(6m 미만 도로 및 경운기 통과가 가능한 농로)				
	맹 지: 지적도상	접근로가 없는 토지, 경운기 통과가 불가능한 도로,			
	사도로만	접근 할 수 있는 토지			
-	고속국도 : 고속도로				

연 도	내용
'92년	① 현재와 같은 12개 도로구분으로 변경. 다만, 광대한면은 편도3차선 이상, 중로한면은 편도 2차선 이상이라는 도로폭 이외의 제한이 있음 ②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함 ③ 종전의 광로와 대로를 통합하여 25m 이상 도로를 광대로로 함 ④ 도로구분중 고속국도 삭제 ⑤ '91년의 맹지 개념을 "리어카나 경운기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로 변경 ⑥ 광대로 또는 중로, 소로한면에 접하는 토지가 세로(불)에도 접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광대로
'93년	한면, 중로한면, 소로한면으로 봄 ① 91년 ③항을 "건설공사중인 도로와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로 변경
'94년	'93년과 변경사항 없음
'95년	① '91년 ①항을 "도로의 분류는 도로의 폭(인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로 변경 ② '94년까지 도로분류를 도로폭 외에 편도 몇차선 이상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함. 따라서 '91년 ②항의 내용은 필요없게 되었음 ③ '94년 ①항을 "건설공사중인 도로는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 다"로 변경함. 따라서 지적고시된 계획도로는 도로로 간주하지 아니함
'96년	① '95년 ①항을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 부분은 제외한다"로 변경 ②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 기타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기재한다(신설). ③ '95년까지는 소로를 6m 이상 12m 미만의 도로로 보았으나 '96년부터는 8m 이상 12m 미만의 도로를 소로로 본다. ④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소로로 본다(신설).
'97년	①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를 보고 토지특성(도로)을 조사하여 기재한다(신설). ② 동일노선의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조사한다(신설).
'98년	변경사항 없음
'99년	변경사항 없음

연 도	내 용		
2000년	① '95년 ③항을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되는 도로와 건설공사 중인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간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도로로 보지 아니한다"로 변경② '92년부터 세로(불)과 맹지의 판단기준은 리어카나 경운기 통행 가능여부로 판단하여 왔으나, 2000년부터는 경운기의 통행 가능여부로만 판단함		
2001년	① 이면가로획지를 각지로 판단하는 조항 신설 ② 준각지 판단기준 조항 신설		
2002년	변경사항 없음		
2003년	도로접면의 판단기준중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2004년	도로접면의 판단기준중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표준지와 접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2005년~ 2011년	변경사항 없음		
2016년~ 2017년	맹지의 정의 수정		
2018년	보행자도로 조사기준 신설		
2019년~	W711=1 010		
2021년	변경사항 없음		
2022년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사업지의 경우 토지수용 및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지는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의 부여 시점과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착공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공사를 의미함)를 착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면상의 도 로를 기준으로 조사함		
2023년	변경사항 없음		
2024년	"도로접면을 판단함에 있어 주변의 도로접면 및 가격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변경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행정전산망 지역코	<u> </u>	259
-----------	----------	-----

Ⅷ.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11000	동 작 구	11590
 종 로 구	11110	관 약 구	11620
중 구	11140	서 초 구	11650
용 산 구	11170	강 남 구	11680
성 동 구	11200	송 파 구	11710
광 진 구	11215	강 동 구	11740
동대문구	11230	부산광역시	26000
중 랑 구	11260	중구	26110
성 북 구	11290	서 구	26140
강 북 구	11305	동 구	26170
도 봉 구	11320	영 도 구	26200
노 원 구	11350	부산진구	26230
은 평 구	11380	동 래 구	26260
서대문구	11410	남 구	26290
마 포 구	11440	북 구	26320
양 천 구	11470	해운대구	26350
강 서 구	11500	사 하 구	26380
구 로 구	11530	금 정 구	26410
금 천 구	11545	강 서 구	26440
영등포구	11560	연 제 구	2647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수 영 구	26500	광주광역시	29000
사 상 구	26530	동 구	29110
기 장 군	26710	서 구	29140
대구광역시	27000	남 구	29155
~ 중 구	27110	, 북 구	29170
동 구	27140	광 산 구	29200
서 구	27170	대전광역시	30000
남 구	27200	동 구	30110
북 구	27230	중 구	30140
수 성 구	27260	서 구	30170
달 서 구	27290	유 성 구	30200
달 성 군	27710	대 덕 구	30230
군 위 군	27720	울산광역시	31000
인천광역시	28000	중 구	31110
~ 중 구	28110	· 남 구	31140
동 구	28140	동 구	31170
미추홀구	28177	북 구	31200
연 수 구	28185	울 주 군	31710
남 동 구	28200	세종특별자치시	36110
부 평 구	28237	경 기 도	41000
계 양 구	28245	수원장안구	41111
서 구	28260	수원권선구	41113
강 화 군	28710	수원팔달구	41115
옹 진 군	28720	수원영통구	41117

지 역	코 드	지 역	코드
성남수정구	41131	의 왕 시	41430
성남중원구	41133	하 남 시	41450
성남분당구	41135	용인처인구	41461
의정부시	41150	용인기흥구	41463
안양만안구	41171	용인수지구	41465
안양동안구	41173	파 주 시	41480
부천원미구	41192	이 천 시	41500
부천소사구	41194	안 성 시	41550
부천오정구	41196	김 포 시	41570
광 명 시	41210	화 성 시	41590
평 택 시	41220	광 주 시	41610
동두천시	41250	양 주 시	41630
안산시 상록구	41271	포 천 시	41650
안산시 단원구	41273	여 주 시	41670
고양덕양구	41281	연 천 군	41800
고양일산동구	41285	가 평 군	41820
고양일산서구	41287	양 평 군	41830
과 천 시	41290	충청북도	43000
구 리 시	41310	청주상당구	43111
남양주시	41360	청주서원구	43112
오 산 시	41370	청주흥덕구	43113
시 흥 시	41390	청주청원구	43114
군 포 시	41410	충 주 시	4313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제 천 시	43150	홍 성 군	44800
보은 군	43720	예 산 군	44810
옥 천 군	43730	태 안 군	44825
영 동 군	43740	전라남도	46000
증 평 군	43745	목 포 시	46110
진 천 군	43750	여 수 시	46130
괴 산 군	43760	순 천 시	46150
음 성 군	43770	나 주 시	46170
단 양 군	43800	광 양 시	46230
충청남도	44000	담 양 군	46710
천안동남구	44131	곡 성 군	46720
천안서북구	44133	구 례 군	46730
공 주 시	44150	고 흥 군	46770
보 령 시	44180	보 성 군	46780
아 산 시	44200	화 순 군	46790
서 산 시	44210	장 흥 군	46800
논 산 시	44230	강 진 군	46810
계 룡 시	44250	해 남 군	46820
당 진 시	44270	영 암 군	46830
금 산 군	44710	무 안 군	46840
부 여 군	44760	함 평 군	46860
서 천 군	44770	영 광 군	46870
청 양 군	44790	장 성 군	4688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완 도 군	46890	예 천 군	47900
진 도 군	46900	봉 화 군	47920
신 안 군	46910	울 진 군	47930
 경상북도	47000	울 릉 군	47940
포항남구	47111	경상남도	48000
포항북구	47113	창원의창구	48121
경 주 시	47130	창원성산구	48123
김 천 시	47150	창원마산합포구	48125
안 동 시	47170	창원마산회원구	48127
구 미 시	47190	창원진해구	48129
영 주 시	47210	진 주 시	48170
영 천 시	47230	통 영 시	48220
상 주 시	47250	사 천 시	48240
문 경 시	47280	김 해 시	48250
경 산 시	47290	밀 양 시	48270
의 성 군	47730	거 제 시	48310
청 송 군	47750	양 산 시	48330
영 양 군	47760	의 령 군	48720
영 덕 군	47770	함 안 군	48730
청 도 군	47820	창 녕 군	48740
고 령 군	47830	고 성 군	48820
성 주 군	47840	남 해 군	48840
칠 곡 군	47850	하 동 군	48850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산 청 군	48860	화 천 군	51790
함 양 군	48870	양 구 군	51800
거 창 군	48880	인 제 군	51810
합 천 군	48890	고 성 군	51820
제주특별자치도	50000	양 양 군	51830
제 주 시	50110	전북특별자치도	52000
서귀포시	50130	전주완산구	52111
강원특별자치도	51000	 전주덕진구	52113
춘 천 시	51110	군 산 시	52130
원 주 시	51130	익 산 시	52140
강 릉 시	51150	정 읍 시	52180
동 해 시	51170	남 원 시	52190
태 백 시	51190	김 제 시	52210
속 초 시	51210	완 주 군	52710
삼 척 시	51230	진 안 군	52720
홍 천 군	51720	무 주 군	52730
횡 성 군	51730	장 수 군	52740
영 월 군	51750	임실군	52750
평 창 군	51760	순 창 군	52770
정 선 군	51770	고 창 군	52790
철 원 군	51780	부 안 군	52800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2024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2024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 267

2024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전국 580,000필지)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 수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 수
	종로구	2,082		서초구	1,395
	중구	1,646	서울(25)	강남구	1,350
	용산구	1,220] 시출(<i>2</i> 0)	송파구	1,076
	성동구	942		강동구	1,025
	광진구	1,075	_	중구	954
	동대문구	1,378		서구	1,145
	중랑구	1,137		동구	1,363
	성북구	1,957		영도구	1,137
	강북구	1,299	부산(16)	부산진구	2,120
	도봉구	784		동래구	1,100
서울(25)	노원구	787		남구	1,173
	은평구	1,438		북구	845
	서대문구	1,365		해운대구	1,283
	마포구	1,345		사하구	1,200
	양천구	777		금정구	1,332
	강서구	1,306		강서구	1,837
	구로구	1,124		연제구	804
	금천구	751		수영구	694
	영등포구	1,248		사상구	853
	동작구	1,199		기장군	1,840
	관악구	1,338	대구(9)	중구	1,417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동구	2,664		서구	1,558
	서구	1,268	대전(5)	유성구	1,550
	남구	1,002		대덕구	1,104
ΓU¬(Λ)	북구	1,825		중구	1,293
대구(9)	수성구	1,531		남구	1,660
	달서구	1,488	울산(5)	동구	703
	달성군	3,052		북구	1,442
	군위군	2,552		울주군	4,417
	중구	1,552	세종(1)	세종시	2,718
	동구	562		수원장안구	747
	미추홀구	1,712		수원권선구	890
	연수구	482		수원팔달구	774
인천(10)	남동구	1,251		 수원영통구	360
	부평구	1,322		성남수정구	1,060
	계양구	728		성남중원구	719
	서구	1,415		성남분당구	679
	강화군	2,939	경기(44)		
	옹진군	1,107	8, ((11)	의정부시	1,238
	동구	1,481		안양만안구	696
	서구	1,268		안양동안구	446
광주(5)	남구	1,391		부천원미구	635
	북구	2,559		부천소사구	417
	광산구	2,864		부천오정구	471
대전(5)	동구	1,878		광명시	828
41 C(0)	중구	1,602		평택시	5,068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동두천시	1,035		여주시	2,952
	안산상록구	908	경기(44)	연천군	2,093
	안산단원구	1,003		가평군	2,521
	고양덕양구	1,562		양평군	3,815
	고양일산동구	703		청주상당구	2,242
	고양일산서구	496		청주서원구	1,331
	과천시	277		청주흥덕구	1,843
	구리시	512		청주청원구	1,813
	남양주시	3,062		충주시	4,180
	오산시	693		제천시	3,092
	시흥시	1,415	,415 558 527 942	보은군	2,254
	군포시	558		옥천군	2,633
경기(44)	의왕시	527		영동군	2,997
	하남시	942		증평군	743
	용인처인구	2,949		진천군	1,892
	용인기흥구	716		괴산군	2,463
	용인수지구	420		음성군	2,688
	파주시	3,932		단양군	1,956
	이천시	3,201		천안동남구	2,518
	안성시	3,524		천안서북구	1,801
	김포시	2,332		공주시	4,065
	화성시	5,594	충남(16)	보령시	3,622
	광주시	2,614		아산시	4,135
	양주시	2,300		서산시	4,285
	포천시	3,543		논산시	3,806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계룡시	344		목포시	1,767
	당진시	4,005		여수시	5,301
	금산군	2,684		순천시	5,643
	부여군	3,136		나주시	4,660
충남(16)	서천군	2,621		광양시	3,267
중남(16)	청양군	2,023		담양군	2,661
	홍성군	3,253		곡성군	2,572
	예산군	2,901		구례군	1,959
	태안군	2,952		고흥군	4,640
	전주완산구	1,909	,916 ,755 ,222 ,875 ,052	보성군	3,545
	전주덕진구	1,916		화순군	3,672
	군산시	3,755		장흥군	3,144
	익산시	5,222		강진군	2,511
	정읍시	4,875		해남군	4,668
	남원시	4,052		영암군	3,439
	김제시	3,972		무안군	3,206
전북(15)	완주군	3,227		함평군	2,564
	진안군	2,669		영광군	2,962
	무주군	2,228		장성군	2,861
	장수군	2,194		완도군	3,084
	임실군	2,674		진도군	2,438
	순창군	2,114		신안군	3,637
	고창군	3,650	경북(23)	포항남구	3,183
	부안군	3,341	で <u>す(40)</u> 	포항북구	3,892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시·도	시·군·구	'24 표준지수
	경주시	7,078		양산시	2,786
	김천시	5,075		의령군	2,639
	안동시	5,546		함안군	3,097
	구미시	3,522		창녕군	3,280
	영주시	3,070		고성군	3,619
	영천시	4,571	경남(22)	남해군	3,151
	상주시	5,025		하동군	3,856
	문경시	3,136		산청군	2,809
	경산시	3,001		함양군	2,822
	의성군	4,057		거창군	3,651
	청송군	2,097		합천군	4,299
경북(23)	영양군	1,805	TUX (0)	제주시	6,799
	영덕군	2,627	제주(2)	서귀포시	4,884
	청도군	3,496		춘천시	3,626
	고령군	1,988		원주시	3,586
	성주군	2,815		강릉시	3,755
	칠곡군	2,489		동해시	1,261
	예천군	2,899		태백시	803
	봉화군	2,333		속초시	991
	울진군	2,754		삼척시	2,591
	울릉군	407		홍천군	2,918
	창원의창구	2,018	7101(10)	횡성군	2,315
	창원성산구	665	강원(18)	영월군	2,239
	창원마산합포구	3,022		평창군	2,461
	창원마산회원구	1,293		정선군	2,173
	창원진해구	1,433		철원군	2,146
	진주시	5,786		화천군	1,129
경남(22)	통영시	3,093		양구군	1,232
G (22)	사천시	4,006		인제군	1,532
	김해시	4,297		고성군	1,547
	밀양시	4,799		양양군	1,823
	거제시	3,317			

^{*} 2025년 표준지 수는 $\Lambda\cdot$ 군·구별 표준지 수 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부록-

X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3, '24, '25)

I.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지	· 현황 ······	275
〉 특수투지 공시지가 조사·평	가 담당자 현황	293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 ('23, '24, '25)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u>.</u>	B.Z	<u> </u>	A:	조	B2	<u> </u>	A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서울	종로구	경일	노재수	대한	이상협	경일	노재수	대한	이상협	대일	김정석	대한	이상협
		사무소	홍진화	미래씨한	이계심	하나	이영은	삼창	이석희	신진	강현구	삼창	이석희
		제일	김겸	대화	김도윤	제일	김겸	대화	김도윤	제일	김겸	대화	김도윤
	중구	통일	최현섭	매새한	양재영	통일	최현섭	미래새한	양재영	국토	곽동은	미래새한	양재영
		대화	김경훈	태평양	최혜민	대화	김경훈	동인	김형규	대화	김경훈	동인	김형규
		가람	박병우	나라	김정혜	가람	박병우	나라	김정혜	가람	박병우	대화	김종목
	용산구	제일	안영	미래새한	정채선	대화	송종용	미래새한	정채선	대화	송종용	삼창	조혜미
		프라임	정은경	가온	권종춘	하나	최원준	가온	권종춘	하나	최원준	가온	권종춘
	성동구	제일	김철홍	신진	이영훈	제일	김철홍	신진	이대주	제일	김철홍	나라	박정훈
	광진구	경일	백은경	공감	김진명	경일	백은경	공감	김진명	경일	백은경	공감	김진명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중앙	이승열	사무소	최연순
	동대문구	매싸한	정인국	하나	노정현	미래새한	정인국	하나		미래새한	정인국	머니플러스	한지현
		가람	조윤수	가온	김만진	가람	조윤수	가온	김만진	가람	조윤수	통일	김동욱
	중랑구	대한	김정환	사무소	송충섭	대한	서현아	사무소	송충섭	대한	서현아	사무소	송충섭
		대화	조기군	대한	서현아	대화	조기군	대한	김정환	국토	이계심	대한	김정환
	성북구	가람	이태관	사무소	윤성희	중앙	박준채	사무소	윤성희	중앙	박준채	사무소	윤성희
		나라	박진아	태평양	신민우	나라	박진아	태평양	신민우	가람	나은주	통일	윤성현
						써브	이종문	가람	이지수	써브	이종문	가람	이지수
	강 북구	삼일	이이노	태평양	김윤지	삼일	이이노	태평양	김윤지	삼일	이이노	태평양	김윤지
		정일	강호철	삼창	이정훈	씨비알이 현		삼창		씨비알이 현		경일	강흔태
-	도봉구	태평양	임수연	가람	이지수	태평양	임수연	가람	양한승	태평양	임수연	가람	양한승
-	노원구	가온	최용희	사무소	김재화	가온	최용희	사무소	김재화		최용희	사무소	김재화
	은평구	가람	이경훈	사무소	박홍기	가람	이경훈	사무소	박홍기	태평양	신민우	사무소	박홍기
-		대화	김종목	하나	강보미	삼창	정재엽	하나	강보미	경일	배지용	하나	강보미
	서대문구	사무소	황순창	통일	문성우	사무소	강선호	통일	문성우	사무소	강선호	통일	문성우
-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대한	유종근	대화	이영은
	마포구	통일	윤영수	대한	이근호	통일	윤영수	대한	이근호	통일	윤영수	대한	이근호
-	OFFLIT	명문	신순숙	제일	허인영	명문	신순숙	제일	허인영	명문	신순숙	제일	유창혁
-	양천구	하나	김은	나라	정유진	하나	김은	나라	정유진	태평양	이지은	중앙	정철현
	강서구	중앙	손상혁	태백	김우현	중앙 대일	손상혁 서이삭	에이원	이윤호	경일 사차	신웅수	에이원	이윤호
-	727	대일	서이삭 이헌범	가온	이상진 권대용	내일 감동	시이삭 이헌범	가온	이상진 권대용	삼창 사무소	이상윤 김준영	가온 중앙	이상진 권대용
	구로구	감동 사차	이언임 김상호	중앙 나라		김동 삼창		중앙 나라	전네공 원효식	자구소 중앙	김준영 임성우	중앙 나라	권내용 원효식
+	 금천구	삼창 사차			원효식		김상호 천은영			가람		다다 태백	<u></u> 전요식 전현호
	금신구	삼창	김지윤	매싸한	이용현	더밸류	신순성	태평양	최웅락	/김	전지윤	대백	인언오

		2023년					20	24년		2025년			
시.도	시.군.구	A2	5	BZ	<u> </u>	A:	 조	BZ	<u> </u>	A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서울	영등포구	리얼티뱅크	금선영	하나	김정주	리얼티뱅크	금선영	대한	박동훈	리얼티뱅크	금선영	대한	박동훈
		삼일	최미경	대한	고병균	미래새한	김정언	대화	조성국	미래새한	김정언	대화	조성국
Ī	동작구	가온	이희수	정일	오창윤	가온	이희수	정일	오창윤	가온	이희수	정일	오창윤
		정원	신백호	삼창	이경선	정원	서윤선	미래새한	손지형	정원	서윤선	미래새한	손지형
Ī	관악구	중앙	고나연	태평양	최진혁	중앙	고나연	미래새한	유장근	중앙	고나연	미래새한	유장근
		가온	배태훈	대한	김종현	가온	배태훈	대한	김종현	가온	배태훈	대한	김종현
	서초구	대한	권현영	가람	유미리	태평양	류인혜	가람	유미리	태평양	류인혜	중앙	이동원
		대일	김희진	가온	김동기	나라	이상주	가온	김동기	제일	오윤숙	가온	김동기
	강남구	나라	박일훈	대상	김금주	나라	박일훈	대상	김금주	미래새한	김응철	대상	김금주
		대화	김예린	제일	김영순	대화	김예린	제일	김영순	가람	유재성	제일	김영순
	송파구	하나	최정곤	매새한	이용삼	하나	최정곤	미래새한	이용삼	하나	최정곤	미래새한	김용걸
		가온	이동수	대일	이성원	대일	권정희	경일	오영찬	대일	권정희	경일	오영찬
	강동구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대일	이찬미	삼창	유정욱
		가람	한창수	에이원	최상훈	가람	한창수	태백	김보성	가람	한창수	태백	김보성
부산	중구	대일	안승길	하나	정성원	대일	안승길	명문	노호원	대일	안승길	명문	노호원
	서구	가온	전태일	가람	신명호	가온	전태일	가람	신명호	써브	전태일	가람	신명호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사무소	류상훈	가람	박숙경
	동구	대화	한기섭	하나	안영준	나라	장제원	태평양	이대현	나라	장제원	경일	윤서현
		가온	김태민	경일	최병철	가온	김태민	신한	김종규	대일	하성호	하나	안영준
	영도구	삼창	추우성	대화	송지근	삼창	추우성	대일	김종민	삼창	추우성	대일	김종민
		경일	박윤탁	가온	김영진	대한	손규원	미래새한	배은빈	대한	손규원	미래새한	배은빈
	부산진구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대일	황선용	중앙	조재완
		프라임	이인호	대화	한동욱	프라임	이인호	대화	한동욱	사무소	박상현	대화	한동욱
		사무소	이주영	대일	하성호	에이원	신채익	대일	하성호	에이원	신채익	나라	손기석
	동래구	대한	손규원	나라	서호근	대한	이민지	나라	서호근	대한	이민지	경일	정동희
		미래새한	구기옥	태평양	김현진	미래새한	구기옥	태평양	김현진	하나	이연성	태평양	김현진
	남구	대화	정경운	나라	손기석	대화	정경운	하나	손준영	대화	정경운	경일	이세호
		사무소	서찬교	대일	김용현	통일	서찬교	대일	김용현	통일	서찬교	대일	김용현
	북구	대일	김종민	삼창	정우영	대화	조재석	삼창	정우영	대화	조재석	나라	김녹현
	해운대구	가온	김재욱	에이원	김경도	미래새한		에이원	김경도	미래새한	전종문	에이원	김경도
		경일	황민선	삼일	나기영	나라	윤성근	삼일	노영재		윤성근	삼일	노영재
	사하구	대한	박찬용	삼일	신종현	가온	김영진	삼일	신종현	가온	김영진	삼일	신종현
		중앙	소영수	하나	송민수	중앙	소영수	하나	송민수	제일	임재길	하나	송민수
	금정구	나라	김규식	대한	최태윤	나라	김규식	대한	최태윤	나라	김진호	대한	최태윤
ļ		대한	현태승	사무소	이동진	대한	현태승	사무소	이동진	대한	현태승	사무소	이동진
	강서구	제일	조창호	삼창	정화생	제일	조창호	삼창	정화생	제일	조창호	삼창	정화생
		삼창	천주명	제일	김문주	삼창	천주명	제일	김문주	삼창	천주명	제일	김문주
	연제구	경일	윤서현	대화	황수진	가온	정승훈	대일	성문기	가온	정승훈	대일	성문기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Z	조	B∡	5	A:	조	B조	<u>:</u>	А	조	B2	<u> </u>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부산	수영구	하나	최영호	삼일	이언종	하나	최영호	삼일	이언종	프라임	김경주	삼일	이언종
	사상구	마ル한	민광선	중앙	전용우	삼성	신성호	중앙	전용우	미래새한	신나경	경일	박윤탁
İ	기장군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제일	이상근	사무소	유소희
		가람	이용훈	동인	임준표	가람	이용훈	동인	임준표	가람	이용훈	동인	임준표
대구	중구	대한	권창현	경일	이준석	대한	권창현	경일	이준석	대한	권창현	금호	박진영
		마래사한	김영철	명문	최윤도	미래새한	김영철	명문	최윤도	하나	여정상	명문	최윤도
	동구	나라	길민수	대한	이영수	나라	길민수	대한	이영수	나라	길민수	경일	권대동
		대일	조재익	제일	차영문	나라	김기석	제일	차영문	나라	김기석	제일	차영문
		중앙	최귀자	사무소	이창한	중앙	최귀자	대일	채지혜	중앙	최귀자	대일	채지혜
	서구	태평양	박두양	가온	김봉식	태평양	박두양	가온	김봉식	태평양	박두양	삼창	이현우
		대화	김근태	제일	황희	세종	이대하	제일	황희	경일	서효진	제일	황희
	남구	에이원	현영대	미래새한	최국진	대일	조재익	미래새한	최국진	대한	신효정	중앙	하상준
	북구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프라임	조혜인	가온	정재웅
		나라	정대근	미래사한	두휘규	나라	정대근	미래새한	두휘규	나라	정대근	미래새한	두휘규
	수성구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대일	이종수	대화	박진욱
		가람	박규창	대일	채지혜	가람	조현필	제일	김현태	가람	조현필	제일	김현태
	달서구	대한	박정태	정일	강병준	대화	박준우	대한	강병준	대화	박준우	대한	강병준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대일	이은영	통일	김민정
	달성군	제일	현찬호	가람	장혁수	제일	현찬호	가람	장혁수	가온	홍성준	가람	장혁수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삼창	이상규	하나	신윤섭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나라	신동완	경일	정대한
	군위군	나라	정진욱	제일	정욱진	나라	정진욱	하나	심진수	나라	정진욱	미래새한	정한용
		가람	최성범	삼창	김각수	대화	박한동	사무소	변득규	나라	정한석	사무소	변득규
		대일	김외석	나무	이규호	대일	김외석	세종	장용준	대일	김외석	써브	배금용
인천	중구	하나	안미나	정원	임의순	하나	안미나	정원	임의순	하나	안미나	정원	임의순
		제일	김범종	가온	정용석	정일	이희철	미래새한	박창서	정일	이희철	태평양	김동건
	동구	태평양	김종현	나라	정성규	태평양	김종현	나라	정성규	태평양	김종현	나라	정성규
	미추홀구	가람	윤운근	하나	안희성	가람	윤운근	가온	한원호	신원	이정섭	가온	한원호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사무소	나유식	삼창	민경춘	감동	유광석	삼창	민경춘	감동	유광석	삼창	민경춘
	연수구	제일	서은철	통일	이인수	티앤비	김완희	미래새한	최인욱	티앤비	김완희	대한	전규성
	남동구	대화	원강희	중앙	김연지	가온	강철	중앙	김연지	가온	강철	중앙	김연지
		대한	김현식	티앤비	임지현	대한	김현식	우솔	문서영	하나	박찬영	우솔	문서영
	부평구	대일	박창서	경일	손규희	태평양	신균	경일	손규희	태평양	신균	경일	손규희
		사무소	하종욱	대화	곽승공	사무소	하종욱	대일	황용택	사무소	하종욱	대일	황용택
	계양구	명문	김응섭	가온	조재정	명문	김서진	대화	장철호	명문	김서진	대화	장철호
	서구	대화	배해경	퍼스트	김현수	하나	유동연	퍼스트	김현수	하나	유동연	퍼스트	김현수
		동인	한진희	제일	이창호	동인	한진희	제일	이창호	동인	한진희	제일	이창호

		20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BZ	<u> </u>	A.		BZ	<u> </u>	A.		B2	5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인천	 강화군	경일	오형엽	 삼창	이상윤	경일	오형엽	삼창	이상윤	가온	주정훈	리얼티뱅크	조민호
		미래사한	안연수	중앙	한준영	가람	김문석	중앙	한준영	가람	김문석	중앙	한준영
		대한	구성환	프라임	박문수	대한	구성환	프라임	박문수	대일	문덕수	프라임	박문수
	옹진군	제일	노승환	공감	조규장	제일	노승환	공감	여지훈	제일	노승환	공감	김문성
광주	동구	사무소	김병복	대화	송정선	사무소	김병복	대화	송정선	나라	최성묵	대화	송정선
		경일	김동수	가온	성재현	경일	김동수	가온	성재현	경일	김동수	가온	성재현
	서구	나라	양성현	태평양	박진택	나라	양성현	삼창	김소희	가람	정다운	삼창	김소희
		가온	안만순	경일	양효진	가온	홍진석	경일	양효진	가온	홍진석	경일	양효진
	남구	나라	홍윤민	태평양	김진환	나라	홍윤민	태평양	김진환	나라	홍윤민	태평양	박진택
		대일	전상민	프라임	조용기	대일	전상민	프라임	조용기	대일	전상민	프라임	조용기
	북구	미래사한	정재원	중앙	윤영천	미래새한	정재원	중앙	윤영천	미래새한	정재원	중앙	윤영천
		퍼스트	김명원	경일	정만대	삼창	복지수	경일	정만대	삼창	복지수	경일	강진권
		제일	최명근	하나	이광호	제일	최명근	하나	이광호	태평양	권혁돈	하나	이광호
	광산구	대화	조국형	가온	박성인	대화	조국형	가온	박성인	대화	조국형	가온	박성인
		태평양	김세환	중앙	김현진	태평양	김세환	세종	류중현	삼창	김상덕	세종	류중현
		매싸한	김동준	명문	신재홍	미래새한	김동준	대상	김미	중앙	이미지	가람	서승재
대전	동구	사무소	이명진	중앙	안경환	사무소	이명진	통일	유창복	사무소	이명진	미래새한	최재헌
		대일	이은영	나라	조정현	대일	이은영	나라	조정현	대일	이은영	나라	조정현
	중구	사무소	조은철	중앙	이상은	사무소	조은철	미래새한	김문기	나라	임종길	미래새한	김문기
		프라임	신동준	미래씨한	최재헌	프라임	신동준	대화	김하림	프라임	신동준	대화	김하림
	서구	매싸한	이응기	대한	김태환	써브	김태형	대한	김태환	써브	김태형	대한	김태환
		대일	김종래	삼일	이석환	중앙	오춘환	삼일	이석환	중앙	오춘환	삼일	이석환
	유성구	하나	이상식	가람	문홍기	하나	이상식	가람	문홍기	하나	이상식	사무소	구본춘
		삼일	이기영	하나	김주현	삼일	이기영	하나	김주현	삼일	이기영	하나	김주현
	대덕구	가람	송좌헌	통일	윤영배	가람	송좌헌	통일	윤영배	가람	송좌헌	통일	윤영배
울산	중구	통일	송영주	프라임	박인석	대일	송영주	프라임	박인석	대일	송영주	프라임	박인석
		삼창	김명희	태평양	이재원	나라	문슬	태평양	이재원	나라	문슬	가온	류희순
	남구	대한	심용찬	삼창	정순영	대한	심용찬	삼창	정순영	대한	심용찬	삼창	정순영
		태평양	김영기	삼창	권희진	태평양	김영기	삼창	권희진	태평양	김영기	리얼티뱅크	박홍규
	동구	매새한	박형문	경일		미래새한	박형문	경일		미래새한	박형문	경일	이선
	북구	대한	채영석	하나	김효권	대한	채영석	하나	김효권	대한	채영석	가람	김병수
		리얼티뱅크	박홍규	태평양	이수언	해민	이창우	태평양	이수언	삼창	권희진	태평양	이수언
	울주군	삼창	최동림	대화	신명진	삼창	최동림	정일	하우명	삼창	최동림	정일	하우명
		에이원	성백준	대한	문의선	대화	문의선	가온	성백준	대화	문의선	가온	성백준
		매싸한	우상욱	중앙	최선웅	미래새한		중앙		미래새한		중앙	최선웅
		태평양	김태의	미래새한	김성진	태평양	김태의	미래새한	김성진	태평양	김태의	미래새한	김성진
		대화	이려건	하나	오광택	대화	이려건	하나	오광택	대화	이려건	하나	오광택
세종	세종	대일	허성범	이화	김소영	대일	허성범	이화	김소영	대일	허성범	이화	김소영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Z	조	B2	<u> </u>	A	조	B₫	<u> </u>	Α	 조	B	<u> </u>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세종	 세종	삼창	이상훈	경일	김용운	삼창	이상훈	동인	김용운	 삼창	이상훈	동인	김용운
		사무소	박창준	제일	박성현	사무소	박창준	제일	박성현	사무소	박창준	제일	박성현
경기	수원장안구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효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효	제일	권주혁	감동	전갑효
	수원권선구	가람	곽재혁	경일	이기승	사무소	박성은	경일	이기승	사무소	박성은	경일	이기승
	수원팔달구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하	이경원	태평양	김범섭
	수원영통구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통일	박순민	가람	김선진	하	이경원	태평양	김범섭
	성남수정구	하나	이지훈	삼창	양진규	가람	김주용	나라	정서헌	가람	김주용	나라	정서헌
	성남중원구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나라	김언수	비결	박민호
	성남분당구	정원	이효춘	하나	배상섭	정원	이효춘	하나	배상섭	정원	이효춘	하나	배상섭
	의정부시	가온	조성식	제일	윤동훈	가온	조성식	대일	최승구	가온	조성식	대일	최승구
		경일	고은경	감동	김화주	경일	고은경	감동	김화주	경일	고은경	사무소	오현식
	안양만안구	삼일	송연경	사무소	김현철	삼일	송연경	사무소	김현철	가람	위창수	사무소	김현철
	안양동안구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써브	이해찬	가온	박영기
	부천원미구	대화	성현영	가람	오재숙	대화	성현영	가람	오재숙	대화	김성진	가람	오재숙
	부천소사구	하나	김도현	사무소	김수경	하나	김도현	사무소	김수경	중앙	강돈혁	사무소	김수경
	부천오정구									통일	최현섭	신한	김정훈
	광명시	대화	남시현	대한	박민중	대화	남시현	대한	박민중	사무소	홍성락	대한	박민중
	평택시	가온	주정훈	통일	김용성	가온	주정훈	통일	김용성	미래새한	정채선	프라임	박민성
		가온	류별희	신원	강상득	가온	류별희	중앙	최락필	태백	곽상학	중앙	최락필
		태양	김지혜	삼창	김동진	태양	김지혜	삼창	김동진	태양	김지혜	삼창	김동진
		나라	최준석	가온	최미화	나라	최준석	가온	최미화	나라	최준석	가온	최미화
		삼창	최영미	사무소	정기인	신원	강상득	사무소	정기인	신원	강상득	사무소	정기인
		중앙	김정민	사무소	전제니	중앙	김정민	사무소	전제니	중앙	김정민	사무소	전제니
	동두천시	나라	두원	명문	김승철	나라	두원	명문	김승철	가온	임현민	명문	김승철
	안산상록구	나라	김완욱	사무소	이석규	대화	박필희	사무소	이석규	하나	이민복	사무소	이석규
	안산단원구	대화	전진우	대일	임수민	써브	우종현	대일	임수민	사무소	류성우	대일	임수민
	고양덕양구	매싸한	정윤재	대일	빈수창	미래새한		대일	빈수창	미래새한	0	대한	박기창
		중앙	김득중	해민	이준택	써브	최용석	통일	서성준	쌨	최용석	통일	서성준
	고양일산동구	대화	채승훈	태평양	박희배	대화	채승훈	태평양	박희배	대화	채승훈	삼창	서은아
	고양일산서구	나라	정현우	대상	박준혁	나라	정현우	대상	박준혁	나라	정현우	대상	박준혁
	과천시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정일	이혜란	하나	박찬영	쌨	이해찬	가온	박영기
	구리시	제일	박재우	경일	구본승	중앙	신동현	써브	구본승	대화	남시현	다우에셋	김현욱
	남양주시	하나	전현구	사무소	이동원	하나	전현구	사무소	이동원	태평양	이정은	사무소	이동원
		대교	이현주	삼창	서은아	해민	이현주	미래새한	김성철	감동	이현주	경일	이현종
		대신	강우람	미새한	전윤호	호암	강우람	대화	황인석	대교	김은별	대화	황인석
		제일	신요환	모두	김원혁	제일	황기석	삼성	김상철	제일	황기석	대교	손봉국
	오산시	통일	이해승	태백	엄성길	통일	이해승	태백	엄성길	통일	쇎이	사무소	김종욱
	시흥시	나라	김은지	사무소	안영미	나라	김은지	우솔	박해득	갸온	김만진	우솔	박해득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u>v</u>	B2	<u> </u>	A:	<u>.</u>	B2	<u> </u>	A	 조	B2	<u>S</u>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기	시흥시	삼창	오성호	나무	양해진	삼창	오성호	리얼티뱅크	천영석	삼창	오성호	리얼티뱅크	천영석
Ī	군포시	에이원	곽상학	경일	정우진	태백	곽상학	삼일	최미경	정일	서민석	기람	윤종헌
	의왕시	중앙	박용호	리얼티뱅크	정문조	미래새한	박재범	리얼티뱅크	정문조	미래새한	박재범	리얼티뱅크	정문조
Ī	하남시	대일	양현곤	제일	이남빈	대화	원강희	나무	설재경	대화	원강희	사무소	강윤철
Ī	용인처인구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대일	남재근	정일	김광현
		삼창	정재엽	사무소	김경희	가온	김영기	사무소	김경희	가온	김영기	사무소	김경희
		삼창	주송하	현산	전진후	대화	윤종필	현산	전진후	대화	운종 필	현산	전진후
	용인기흥구	중앙	이호영	삼일	이선영	태백	손민수	삼일	이선영	태백	손민수	삼일	송연경
[용인수지구	중앙	이호영	삼일	이선영	하나	이우영	더밸류	장세은	하나	이우영	더밸류	장세은
	파주시	마래새한	조재항	통일	이광수	미래새한	조재항	중앙	김성규	미래새한	조재항	호암	오경수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삼창	고명재	태평양	이석진
		대화	박중현	프라임	이영창	대화	박중현	프라임	이영창	가온	김재윤	프라임	이영창
		신한	한인호	삼일	지원배	신한	한인호	삼일	지원배	신한	한인호	나라	박용관
	이천시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대일	정동찬	사무소	최장인
		대일	김종훈	동인	이재구	경일	사경선	동인	이재구	경일	사경선	동인	아재구
		삼일	김종진	에이원	유원돈	삼일	김종진	에이원	유원돈	삼일	김종진	에이원	유원돈
	안성시	마래새한	정산호	퍼스트	남경진	미래새한	정산호	퍼스트	남경진	가온	심재영	퍼스트	남경진
		제일	조준묵	이화	전갑중	제일	조준묵	이화	전갑중	통일	김현우	건일	이수진
		삼일	유광애	공감	이성흠	삼일	유광애	공감	이성흠	대한	송창석	공감	이성흠
						대한	안명찬	대일	이봉재	대한	안명찬	태평양	안창모
	김포시	대한	이정호	가온	서주원	대한	이정호	미래새한	김준구	대한	이정호	미래새한	김준구
		효산	박종경	나라	장현귀	효산	박종경	삼창	조진협	효산	박종경	나라	이희건
		태평양	최민석	사무소	송익현	대화	배해경	사무소	송익현	대화	배해경	사무소	송익현
	화성시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흥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흥	제일	김관창	프라임	김철흥
		삼창	심성우	하나	김해선	삼창	심성우	가온	소민섭	삼창	심성우	갸온	소민섭
		정일	박찬우	제일	김정훈	정일	박찬우	제일	김정훈	정일	박찬우	제일	김정훈
		통일	이정화	삼일	정신근	에이원	장세재	삼일	정신근	이화	안건태	삼일	권상덕
		대화	정원정	명문	김태훈	대화	정원정	명문	김태훈	대화	정원정	명문	김태훈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삼창	최영만	사무소	고윤정
	광주시	경일	정동희	사무소	김일욱	중앙	이호영	사무소	김일욱	중앙	이호영	사무소	김일욱
		통일	신현상		주병석	다우에셋	장태수	미래새한	주병석	메니플러 스	도시현	미래새한	주병석
		가온	강철	태백	황광연	사무소	박덕용	삼창	임종민	프래임	김동현	삼창	임종민
	양주시	사무소	전선호	대화	장호근	정원	장수선	대화	장호근	써브	황선구	중앙	윤재선
		중앙	최종천	프라임	김미래	미래새한	박영창	프라임	김미래	하나	서상업	프라임	김미래
						나라	박찬수	사무소	전선호	나라	박찬수	사무소	전선호
	포천시	제일	오승신	대일	박한진	제일	오승신	대일	박한진	대한	표충식	대일	박한진
		대한	박병준	유앤아이	조채윤	하나	김영준	유앤아이	조채윤	하나	김영준	유앤아이	조채윤

		2023년					20	24년		2025년			
시.도	시.군.구	A2	<u> </u>	B₫	<u> </u>	A.	조	BZ	<u> </u>	A.	<u></u>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기	포천시	삼창	최희정	사무소	윤지현	대화	홍창연	사무소	윤지현	대화	홍창연	사무소	윤지현
	여주시	통일	김현우	정일	박석필	통일	김현우	사무소	장대희	대한	이재호	사무소	장대희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중앙	최재영	예일	최은영
		삼일	신지훈	대일	신성원	삼일	신지훈	대일	신성원	삼일	신지훈	대일	신성원
	연천군	태평양	홍성철	태백	이승철	삼일	소순필	대교	이승철	삼일	소순필	대교	이승철
		경일	문용철	리얼티뱅크	엄정효	경일	문용철	리얼티뱅크	엄정효	경일	문용철	리얼티뱅크	엄정효
						중앙	임채성	제일	장승언	미래새한	이광수	제일	장승언
	가평군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사무소	김재유	대화	김정렬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제일	이기종	가온	김소림
	양평군	대화	이재호	에이원	최길웅	대일	양현곤	에이원	최길웅	대일	양현곤	에이원	최길웅
		가람	강동우	대한	도기달	가람	강동우	대한	도기달	가람	강동우	경일	박성호
		태평양	장한승	사무소	송경섭	태평양	장한승	사무소	송경섭	대일	김봉식	사무소	송경섭
		제일	이창규	감동	박재만	제일	이창규	감동	박재만	제일	이창규	감동	박재만
충북	청주상당구	대일	임종필	대화	안재광	대일	임종필	대화	안재광	대일	임종필	대화	안재광
		정일	김태훈	삼일	명노철	정일	김태훈	삼일	명노철	통일	이호준	삼일	명노철
	청주서원구	삼일	이충훈	대한	이미화	제일	김태용	대한	이미화	제일	김태용	대한	예미화
		하나	유영기	신한	권남규	하나	유영기	정원	신백호	하나	유영기	미래새한	하영호
	청주흥덕구	통일	김지성	중앙	채혜성	가온	정병진	중앙	채혜성	가온	정병진	세종	박범종
		중앙	명성숙	태백	남궁윤	가온	이능규	태백	남궁윤	가온	이능규	대신	임민순
	청주청원구	사무소	박성현	삼창	허강백	사무소	박성현	삼창	허강백	사무소	박성현	미래새한	이준호
		중앙	이석원	태백	도시현	가온	정덕교	리얼티뱅크	임재철	가온	정덕교	리얼티뱅크	임재철
	충주시	효산	최희순	태평양	백진이	다우에셋	조원상	태평양	백진이	미래새한	이상춘	명문	최지훈
		경일	김범식	해민	금각보	경일	김범식	해민	금각보	경일	김범식	해민	금각보
		가온	신동억	대신	하승현	가온	신동억	다안	유재현	대신	허동혁	세아	김범영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대한	권윤정	사무소	허재승
	제천시	나라	신정필	미래새한	김승현	나라	신정필	미래새한	김승현	태평양	김윤창	미래새한	김승현
		가온	강성모	하나	오준교	가온	강성모	하나	오준교	가온	강성모	하나	오준교
		통일	노재수	사무소	최기연	통일	노재수	대교	이종은	통일	세고	대교	이종은
	보은군	대일	김재용	대한	박영준	대일	김재용	대한	박영준	대일	김재용	대한	박영준
		제일	김태용	나라	류재홍	중앙	신호식	나라	류재홍	중앙	신호식	나라	류재홍
	옥천군	매사한	김창전	현산	윤장배	미래새한	김창전	현산	윤장배	경일	강현정	현산	윤장배
		라인	유성일	하나	정규원	라인	유성일	가온	조정연	삼성	유성일	가온	조정연
										가온	장동오	대일	김아인
	영동군	경일	최용석	중앙	신호식	미래새한		삼창	구민형	한강	이운범	삼창	구민형
		태평양	양인숙	제일	최준헌	태평양	양인숙	제일	최준헌	태평양	양인숙	제일	최준헌
						가람	이현승	써브	박동준	가람	이현승	써브	박동준
	증평군	가람	박재현	가온	정덕교	가람	박재현	현대	이호권	가람	박재현	태평양	노경아
	진천군	나라	노충래	삼창	황정숙	나라	노충래	중앙	박지용	나라	노충래	태백	김누리

		20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u>.</u>	B2	<u> </u>	A.	<u></u>	B2	<u> </u>	А	<u></u> 조	B2	5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 충북	진천군	삼일	신현기	대일	김소담	삼일	신현기	대일	김소담	삼창	이윤주	대일	김소담
	괴산군	통일	권세종	매새한	이하양	통일	권세종	미래새한	이하양	통일	권세종	미래새한	왕히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하나	조영기	프라임	정용집
	음성군	정일	김경래	대영	정상영	정일	김경래	대영	정상영	정일	김경래	대영	정상영
	음성군	중앙	송주호	대한	김주민	중앙	송주호	대한	김주민	중앙	송주호	대한	김주민
		대상	정해근	사무소	김선중	대상	정해근	효산	박혜주	대상	정해근	효산	박혜주
	단양군	리얼티뱅크	임재철	태평양	황창호	태백	김수민	태평양	황창호	태백	김수민	태평양	황창호
		이화	김수민	중앙	신지훈	대일	이홍규	중앙	신지훈	대일	이홍규	중앙	신지훈
충남	천안동남구	삼일	안병현	경일	김신환	삼일	안병현	경일	김신환	대화	이충훈	기람	홍선
		대화	정채봉	가온	김재윤	에이원	정채봉	가온	김재윤	에이원	정채봉	대화	윤여경
										미래새한	한상범	현대	이민성
	천안서북구	중앙	김지혜	에이원	이혜미	중앙	김지혜	태인	김혜원	중앙	김지혜	태인	김혜원
		대일	허찬범	사무소	문희수	삼창	변희정	사무소	문희수	삼일	안병현	사무소	문희수
	공주시	대일	원병하	태평양		미래새한		써브	임윤혁	대한	신대철	미래새한	권형
		제일	박용일	가온	윤대중	중앙	신상훈	사무소	윤만중	중앙	신상훈	사무소	윤만중
		중앙	김고균	하나	조병돈	대화	김해원	하나	조병돈	대화	김해원	하나	조병돈
-						대일	원병하	대교	전윤호	경일	송다원	대교	전윤호
	보령시	제일	정영록	가람	정찬효	제일	정영록	가람	정찬효	하나	신희중	기람	정찬효
		태평양	김관민	동인	장혜아	태평양	김관민	제일	김주영	태평양	김관민	제일	김주영
		삼창	정우현	대화	김민수	삼창	정우현	대화	김민수	삼창	정우현	대일	이연희
	아산시	나라	송효섭	대화	김정식	나라	송효섭	다우에셋	이정형	나라	송효섭	다우에셋	이정형
		제일	김종관	가람	박은영	제일	김종관	가람	박은영	제일	김종관	가람	박은영
		통일	이희원	대한	유인동	대일	이현경	대한	유인동	세종	서영준	대한	유인동
		대일	윤재석	사무소	신정호	삼일	양주훈	사무소	신정호	삼일	양주훈	사무소	신정호
	13 1 1 1	EOL	이들다	AFOL	NET	EOL	이들다	YFOI	ムニフ	명문	김남기	우솔	이완희
	서산시	통일 가온	임하경 임재형	삼일 경일	신동규 전성진	통일 가온	임하경 임재형	삼일 경일	신동규 전성진	통일 가온	임하경 임재형	삼일 경일	신동규 전성진
		경일	김민혁	중앙	한윤숙	경일	김민혁	중앙	한윤숙	경일	김민혁	중앙	한윤숙
		중앙	구기풍	사무소	박종연	중앙	구기풍	00 사무소	박종연	중앙	구기풍	66 사무소	박종연
	논산시	동인	박소연	태백	박광민	동인	박소연	대평양	김대희		<u> </u>	대일	김대희
	LUM	하나	유혜경	통일	정주영	하나	유혜경	통일	점주영	써브	박상원	통일	정주영
		제일	전주철	이르 태평양	한경희	제일	전주철	등론 태평양	^{0 0} 한경희		유혜경	으로 삼창	이정문
		/112		7100	204	112		1100	120-	미래새한	박민균	시무소	이득주
-	 계룡시	제일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제일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대한	전주철	태평양	한경희
	당진시	정일	김창진	삼창	박래현	정일	김창진	삼창	박래현	정일	 김창진	삼창	박래현
	<u> </u>	사무소	안유라		신동현	사무소	안유라	태인	차진영		안유라	태인	차진영
		명문	서중권	프라임	정상범	명문	 서중권	프라임	정상범	명문	서중권	프라임	정상범
		비결	이보람	가람	이종현	비결	이보람	_ , 가람	이종현		서문식	 기람	이종현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조	B2	<u> </u>	A	조	B2	<u> </u>	A	조	B2	5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충남	금산군	태평양	민병서	중앙	이은한	태평양	민병서	대화	허지은	태평양	민병서	대화	해지은
		하나	송재완	삼창	이상원	하나	송재완	삼창	이상원	하나	송재완	삼창	이상원
						가람	김건호	사무소	박병호	기람	김건호	사무소	박병호
	부여군	경일	임한결	삼창	양준혁	경일	임한결	삼창	양준혁	사무소	정호순	삼창	양준혁
		사무소	정호순	태평양	김경표	사무소	정호순	태평양	김경표	경일	임한결	태평양	김경표
		대한	정두환	통일	김양태	대한	정두환	통일	김양태	대한	정두환	통일	김양태
	서천군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나라	장승욱	하나	김재원	태백	박광민	하나	김재원
		매싸한	정진수	공감	김병주	미래새한	정진수	대화	이지혜	미래새한	정진수	라인	강미현
						공감	이정재	하나	정재훈	공감	이정재	하나	정재훈
	청양군	나라	최기훈	효산	이명수	나라	최기훈	효산	이명수	나라	최기훈	효산	이명수
		리얼티뱅크	어정민	대한	정태영	리얼티뱅크	어정민	대한	정태영	리얼티뱅크	어정민	대한	정태영
	홍성군	신한	박승안	가온	김홍철	신한	박승안	가온	김홍철	신한	박승안	가온	김홍철
		태백	김건욱	정일	채현동	태백	김건욱	제일	박용일	태백	김건욱	제일	박용일
		가람	김철순	경일	나두영	사무소	조창호	경일	나두영	사무소	조창호	경일	나두영
	예산군	매싸한	노승을	사무소	이종은	중앙	최현욱	사무소	이종은	중앙	최현욱	사무소	이종은
		가람	권기영	제일	육동우	가람	권기영	제일	육동우	가람	권기영	제일	육동우
		감동	김원웅	사무소	문주완	감동	김원웅	사무소	문주완	감동	김원웅	대화	김용배
	태안군	대화	최태영	미래새한	하영호	대화	최태영	미래새한	하영호	대화	최태영	사무소	양애희
		감동	김원갑	가온	문정윤	감동	김원갑	가온	문정윤	감동	김원갑	가온	문정윤
		태평양	나병기	효산	김율희	태평양	나병기	효산	김율희	제일	유창봉	효산	김율희
전남	목포시	가온	문세훈	하나	한상범	가온	문세훈	프라임	임용구	가온	문세훈	프라임	임용구
		매사한	신춘일	리얼티뱅크	홍창우	나라	박진수	효산	김진용	나라	박진수	효산	김진용
	여수시	가온	김용문	통일	유우식	대일	김용문	세종	김대현	대일	김용문	세종	김대현
		명문	정창식	대화	이덕권	명문	김영경	대화	이덕권	명문	김영경	가온	우병국
		에이원	신용식	제일	윤여일	에이원	신용식	리얼티뱅크	조창범	에이원	신용식	중앙	이재황
		경일	한영섭	대화	김치암	경일	한영섭	가람	이태문	삼일	김혜진	기람	이태문
		사무소	박제우	나라	노광래	태백	이성범	나라		미래새한		써브	신동원
						중앙	이현우	제일	윤여일	태양	이현우	제일	윤여일
	순천시	에이원	김형선	나라	장철훈	에이원	김형선	나라	장철훈	에이원	김형선	나라	장철훈
		나라	박성구	경일	김창식		박성구	경일	김창식		심상기	중앙	김수영
		중앙	문희성	미래씨한	김응철	중앙	문희성		김응철	중앙	문희성	제일	박준석
		하나	김기택	중앙	김수영	하나	김기택	중앙	김수영	하나	김기택	경일	김창식
ŀ				_		가온	조호림	삼창	권현철	가온	조호림	삼창	권현철
	나주시	삼창	이동철	사무소	박정웅	삼창	이동철	명문	김상현	삼창	이동철	명문	김상현
		대한	백인철	가람	정지용	나라	정귀수	가람	정지용	나라	정귀수	기람	정지용
		제일	김원철	프라임	박범종	제일	김원철	대한	송원태	제일	김원철	대한	송원태
		가람	이강종	대화	박진	가람	이강종	대화	박진	가람	이강종	미래새한	박정갑
		대화	김창신	사무소	강동채	대화	김창신	사무소	강동채	대화	김창신	사무소	강동채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u>.</u>	B2	<u> </u>	A	<u></u>	B.Z	<u> </u>	A	<u></u> 조	B2	5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남	광양시	제일	류현승	중앙	김진복	제일	류현승	나라	김다희	제일	류현승	나라	김종훈
		프라임	이재욱	가온	박석환	리얼티뱅크	김호성	가온	박석환	리얼티뱅크	김호성	경일	최성길
Ī	광양시	삼일	이지은	경일	최성길	삼일	이지은	경일	최성길	삼일	의지()	나라	김충연
	담양군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삼창	김범수	사무소	정규호
		경일	박동훈	제일	박명주	우솔	임성모	제일	박명주	우솔	임성모	제일	박명주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태백	김주한	하나	김남석
	곡성군	대일	박종호	가람	김범회	대일	박종호	가람	김범회	대일	박종호	사무소	최서정
		경일	김회석	제일	이동훈	경일	김회석	제일	이동훈	가람	이경민	제일	이동훈
	구례군	태백	고영훈	삼창	김우정	태백	고영훈	제일	장승욱	태백	고영훈	대일	이경훈
		모두	김진용	제일	장승욱	대일	이경훈	삼창		미래새한	임재준	태평양	성경기
	고흥군	가온	박창현	나라	정재원	티앤비	김민석	가람	윤종환	티앤비	김민석	기람	윤종환
		한국경제	박명수	티앤비	권기현	미래새한	조동진	한국경제	박명수	미래새한	조동진	한국경제	박명수
		티앤비	김민석	태평양	김경문	하나	박정진	태평양	김경문	하나	박정진	태평양	김경문
		대한	천종철	가람	윤종환	대한	천종철	티앤비	권기현	대한	천종철	티앤비	권기현
	보성군	매사한	정석주	태평양	박재웅	미래새한	정석주	중앙	박재웅	삼일	이수미	제일	국광성
		삼창	고병관	가람	최지현	삼창	고병관	가람	최지현	삼창	고병관	기람	최지현
		대일	추민수	삼창	윤현호	대일	추민수	삼창	윤현호	대일	추민수	삼창	윤현호
						가람	최웅	태평양	송재광	가람	최웅	태평양	송재광
	화순군	제일	임보섭	사무소	구완민	제일	임보섭	씨비알이 현	배국현	태평양	정선주	씨비알이 현	배국현
		매ሎ	손남석	중앙	강인태	신진	이영훈	삼창	문용주	나라	나윤혁	삼창	문용주
		가람	김다인	대한	김광천	가람	김다인	대화	강효성	기람	김다인	대화	강효성
										제일	임보섭	대일	정선우
	장흥군	경일	고현	통일	김영빈	경일	고현	통일	김영빈	경일	고현	통일	김영빈
		정일	윤성종	태평양	오화평	대일	이신관	태평양	오화평	대일	이신관	삼창	장범
		매사한	김창현	하나	김승일	미래새한		하나	김승일	중앙	박재웅	하나	김승일
	강진군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나라	민정현	제일	윤대현
		하나	이지훈	사무소	조남철	하나	이지훈	사무소	조남철	하나	의지(호	사무소	조남철
		나라	황운선	경일	박민호	나라	황운선	경일	박민호	나라	황운선	경일	박민호
	해남군	가람	김주리	대일	노권일	대교	황찬석	대일	노권일	삼창	최희정	미래새한	
		가온	이재원	사무소	배주연	정일	김황수	사무소	배주연	정일	김황수	사무소	배주연
		태평양	모성주	하나	서상업	중앙	서영국	통일	전병규	중앙	서영국	통일	전병규
		나라	허필준	태평양	박현범	하나	정재훈	태평양	박현범	대화	정인수	태평양	박현범
	영암군	통일	송요상	대한	김덕진	통일	송요상	가온	이두희	통일	송요상	가온	이두희
		가온	배희숙	대화	이정택	써브	신경석	대화	이정택	써브	신경석	대화	이정택
		통일	최동현	나라	이도경	통일	최동현	나라	이도경	통일	최동현	나라	이도경
	무안군	가온	이의권	미래씨한	김규진	가온	이의권		김규진	가온	이의권	미래새한	김규진
		태평양	정하나	삼창	이동영	태평양	김경훈	하나	송화섭	태평양	김경훈	하나	송화섭

			202	<u></u> 23년		_	20	24년		2025년			
시.도	시.군.구	A2		BZ	<u> </u>	A		BZ	<u> </u>	A	 조	B2	<u></u>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남	무안군	통일	김경수	하나	이수미	통일	김경수	대한	이정욱	통일	김경수	대한	이정욱
	함평군	대일	최희수	대한	최기영	제일	신정균	대한	최기영	제일	신정균	대한	최기영
		대일	위재홍	가람	이용선	대일	위재홍	가람	이용선	대일	위재홍	나라	유영재
		가람	박영학	사무소	오치훈	가람	박영학	제일	하태웅	경일	정만대	제일	하태웅
	영광군	중앙	최시은	태평양	박충희	대한	최윤석	태평양	박충희	태평양	정현우	사무소	김환
		태평양	정현우	대한	최윤석	태평양	정현우	미래새한	이승우	대한	최윤석	미래새한	이승우
		가람	조병혁	경일	배성환	가람	조병혁	통일	김상균	대일	김형기	삼일	권태선
	장성군	가온	홍순경	정일	황선영	미래새한	한송민	정일	황선영	미래새한	한송민	정일	황선영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나라	윤진상	제일	황승용
		리얼티뱅크	서상민	제일	김현중	리얼티뱅크	서상민	제일	김현중	리얼티뱅크	서상민	대화	조정용
	완도군	제일	홍성민	대일	임완준	제일	홍성민	대일	임완준	기람	공무경	대한	이창곤
		제일	노진형	삼일	김성일	제일	노진형	삼일	김성일	제일	노진형	경일	김현근
		매싸한	김영광	태평양	이정우	미래새한	김영광	대화	김기석	미래새한	김영광	대화	김기석
						하나	한재용	다우에셋	김경호	하나	한재용	다우에셋	김경호
	진도군	중앙	김성동	대한	황인규	중앙	김성동	써브	조성일	하나	양시웅	미래새한	김현기
		매사한	박성민	하나	양시웅	미래새한	김현기	하나	양시웅	씨비알이 현	신동윤	제일	정해욱
						씨비알이 현	신동윤	통일	신현상	태평양	정정길	통일	신현상
	신안군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하나	한상천	대화	이동규
		삼창	백승범	대한	민재식	삼창	백승범	중앙	민재식	삼창	백승범	중앙	민재식
		감동	김우영	대화	조원빈	감동	김우영	나라	김상윤	감동	김우영	나라	김상윤
		경일	장순석	통일	서성준	경일	장순석	통일	이해성	경일	장순석	제일	모현민
경북	포항남구	가람	김성환	사무소	정철유	가람	김성환	사무소	정철유	기람	김성환	사무소	정철유
		중앙	정민철	하나	이수환	통일	전재현	하나	이수환	통일	전재현	하나	이수환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하나	부병현	가람	이인범	대한	김상규	가람	이인범	대한	김상규	미래새한	박재현
	포항북구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대한	윤종문	태백	최민석
		대화	이영준	중앙	이승화	대화	이영준	중앙	이승화	써브	이해성	중앙	이승화
		가람	유남용	삼창	이지백	가람	유남용	삼창	이지백	가람	유남용	대화	양창민
	경주시	미래사한	주원복	프라임	김상태	미래새한	주원복	프라임	김상태	태평양	김홍찬	프라임	김상태
		정일	허태규	삼창	장대규	정일	허태규	삼창	장대규	정일	허태규	경일	양초원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옥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옥	퍼스트	김동환	태평양	문상옥
		가온	이원중	제일	김형식	제일	최규일	삼일	정민철	제일	최규일	삼일	정민철
		가람	안능수	하나	이민복	대한	김세원	하나	이민복	대한	김세원	미래새한	
		효산	이시운	삼일	이정훈	정일	김태환	삼일	이정훈	정일	김태환	삼일	이정훈
	김천시	대일	이용제	대한	이현승	대일	이용제	써브	임소연	대화	고재휘	미래새한	박희록
		가온	임현민	대교	진규용	가온	임현민	세움	이완희	정원	장수선	하나	김성훈
		가온	임형근	삼창	김윤혁	가온	임형근	삼창	김윤혁	사무소	박우섭	삼창	김윤혁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조	B∡	<u> </u>	A:	 조	B2	<u> </u>	A.	조	B2	5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북	김천시	나라	송윤근	대한	조영호	나라	송윤근	대한	조영호	갸온	이혜민	대한	조영호
										하나	임형근	감동	조빈
	안동시	대한	유제혁	대일	장시만	대한	유제혁	대일	장시만	대한	유제혁	대일	장시만
		대일	박병호	태양	이수진	대일	박병호	태양	이수진	사무소	김대성	태인	황소라
		대한	김도겸	예일	안선종	대한	김도겸	예일	안선종	대화	한지원	예일	안선종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경일	이정호	삼창	김예지
		가람	안중희	사무소	양해창	가람	안중희	나라	손창호	가람	안중희	나라	손창호
	구미시	나라	손열	가람	안성우	나라	손열	가온	천영길	나라	손열	제일	구민영
		경일	여운복	마래사한	유민재	경일	여운복	미래새한	유민재	경일	여운복	중앙	현영대
		제일	구민영	가온	천영길	제일	구민영	통일	최진호	통일	최진호	효산	궉영석
										대일	정용석	통일	배윤영
	영주시	유앤이	성낙정	제일	윤성찬	유앤아이	성낙정	제일	윤성찬	하나	박주형	제일	윤성찬
		하나	박주형	마래사한	유철훈	하나	박주형	미래새한	유철훈	유앤아이	성낙정	나라	이재민
		한국경제	김석호	경일	문혜정	한국경제	김석호	경일	문혜정	한국경제	김석호	경일	문혜정
	영천시	나라	오규만	에이원	전병규	대화	엄창우	티앤비	임수정	경일	김시우	티앤비	임수정
		대한	윤지훈	제일	장희재	대한	윤지훈	사무소	최상황	대화	엄창우	태백	이동석
		가람	정한용	가온	서일옥	미래새한	정한용	가온	서일옥	태평양	허봉조	가온	서일옥
		대화	엄창우	대한	박성준	대화	김대환	대한	박성준	대화	김대환	대한	박성준
	상주시	제일	허창길	대화	박준우	제일	허창길	다안	한기환	제일	허창길	삼일	정도현
		대일	배주현	사무소	이홍규	대일	배주현	하나	이병기	경일	배주현	미래새한	홍정한
		경일	정재영	중앙	강돈혁	경일	정재영	중앙	강돈혁	경일	정재영	하나	이병기
		태평양	안진영	미래새한	이준석	현대	박중진	경일	김일남	현대	박중진	경일	김일남
										대일	김태훈	대한	김도겸
	문경시	가람	조경묵	경일	원주희	가람	조경묵	경일	원주희	미래새한	최영길	경일	원주희
		가온	김규태	가람	김성진	가온	김규태	가람	김성진	갸온	김규태	사무소	채홍현
		하나	추성연	태백	김동현	하나	추성연	태백	김동현	하나	추성연	태백	김동현
	경산시	대화	노승환	사무소	김대성	태평양	배승민	대상	김동진	태평양	배승민	대상	김동진
		가온	채태영	프라임	차혜원	가온	채태영	명문	표은송	대일	류정완	명문	표은송
		삼창	박준현	미래새한	서상욱	삼창	박준현		서상욱	삼창	박준현	미래새한	서상욱
	의성군	제일	박종태	대한	류휘훈		박종태	대한	류휘훈	제일	박종태	대한	류휘훈
		삼창	강호민	현산	이남련	삼창	강호민	현산	이남련	삼창	강호민	현산	이남련
		나라	박원득	가람	권병수	나라	박원득	가람	권병수	나라	박원득	기람	권병수
		신원	김상민	하나	신민경	통일	조인식	하나	신민경	사무소	이석원	하나	신민경
	청송군	태평양	김대형	대화	황수남	태평양	김대형	대화	황수남	써브	홍상혁	대화	황수남
		가온	이한영	정일	홍상혁	가온	이한영	대화	홍상혁	갸온	이한영	통일	이해성
	영양군	제일	김수한	리얼티뱅크	박치영	제일	김수한	리얼티뱅크	박치영	제일	김수한	리얼티뱅크	박치영
		사무소	변득규	나라	장문창	써브	조진용	나라	장문창	써브	조진용	나라	장문창
	영덕군	삼창	이석진	대일	장대연	삼창	이석진	대일	장대연	기람	이수민	대일	장대연

		20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u></u>	B∡	<u> </u>	A	조	B2	<u> </u>	А	조	B2	<u>.</u>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북	영덕군	가온	이동재	중앙	정석환	가온	이동재	중앙	정석환	삼일	지원배	대화	박규창
						태평양	최형규	정일	박규창	태평양	최형규	중앙	장권수
	청도군	삼일	이승현	제일	정강희	삼일	이승현	제일	정강희	삼일	이승현	제일	정강희
		대한	강홍락	태평양	이동하	대한	강홍락	태평양	정주암	동인	강동필	태평양	정주암
		중앙	기재우	리얼티뱅크	유병민	중앙	기재우	리얼티뱅크	유병민	중앙	기재우	대일	조연흠
	고령군	미래사한	우성하	삼창	신형철	미래새한	우성하	삼창	신형철	미래새한	우성하	삼창	신형철
		태평양	권찬규	경일	김석배	태평양	권찬규	경일	김석배	대일	권찬규	경일	김석배
	성주군	대한	차수길	동인	최근택	대한	차수길	동인	최근택	대한	차수길	미래새한	
		태평양	이국준	하나	여규환	태평양	이국준	하나	여규환	태평양	이국준	나라	박해균
						중앙	조종학	명문	이재욱	중앙	조종학	명문	이재욱
	칠곡군	가람	정용우	사무소	전경식	가람	정용우	사무소	전경식	가람	정용우	사무소	전경식
		중앙	윤정숙	하나	이상석	중앙	윤정숙	하나	이상석	대한	박정태	하나	이상석
	예천군	하나	김돌근	삼일	박종찬	대일	이동원	중앙	박종찬	대일	이동원	중앙	박종찬
		정원	여송	하나	임수현	리얼티뱅크	. —	하나	임수현	대화	이완석	하나	임수현
		경일	김태호	삼창	서귀성	경일	김태호	삼창	서귀성	경일	김태호	삼창	서귀성
	봉화군	중앙	고재휘	대일	이동원	중앙	고재휘	세종	곽재혁	삼창	최병준	세종	곽재혁
		통일	박태종	삼일	권상덕	통일	박태종	삼일	권상덕	통일	박태종	기람	강무성
	울진군	경일	최월환	태평양	윤만규	대화	윤다빈	태평양	윤만규	가온	권승주	태평양	윤만규
		통일	윤영범	가온	임재철	나라	김정원	삼일	최기성	나라	박성하	삼일	최기성
						중앙	최영태	리얼티뱅크	서상필	중앙	최영태	리얼티뱅크	서상필
	울릉군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가람	이웅	삼일	윤인규
경남	창원의창구	에이원	노기수	경일	이근성	태평양	윤종웅	경일	이근성	태평양	윤종웅	미래새한	정동혁
		하나	장정익	매새한	정동혁	하나	장정익	미래새한	정동혁	하나	장정익	감동	강승태
	창원성산구	태평양	신승훈	프라임	이규환	태평양	신승훈	써브	이치윤	태평양	신승훈	써브	이치윤
	창원마산합포구	제일	김선태	가람	석금자	미래새한	이승록	가람	석금자	가온	김주성	경일	이근성
		미래사한	이승록	사무소	류한민	감동	장주연	사무소	류한민	감동	장주연	사무소	류한민
		가람	엄혁	제일	정재호	가람	엄혁	대한	윤정석	하나	김진리	대한	윤정석
	창원마산회원구	대일	조주남	태평양	이상훈	나라	문준석	미래새한	김현대	나라	문준석	대한	김정훈
		태평양	정수원	사무소	장기영	태평양	정수원	신원	김경훈	태평양	정수원	신원	김경훈
	창원진해구	사무소	백경희	통일	서선미	사무소	백경희	통일	서선미	사무소	백경희	통일	서선미
		제일	김근수	중앙	추준호	제일	김근수	중앙	추준호	삼창	박명인	중앙	김상진
	진주시	경일	이혜숙	대일	장윤민	대화	손익경	대일	장윤민	대화	손익경	삼일	허광철
		중앙	권형근	마래(한	유동문	중앙	권형근	제일	구영돈	중앙	권형근	제일	구영돈
		하나	김길용	대화	김동하	하나	이현재	대화	김동하	하나	이현재	대한	황인범
		나라	신재영	대한	황인범	나라	신재영	대한	황인범	대화	정은선	대일	장윤민
		가람	박종현	삼창	문명주	가람	박종현	미래새한	유동문	기람	박종현	미래새한	유동문
	통영시	동인	김태환	나라	이준혁	동인	김태환	가람	임건우	동인	김태환	기람	임건우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Z	<u></u>	B조	<u> </u>	A	조	B₫	<u> </u>	А	<u></u>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남	통영시	대한	김정훈	통일	김찬용	대한	김정훈	통일	김찬용	미래새한	치준수	통일	김찬용
		나무	김재철	가람	김재한	나무	김재철	나라	이준혁	사무소	김영우	나라	이준혁
	사천시	나라	최충원	삼일	문종열	에이원	이정화	삼일	문종열	에이원	이정화	삼일	문종열
		중앙	김준태	경일	강민규	중앙	김준태	경일	강민규	중앙	김준태	경일	강민규
		대화	정겨운	경일	이세호	가온	곽도관	써브	조태희	건일	이승희	써브	조태희
-		가온	최창민	나라	박민호	사무소	최현규	나라	박민호	미래새한	이승록	가온	오승훈
	김해시	공감	한석종	대화	차현석	공감	한석종	대화	차현석	경일	임다혜	대일	조청제
		사무소	장은진	중앙	조동옥	사무소	장은진	중앙	정후영	사무소	장은진	중앙	정후영
		삼일	송상길	나라	최종호	삼일	송상길	나라	최종호	태평양	김진교	나라	최종호
		태평양	최지윤	대한	장은수	삼창	이수정	대한	장은수	삼창	이수정	대한	장은수
-		매싸한	조재균	정일	윤성우	미래새한	조재균	신한	도지연	미래새한	조재균	태평양	김대원
	밀양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삼창	김철익	대한	정지혜
		하나	송진규	대일	김승주	대일	김기환	에이원	백일홍	대일	김기환	에이원	백일홍
		제일	김창년	사무소	강양중	제일	김창년	효산	김원혁	제일	김창년	효산	김원혁
		리얼티뱅크	하용민	대한	김보경	중앙	유찬영	통일	하용민	삼창	안창환	통일	하용민
-		삼일	양설영	나라	박소영	삼일	양설영	대일	김장욱	삼일	양설영	대일	김장욱
	거제시	가온	전문수	삼창	옥치홍	가온	전문수	대영	김양희	가온	전문수	제일	송정현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삼일	천병기	제일	원종혁
		경일	진영훈	가람	정영호	경일	진영훈	가람	정영호	경일	진영훈	기람	정영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대일	임수원	경일	강성호
	양산시	가온	조규봉	명문	장석규	가온	조규봉	명문	장석규	가온	조규봉	명문	장석규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태평양	이종찬	리얼티뱅크	김규승
		중앙	강석주	라인	윤소희	중앙	강석주	가람	정지욱	중앙	강석주	기람	정지욱
	의령군	가람	조근아	통일	김성재	가람	조근아	통일	김성재	사무소	장기영	통일	김성재
		제일	김성일	태평양	최명석	대일	허태리	태평양	최명석	대일	허태리	태평양	최명석
						중앙	한정훈	명문	정창식	중앙	한정훈	명문	정창식
	함안군	삼창	윤성준	대일	조청제	삼창	윤성준	대일	조청제	삼창	윤성준	하나	박윤정
		하나	변지환	프라임	박형국	대한	김보경	프라임	박형국	대한	김보경	프라임	박형국
		삼창	황도웅	가온	심가영	삼창	황도웅	가온	심가영	삼창	황도웅	사무소	이영기
	창녕군	마바찬	최영길	경일	배범수	미래새한	최영길	경일	배범수	중앙	추준호	경일	배범수
		대일	허태리	중앙	황재범	정일	김성균	중앙	황재범	정일	김성균	중앙	황재범
		마바찬	안진우	중앙	김상진	미래새한	안진우	중앙	김상진	미래새한	안진우	사무소	김용식
	고성군	가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가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기람	정다연	태백	김상훈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중앙	강동석	대한	조영수
		사무소	권준희	대화	정승우	하나	변지환	대화	정승우	하나	변지환	대화	정승우
						가온	김재욱	세종	김병철	갸온	김재욱	세종	김병철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Σ	B∡	<u> </u>	A:	조	ВZ		А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경남	남해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하나	구준수	미래새한	이윤우
		삼창	박치정	정일	한상규	삼창	유정준	정일	한상규	삼일	강경석	정일	한상규
		사무소	목승혜	제일	박정우	사무소	목승혜	제일	박정우	사무소	목승혜	세움	이정환
										중앙	고석정	제일	박정우
	하동군	대상	류미숙	태평양	안영찬	대상	류미숙	태평양	안영찬	대상	류미숙	중앙	전용우
		대화	이주윤	사무소	한봉수	대화	이주윤	하나	송진규	대화	이주윤	하나	송진규
		경일	오완석	제일	권귀현	경일	오완석	제일	권귀현	경일	오완석	제일	권귀현
						미래새한	신춘일	태백	최현석	나라	신재영	사무소	박재우
	산청군	하나	이원석	가온	이진혁	하나	이원석	대한	이대성	하나	이원석	대한	이대성
		태평양	강준구	나라	이병문	태평양	강준구	나라	이병문	태평양	강준구	나라	이병문
										기람	김현웅	제일	김성일
	함양군	하나	김형종	대일	김지창	하나	김형종	대일	김지창	호암	김종락	대일	김지창
		대한	백상훈	대일	박유희	대한	백상훈	삼창	오무궁	대한	백상훈	삼창	오무궁
						가람	문이룡	호암	이현진	가람	문이룡	태평양	김정진
	거창군	삼창	조복만	하나	정준규	삼창	조복만	하나	정준규	중앙	조동옥	하나	정준규
		사무소	박재우	대화	손태정	나라	 김선중	대화	손태정	나라	김선중	대화	손태정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가온	김민석	태평양	김영규
										삼창	정문영	가람	정희용
	합천군	나라	문준석	통일	이명환	중앙	박경종	프라임	진승희	중앙	박경종	태평양	김태우
		대한	김대환	삼창	유제형	대한	김대환	삼창	임주혁	하나	임우진	삼창	임주혁
		통일	조보미	가람	김현웅	이화	윤영술	가람	김현웅	이화	윤영술	제일	정유미
		대화	박중걸	사무소	이영기	대화	박중걸	리얼티뱅크	김준영	감동	최석규	리얼티뱅크	김준영
제주	제주시	하나	이철진	나라	박성수	정일	강정희	가람	차남수	정일	강정희	기람	채남수
		가온	김형근	중앙	고경현	가온	김형근	중앙	고경현	가온	김형근	중앙	고경현
		가람	박명호	대화	박철완	가람	박명호	대화	박철완	가람	박명호	대화	박철완
		삼창	한동규	나라	고병철	삼창	한동규	나라	김영헌	삼창	한동규	나라	김영헌
		마래사한	김현진	하나	홍승범	미래새한	김현진	가람	고병철	나라	원윤경	기람	고병철
		가온	정유진	태평양	김경남	하나	김경훈	태평양	김경남	하나	김경훈	태평양	김경남
		대일	김동규	삼일	김동열	대일	김동규	삼일	강용고	미래새한	김상한	삼일	강용고
		태백	함기철	미래새한	유창환	태백	함기철	미래새한	유창환	태백	함기철	미래새한	유창환
	서귀포시	대화	최성우	나라	원윤경	대화	최성우	나라	원윤경	대화	최성우	나라	박성수
		대한	고성표	제일	홍수진	대한	고성표	제일	홍수진	대한	고성표	제일	홍수진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중앙	고승우	경일	임병성
		제일	고대진	정일	강정희	제일	고대진	하나	홍승범	제일	고대진	하나	홍승범
		삼창	홍성우	태평양	김필호	삼창	홍성우	태평양	김필호	삼창	홍성우	미래새한	김필호
강원	춘천시	대한	신민화	경일	경봉현	대한	신민화	경일	경봉현	대한	신민화	대화	임채성
		대화	차경은	중앙	임채성	대화	차경은	중앙	최지혜	삼창	심재국	중앙	최지혜

			202	 23년			20	24년		2025년				
시.도	시.군.구	A2	5	B∡	<u>:</u>	A.	Σ	B∡	<u> </u>	A.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강원	춘천시	경일	배지용	대한	이재훈	사무소	오현식	대한	이재훈	가온	홍윤기	대한	이재훈	
										예일	한석종	하나	엄민국	
	원주시	경일	우병화	가람	이준희	경일	우병화	가람	이준희	경일	우병화	기람	이준희	
		삼창	심재국	태백	안민혁	삼창	심재국	태백	안민혁	삼일	이학서	태백	안민혁	
		미래새한	유재학	대일	김남균	미래새한	유재학	대일	김남균			대일	김남균	
	강릉시	미래새한	남상원	삼창	김형구	미래새한	남상원	정일	서승호	미래새한	남상원	정일	서승호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태평양	이화삼	대한	김상철	
		가온	홍태의	제일	안재석	써브	황선구	제일	안재석	사무소	임근식	제일	위흥	
-						나라	박정관	명문	이창수	나라	박정관	명문	이창수	
	동해시	미래새한	곽승호	통일	이장우	미래새한	곽승호	통일	이장우	미래새한	곽승호	통일	이장우	
	태백시	경일	신웅수	삼창	김명호	경일	신웅수	삼창	김명호	미래새한	노영래	제일	안재석	
	속초시	사무소	연동호	대일	김동우	가온	류창범	미래새한	배세진	가온	류창범	미래새한	배세진	
	삼척시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경일	박노식	하나	김용휴	
		중앙	최상순	신진	최장준	중앙	최상순	신진	최장준	중앙	최상순	신진	최장준	
	홍천군	나라	김일권	대일	어두선	대일	김종완	리얼티뱅크	황혜원	대일	김종완	리얼티뱅크	황혜원	
		하나	이관희	사무소	송재영	하나	이관희	써브	송백천	가온	김영희	써브	송백천	
-		중앙	김운	감동	황인호	중앙	김운	감동	황인호	중앙	김운	감동	황인호	
	횡성군	미래새한	권병우	삼창	박종열	미래새한		삼창		미래새한		삼창	박종열	
-		사무소	김경백	제일	박정화	대일	성열훈	제일	박정화	대일	성열훈	라인	윤소희	
	영월군	가람	류영준	태평양	유경태	가람	류영준	태평양	유경태	가람	류영준	태평양	유경태	
+	#47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제일	곽명훈	대화	정혁철	
	평창군	나라	박정관	대화	정집연	삼창	임동권	대화	정집연	삼창	임동권	대화	정집연	
-	저서그	리얼티뱅크	이재홍	삼창 페이	임동권	대한	김우진	삼일	이현석	대한	김우진	삼일	이현석	
	정선군	가람 태평양	이강민 강원혁	제일 가람	정상기 이성호	가람 태평양	이강민 강원혁	제일 가람	정상기 이성호	기람 태평양	이강민 강원혁	제일 기람	정상기 이성호	
-	 철원군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 네oo 경일	심영민	제일	정희진	
	200	⁸ 르 가온	홍윤기	대한	표충식	으르 우솔	이정식	대한	표충식	으르 우솔	이정식	중앙	8의년 최원철	
		나라	박민기	삼창	백종철	'르 나라	박민기	삼창	백종철	'로 나라	박민기	88 삼창	백종철	
	 화천군	가온	지성근	통일	최우진	가온	지성근	통일		미래새한		통일	 최우진	
-	양구군	삼일	이학서	유앤아이	최희영	삼일	이학서	유앤아이	최희영	하나	이관희	유앤아이	최희영	
-	인제군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프라임	하세영	대한	장지영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하나	윤세봉	티앤비	강정구	
}	고성군	가온	김태리	가람	이우교	가온	김태리	가람	이우교	가온	김태리	기람	이우교	
		사무소	임근식	가온	김현중	씨비알이 현	이승민	가온	김현중	씨비알이 현	이승민	가온	김현중	
	양양군	중앙	안성일	하나	장기홍	에이원	배준혁	하나	장기홍	에이원	배준혁	하나	장/홍	
		대화	김원기	나라	고병남	대화	김원기	나라	고병남	경일	김정기	제일	서수인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5	B조	<u> </u>	A:	조	B₫	<u> </u>	A	조	B2	2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북	전주완산구	대한	이옥선	통일	이찬중	대한	이옥선	명문	김상훈	대일	이경택	명문	김상훈
		대한	이영복	가온	김동현	퍼스트	하늘별	가온	김동현	퍼스트	하늘별	기람	구홍
	전주덕진구	사무소	김성식	대화	윤정주	사무소	김성식	대화	윤정주	사무소	김성식	대화	윤정주
		태평양	이산하	삼일	소순필	태평양	이산하	가람	강희성	태평양	0산하	대한	양은지
	군산시	제일	하동수	태평양	최민석	제일	하동수	삼성	차혜원	제일	하동수	삼성	차혜원
		가람	이한택	나라	이남윤	태백	홍진희	나라	이남윤	태백	홍진희	나라	이남윤
		대한	김원태	가람	이우철	가온	유보람	가람	이우철	갸온	유보람	대화	김재수
		삼창	김한규	공감	여지훈	통일	김현태	공감	김병주	통일	김현태	공감	김병주
	익산시	나라	김진문	대화	문성열	나라	김진문	대화	문성열	사무소	서원택	중앙	국정훈
		리얼티뱅크	오해진	대한	김용덕	리얼티뱅크	오해진	대한	김용덕	리얼티뱅크	오해진	경일	권석종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태평양	이복철	대일	최영광
		경일	임익준	가람	유연일	경일	임익준	가람	유연일	경일	임익준	기람	유연일
										감동	권혁준	제일	고재훈
	정읍시	나라	조성근	대일	이경택	나라	조성근	대일	이경택	나라	조성근	우솔	이우철
		리얼티뱅크	박길남	경일	유영호	리얼티뱅크	박길남	경일	유영호	삼성	박길남	나라	김진문
		대한	김동욱	제일	도승하	미래새한	홍성우	제일	도승하	미래새한	홍성우	제일	도승하
		매사한	정희정	사무소	이영호	미래새한	정희정	가온	이승희	미래새한	정희정	갸온	이승희
	남원시	나라	진동민	경일	이동진	나라	진동민	삼창	박진경	나라	진동민	삼창	박진경
		삼창	박진경	정원	김영민	경일	이동진	중앙	장원	경일	이동진	삼일	최진규
		대한	김동일	태백	이혁제	대한	김동일	태백	이혁제	대한	김동일	태백	이혁제
						프라임	정승열	삼창	김한규	프래임	정승열	삼창	김한규
	김제시	가온	손인태	매ሎ	김효원	가온	손인태	미래새한	김효원	대한	김용덕	미래새한	김효원
		하나	이원철	태평양	오태열	하나	이원철	태평양	오태열	하나	이원철	태평양	오태열
		대일	임창희	매ሎ	박진수	대일	임창희	미래새한	박진수	대일	임창희	미래새한	박진수
	완주군	사무소	고지창	중앙	이정환	사무소	고지창	제일	박지훈	사무소	고지창	제일	박지훈
		나라	박세찬	경일	유시혁	써브	정대환	경일	유시혁	써브	정대환	경일	유시혁

			202	23년			20	24년			202	25년	
시.도	시.군.구	A2	조	B₫	<u> </u>	A	조	BZ	5	A	조	B	조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법인	평가사
전북	완주군	대화	변상범	사무소	이병인	대화	변상범	더밸류	박둘순	대화	변상범	더밸류	박둘순
	진안군	경일	이의철	프라임	김기승	경일	이의철	프라임	김기승	경일	이의철	프라임	김기승
		정일	이상도	삼창	박민옥	정일	이상도	삼창	박민옥	정일	이상도	삼창	박민옥
		태평양	양현철	사무소	유민지	태평양	양현철	써브	정윤	뻉	양현철	埏	정윤
	무주군	대한	이승호	하나	김창배	대한	이승호	하나	김창배	가람	김길중	하나	김창배
		태평양	장도현	가람	김길중	태평양	장도현	대일	김경모	세아	김인욱	대일	김경모
	장수군	매새한	홍성우	가온	홍진혁	써브	양해영	가온	홍진혁	사무소	이영호	가온	최순걸
		대일	정찬구	하나	이석원	대일	정찬구	태평양	이민경	대일	정찬구	태평양	이민경
	임실군	경일	주병길	에이원	박지연	경일	주병길	가온	윤대중	경일	주병길	가온	윤대중
		대일	하재철	대화	김재수	대일	하재철	대화	김재수	대일	하재철	하나	김형주
	순창군	대일	양우진	가람	김양욱	대일	양우진	가람	김양욱	대일	양우진	가온	장대진
		대일	김영화	나라	유경민	대일	김영화	나라	엄문진	대일	김영화	나라	엄문진
	고창군	삼창	이현철	가온	최순걸	삼창	이현철	프라임	황성원	삼창	이현철	프라임	황성원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하나	김상우	가온	육성민
		중앙	국정훈	통일	정치원	중앙	국정훈	통일	정치원	미래새한	김동준	통일	정치원
	부안군	사무소	홍준표	중앙	김정환	사무소	홍준표	중앙	김정환	사무소	홍준표	중앙	김정환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삼창	조종천	중앙	김승욱
		태평양	오병훈	삼일	박승율	태평양	오병훈	삼일	박승율	대화	김경호	삼일	박승율

특수토지 표준지 조사 · 평가 담당자 현황 (2024, 2025)

			2024							2025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권역	팀		시·군·구		A조	B조
		인천 광역시	김포시	의왕시					인천 광역시	김포시	의왕시		
		부천시	안산 단원구	화성시					부천시	안산 단원구	화성시		
	1	시흥시	안산 상록구	평택시	이청용 ^{경일}	김정주 하나		1	시흥시	안산 상록구	평택시	이청용 경일	김정주 하나
		고양 덕양구	군포시	고양일산동구					고양 덕양구	군포시	고양일산동구		
		광명시							닉양구				
		서울 특별시	양주시	파주시					서울 특별시	양주시	파주시		
서울특별시	2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민경근 중앙	서동환 나라	서울특별시	2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김호민 태평양	서동환 나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의정부시		
9/IT		용인기흥구	수원영통구	여주시			9/ II		용인기흥구	수원영통구	여주시		
	3	용인수지구	수원권선구	오산시	김호민	김미영 가온		3	용인수지구	수원권선구	오산시	손상혁 중앙	김미영 가온
		용인처인구	수원팔달구	안양동안구	태평양	/性 			용인처인구			동성	가운
		안양만안구											
		안성시	성남 수정구	성남 분당구	장연우 미래 새한	7100			안성시	성남 수정구	성남 분당구	7151-1	71001
	4	구리시	남양주시	과천시		권오억 대화		4	구리시	남양주시	과천시	권덕희 미래 새한	권오억 대화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부산 광역시	밀양시	창원 진해구					부산 광역시	밀양시	창원 진해구		
		울산 광역시	사천시	창원마산 합포구					울산 광역시	사천시	창원마산 합포구		
		김해시	양산시	창원 의창구					김해시	양산시	창원 의창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시	의령군	창원미산 회원구	김기태 제일	박창호 대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5	거제시	의령군	창원미산 회원구	김기태 제일	박창호 대화
경상남도		거창군	진주시	합천군			경상남도		거창군	진주시	합천군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_				고성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산청군		
		함양군	함안군	창원 성산구					함양군	함안군	-		

			2024				2025 조 권역 팀 시·군·구 A조 B2						
권역	권역 팀 시·군·구 A조							팀		시·군·구		A조	B조
		대구 광역시	안동시	성주군					대구 광역시	안동시	성주군		
		경주시	영덕군	포항 남구				•	경주시	영덕군	포항 남구		
		고령군	영천시	울진군					고령군	영천시	울진군		
대구광역시		구미시	예천군	봉화군	OI TILL	21247	대구광역시		구미시	예천군	봉화군	u	717477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여정상 대일	김경곤 대한		6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박병호 대일	김경곤 대한
경상북도		김천시	청도군	울릉군			경상북도		김천시	청도군	울릉군		
		문경시	칠곡군	영양군					문경시	칠곡군	영양군		
		상주시	포항 북구	영주시					상주시	포항 북구	영주시		
		경산시	-						경산시	·	-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영암군		
		나주시					나주시	진도군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	장흥군	이동영 삼창	김수인 태평양		7	목포시	함평군	장흥군	이동영 삼창	김수인 태평양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광주광역시		영광군					광주광역시		영광군		-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담양군	여수시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담양군	여수시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송운섭 가람	주정운 <i>가</i> 온		8 -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송운섭	주정운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가람	가온		0	광양시	장성군	신안군	송운섭 가람	주정운 가온
		구례군							구례군	·	-		
대전 세종 충남		충청 남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최종성 대일	윤영범 통일	대전 세종 충남	9	충청 남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최종성 대일	윤영범 통일
		고성군	동해시	태백시					고성군	동해시	태백시		
	10	속초시	삼척시	인제군	김귀수 삼일	진현철 가람		10	속초시	삼척시	인제군	정신근 삼일	진현철 가람
	10	강릉시	정선군	양양군	삼일	가람		10	강릉시	정선군	양양군	삼일	가람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영월군	화천군	원주시					영월군	화천군	원주시		
	11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	김상구 제일	안성일 중앙		11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	김상구 제일	안성일 중앙
		춘천시	홍천군						춘천시	홍천군	÷		
충청북도	12	충청 북도			이성진 미래 새한	류재봉 경일	충청북도	12	충청 북도			이성진 미래 새한	류재봉 경일
전라북도	13	전라 북도			김정국 나라	장충용 대한	전라북도	13	전라 북도		-	김정국 나라	장충용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14	제주시	서게포시		이기수 삼창	권해철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14	제주시	서귀포시	-	이기수 삼창	권해철 하나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업무요령 -부록-

인 쇄: 2024년 9월 발 행: 2024년 9월

발행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비 매 품

주 Δ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인 터 넷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 http://www.reb.or.kr/

편 집: 김세중, 이선호, 전성범, 이지형, 정은화, 하영진, 엄원용, 김명주, 신예지